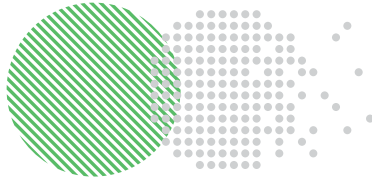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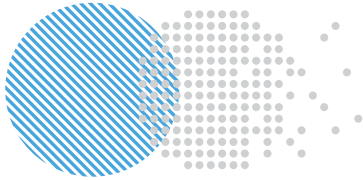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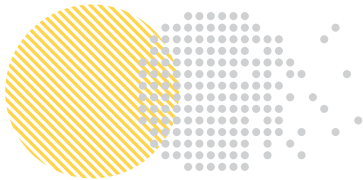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황여정 · 정은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저 자 황여정, 정은주

연구진 연구책임자_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개괄적 특성 파악
-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도출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심층적 이해
-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주요 연구방법

- **문헌연구:** 가족돌봄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검토, 주요 선행연구 정리,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에 관한 기존 조사자료 검토, 설문조사의 조사내용 개발과 법령 및 정책분석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2차 자료 분석:**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가용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주요 지표에 대해 돌봄 여부에 따른 비교를 실시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을 검토함.
- **설문조사 분석:** 가족돌봄 경험이 있는 9~24세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조사내용은 △가족돌봄 경험 기본 실태, △학업 및 근로 현황과 가족돌봄의 영향,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욕구 등임.
- **면담조사 분석:** 가족돌봄 청소년 9명과 현장전문가 5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함.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달권 침해, 정서적 어려움, 발굴의 어려움, 정책 지원의 한계 등을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연구결과

■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주요 결과

● 법적 기반 강화 및 제도적 일관성 확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34세 이하를 포괄하나 법률명에 ‘청소년’ 명시 누락으로 정책 인지도 저하가 우려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생 맞춤형지원법」 등 기존 청소년·교육 관련 법령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이 명시되지 않아 청소년·교육 분야 전달체계 내 발굴·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전국 지자체 조례 분석 결과, 연령 포괄 범위와 지원 내용의 지역 간 편차로 인한 지원 불평등이 우려됨에 따라, 상위 법률 기준 준수 및 표준조례안 개발·보급이 필요함.

● 국내 정책 및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중앙부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인지하고 전담조직 신설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전국적 확산은 아직 제한적이며 부처 간 협력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지자체 및 민간주도 사업은 선도적 실천 사례와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해외 정책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시사점

- 영국은 개별 욕구 평가 기반의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체계를, 일본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법제화한 조기 발견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학교 기반 발굴 강화, 부처 간 협력 제도화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면담조사 주요 결과

● 청소년 다수가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을 자연스러운 가족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는 발굴의 어려움과 결합되어 구조적 사각지대를 형성함.

- 청소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문제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반복
- 현장전문가들은 공공 전달체계의 과부하와 가정 내부 특수성(보호자 서비스 거부 등)으로 인해 발굴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

● 돌봄 책임으로 인해 학업·진로 등 청소년기 핵심 발달과업 수행에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소진이 증첩되어 나타남.

- (학업·진로) 학업중단, 성적 하락, 진로 탐색 기회 상실 등이 반복 확인되었으나, 개인 노력에 의존한 예외적 사례(검정고시, 휴·복학 등)를 제외하면 제도적 지원은 거의 부재
- (경제·정서) 생활비·의료비 부담과 우울·불안·무력감이 동시 발생하고 사회적 관계망은 축소되었으나, 현행 지원은 소득 기준으로 설계되어 복합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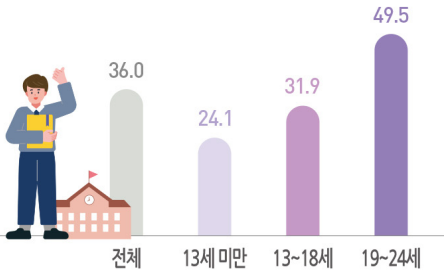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결과를 그림으로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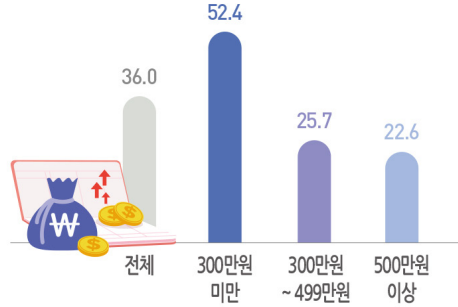
가족돌봄 경험 기본 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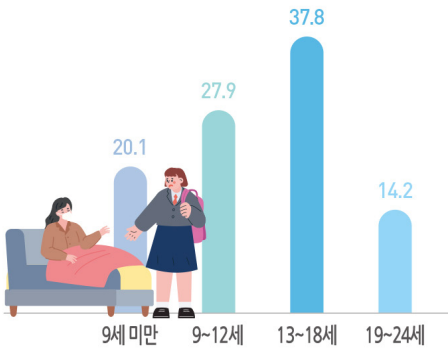
연령별 주돌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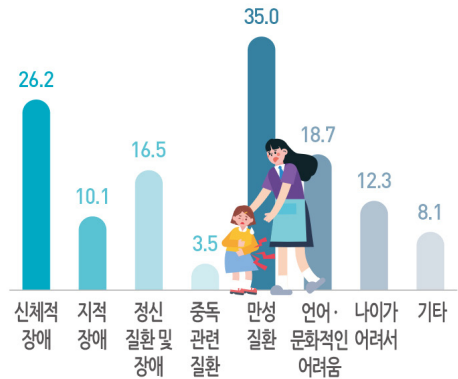
가구소득별 주돌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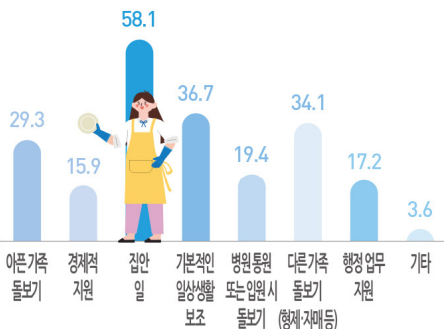
돌봄 시작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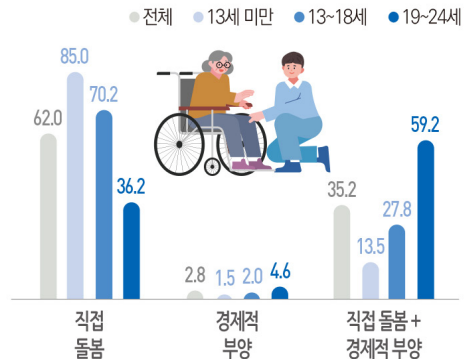
돌봄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가족을 돌보기 위해 주로 하는 일(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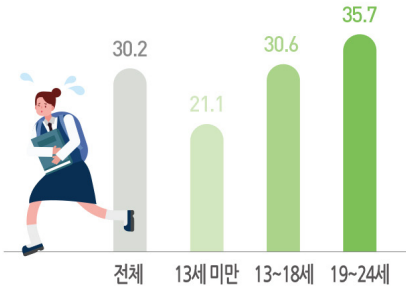
돌봄 제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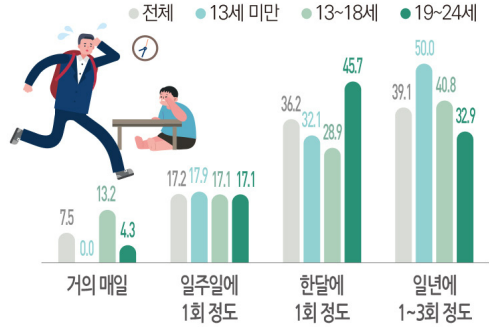
학업·진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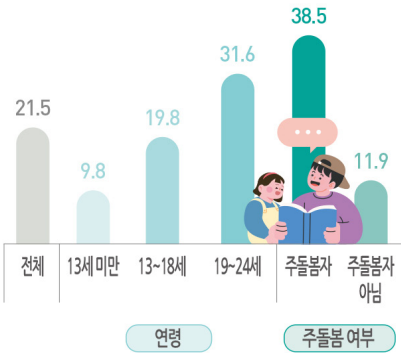
가족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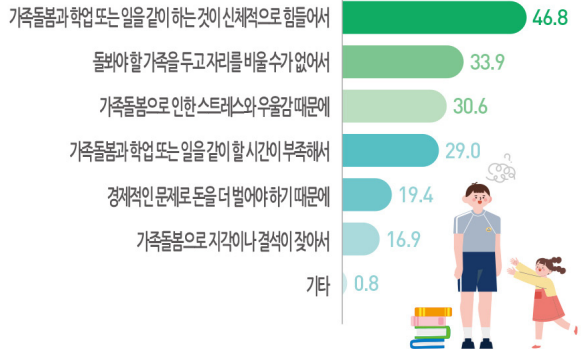
가족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 경험 빈도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직장 중단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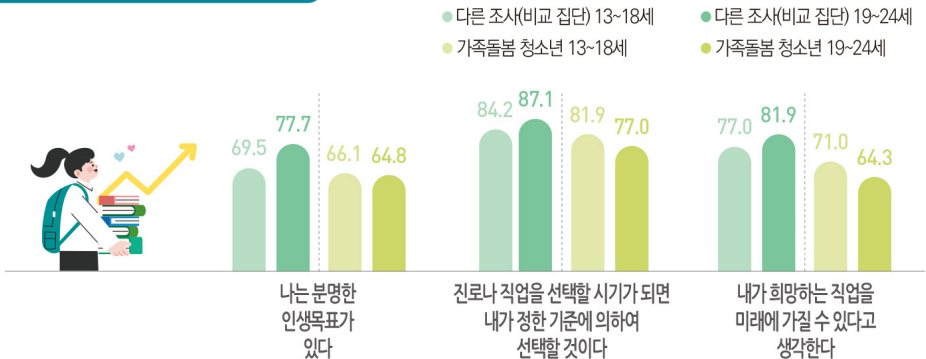


중단하고 싶었던 이유(1순위 + 2순위)



* 주: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비교집단과의 비교: 진로 목표 및 자신감



* 주: 여기에서 다른 조사(비교집단) 결과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임.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및 휴식 욕구

(단위: %)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 전체 ● 13세 미만 ● 13~18세 ● 19~24세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

가족 전체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

경제적 측면



돌봄 방법을 잘 몰라 생기는 어려움



돌봄 대상자 외부활동 지원에 따른 어려움(이출, 병원동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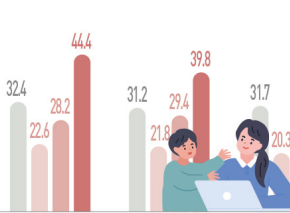
돌봄 대상자와의 거리감이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

돌봄 측면



가족 간 돌봄 역할 분담이나 이전종돌로 인한 어려움

● 전체 ● 13세 미만 ● 13~18세 ● 19~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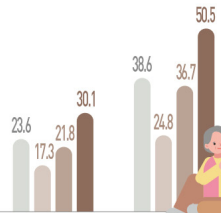
돌봄으로 학교/직장 생활 유지가 어려움

돌봄으로 진로/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움

나를 돌봐줄 어른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

학업/진로 및 미래 설계 측면



돌봄으로 나의 신체 건강 유지가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정신 건강 유지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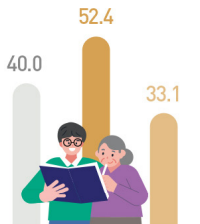
돌봄으로 나의 문화·여가 활동이 어려움

돌봄으로 친구 관계 및 단체활동이 어려움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측면

개인시간 및 휴식 욕구

(“개인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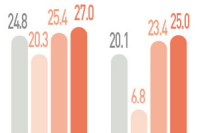
전체

주돌봄자

주돌봄자
아님

본인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것

● 전체 ● 13세 미만 ● 13~18세 ● 19~24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

잠을 충분히 자기

학교공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습

돈을 벌 수 있도록 취업 하여 일하기

친구들과 함께 놀기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담,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참여

기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지원 욕구

(단위: %)

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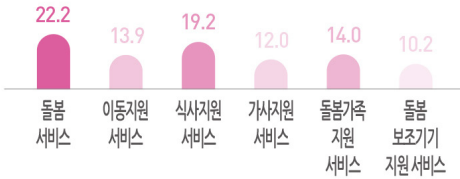
종합이용률

(6개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43.2%



세부 유형별 이용률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률

종합이용률

(8개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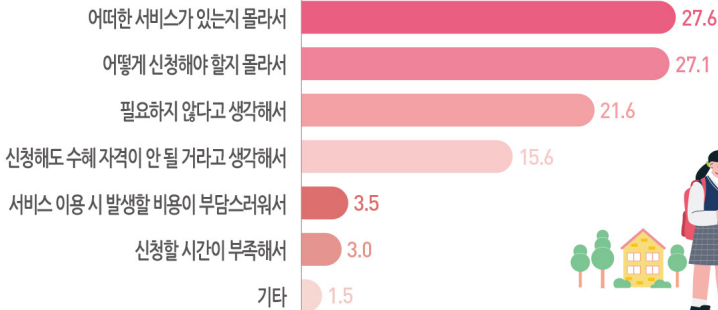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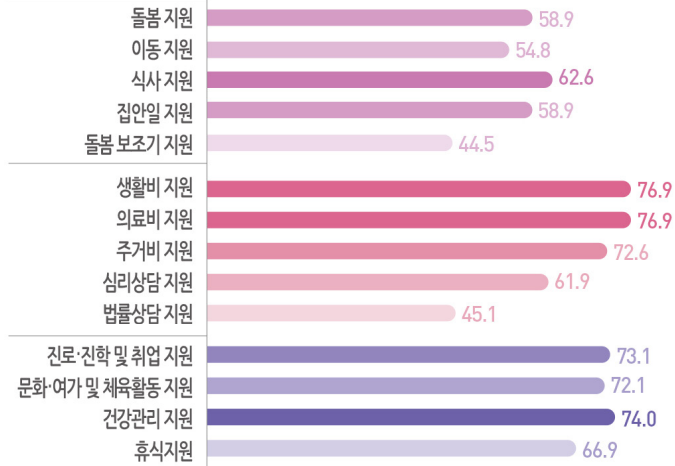
세부 유형별 이용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이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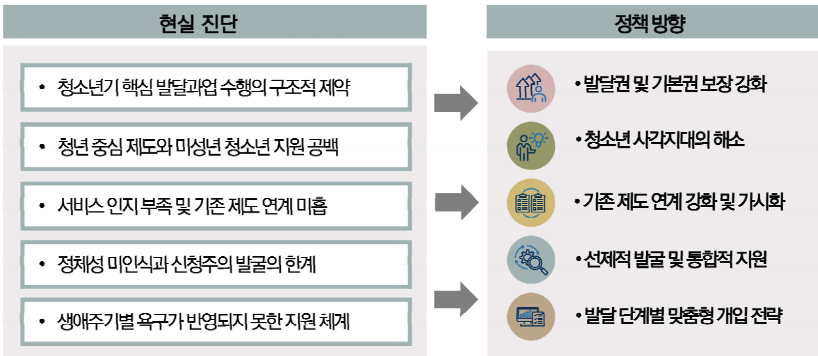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연구결과

■ 실증 분석 종합 및 정책 개선 방향의 도출

- 선행연구 검토 및 2차 자료 분석, 국내외 법령·정책 분석,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등 다각적인 실증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5가지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 **문제의 진단과 정책 개선 방향**
 - **(발달권 침해)** 돌봄 책임으로 학업·진로·또래관계 등 청소년기 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혜적 접근이 아닌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배제)** 청년 중심 법령·조례로 미성년 청소년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정책 영역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계 미흡)**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정보 인지 부족 및 연계 미흡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에 법령·조례에 명시하여 가시성을 확보하고 기존 복지·교육·의료 체계를 적극 활용함.
 - **(발굴 공백)** 낮은 자기 인식과 신청주의로 인해 적시 발견이 어려움. 이에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과 학교·병안 지역사회 등 다층적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사례관리로 연계함.
 - **(획일적 지원)** 생애주기별 욕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지원이 부족함. 이에 청소년기에는 학교 기반 지원과 또래관계 회복을, 청년기에는 생활비 지원과 취업 연계를 강화함.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 진단과 정책 개선 방향]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문제 진단 및 그에 기초한 정책 개선 방향을 토대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1.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 1-2. 정책 및 사업명에서 '청소년' 명시 강화
- 1-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 1-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체화
- 1-5. 지자체 표준 조례안 개발·보급
- 1-6. 정책 용어의 당사자 친화성 검토

2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정보접근성 개선

- 2-1.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및 발굴체계 구축
- 2-2. 학교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발굴·연계
- 2-3. 지역사회·의료기관 기반 발굴·의뢰 활성화
- 2-4.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 2-5. 지원 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

3

돌봄 부담 경감 및 통합 지원

- 3-1. 개인별 욕구 평가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3-2.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 활용 강화 및 행정·법률 지원
- 3-3. 휴식권 보장 및 특수돌봄 지원
- 3-4. 경제적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 강화
- 3-5. 돌봄 역량 강화 교육

4

청소년기 발달권 보장

- 4-1.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
- 4-2.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연계되는 진로·취업 지원
- 4-3. 정서적 소진 완화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4-4. 또래 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

5

전달체계 및 추진 기반 구축

- 5-1.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체계 정비
- 5-2. 중장기 법정계획 연계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5-3.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청년 당사자 참여 보장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개요]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25-기본06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5
- 3. 연구방법 8
- 4. 연구 추진 절차 10

II. 연구의 배경

- 1.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15
- 2. 가족돌봄 청소년 논의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21
- 3.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검토 26
- 4.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29
- 5.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관련 기존 조사 검토 33
- 6. 소결 및 시사점 40

III. 가족돌봄 청소년 2차 자료 분석

- 1. 2차 자료 분석 개요 45
- 2. 「인구총조사」 표본자료 분석 46
- 3.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 분석 54
- 4. 소결 및 시사점 74

IV.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1. 법령 및 정책 분석의 개요	83
2. 해외 정책 및 사례	86
3. 국내 법률 분석	109
4.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121
5. 국내 정책 분석	134
6. 소결 및 시사점	161
V.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171
2. 가족돌봄 경험 기본 실태	185
3. 학업 및 근로 현황과 가족돌봄의 영향	211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220
5.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235
6.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	267
7. 선행조사와의 비교	274
8. 소결 및 시사점	282
VI. 가족돌봄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결과	
1. 면담조사 개요	291
2.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	295
3. 현장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결과	308
4. 소결 및 시사점	325
VII. 정책제언	
1. 정책제언의 배경	333
2. 정책과제	343
참고문헌	401
부 록	421
Abstract	445

표 목차

표 II-1. 국가별 영 케어러 정의 및 인구 현황	16
표 II-2. 영 케어러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른 분류	18
표 II-3. 국가별 영 케어러 유병률 조사(prevalence study)	27
표 II-4. 자료원별 가족돌봄 청년 규모 추정치와 한계	27
표 II-5. 가족돌봄위기 아동·청소년(9~18세) 규모 추정	28
표 II-6. 가족돌봄위기 청년(19~39세) 규모 추정	29
표 II-7.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조사 내용	34
표 II-8.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조사 내용	35
표 II-9.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 조사 내용	36
표 II-10.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내용	38
표 II-11.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내용	39
표 III-1. 2차 자료 분석의 구성 및 주요 검토 문항	46
표 III-2.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48
표 III-3.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가구주와의 관계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49
표 III-4.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주택 점유 형태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50
표 III-5.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경제활동 참여 및 종사상 지위별 가족돌봄 청소년 분포	51
표 III-6.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돌봄필요가족원의 활동제약 유형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54
표 III-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자기만족도	56
표 III-8.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자존감	57
표 III-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회복탄력성	58
표 III-10.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삶의 만족도	60
표 III-1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61

표 Ⅲ-1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정서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63
표 Ⅲ-1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우울감 경험률 ..	65
표 Ⅲ-14.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은둔 경험률 ..	66
표 Ⅲ-1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고립감 _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67
표 Ⅲ-1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고립감 _혼자라고 느낀다	68
표 Ⅲ-1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고립감 _외로움을 느낀다	70
표 Ⅲ-18.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고립감 _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71
표 Ⅲ-1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도움을 요청할 대상 유무	73
표 Ⅲ-20.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도움을 요청할 대상(복수응답)	74
표 Ⅳ-1. 법령 및 정책 분석의 개요	85
표 Ⅳ-2. 영국 돌봄 청소년의 돌봄 범주	87
표 Ⅳ-3. 영국 지역별 무급 돌봄 청소년 규모 및 비율	88
표 Ⅳ-4.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연령대별 무급 돌봄 청소년 수 및 비율 ..	88
표 Ⅳ-5. 영국 돌봄 청소년 대상 휴식 지원 프로그램	93
표 Ⅳ-6. 영국 돌봄 청소년 대상 주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현황	95
표 Ⅳ-7. 호주의 연령대별 돌봄 청소년 규모 및 비율	98
표 Ⅳ-8. 전국 단위 돌봄 청소년 지원 플랫폼	101
표 Ⅳ-9. 주요 단위 프로그램 및 행사	102
표 Ⅳ-10. 일본의 학년별 돌봄 청소년 비율	105
표 Ⅳ-11. 가족돌봄 청소년의 제도적 포섭 여부에 대한 유관 법률 비교 ..	114
표 Ⅳ-12.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병합 대상 10개 법률안 주요 특징(발의일 순)	116
표 Ⅳ-13. 발의안 및 제정법 검토 기준	117
표 Ⅳ-1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주요 입법안의 정책 설계 요소 반영 현황 및 비교표	119
표 Ⅳ-15. 최종 제정법과의 비교 및 반영 수준 분석	121
표 Ⅳ-16. 자치단체 중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23
표 Ⅳ-17. 광역 지자체 조례의 연령 범위 분포	126
표 Ⅳ-18. 기초 지자체 조례의 연령 범위 분포	126

표 IV-19.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 주요 지원 서비스	137
표 IV-20.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영역(안)	141
표 IV-21. 교육복지안전망 지원 내용 세부 사항	144
표 IV-22.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한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월드비전 연계 사례	145
표 IV-23.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	147
표 IV-24. 손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세부 내용	152
표 IV-25.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주요 내용	154
표 IV-26.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내용	157
표 IV-27. 초록우산 '가족돌봄 아동지원사업' 지원항목 예시	160
표 V-1. 이론적 분석틀과 조사항목의 연계	173
표 V-2. 전문가 검토 참가자	175
표 V-3. 전문가 검토 의견 및 반영 방안	175
표 V-4. 조사내용의 구성 및 출처	177
표 V-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81
표 V-6. 돌봄대상 가족의 기능 제약 유형	185
표 V-7. 돌봄 대상자(중복응답)	186
표 V-8. 돌봄대상 가족과의 동거 여부	187
표 V-9. 돌봄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188
표 V-10. 가구의 경제적 특성	189
표 V-11. 가족 내 돌봄 분담 방식	190
표 V-12. 가족 생계 지원 여부	191
표 V-13. 돌봄 제공 형태	192
표 V-14. 가족을 돌보기 시작한 연령	193
표 V-15. 주돌봄자 여부	194
표 V-16. 주돌봄자가 된 이유(1순위)	195
표 V-17. 하루 평균 가족돌봄 소요 시간(평일)	197
표 V-18. 하루 평균 가족돌봄 소요 시간(주말)	198
표 V-19. 자신을 위한 시간 인식 및 필요 시간	199
표 V-20. 본인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것	200
표 V-21. 가족을 돌보기 위해 주로 하는 일(중복응답)	201
표 V-22. 가족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중심성과 가치 부여	204
표 V-23. 가족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부담감과 스트레스	205
표 V-24.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측면 및 돌봄 측면	208
표 V-25.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삶의 질 측면	209
표 V-26. 학업 및 근로 활동 참여 여부	212

표 V-27. 가족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 경험 여부 및 빈도	215
표 V-28.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 여부	216
표 V-29. 수입 중 가족돌봄에 쓰이는 비용의 비중	218
표 V-30. 가족 생계지원에 대한 부담 정도	219
표 V-31. 삶에 대한 만족도	220
표 V-32. 우울감	222
표 V-33.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신체적 건강	224
표 V-34.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정신적 건강	225
표 V-35. 진로 설계 역량	228
표 V-36. 진로목표 및 진로자신감: 세부문항별 응답 결과	231
표 V-37. 진로 준비도	233
표 V-38. 진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1순위)	234
표 V-39.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인지도 및 정보 접근 경로	236
표 V-40. '일상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238
표 V-41.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정보 탐색 경험 여부	239
표 V-42.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정보를 탐색하지 않은 이유	241
표 V-43. 가족돌봄에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기관	242
표 V-44.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돌봄 서비스 (재가방문, 시설 이용)	245
표 V-45.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이동지원 서비스	246
표 V-46.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식사지원 서비스	247
표 V-47.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가사지원 서비스	248
표 V-48.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249
표 V-49.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250
표 V-50.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 여부	251
표 V-51.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생활비 지원	254
표 V-52.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의료비 지원	255
표 V-53.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주거비 지원	256
표 V-54.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법률상담 지원	257
표 V-55.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학업 및 취업 지원	258

표 V-56.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화·체육 활동 지원	259
표 V-57.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260
표 V-58.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건강관리 지원	261
표 V-59. 지원 서비스의 돌봄 어려움 해결 정도	262
표 V-60.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돌봄 어려움 해결 정도 ..	263
표 V-61.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돌봄 어려움 해결 정도	264
표 V-62. 지원 서비스 이용 수준에 따른 돌봄 어려움 개선 효과	265
표 V-63. 가족돌봄 및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266
표 V-64.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향 및 거부 사유	268
표 V-65. 희망지원 서비스 배경변인별 비교: 가족돌봄 지원 영역	269
표 V-66. 희망지원 서비스 배경변인별 비교: 생활·복지 지원 영역	270
표 V-67. 희망지원 서비스 배경변인별 비교: 진로 및 자기계발 지원 영역	271
표 V-68. 희망지원 서비스 우선순위(상위 7개)	273
표 V-69.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필요 가족 수	275
표 V-70.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필요 가족과의 동거 여부	276
표 V-71.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가족의 기능상태	277
표 V-72.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85
표 VI-1.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 대상자 구성	292
표 VI-2. 현장 전문가 면담 대상자 구성	293
표 VI-3. 면담 조사 주요 질문 내용	294
표 VI-4. 면담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328
표 VII-1. 정책과제 도출 근거	333
표 VII-2.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344
표 VII-3. 가족돌봄 상황을 명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	346
표 VII-4. 사업 및 제도 운영의 청소년 포섭 강화 방안(예시)	348
표 VII-5.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50
표 VII-6.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표준조례안	352
표 VII-7. 「The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검사지	371
표 VII-8.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총괄표	398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추진 절차	11
그림 Ⅱ-1.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	22
그림 Ⅱ-2. 가족돌봄 청소년 논의 이론적 분석틀 및 적용 방안	26
그림 Ⅱ-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사점	42
그림 Ⅲ-1.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성 및 세대 구성별 가족돌봄 청소년 분포	50
그림 Ⅲ-2.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가족돌봄 청소년 추정 가구 및 일반가구의 주택점유 형태 비교	51
그림 Ⅲ-3.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연령 및 가족돌봄 청소년 여부별 종사상 지위 분포	52
그림 Ⅲ-4.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단체활동 참여율별 가족돌봄 청소년 분포	53
그림 Ⅲ-5. 다른 조사와의 비교: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9
그림 Ⅲ-6. 다른 조사와의 비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62
그림 Ⅲ-7. 다른 조사와의 비교: 정서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64
그림 Ⅲ-8. 다른 조사와의 비교: 우울감 경험률	65
그림 Ⅲ-9. 다른 조사와의 비교: 고립감_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68
그림 Ⅲ-10. 다른 조사와의 비교: 고립감_혼자라고 느낀다	69
그림 Ⅲ-11. 다른 조사와의 비교: 고립감_외로움을 느낀다	70
그림 Ⅲ-12. 다른 조사와의 비교: 고립감_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72
그림 Ⅲ-13. 2차 자료 분석의 주요 발견점 및 시사점	79
그림 Ⅳ-1.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영역 예시	104
그림 Ⅳ-2. 조례 내용분석 절차	122
그림 Ⅳ-3. 광역 지자체의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24
그림 Ⅳ-4. 기초 지자체의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25
그림 Ⅳ-5. 조례의 돌봄 대상자 사유 유형별 분포	128

그림 IV-6. 조례의 지원 대상 요건 유형별 분포	128
그림 IV-7. 조례 내용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내용 포함 현황	130
그림 IV-8. 조례 담당 부서의 분포	131
그림 IV-9. 조례의 지원사업 관련 조문 현황	132
그림 IV-10. 조례의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 관련 조문 현황	134
그림 IV-11.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홈페이지	136
그림 IV-12. 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	136
그림 IV-13. 청년미래센터 기능 및 인력 구성	137
그림 IV-14.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개념	140
그림 IV-15.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체계	143
그림 IV-16. 조손가족 대상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151
그림 IV-17.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가진단표	155
그림 IV-18. 국내·외 법령 및 정책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개선 방향	167
그림 V-1. 조사내용 설계 절차	172
그림 V-2.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구성과 흐름	184
그림 V-3. 주돌봄자가 된 이유(1순위+2순위)	196
그림 V-4. 가족을 돌보기 위해 주로 하는 일(중복응답)	201
그림 V-5. 가족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203
그림 V-6.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종합)	207
그림 V-7. 가족돌봄으로 어려움: 14개 문항 합산값 평균 비교	211
그림 V-8. 학업 및 근로 활동 참여 현황: 학교급 및 근로 형태	213
그림 V-9. 학업이나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214
그림 V-10.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사유	217
그림 V-11. 비교집단과의 비교: 삶의 만족도	221
그림 V-12. 비교집단과의 비교: 우울감	223
그림 V-13. 비교집단과의 비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225
그림 V-14. 비교집단과의 비교: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227
그림 V-15. 비교집단과의 비교: 진로 효능감 6개 문항	230
그림 V-16. 비교집단과의 비교: 진로 확산 수준(13~18, 19~24세)	232
그림 V-17. 진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1순위+2순위)	235
그림 V-18.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정보 탐색의 용이성	240
그림 V-19.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률: 종합 이용률	243
그림 V-20. 가족돌봄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244
그림 V-21.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률: 종합 이용률	252

그림 V-22. 생활·복지 서비스별 이용 여부	252
그림 V-23. 생활·복지 서비스별 도움 정도	253
그림 V-24.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266
그림 V-25.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향 및 거부 사유	268
그림 V-26. 희망지원 서비스 필요성 인식 수준(종합)	272
그림 V-27.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대상 가족과의 관계	277
그림 V-28.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제공 유형	278
그림 V-29. 선행조사와의 비교: 주돌봄자 비율	279
그림 V-30. 선행조사와의 비교: 가족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	280
그림 V-31.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281
그림 V-32.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282
그림 VII-1.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 진단과 정책 개선 방향	338
그림 VII-2.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개요	342
그림 VII-3.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기반 발굴 체계(안)	359
그림 VII-4. 가족돌봄 청소년이 언급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관련 서식 ..	361
그림 VII-5.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362
그림 VII-6.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 발굴 체계(안)	365
그림 VII-7.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보 통합 페이지	367
그림 VII-8. 가족돌봄청년 페스티벌 「오아시스 데이」 홍보 게시물	375
그림 VII-9. 서울런 운영 근거 및 접근 경로	383
그림 VII-10.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의 장기적 협력 방안(예시) ..	392
그림 VII-1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내용 ..	394

○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 추진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 형제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숨겨진 집단(hidden army)’으로 호명되거나, 가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쉽게 인지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잊혀진 최전선(forgotten front line)’에 비유되기도 한다(Wayman & Sheila, 2021; 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칭하며, 관련 조사연구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연민의 대상으로 여길 뿐,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나 정책 지원은 미비했다. 일부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눈에 띄는 대응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22년 수행된 국가별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대응을 1~7단계로 구분한 국제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당시 기준으로 7단계 무반응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Leu, Agnes et al, 2022; 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홀로 아버지를 간병하던 청년이 경제적 부담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고 사회적 관심도 제고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법률

1) 1장은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안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25년 2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4년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이전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시범사업이 17개 시도 중 4개 시도에만 국한되고 지원대상의 연령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저연령대 청소년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연령, 예산 등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부담하는 가족돌봄은 그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청소년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지위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만성적인 질병 및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돌봄 역할은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허민숙, 2022), 이처럼 장기화 된 돌봄 활동은 청소년기에 집중해야 할 발달과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함양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성장해가야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경험하는 과도한 돌봄 수고는 학습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함선유, 2023). 이러한 연유로 가족돌봄자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청년에게는 돌봄에 따른 기회비용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함선유, 2023).

본 연구는 상술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가족돌봄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충분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이 처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요자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연령대 전반을 사각지대 없이 포괄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최근 들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논의는 주로 ‘청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된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는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로 명명되었고(보건복지

부 보도자료, 2023.4.27.),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2025년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법률명과 조문 전반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청소년이 제도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논의가 청년층에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부터 초기 청년에 이르는 연령대(0~24세)를 포괄적으로 다루되, 특히 보다 어린 나이에 돌봄 부담을 지고 있으나 정책 대상에서는 배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초기 청년의 상황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청소년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선행연구 및 국내·외 다양한 사례에서 정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서는 돌봄 대상자의 범위, 돌봄 제공자의 연령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개념의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가족돌봄 청소년과 관련한 이슈와 쟁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생태체계이론, 아동권리기반 접근 등 이론적 분석틀을 검토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통합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및 현황 파악

거시적 관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모집단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용

범위 내에서 「인구주택총조사」, 「20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 및 유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 돌봄 대상자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제한적이거나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으로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개괄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3) 해외 사례 분석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사, 연구, 지원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진 영국, 호주를 비롯해, 근래 들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정의 및 법적 기반, 현황, 정책 및 제도적 지원(전문인력 배치, 휴식권 보장, 사례관리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4) 국내 법령 및 정책 분석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 전반을 분석하였다. 2025년 2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시범사업 조항은 2025년 3월 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정법의 정책대상 정의, 연령 기준, 지원 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주요 조문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병합된 10개 발의안을 제도 설계, 정책 실행 기반, 당사자 보장 및 정책 연계 등 12개 정책요소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의 제도적 위상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보장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8개 유관 법률을 병행 분석하여 제도 간 정합성과 포섭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한편, 법률 제정 이전에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연령 기준, 정의 조항, 실태조사계획 조문, 서비스 구성, 전달·협력 체계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례의 구조적 특징과 실행 수준을 진단하고, 중앙 법령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및 지자체 정책 사례, 월드비전·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기관 주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한계를 검토하여 정책 실행 수준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5)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실태 파악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실태와 애로사항, 정책적 수요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내용은 △가족돌봄 경험 기본 실태, △학업 및 근로 현황과 가족돌봄의 영향,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한편, 설문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세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개별 심층 면접조사도 병행하였다. 면접조사는 돌봄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조사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돌봄 청소년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돌봄 부담, 학업·진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심리·정서적 부담, 그간 경험한 지원 서비스 및 정책적 수요 등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장 전문가 대상 조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및 지원기관 담당자, 지자체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굴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한계 또는 어려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상황, 현행 지원 제도·정책의 개선점,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6)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법령 및 정책 분석,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간담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영역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제2장에서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4장에서 실시한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위한 기존 조사문항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거시적 관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및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가용 범위 내에서 국가승인통계 및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자료 분석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 인구학적 특성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인구주택총조사」, 「20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자료명(작성기관)	주요 검토 지표	자료 특성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국가데이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추정인구학적 특성경제·생활 및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 단위 대표성 확보 및 규모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가구 유형 및 동거 형태 파악 가능다만, 실제 돌봄 제공 여부 및 강도는 직접 파악 어려움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족 중 돌봄 필요 대상 존재 여부 및 실제 돌봄 여부심리건강 위험요인서비스 이용 및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기청소년 중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의 구체적 실태 파악 가능일부 지표는 유관 청소년 조사(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와 비교 가능다만, 모집단이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한정되어 일반화에 제약

3) 설문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모집단 정보가 부재하여 확률표집을 통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집단이며,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 조사대상 발굴 자체가 매우 어렵다.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자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저연령대 청소년의 실태까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규모는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목표 표본을 5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77명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 돌봄 경험이 있는 9~24세 청소년
표본수	• 총 577명 (목표표본 500명)
표집방법	• 연령을 고려한 할당 표집(quota sampling)
조사시기	• 2025년 6~7월

4) 면담조사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힘든 가족돌봄 청소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장의 실질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이들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돌봄 경험의 구체적 맥락과 청소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정책 지원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요소	내용
면담참여자 규모	• 총 14명(가족돌봄 청소년 9명, 현장전문가 5명) - 가족돌봄 청소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다양한 돌봄 대상 포함 - 현장전문가: 공공 전달체계(광역/기초), 민간단체(NGO),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영역 포함
면담 방식	• 반구조화 된 면담지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개별 면담
주요 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 돌봄 현황 및 유형, 돌봄이 일상 및 삶에 미치는 영향, 지원 경험 및 서비스 활용 실태, 정책적 수요 • (현장전문가) 업무 범위 및 경험,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과 주요 어려움, 현재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
면담 방법	• 1인당 약 1시간 내외, 개별 면담 방식으로 실시 • 대면 면담 원칙, 참여자 희망 시 온라인 화상회의(Zoom) 병행
면담기간	• 2025년 8월~9월
면담자	• 연구진

5) 전문가 자문

학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자문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내용 및 문항 개발, 해외사례 및 법령 분석, 조례 내용 분석, 2차 자료 분석 및 결과 해석을 비롯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정책과제(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6) 기타 연구방법 : 당사자 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연구내용을 협의하고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의 실질적 경험과 정책 수요를 청취하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가족돌봄 경험이 누적된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2회(2025.8.7., 2025.9.10.)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일상적 어려움,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장벽, 필요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와 애로사항, 최근의 정책동향 및 정책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관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4. 연구 추진 절차

상술한 연구내용 및 방법을 반영한 본 연구의 전체적인 추진 절차는 [그림 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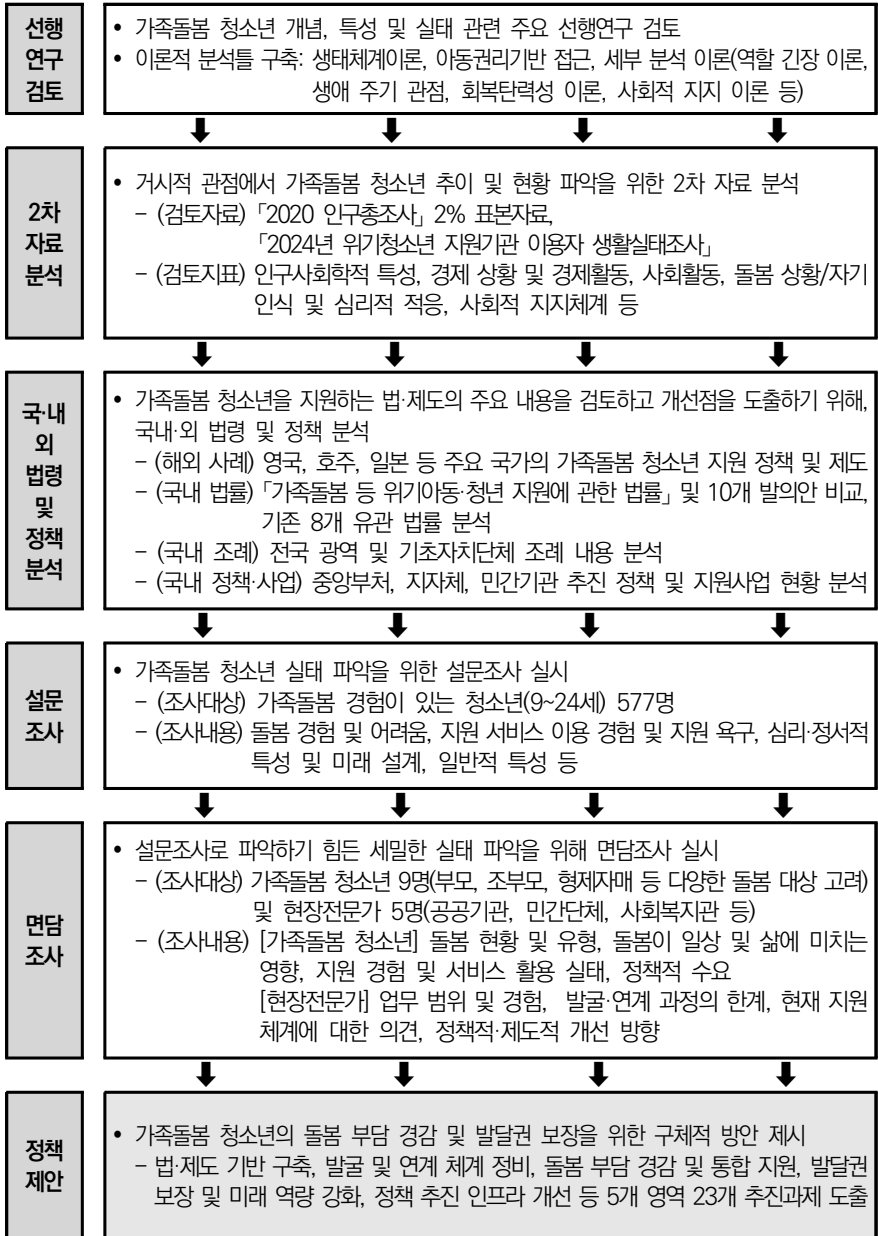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 제2장 연구의 배경

- 1.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 2. 가족돌봄 청소년 논의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 3.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검토
- 4.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 5.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관련 기존 조사 검토
- 6. 소결 및 시사점

1.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1) 해외에서의 논의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 ‘영 케어러(young carer)’라는 이름으로 일찍이 시작되었다.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 케어러’의 개념은 가족을 돌보는 3~18세 아동과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돌보며 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Aldridge & Becker(1993)를 통해 최초로 제시되었다(김지선 외, 2023). 영 케어러에 관한 초기 논의를 주도한 Becker, Dearden & Aldridge(2000)은 영 케어러를 장애나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돌봄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들이 돌보는 가족구성원은 주로 부모이지만, 형제자매나 조부모 또는 기타 친척일 수도 있다(Becker et al., 2000; 김지선 외, 2023: 3에서 재인용).

이후 영 케어러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연령 범주는 개별 국가별로 문화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 규정되고 있다(유정원, 강보민, 2022.11: 4). 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나 연령 범주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적용되는 주요 특징은 대부분 25세 이하의 어린 아동·청소년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경우를 지칭한다는 것이다(유정원, 강보민, 2022.11). 예컨대 일본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집안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영국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장애, 질병, 질환의 문제를 가진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경우를 영 케어러로 규정하고, 미국은 8~18세의 어린 간병인으로 ‘Young Caregiver’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호주에서는 장애나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의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을 의미

2) 2장은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은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하는데, 특히 호주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가족 이외에도 타인을 돌보는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유정원, 강보민, 2022.11). 그 외 여타 유럽국가들에서는 30세의 돌봄자까지도 영 케어러에 포함되는 등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유정원, 강보민, 2022.11). 이처럼 국가별로 처한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영 케어러를 정의하는 연령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경우도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김정현, 박선영, 2023; 허민숙, 2022; Leu & Becker, 2017; 김지선 외, 2023에서 재인용).

표 II-1. 국가별 영 케어러 정의 및 인구 현황

국가	정의	연령	추산인구
미국 ¹⁾	• 8~18세의 어린 간병인을 'Young Caregiver'로 정의	8~18세	130만~140만명
영국 ¹⁾	•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 • 18세~24세의 청년돌봄자(Young Adult Carer)와 구분	18세 미만	49만명 (11~18세 인구의 8%)
일본 ¹⁾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어른이 하는 돌봄의 책임을 떠안아 집안일과 가족의 보살핌, 간병, 정신적 지원을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	약 10만명 (중학생의 6%, 고등학생의 7%)
캐나다 ¹⁾	• 25세 이하의 젊은 청년 중 그들의 가족구성원의 만성질환, 장애, 정신건강 또는 물질사용 문제, 노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상당한 시간 무보수 돌봄을 제공하는 자	25세 이하	-
호주 ¹⁾	• 장애나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의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	25세 이하	23만명
한국 ²⁾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4세 이하	연령에 따라 다름

* 출처: 1)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유정원, 강보민(2022.11), 5쪽 <표 1>에서 재인용.
2) 한국의 정의 및 연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참조.

이 가운데 영국은 국제 사회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논의를 선도한 국가에 해당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법률에 영 케어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아동 및 가족법 2014(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에서는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로 규정하고 있다(UK Legislation, 2022.02.08. 검색; 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이를 준용하여 영국 국가보건사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장애, 질병, 정신건강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로 정의한다(NHS, 2022.02.08. 검색; 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한편, 영국에서는 18~24세의 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 청년돌봄자)'로 별도로 명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법은 「돌봄법(Care Act 2014)」에서 규정하고 있다(UK Legislation, 2022.02.08. 검색; 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요컨대, 영국에서는 18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과 이상을 각각 '영 케어러' 및 '영 어덜트 케어러'로 명명하고, 별도의 법령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영 케어러의 돌봄 수고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 활동을 비롯해, 투약 보조, 드레싱 교환, 이동 보조 등의 간병 활동, 목욕시키기, 용변처리 등의 사적 활동,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이 포함되기도 한다(The Children's Society, 2016; 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아울러, 영 케어러가 돌보는 대상은 동거 가족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에서 2018년 18~25세 연령의 재학생 40,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5.5%가 가족 등에 대한 돌봄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동거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1.3%였고 4.2%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 등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돌보는 사람은 이혼한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허민숙, 2022).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수의 국가에서 가족을 전제로 하지만, 호주에서는 직접 가족 외에 친구 등 타인도 포함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Leu, Agnest et al.(2022)는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연구 기반 및 법적 근거, 정책 대응 등을 기준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의 대응수준을 Level 1~Level 7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할 당시를 기준으로 Level 1(통합적/지속가능 정책의 완비)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고, 영국이 Level 2(선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3단계(중간급)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등이 포함되었다(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는 당시 기준으로는 '무대응'에 해당하는 7단계로 볼 수 있으나, 2025년 현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한

상태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현재 4단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II-2. 영 케어러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른 분류

구분	국가	내용
1단계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회구성원이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있음. 지속 가능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
2단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구성원 및 전문가, 정책의 주요 결정자 모두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있음. 영 케어러 관련 연구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속 확대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마련
3단계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구성원 및 전문가, 정책의 주요 결정자가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있음. 영 케어러와 관련된 연구기반 형성 중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 법적 권리를 인정하며 서비스 제공 전문가 대상의 영 케어러 지원 지침 개발 중
4단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사회구성원 및 전문가가 영 케어러에 대해 인식함. 영 케어러에 대한 정부 대응 소극적 일부 시행 영 케어러 연구기반 마련 중 영 케어러와 관련한 법을 통해 권리 보장
5단계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구성원 및 전문가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시작 정부 대응은 없으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있음. 영 케어러 연구기반 마련 중 영 케어러와 관련된 법은 없으나 권리 보장 일부 시행
6단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 집단의 하위집단으로서 영 케어러 인식 시작
7단계	기타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인식 및 정책 대응 부재

* 출처: 김지선 외(2023). 34-35쪽, <표 2-4>에서 재인용.

* 자료: 김정현, 박선영(2023), 허민숙(2022), Leu & Becker(2017) 재구성.

2) 국내에서의 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약 20년 전부터 영 케어러에 대한 연구와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해 영 케어러에 대한 개념 정의나 현황 파악이 미진했다(김지선 외, 2023). 영 케어러에 대한 국내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논의를 주도한 영국에서는 ‘영 케어러’

가 본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일컬으며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영 어덜트 케어러’로 별도로 명명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보다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 케어러’를 정의하고 관련 논의가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대책인 ‘가족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관계부처 합동, 2022.2.14)’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명칭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영 케어러’ 용어를 대체하면서도 정의에 부합하는 국어 명칭에 대해 논의”하여 ‘가족돌봄청년³⁾’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년’으로 명명하고, “만성·장기 신체·정신상의 질병이나 장애,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2.14.; 김지선 외, 2023).

그런데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34세 이하 연령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주도하였고, 현재 중앙부처 내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내 청년정책팀에서 담당하는 등 국내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논의는 아동·청소년보다는 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대체로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노혜진, 2023), 더 낮은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은 배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정부가 실시한 영 케어러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13세 이상~34세 이하의 청소년·청년층으로 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돌봄 부담을 지는 초·중학생들이 제외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이 조사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청소년 역시 돌봄을 제공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으나, 「아이돌봄지원법」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역시 중·고등학생부터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12세 이하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함선유 외, 2022).

가족돌봄 청소년에 관해 정의할 때, 돌봄의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3)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의견(2021.1.6.)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등 ‘가족돌봄OO’이 쓰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영 케어러’는 ‘가족 돌봄 청년’ 혹은 ‘돌봄 청년’으로 명명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2.14).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혜진(2023)은 본래 영 케어러와 영 어덜트 케어러가 돌봄 대상과 관계없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청년 등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인 데 비해, 한국의 가족돌봄청년은 돌봄 대상이 이미 가족으로 국한된 가족돌봄자(family caregiver) 개념 안에서 연령 범위를 지정한 개념에 가깝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돌봄대상과의 관계 차원에서 현재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돌보는 경우로 제한하고 자녀돌봄이나 배우자 돌봄은 제외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애가 있는 형제돌봄이나 한부모의 자녀돌봄, 친인척 돌봄 등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노혜진, 2023). 아울러 동거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가 필요한데,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 돌봄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동거 돌봄까지 포섭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노혜진, 2023).

나아가, 허민숙(2022)은 돌봄의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보육원 퇴소 청소년 등 가족이 없는 청소년 간 간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원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허민숙, 2022).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명칭을 '돌봄 청소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최영준 외(2024)의 연구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대신 '돌봄 청소년'으로 명명하면서, 연구를 통해 돌봄의 대상이 직계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가족'이라는 용어가 돌봄에 대한 의무감을 내포한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가족 영 케어러(family young carer)'라는 용어가 아닌 '영 케어러(young car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돌봄 청소년'이 아닌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최영준 외, 2024). 아울러, 당사자 조직에서도 '가족돌봄'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감과 의무감 등을 고려했을 때 '돌봄 청소년'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조기현, 2025.2.6.), 영 케어러의 국내 명칭과 돌봄의 대상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족돌봄 청소년 논의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가족돌봄 청소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의 역동, 학교생활의 제약, 지역사회 자원 접근성, 그리고 국가 정책의 미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발달 단계상 ‘돌봄 수혜자’임에도 역할 상 ‘돌봄 제공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성인 역할과 아동 지위의 모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개인 발달 욕구 간의 갈등이라는 독특한 특수성도 지닌다. 이러한 복합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체계적인 이론적 기반이 요구된다. 이 같은 이론적 분석틀은 연구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나아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 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 그리고 정책 제언 도출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논거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정책 개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이론적 분석틀을 구축하여 연구 전반에 적용하였다. 먼저, 생태체계 이론을 문제의 다층적 구조를 파악하는 기반 이론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을 정책 개입의 규범적 근거로 활용하여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고유한 경험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세부 분석 이론으로 역할 긴장 이론, 회복탄력성 이론, 생애 주기 관점, 사회적 지지 이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1) 총체적 이해를 위한 기반: 생태체계 이론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은 인간 발달을 개인이 속한 다양한 환경 체계들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하며, 개인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층적 환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관점을 제시한다(권일남, 전명순, 2021에서 재인용).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정책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태체계 이론은 이 같은 측면을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반 이론으로 적합하다.

생태체계 이론에서 환경 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 체계로 구분된다(김희경, 김성훈, 2018: 4). 미시체계(Microsystem)는 매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활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맥락으로, 청소년의 경우 가족, 또래, 학교, 이웃

등 일상적으로 속해 있으면서 매일 직접 만나는 환경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미리 외, 2019: 109).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가족 내 돌봄 책임 분담 방식, 학교에서의 학습 및 또래 관계 등이 미시체계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성 또는 맥락 간의 연결을 의미한다(유진이, 2013). 예컨대 가족의 돌봄 상황이 학교의 인지 및 지지 부족으로 이어지거나 학교가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청소년을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외부체계(Exosystem)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뜻한다(Bronfenbrenner, 1979; 이미리 외, 2019에서 재인용).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역 내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부재 등이 청소년의 삶과 돌봄 부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외부체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거시체계(Macrosystem)는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적 속성과 같이 사회문화적 규범, 이념, 태도, 관습 등을 이루는 거대한 체계를 일컫는다(권일남, 전명순, 2021).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 관련 법률의 유무, 청소년 복지 정책의 방향성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체계(Chronosystem)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발달 단계 변화, 사회적 사건(예: 팬데믹), 그리고 환경 체계 내의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데, 돌봄 역할이 시작된 시점과 그 기간,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른 돌봄 책임의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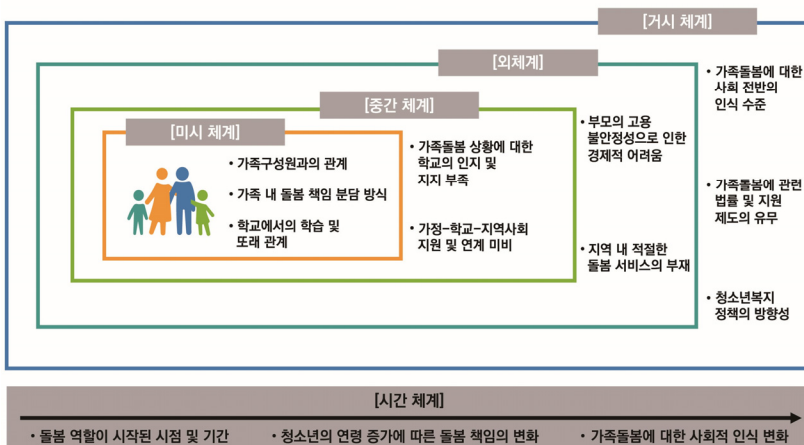


그림 II-1.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

생태체계 이론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다양한 환경 체계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 파악 단계에서 각 체계별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자원을 탐색하는 데 지침이 되며, 정책 제언 단계에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학교-지역사회-국가 시스템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2) 정책 개입의 규범적 근거: 아동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⁴⁾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 권리 협약(UNCRC)」에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다. 이 관점은 모든 아동이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는 국가의 책임이며, 정책과 프로그램은 아동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United Nations, 1989). 가족돌봄 청소년과 관련하여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의 핵심 의의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단순한 가족 내 문제나 개인적 어려움이 아닌 ‘아동 권리 침해’의 관점에서 재정의한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시혜적·보충적 복지 접근을 넘어, 권리 기반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의 주요 내용을 가족돌봄 청소년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survival rights)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과도한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 악화, 충분한 영양 섭취 및 휴식 부족 등이 생존권 침해의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발달권(developmental rights)은 교육, 놀이, 여가, 문화 활동, 정보 접근 등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의미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또래와의 교류 및 취미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발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이는 장기적인 진로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호권(protection rights)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4) 이 내용은 “United Nations(1989).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rights-child>” 및 “금천구청 유엔아동권리협약 안내 페이지,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742>”의 4대 기본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돌봄 받는 가족 구성원의 상황으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방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도한 돌봄 책임 자체가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이 존중될 권리를 의미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가족 내 돌봄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이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을 넘어 아동·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이 직면한 다층적 문제를 권리 침해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법적·제도적 개입 의무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구체적 현상 분석을 위한 세부 이론

앞서 제시한 생태체계 이론과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이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에 대한 거시적 분석틀을 제공한다면,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세부 이론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이 이론들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실제로 겪는 구체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설계 및 결과 해석, 그리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언 도출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첫째, 역할 긴장 이론(Role Strain Theory)은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여러 역할 간의 상충(역할 갈등)이나 과도한 요구(역할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설명하는 이론이다(Goode, 1960; Sieber, 1974). 가족돌봄 청소년이 ‘학생’ 역할과 ‘돌봄 제공자’ 역할 간의 갈등을 겪거나, 과도한 돌봄 책임으로 인해 심각한 피로, 소진,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둘째, 생애 주기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은 개인의 삶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할과 사건을 통해 이해하며, 초기 경험이 이후 생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강조한다(Elder, 1995).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기의 돌봄 경험이 학업, 진로, 취업, 성인기 삶의 질 등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기 개입의 중요성 및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지속적이고 시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회복탄력성 이론(Resilience Theory)은 역경 속에서도 개인이 긍정적으로 적응

하고 성장하는 능력과 그를 둘러싼 위험/보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Masten, 2001). 가족돌봄 청소년의 높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진 내재적 강점과 외부 환경의 보호 요소를 탐색하여, 자원 기반의 긍정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넷째, 사회적 지지 이론(Social Support Theory)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스트레스 대처와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Cohen & Wills, 1985).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지 자원을 분석하고, 지지체계의 공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4) 이론적 분석들의 통합적 적용과 기대 효과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들은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정책 대상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 분석들은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개인 중심을 넘어 가족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또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정책적 의무를 강조하고, 단기적 지원이 아닌 생애 주기적 관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태체계 이론(기반 이론), 아동 권리 기반 접근(규범적 근거), 그리고 4가지 세부 분석 이론(역할 긴장, 생애 주기,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은 각각 다음과 같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생태체계 이론이 문제의 다층적 구조를 제시하면,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이 정책 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세부 이론들이 구체적 현상 분석의 깊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분석들의 적용 방향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활용이다. 실태조사 설계 시 생태체계 이론에 따라 미시-중간-외부-거시체계의 틀을 반영한 조사 영역을 구성하고, 아동 권리 침해 관점에서 조사 문항을 개발하며, 세부 이론들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둘째, 정책 개발의 방향성 제시이다. 개인 중심에서 가족 단위로, 사후 치료에서 예방적 개입으로, 단편적 서비스에서 체계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지원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체계, 조기 발굴 및 개입 시스템 등의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될 수 있다. 셋째, 정책 정당성 확보이다. 가족돌

봄 청소년을 ‘개별 가족의 사적 영역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개입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지원의 당위성을 강화한다.

[그림 II-2]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분석틀의 전체적인 구조와 이론 간 관계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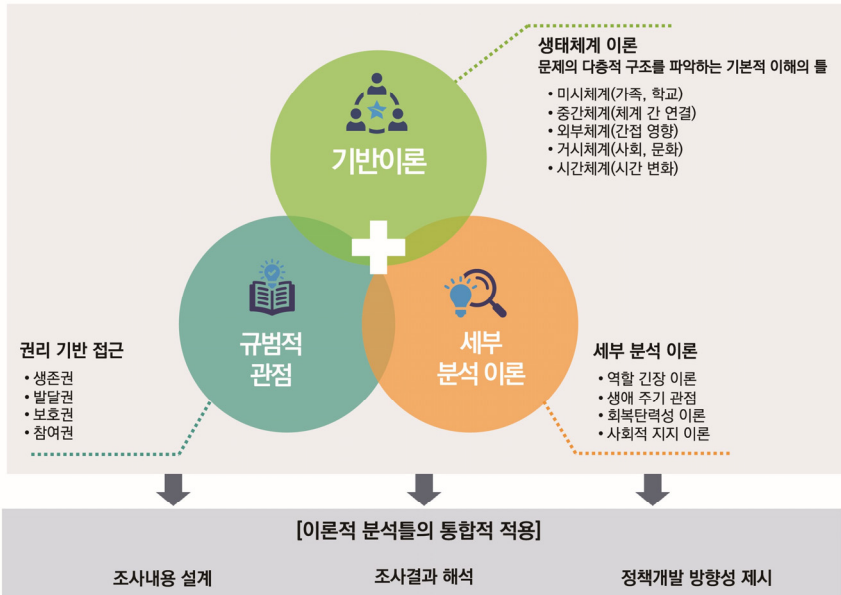


그림 II-2. 가족돌봄 청소년 논의 이론적 분석틀 및 적용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검토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에도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된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해외에서 수집된 영 케어러 규모에 대한 정보는 허민숙(2022)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 케어러의 규모에 대한 조사는 국가별로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 국가별로 청소년 조사대상의 연령범주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허민숙(2022)의 연구에서는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일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수치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에 대입하면 2022년 기준 약 18만 4천명~29만 5천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할 바 있다.

표 II-3. 국가별 영 케어러 유병률 조사(prevalence study)

국가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조사 연령	11~18세	15~24세	14~16세	15~24세	10~15세	13~17세	12~17세
해당 연령 인구 대비 비율	8%	8%	7%	7.2%	7.9%	6%	5%

* 출처: 허민숙(2022). 3쪽, [표 1].

국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로는 함선유 외(2022)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해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에 대한 돌봄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자로 예상되는 청소년·청년의 비율은 0.6%~1.4%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인 0.6%를 9~24세 인구(2024.7월 기준 780만 명)에 적용하면, 대략 4만 7천여명의 청소년이 가족돌봄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II-4. 자료원별 가족돌봄 청년 규모 추정치와 한계

구분		인구주택 총조사 ¹⁾	건강보험 빅데이터 ²⁾	전국 일-생활 균형실태조사 ³⁾	청년 삶 실태조사 ⁴⁾	2022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⁵⁾	
조사 대상 연령		13~34세	13~34세	19~29세	19~34세	13~18세	19~34세
추정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년	4.8%	11.4%	12.9%	-	6.2%	16.2%
	가족돌봄 청년	-	-	-	-	2.4%	10.8%
	주돌봄자 청년	1.4%	0.8%	-	0.6%	0.9%	4.3%
추정 한계	대표성	○	○	○	○	X	
	실제 제공 여부 파악	X	X	○	○	○	

구분	인구주택 총조사 ¹⁾	건강보험 빅데이터 ²⁾	전국 일-생활 균형실태조사 ³⁾	청년 삶 실태조사 ⁴⁾	2022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⁵⁾
가족의 범위	동거가족만 포함	2촌 이내 가족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 출처: 함선유(2023). 38쪽 [표 1]에서 재인용.

* 자료: 1)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2) 함선유(2022). 우리나라 가족돌봄청년 규모와 특성, 복지욕구.

3) 변수정 외(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454쪽 참조하여 계산.

4)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가족돌봄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김지선 외(2023)의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장애, 만성질환, 자살생각,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원, 산정특례, 장기요양 여부를 가족 돌봄위기 변수로 구성하여 가족돌봄위기 청소년(9~18세) 및 청년(19~39세)의 규모를 각각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돌봄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규모는 해당 연령 인구 대비 약 0.12%~3.71%로 추정되었다. 이를 2023년 9월 기준 우리나라 9~18세 인구에 대입하면 약 5,556명~171,787명이 가족돌봄위기 아동·청소년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장애나 질병처럼 명확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12.09%~13.23%로 도출되었고, 가사 참여 중 돌봄 수준이 높다는 응답 비율은 31.44%로 파악되었다(김지선 외, 2023).

표 II-5. 가족돌봄위기 아동·청소년(9~18세) 규모 추정

구분	한국의료패널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복지사각지대 발굴 데이터
장애	0.52%	1.26%	-	0.51%
만성질환	3.71%	-	-	-
자살생각	1.34%	-	-	-
돌봄서비스 필요	0.23%	-	-	-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음	-	12.09%	13.23%	-
가사 참여 중 돌봄 수준 높음	-	31.44%	-	-
산정특례	-	-	-	0.12%
장기요양	-	-	-	0.15%

* 출처: 김지선 외(2023). 155쪽, <표 6-1>.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가족돌봄위기 청년의 규모를 추정할 결과에서는 장애, 질병, 정신 건강 등의 문제를 가진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의 규모가 약 0.43%~4.75%로 추정되었다(김지선 외, 2023).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9~39세 인구(2023년 9월 기준)에 이를 적용해보면, 가족돌봄위기 상황에 있는 청년의 수가 약 57,265명~632,574명으로 예측된다고 보고하였다(김지선 외, 2023).

표 II-6. 가족돌봄위기 청년(19~39세) 규모 추정

구분	한국의료패널	청년 삶 실태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데이터
장애	0.76%	-	1.45%
만성질환	4.75%	-	-
자살생각	1.06%	-	-
돌봄서비스 필요	0.43%	0.6%	-
산정특례	-	-	0.37%
장기요양	-	-	0.43%

* 출처: 김지선 외(2023). 155쪽, <표 6-1>.

4.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국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은 2021년 발생한 대구 청년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만큼, 관련 연구도 이 시기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실시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⁵⁾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및 건강보험빅데이터 등 2차 자료를 활용해 제한적이거나 가족돌봄청(소)년 규모를 추정하고, 설문조사 적격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판별되고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응답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수록된 복지 프로그램의 수급현황을 파악하는 등 행정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돌봄청(소)년 총 8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돌봄실태를 파악하였다(함선유 외, 2022). 이 연구는 정부가 가족돌봄청

5) 함선유, 하은솔, 김문길, 안수란, 김성아, 신유미, 구민지(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인지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첫 조사연구이며, 가용 범위 내에서 비교적 다양한 2차 자료 및 행정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대상으로서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조사 대상이 13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12세 이하 저연령대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같은 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⁶⁾ 현안분석보고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에 관한 정보를 밀도 있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된 이후 비교적 초기에 발간된 자료로서,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자료를 중심으로 영 케어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영 케어러 지원에 관해 비교적 선제적으로 대응한 해외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자체 실태조사나 별도의 자료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4년 실시한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기초 연구」⁷⁾는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가족돌봄 청년에 관해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가족돌봄 청년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탐색적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신문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형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데이터, 패널데이터 등 2차 자료를 활용해 제한적이나마 규모 추정을 실시하였다(김지선 외, 2024). 이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행정데이터, 패널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연구방법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과제명에서 드러나듯, ‘청년’층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2차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자료에 제한이 있고, 가족돌봄 청(소)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되는 연구도

6) 허민숙(2022.02.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4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7) 김지선, 이우식, 주영선, 안선경(2024).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기초 연구. 서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점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청주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편성하는 등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에 비교적 선제적인 관심을 보인 지자체로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시 거주 14~3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응답참여자 중 가족돌봄청(소)년은 총 900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 밖 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일반 성인 616명이 포함되었다 (이수영 외, 2023).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⁹⁾는 2024년 2월~11월에 걸쳐, 경기도 내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약 5,68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 1,213명이 실제 주돌봄자 또는 부돌봄자로 판명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동의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실시되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¹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 중 가족돌봄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2023년 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외에 경북대학교병원, 관내 지자체 및 유관시설의 협조를 얻어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81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가족돌봄경험이 있는 응답자 154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돌봄의 형태와 방식, 돌봄 및 복지서비스 경험과 수요, 청년정책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청주시 가족돌봄 청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¹¹⁾가 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가 아닌, 개별심층면접(IDI)과 전문가 대상 집단심층면

8) 이수영, 민소영, 장연진, 양효안(2023).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9)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환(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수원: 경기복지재단.

10)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2023).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대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11) 강시은, 최은희, 김가현(2024). 청주시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북: 청주복지재단.

접(FGI)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주시에 거주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6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청년정책 및 가족돌봄청년 사업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강시은 외, 2024). 이 연구는 기초차치단체 차원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사대상이 19~39세로 구성되어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질적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대상이 6명에 그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질적 연구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의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한 연구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¹²⁾는 영 케어러에 대한 개념이나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가족돌봄 청년의 24시간 시간 사용을 통해 일상생활과 돌봄 경험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애로사항과 지원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선미정 외, 2022). 이를 위해 무보수로 가족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성인 또는 청년 5명을 대상으로 1차 심층면접 및 일주일 간의 24시간 시간사용 일지 작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선미정 외, 2022).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영 케어러가 된 상황을 비롯해, 돌봄 경험 및 시간 사용에 따른 일상 생활 양상 등을 비교적 심층적으로 검토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19세 이상 청년층에 한정되어 있고, 사례 수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¹³⁾ 연구도 설문조사가 아닌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영 케어러 문제를 천착한 연구 중 하나다. 이 연구는 가족돌봄 경험이 있는 청소년·청년 11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맥락-패턴 분석과 전체 사례의 경험을 통합한 범주화 분석 및 주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 케어러와 그 가족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과 행정, 실천 수준의 지침들을 제언하였다(좌현숙 외, 2023). 이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각 연구대상이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공통의 이슈와 범주를 도출해냄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12) 선미정, 장정은, 김진영(2022).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서울: 서울연구원.

13) 좌현숙, 권지성, 최서경(2023).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거시적 관점에서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보고서」¹⁴⁾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청년지원센터가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 케어러 케어링’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에 2021년 및 2022년에 참여한 총 95명의 영 케어러 중 22명(개별심층인터뷰 14명, FGI 8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임정현 외, 2022: 19). 분석 결과, ‘영 케어러 케어링’ 사업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영 케어러들로 하여금 삶을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공감과 위로의 기능이 있었다(임정현 외, 2022: 91).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돌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영 케어러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영 케어러를 사회적 존재로 인정 등의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도출되었다(임정현 외, 2022: 91).

5.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관련 기존 조사 검토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실태조사의 조사 개요와 주요 조사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1)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¹⁵⁾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14) 임정현, 김정현, 유아영, 윤연숙(2022).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15) 이 절의 내용은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링크 조사와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 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온라인 링크 조사는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조사 링크를 배포한 후, 가족돌봄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자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패널 조사는 조사업체가 구축·관리하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810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온라인 링크 조사에는 213명, 패널 조사에는 597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가구 일반사항, △일상생활, △돌봄을 하게 된 배경, △돌봄의 내용, △정책육구, △주변환경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조사 내용은 <표 II-7>과 같다.

표 II-7.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중 느끼는 신체적 피로 및 상태 • 우울, 외로움 등 정신적 상태 • 전반적인 학교(직장)생활 현황
돌봄을 하게 된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시작 배경 • 돌봄을 받는 가족의 상황
돌봄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돌봄자 여부 • 돌봄 서비스 여부 • 돌봄 활동 시간
정책육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관련 정책 정보 접근성 •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 세부 돌봄 서비스별 중요도
주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을 지원할 주변 사람이나 지원 기관 여부 • 가족돌봄에 대한 의견 등

* 출처: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설문지 내용을 재구성.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육구를 파악하고, 돌봄 형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적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려 한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낮아 해당 연령대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돌봄의 강도와 부담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업·정신건강·사회적 관계·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문항이 부족하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¹⁶⁾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돌봄청(소)년의 실태와 지원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 지원 체계를 제안하였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스크린 문항을 통해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을 900명으로 추정하였고, 이 중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밖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일반 성인 616명을 유효 응답자로 정의하고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돌봄관련 일반적 특성, △돌봄의 대상, △돌봄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의 필요성, △삶의 만족도 및 일상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소득수준, 혼인여부, 자녀여부 등
돌봄 관련	일반적 특성	• 전체 가족유형 • 돌봄대상가족 유무, 돌봄행위 여부, 생계책임 여부
	대상	• 돌봄대상가족의 유형, 돌봄대상가족과의 동거여부
	어려움 및 외부지원의 필요성	•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내용 • 그에 따른 외부지원 필요성 여부 • 외부지원 필요 유형, 외부지원경로 인식
삶의 만족도 및 일상생활		• 삶의 만족도 • 집안일 수행 정도, 집안일에 따른 부담정도 • 주관적 경제상태 등

* 출처: 이수영 외(2023).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27쪽 표 3-1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

16) 이 절의 내용은 “이수영, 민소영, 정연진, 양효안(2023).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적 지원 체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돌봄유형에 따른 돌봄 경험과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점은 성과로 파악된다. 다만, 본 연구는 돌봄청(소)년의 현재 돌봄 실태와 서비스 욕구 파악에 집중하고 있어, 이들의 개인 성장 및 발달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3)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¹⁷⁾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은 초록우산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등 전반적인 발달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본 설문조사에는 10세~24세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18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초록우산의 사례 발굴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이거나 초록우산 사례 관리자의 추천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II-9>과 같다.

표 II-9.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가족돌봄 현황 및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역할 수행 정도 • 가족관계의 질 • 보호자의 양육태도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로서의 자기인식 여부 등
일상 및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시간, 규칙적 식사, 여가 시간 등 • 학업성적 및 학습시간, 학교적응, 학업중단 의사 등의 학교 관련 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 • 스트레스 및 우울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 경험한 어려움, 도움을 요청한 대상 등의 사회적 지지 자원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한 어려움 • 어려움 경험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 및 잠재적 지원 요청 대상 •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

* 출처: 정소연 외(2024).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 69-73쪽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

17) 이 절의 내용은 “정소연, 서홍란, 김아래미, 전지승, 류나니, 김승환(2024).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 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등 전반적인 발달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돌봄 경험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려 한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사례수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대표하기 어려우며, 특정 지원을 받는 집단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돌봄 부담의 지속성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조사 문항이 부족하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¹⁸⁾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는 설문조사는 월드비전 돌봄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대상자 중 1,1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6세부터 35세까지 분포하였다. 본 연구는 돌봄 청소년·청년의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돌봄 및 지원 현황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돌봄 부담과 그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삶의 만족도와 발달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 △가족돌봄, △사회적 서비스 이용, △발달 과업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표 II-10>에 정리되어 있다.

18) 이 절의 내용은 “최영준 외 (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표 II-10.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등
가족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책임, 비중, 기간 • 가족돌봄 필요 이유 •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 사회적 지지체계 인지 여부 등 • 삶의 전반적 만족도
사회적 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여부 • 관련 서비스 검색 경로 및 신청 경험 • 외부 지원 및 복지서비스 필요 순위
발달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 건강 • 진로 및 미래 계획 • 건강 및 신체 관리 • 연애나 결혼 • 경제 활동 등

* 출처: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311-318쪽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는 월드비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돌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설문조사는 월드비전 돌봄 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응답자의 특성이 전체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실태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돌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은 파악하였으나, 정책적 욕구를 반영한 문항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5)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¹⁹⁾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는 경기도 내 가족돌봄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사업 개발을

19) 이 절의 내용은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한 (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경기도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발굴하였으며, 일부 대상자는 조사회사의 패널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3세부터 34세까지의 가족돌봄청(소)년 1,213명의 응답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표 II-11>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11.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돌봄자와 돌봄대상자 기초영역	인구사회학적 요인	• 나이, 성별, 학력,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돌봄 역할	• 주 돌봄, 보조 돌봄
	돌봄대상자 건강상태	•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장애, 병명 등
	가족구성원	• 동거 및 비동거 가족구성원
생활시간 및 내용		• 돌봄 시간, 돌봄 내용 및 돌봄 역할 • 개인 시간, 내용(학습 시간, 여가 문화 시간, 기타 시간 등)
돌봄 어려움		• 전반적인 돌봄 어려움의 정도, 안전 관계 학교생활 또는 직장생활 • 경제, 개인 시간(문화나 여가), 생활환경 등의 어려움
서비스 영역	공적 서비스	• 공적 서비스 출처, 공적 종류와 수준(횟수) • 제도 및 서비스 정보 획득 방법, 경로
	사적 서비스	• 사적 서비스 출처, 사적 종류와 수준(횟수)
심리·정서 상태와 수준		• 삶의 질, 스트레스, 우울, 번아웃, 자살 사고 등
경제 영역		• 가정 경제 수준, 개인 경제 활동 여부
생애 준비도		• 취업(진로) 및 자립 준비도 • 결혼 준비도

* 출처: 유정원 외(2024).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 69-73쪽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는 경기도 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발굴과 실태를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사업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조사 진행을 위한 홍보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과정은 성과이다. 다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최근 현황과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지속적인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6. 소결 및 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논의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개념 정의와 용어 사용에 있어 국내·외 논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영 케어리(young carer)’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연령, 돌봄 대상, 돌봄 형태 등을 폭넓게 설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 중심의 정책 틀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족돌봄’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돌봄의 의무와 책임 의식은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소연 외(2024) 연구에서도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 중 43.5%만이 스스로를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등 가족돌봄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지 않다.

둘째,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태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이들의 문제는 개인(미시체계), 가족과 학교(중간체계), 지역사회 서비스와 정책(외부체계), 사회 문화와 제도(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의 흐름(시간체계)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특히 아동 권리 기반 접근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들의 상황은 단순한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침해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한 권리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정책대상자 규모 파악과 관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해 그간 시도된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분석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 구간, 돌봄의 정의와 측정 기준이 상이하여 추정치 간 편차가 크고(0.6~8%), 이는 정책 설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저연령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제한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 조사가 주를 이루어 돌봄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데, 함선유 외(2022) 연구에 따르면 우울 상태로 분류된 비율이 비교집단에 비해 가족돌봄 청소년이 6.4~7.5배 높았고, 13~18세 가족돌봄 청소년의 54.8%가 학업·진로·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하였다.

2) 향후 연구 및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복합적 과제로 판단된다. 국내 정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비교적 오랜 경험을 가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생태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정책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 체계들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므로, 각 체계 수준에서의 개입과 체계 간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시혜적 복지가 아닌 권리 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세부 이론을 활용한 맞춤형 개입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역할 긴장 이론에 기반한 역할 갈등 완화 방안, 회복탄력성 이론에 기반한 강점 중심 지원, 생애 주기 관점을 고려한 장기적 지원 계획, 사회적 지지 이론을 적용한 지지체계 구축 등 이론적 기반을 갖춘 다양한 개입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연령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국제적 연구 및 논의에서 영 케어러의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18세 이하' 또는 '25세 이하' 등으로 하한을 열어두어 어린 연령대의 아동·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도 연령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학교를 통한 발굴과 지원이 가능하므로, 교육부와 복지부 간 협업을 통한 학교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념과 용어의 정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돌봄 의무를 전제하는 도덕적 부담과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대다수 청소년이 자신의 돌봄 역할을 '생활'로 인식하고 돌봄자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더 포용적인 용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대상자인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해, 체계적인 자료 수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실태조사는 제한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발성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 향후에는 저연령의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 표본설계와 돌봄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설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 강도, 대상 유형, 지속기간 등에 따른 다층적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령 범위 표준화, 돌봄 강도 측정, 대상 유형 분류, 영향 평가 등을 포함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및 진로 지원 강화를 통한 장기적 발달 보장이 중요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업과 진로 발달의 제약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업 및 진로 탐색,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및 진로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 경험으로 인해 발달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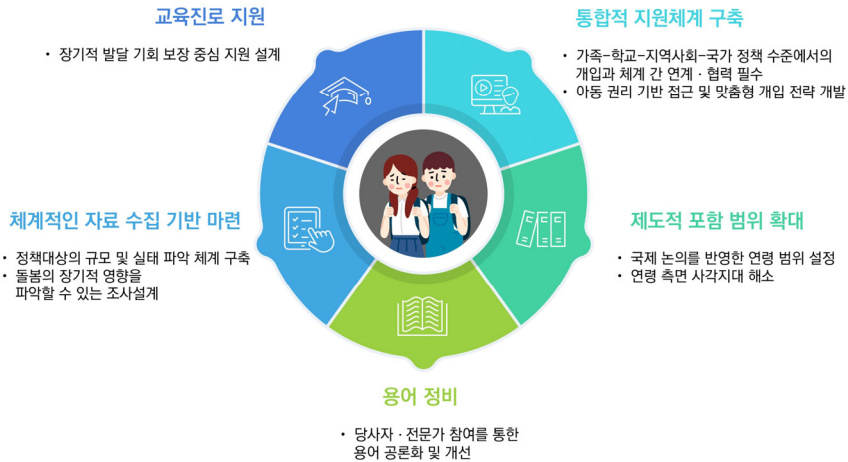


그림 11-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사점

○ — 제3장 가족돌봄 청소년 2차 자료 분석

- 1. 2차 자료 분석 개요
- 2. 「인구총조사」 표본자료 분석
- 3.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 분석
- 4. 소결 및 시사점

1. 2차 자료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및 대규모 조사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대규모 실태조사 데이터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을 지닌 다양한 자료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 개별 자료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면서도, 가용 범위에서 돌봄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기초자료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두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구조, 경제활동, 사회활동, 돌봄 상황 등 거시적 차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가족돌봄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청년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개괄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데이터 중 가족돌봄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집단 중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삶의 만족도, 건강 인식, 정신건강 위험요인,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 등 미시적 차원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 자료는 모집단이 위기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청소년 일반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분야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가족돌봄 관련 변수를 포함하는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나마 가족돌봄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여타 국가승인통계와 비교·대조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 3장의 1절, 3절, 4절은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2절은 김주현 교수(충남대학교 사회학과)가 집필하였음.

〈표 III-1〉에는 이상과 같은 2차 자료 분석의 구성과 주요 검토 항목이 요약되어 있다.

표 III-1. 2차 자료 분석의 구성 및 주요 검토 문항

분석자료명	자료 개요	주요 내용 및 검토 항목	비고
「2020년 인구 총조사」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통계 제101001호 조사주기: 5년 2% 표본자료 활용 (인구사항, 가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추정: 조작적 정의를 통한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추정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 상황 및 경제활동 사회활동 돌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돌봄자 중심의 보수적 추정으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 존재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 조사」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승인통계 제154022호 조사주기: 3년 표본크기: 4,500명 분석변수: 가족 중 돌봄 필요 대상자 유무 및 실제 돌봄 수행 여부 - 돌봄대상자 있음: 420명 - 실제 돌봄 수행: 14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인식 및 심리적 적응 삶의 질 및 건강인식 정신건강 위험요인 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 ※ 돌봄 수행 여부별 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청소년과 비교 분석 - 「2023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등 위기청소년 한정으로 일반화에 제약

* 출처: 1) 자료 개요, 주요 내용 및 검토 항목은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설명을 참조하였으며, 비교란은 연구진 작성.
2) 자료 개요, 주요 내용 및 검토 항목은 황어정 외(2024)를 참조하였으며, 비교란은 연구진 작성.

2. 「인구총조사」 표본자료 분석²¹⁾

1) 분석자료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의 전체적인 규모와 기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표성을 갖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용 범위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상황 및 경제활동, 사회활동 현황, 돌봄 상황 등을 개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인구사항, 가구사항)

21) 「인구총조사」 표본자료 분석은 김주현 교수(충남대학교 사회학과)가 집필하였음.

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이다(202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2025.9.3.인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표본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2% 표본자료가 마이크로데이터로 제공되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을 준용하여 9세~24세로 설정하였으며, 돌봄 관계는 가족원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가족과 비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비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비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돌봄 필요’의 정의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활동 제약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돌봄 대상자의 범주 구분 뿐 아니라, 중장년층(25~64세), 청소년층(9~24세) 등 영케어러 추정에 필요한 변수 일체에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설정한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중장년 가족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구 내 9~24세로 돌봄 필요가 없는 가족원”은 주요 돌봄 책임을 맡고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자료의 9~24세 청소년 중 0.9%인 68,650명을 가족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으로 추정하고 분석을 수행했다.

이러한 추정 방식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수행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해 적용한 방법 중 ‘주돌봄 청년 추정치①’(함선유 외, 2022: 32)과 그 구성을 참고하였으며, 돌봄 필요 여부의 판정 기준과 대상자의 범위 또한 해당 연구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주돌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 청소년 여부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명시적 문항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여러 정황 변수들을 교차 검토하여 명확히 가족돌봄 상황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만을 추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론적 선택이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가족돌봄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최소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부분적 돌봄이나 보조적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연령, 성, 교육수준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 교육 수준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이 13.7%이고, 13~18세 청소년은 33.4%, 19~24세 청년이 절반 이상인 52.9%에 이른다. 성별의 경우, 기존에 수행된 가족돌봄 청년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의 성별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년층 중에서 가족돌봄 청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4.1%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함선유, 2023), 서울시에 거주하는 14~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가족돌봄자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돌봄청년의 비중(66.4%)이 남성(33.6%)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별 격차가 명확히 드러났다(서울시복지재단, 2023). 본 분석에서 추정된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은 남성 비율이 47.7%, 여성 비율이 52.3%로 여성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표 III-2.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구분		남		여	
		명	%	명	%
연령	13세 미만	4,834	14.8%	4,594	12.8%
	13-18세	11,931	36.4%	11,001	30.7%
	19-24세	16,006	48.8%	20,284	56.5%
교육 정도	초등학교	4,681	14.3%	4,532	12.6%
	중학교	4,961	15.1%	4,715	13.1%
	고등학교	14,222	43.4%	11,570	32.2%
	대학교(2, 3년제)	3,759	11.5%	5,486	15.3%
	대학교(4년제 이상)	5,148	15.7%	9,576	26.7%

* 주: 교육정도는 졸업인구 기준이며, 대학교(4년제 이상)에는 대학원 졸업을 포함함.

* 자료: 국가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연령대별로 세분하면, 성별 간 차이가 조금 더 확인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지만, 19세 이상 청년집단의 경우에는 돌봄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교육 수준을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가장 많고, 여성의 교육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② 가족구조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추정된 집단의 가족 상황을 가구주와의 관계와 세대유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가 7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구주의 손주(또는 손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다(〈표 III-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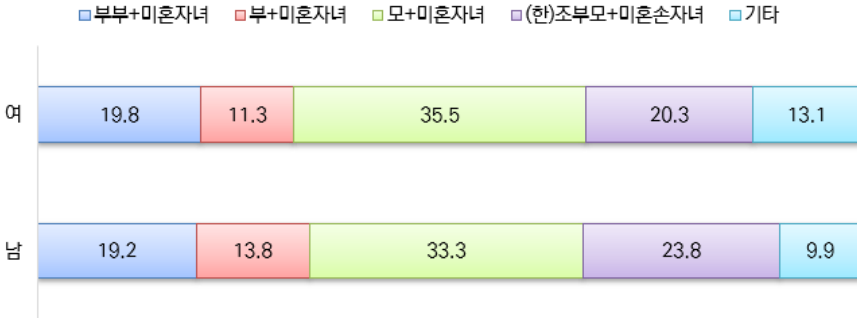
표 III-3.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가구주와의 관계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구분	명	비율(%)
가구주(본인)	2,337	3.4
배우자	269	0.4
자녀	48,226	70.2
자녀의 배우자	41	0.1
손주, 손주의 배우자(외손주 포함)	15,579	22.7
증손주, 증손주의 배우자	281	0.4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1,323	1.9
형제자매의 자녀,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215	0.3
기타 친인척	379	0.6
총계	68,650	100.0

*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가구의 세대 구성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III-1]과 같이 다양한 세대 구성 중에서 주요 유형만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어머니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구성이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아버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10%를 약간 초과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주로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구성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로 20%가 넘게 나타났다. ‘부부와 미혼자녀’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네 번째로서 20%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주: 기타는 7% 미만의 세대 구성을 합산한 비율임.

* 자료: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그림 III-1.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성 및 세대 구성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2) 경제 상황 및 경제활동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제 상황을 주택 점유 형태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체의 40% 정도는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고, 36.7%는 월세, 그리고 전세가 16.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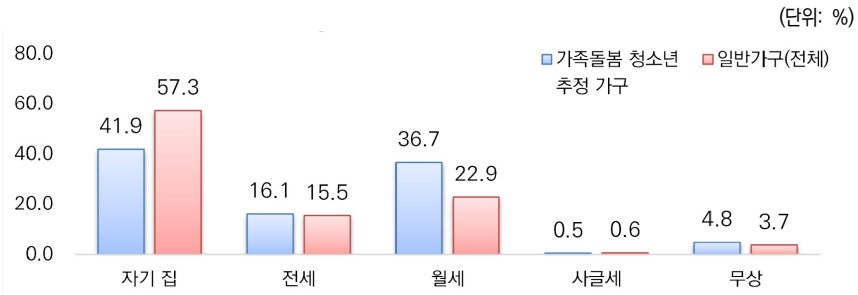
표 III-4.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주택 점유 형태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구분	명	비율(%)
자기 집	22,067	41.9%
전세(월세 없음)	8,489	16.1%
보증금 있는 월세	18,220	34.6%
보증금 없는 월세	1,092	2.1%
사글세	239	0.5%
무상(관사, 사택 등)	2,505	4.8%
총계	52,612	100.0%

* 자료: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이를 일반가구와 비교하기 위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일반가구는 자기 집(57.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서 월세(22.9%), 전세(15.5%), 무상(3.7%), 사글세(0.6%)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12.24.). 가족돌

봄 청소년 추정 가구의 경우, 자기 집 거주 비율이 41.9%로 일반가구(57.3%)보다 15.4%p 낮고, 월세 거주 비율은 36.7%로 일반가구(22.9%)보다 13.8%p 높게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할 가능성이 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가 일반가구 대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시적 거주 형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출처: 1) 가족돌봄 청소년 추정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는 자료: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2) 일반가구(전체)의 주택점유 형태는 통계청 보도자료(2021.12.24.).

그림 III-2.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가족돌봄 청소년 추정 가구 및 일반가구의 주택점유 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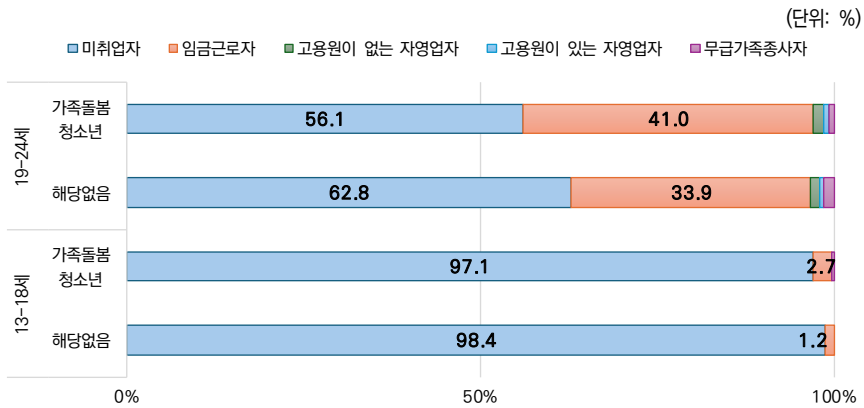
〈표 III-5〉에는 경제활동 참여 및 종사상 지위에 대한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미성년을 포함하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의 과반이 넘는 68.7%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주로 일하거나 틈틈이 일한 것으로 나타난 29.9%의 경우는 대부분 19~24세의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22.6%는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5.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경제활동 참여 및 종사상 지위별 가족돌봄 청소년 분포

경제활동 참여	명	비율(%)	종사상 지위	명	비율(%)
주로 일하였음	9,372	17.7	미취업자	52,056	75.8
틈틈이 일하였음	6,455	12.2	임금근로자	15,499	22.6
일시휴직	767	1.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01	0.7
일하지 않았음	36,360	68.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75	0.4
총계	52,954	100.0	무급가족종사자	319	0.5
			총계	68,650	100.0

* 주: 미취업자는 조사대상 일주일(2020.10.25.~10.31.)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은 수취임.
* 자료: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집단 이외에 동일 연령대 청소년들과 종사상 지위를 통한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림 III-3]와 같다. 13~18세 이하 미성년자와 24세까지의 초기 청년기까지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족돌봄 청소년이 아닌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가족돌봄과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취업한 초기 청소년기의 임금근로자로서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가족돌봄 청소년의 임금근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들이 청년기에 본격적인 직업 활동의 안정기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자료: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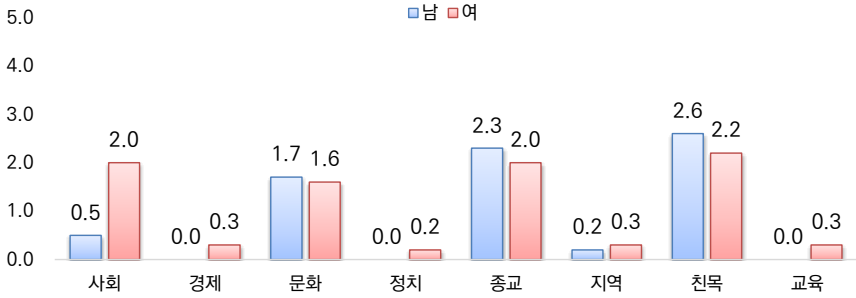
그림 III-3.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연령 및 가족돌봄 청소년 여부별 종사상 지위 분포

(3) 사회활동

가족돌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 III-4]에서 다양한 단체활동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1년간 8가지 단체 및 동호회 중 하나라도 참여했다고 응답한 가족돌봄 청소년은 남성이 6.5%, 여성이 7.7%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집단 이외 동일 연령대 청년들의 참여율이 25.1%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단체활동 참여율은 8% 미만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활동 참여율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참여단체별 비율을 남녀 비교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다양한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문화, 종교, 친목 단체 참여율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사회단체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단위: %)



* 자료: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그림 Ⅲ-4.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단체활동 참여율별 가족돌봄 청소년 분포

(4) 돌봄 상황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의 활동제약 상태를 살펴보았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의 ‘현재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육체적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가족원이 있는 경우가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시각 장애가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가 25.5%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도 19.1%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주로 신체적 기능 제한이나 감각 장애를 가진 가족원을 돌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육체적 제약과 시각 장애를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59.3%)을 차지하여, 이들 청소년이 상당한 신체적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인구총조사 표본자료(2020): 돌봄필요가족원의 활동제한 유형별 가족돌봄청소년 분포

구분	명	비율(%)
시각 장애	29,854	25.5
청각 장애	8,019	6.9
육체적 제약	39,554	33.8
정신적 제약	22,324	19.1
지적 자폐성 장애	8,158	7.0
언어장애	9,130	7.8
총계	117,039	100

* 자료: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

3.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 분석

1) 분석 자료

앞 절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적응이나 사회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족 내 돌봄대상자 존재 여부와 실제 돌봄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가족돌봄 상황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삶의 만족도, 건강 인식, 사회적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성평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의 2024년 자료이다. 이 조사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154022호)로, 전국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황여정 외, 2024).

조사 내용은 크게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인터넷 이용 경험(온라인 인권 침해 등), △일상생활 경험(아르바이트, 유해 약물 이용, 도박 경험 등), △생활 안전 및 범죄 피해 경험(폭력 피해 등),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정책적 수요, △일반적 특성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황여정 외, 2024).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족돌봄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앞서 설정한 분석틀에 따라 ①자기 인식 및 심리적 적응(자기만족도, 자존감, 회복탄력성), ②삶의 질 및 주관적 건강인식(삶의만족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식), ③정신건강 위험요인(우울, 은둔 경험), ④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고립감, 사회적 지지망) 등 4개 주제의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내 돌봄 필요 대상자가 있다고 응답한 420명과 실제로 가족돌봄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14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및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 문항에 대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와의 비교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비록 이 자료는 위기청소년으로 모집단이 한정되어 일반 청소년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가족돌봄 관련 변수를 포함하는 대규모 청소년 조사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분석 결과

(1) 자기 인식 및 심리적 적응

① 자기만족도 및 자존감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돌봄 역할이 청소년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자존감과 회복탄력성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위기청소년의 자기만족도를 돌봄 상황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률이 위기청소년 중에서 돌봄대상자가 없다고 답한 집단에서는 65.1%(매우 그렇다 22.3%+그렇다 42.8%)로 나타난 반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57.6%(매우 그렇다 23.3% + 그렇다 34.3%)로, 7.5%p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가정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집단 중에서도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률이 67.1%(매우 그렇다

32.2% + 그렇다 34.9%)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52.5%(매우 그렇다 18.6% + 그렇다 33.9%)보다 14.6%p 높게 파악되었다. 특히 “매우 그렇다”의 강한 긍정 응답에서는 실제 돌봄수행자가 32.2%로 돌봄 비수행자의 18.6%보다 13.6%p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비돌봄자보다는 실제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감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대상자의 존재와 위기청소년의 자기 만족도 간에 복합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자기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 만족도를 나타내는 이중적 양상이 관찰된다. 이는 돌봄 역할이 위기청소년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나 존재 의미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자기만족도

(단위: %)

구분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χ^2 (d.f.)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296	8.1	27.5	41.9	22.4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20	10.2	32.1	34.3	23.3	12.898** (3)
	돌봄대상자 없음	3,876	7.9	27.0	42.8	22.3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6	7.5	25.3	34.9	32.2	12.372** (3)
	돌보지 않음	274	11.7	35.8	33.9	18.6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기만족도에 이어 자존감 차원에서 돌봄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자존감은 돌봄 부담이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분석 결과, 가정 내 돌봄대상자 존재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집단의 긍정 응답률은 57.4%(매우 그렇다 22.5%+그렇다 34.9%)로, 돌봄대상자가 없다고 답한 집단의 긍정 응답률 62.9%(매우 그렇다 21.4%+그렇다 41.5%)에 비해 5.5%p 낮게 파악되었다. 반면, 돌봄 수행 여부의 경우,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집단의 긍정 응답률(62.7%)이, 돌봄 비수행 집단의 긍정 응답률(54.5%)보다 높았지

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통계적 유의성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돌봄대상자 존재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며, 다만 돌봄대상자가 있더라도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갖는 비율이 비돌봄 집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자존감

(단위: %)

구분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χ^2 (d.f.)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281	7.0	30.6	40.9	21.5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8	10.5	32.1	34.9	22.5	12.597**
	돌봄대상자 없음	3,863	6.7	30.4	41.5	21.4	(3)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5	6.9	30.3	37.2	25.5	4.299
	돌보지 않음	272	12.5	33.1	33.5	21.0	(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회복탄력성

가족돌봄 상황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반영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도 검토해 보았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낮아진 적응 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장휘숙, 2001; 이신숙, 2013에서 재인용). 돌봄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적응 역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돌봄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전체 위기청소년 47.4%에 비해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56.0%로 8.6%p 높게 나타났다. 즉,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52.0%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자기만족도와 자존감에서 나타난 패턴과 일관된다. 돌봄대

상자의 존재 자체는 위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돌봄대상자에 대해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돌봄 비수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심리적 적응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회복탄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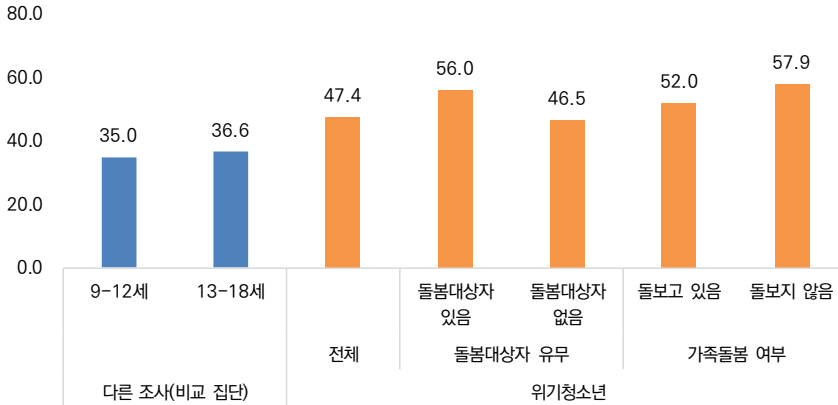
구분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χ^2 (d.f.)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298	14.0	38.6	33.9	13.5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8	9.3	34.7	36.1	19.9	23.552*** (3)
	돌봄대상자 없음	3,880	14.5	39.0	33.7	12.8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6	15.8	32.2	31.5	20.5	11.734** (3)
	돌보지 않음	271	5.9	36.2	38.7	19.2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분석 결과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기청소년이 아닌 여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그림 III-5]에는 동일 문항에 대해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 제시된 수치는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을 의미한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청소년은 56.0%, 실제로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52.0%가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보인 반면, 비교집단(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5~37% 수준에 머물렀다.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격차는 17~21%p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돌봄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위: %)



주: 1) 이 문항의 비교 집단인 '다른 조사'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3_24BB001001&conn_path=12에서 2025. 9.1. 인출.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5. 다른 조사와의 비교: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삶의 질 및 주관적 건강인식

① 삶의 만족도

〈표 III-10〉에는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률은 전체 위기청소년 66.6%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55.9%로 10.7%p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다.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긍정 응답률은 65.5%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50.6%보다 14.9%p 높게 나타났다.

상술한 결과는 돌봄대상자의 존재 자체는 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복합적 양상을 나타낸다. 실제 돌봄 수행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기제를 보다 면밀히 탐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돌봄 수행자의 표본 크기(145명)가 상대적으로 작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더 큰 규모의 표본을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표 III-10.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내 삶에 만족한다					χ^2 (d.f.)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295	8.6	24.9	44.1	22.5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8	15.3	28.7	34.4	21.5	37.166*** (3)
	돌봄대상자 없음	3,877	7.8	24.5	45.1	22.6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5	13.1	21.4	37.9	27.6	9.863* (3)
	돌보지 않음	271	16.6	32.8	32.5	18.1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가족돌봄 상황과 돌봄 책임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감지되지 않은 반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실제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긍정 응답률은 전체 위기청소년(75.6%)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71.2%로 4.4%p 낮게 나타났다. 건강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률은 전체 24.5%에서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28.7%로 4.2%p 높았다. 주목할 점은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 이전 문항들과 다른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건강 인식 긍정 응답률은 67.6%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72.8%보다 5.2%p 낮게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에서도 실제 돌봄 수행자는 32.5%로 돌봄 비수행자의 27.1%보다 5.4%p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심리적 지표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위기청소년 중에서도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신체적 건강 인식에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수행이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긍정적 요소를 갖는 반면, 물리적 차원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

구분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은 좋은 편이다					χ^2 (d.f.)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278	4.7	19.8	48.6	27.0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7	5.0	23.7	45.8	25.4	4.977 (3)
	돌봄대상자 없음	3,861	4.6	19.3	48.9	27.2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5	2.8	29.7	36.6	31.0	12.2869** (3)
	돌보지 않음	273	6.6	20.5	50.5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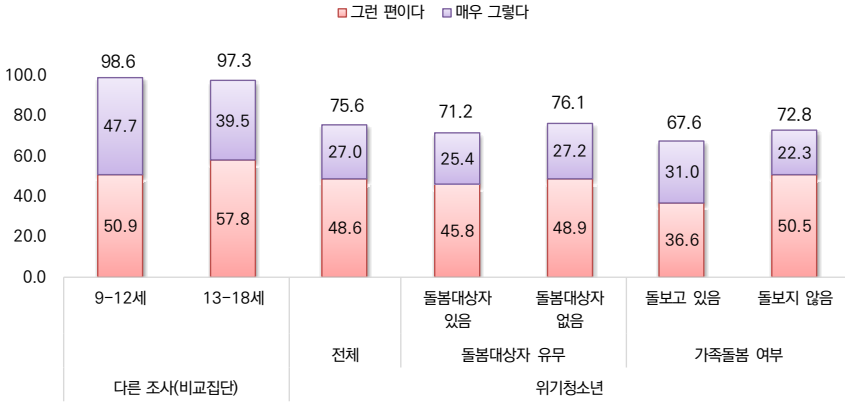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위기청소년 내에서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건강 인식 차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일반청소년 조사 결과를 참조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림 III-6>에는 동일 문항에 대해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제시된 수치는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을 의미한다.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문항에 대해, 일반청소년(13~18세)의 97.3%가 긍정 응답을 한 반면, 위기청소년 전체는 75.6%로 21.7%p의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다. 위기청소년 중에서도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긍정 응답률은 71.2%로 돌봄대상자가 없는 경우(76.1%)보다 4.9%p 낮게 나타났다.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인식이 67.6%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 결과, 일반청소년과 가족을 돌보는 위기청소년 간의 격차는 29.7%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은 물론 여타 비돌봄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보다도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정황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상당히 낮아, 이들을 위한 건강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



- 주: 1) 이 문항의 비교집단인 '다른 조사'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3_24BB001201&conn_path=I2에서 2025. 9.1. 인출.
-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 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은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이며,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의 문항은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임.

그림 III-6. 다른 조사와의 비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III-12〉에는 신체적 건강에 이어 정서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가족 내 돌봄대상자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2.125$, $p<0.001$).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전체 위기청소년 68.4%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58.2%로 10.2%p 낮게 나타났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률은 전체 31.6%에서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41.9%로 10.3%p 높았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다른 패턴이 발견되었다.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정신적 건강 긍정 응답률은 62.4%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55.8%보다 6.6%p 높게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에서도 실제 돌봄 수행자는 37.7%로 돌봄 비수행자의 44.3%보다 6.6%p 낮았다.

흥미롭게도, 정신적 건강 인식에서는 신체적 건강 인식과 달리 실제 돌봄 수행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돌봄 행위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역할 수행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제공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패턴의 원인과 기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I-1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정서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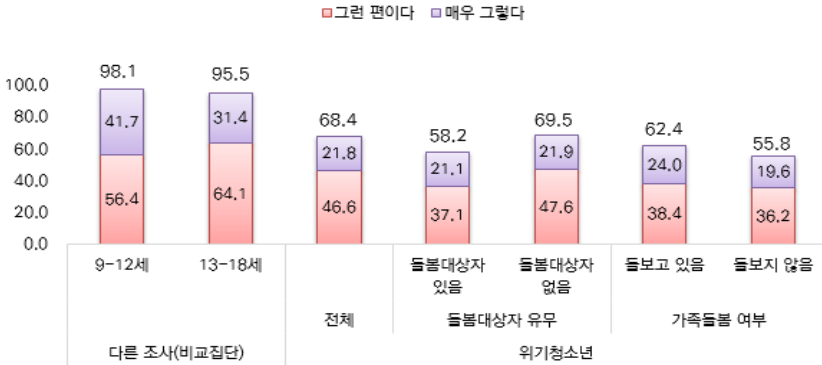
구분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χ^2 (d.f.)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295	7.8	23.8	46.6	21.8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8	13.4	28.5	37.1	21.1	32.125*** (3)
	돌봄대상자 없음	3,877	7.2	23.3	47.6	21.9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6	11.0	26.7	38.4	24.0	2.283 (3)
	돌보지 않음	271	14.8	29.5	36.2	19.6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정서적 건강 격차를 일반청소년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림 III-7>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을 의미한다. ‘나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문항에 대해 일반청소년(13~18세) 95.5%가 긍정 응답을 나타낸 반면, 위기청소년 전체는 68.4%로 27.1%p 차이를 보였고, 위기청소년 중에서도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58.2%로 없는 경우(69.5%)보다 11.3%p 낮았다. 또한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은 62.4%로 돌봄 비수행자(55.8%)보다 6.6%p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청소년과의 격차는 여전히 33.1%p에 달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 취약성과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단위: %)



- 주: 1) 이 문항의 비교집단인 '다른 조사'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3_24BB001201&conn_path=I2에서 2025. 9.1. 인출.
-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 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은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이며,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의 문항은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임.

그림 III-7. 다른 조사와의 비교: 정서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3) 정신건강 위험요인

① 우울

가족돌봄 상황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 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로 측정된 우울감 경험에 대해,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험률은 32.5%로 전체 응답자의 우울감 경험률(33.5%)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우울감 유경험률은 43.6%로, 돌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11.1%p 높게 파악되었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우울 경험률이 41.5%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44.5%보다 3.0%p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의 존재와 위기청소년의 우울 위험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돌봄 상황과 우울감 간의 구체적인 인과 메커니즘이나 매개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표 III-1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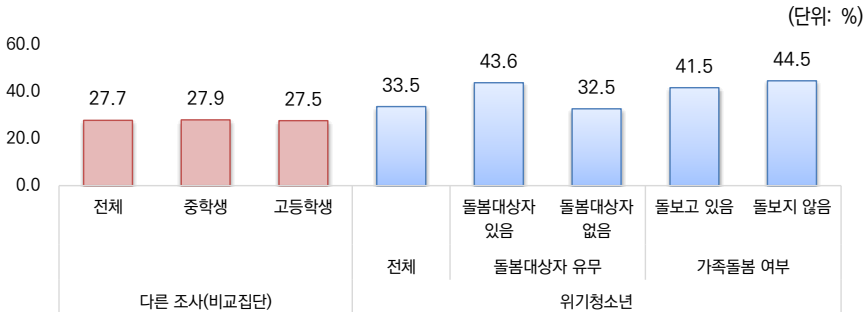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응답자수 (명)	있다	없다	χ^2 (d.f.)
전체		4,006	33.5	66.5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385	43.6	56.4	19.438*** (1)
	돌봄대상자 없음	3,621	32.5	67.5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30	41.5	58.5	0.304 (1)
	돌보지 않음	254	44.5	55.5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8]에는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일반청소년 27.7%에 비해 위기청소년이 33.5%로 5.8%p 높인데, 특히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격차는 15.9%p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우울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 1) 이 문항의 비교집단인 '다른 조사'는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68&conn_path=12에서 2025.9.1. 인출.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8. 다른 조사와의 비교: 우울감 경험률

② 은둔

우울에 이어 은둔 경험을 분석한 결과, 가족 내 돌봄대상자 존재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57.706, p<.001$). 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돌봄대상자가 없는 경우(23.3%)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42.5%로 19.2%p 높게 나타났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은둔 경험률이 46.7%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40.5%보다 6.2%p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청소년의 은둔 경험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은둔 경험률이 더욱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돌봄 상황과 부담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표 III-14.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은둔 경험률

(단위: %)

구분		응답자수 (명)	있다	없다	χ^2 (d.f.)
전체		3,837	24.9	75.1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320	42.5	57.5	57.706*** (1)
	돌봄대상자 없음	3,517	23.3	76.7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05	46.7	53.3	1.110 (1)
	돌보지 않음	215	40.5	59.5	

주: 1) * $p<.05$, ** $p<.01$, *** $p<.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4) 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

① 고립감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고립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분석하였다. 고립감은 돌봄 상황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가족 내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및 가족돌봄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드물게 그렇다+가끔 그렇다+항상 그렇다)은 전체 위기청소년 59.4%에 비해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65.1%로

5.7%p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 서는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61.5%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67.3%보다 5.8%p 낮게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고립감_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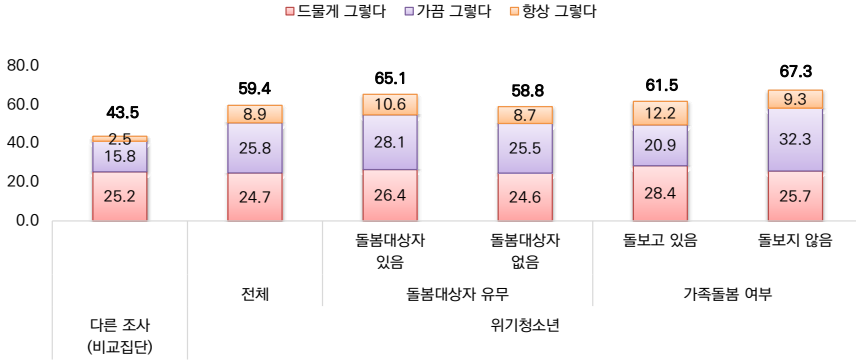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χ^2 (d.f.)
전체		4,269	40.6	24.7	25.8	8.9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7	35.0	26.4	28.1	10.6	6.336 (3)
	돌봄대상자 없음	3,852	41.2	24.6	25.5	8.7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8	38.5	28.4	20.9	12.2	6.334 (3)
	돌보지 않음	269	32.7	25.7	32.3	9.3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9>에는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고립감(‘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일반청소년 43.5%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 청소년이 65.1%로 21.6%p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 가운데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라서는 돌봄 비수행자(67.3%)가 돌봄 수행자(61.5%)보다 5.8%p 높았다. 실제 돌봄 수행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립감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돌봄 수행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나 지원기관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게 된 효과, 둘째, 돌봄 수행을 통한 자기효능감이나 존재 의미감의 향상 효과, 셋째, 돌봄 역할에 적응하면서 발전시킨 대처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단위: %)



주: 1) 이 문항의 비교집단인 '다른 조사'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64&conn_path=12에서 2025.9.1. 인출.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Ⅲ-9. 다른 조사와의 비교: 고립감_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다음으로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동의 비율은 전체 위기청소년 52.1%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62.3%로 10.2%p 높게 나타났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이 55.8%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65.9%보다 10.1%p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의 존재가 위기청소년의 주관적 고립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봄 수행 능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나은 외부 자원이나 지지체계 접근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1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고립감_혼자라고 느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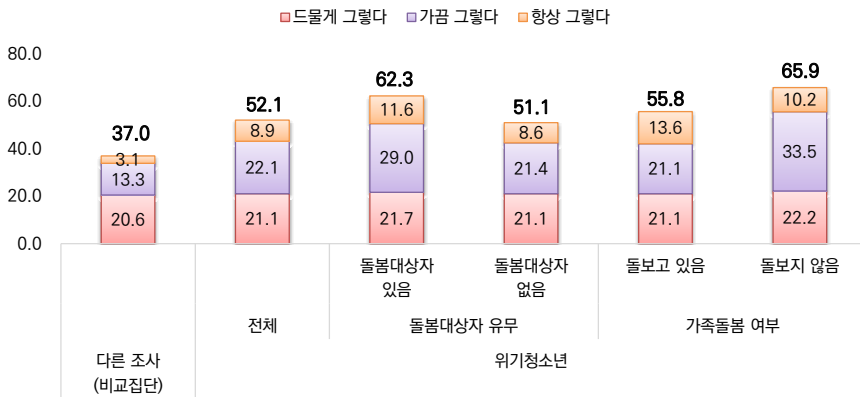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χ^2 (d.f.)
전체	4,264	47.8	21.1	22.1	8.9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4	37.7	21.7	29.0	11.6	23.346***
돌봄대상자 없음	3,850	48.9	21.1	21.4	8.6	(3)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7	44.2	21.1	21.1	13.6	8.541*
돌보지 않음	266	34.2	22.2	33.5	10.2	(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10〉에는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고립감(‘나는 혼자라고 느낀다’)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래프 상단의 수치는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드물게+가끔+항상 그렇다)을 의미한다. 동의 비율은 일반청소년 37.0%에 비해,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62.3%로 일반청소년 대비 25.3%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라서는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65.9%)가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55.8%)보다 10.1%p 높았으나, 두 집단 모두 일반청소년보다 상당히 높은 고립감을 보인 점은 유사하다.

(단위: %)



주: 1) 이 문항의 비교집단인 ‘다른 조사’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64&conn_path=I20에서 2025.9.1. 인출.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10. 다른 조사와의 비교: 고립감_혼자라고 느낀다

다음으로, 고립감 측정 문항 중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문항의 경우,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및 가족돌봄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응답률은 전체 위기청소년 60.9%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69.6%로 8.7%p 높게 나타났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이 62.8%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73.3%보다 10.5%p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고립감 관련 문항들과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 가족 내 돌봄대상자의 존재가 위기청소년의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지만,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돌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나 개인적 역량과 관련된 복합적 요인들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III-1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고립감_외로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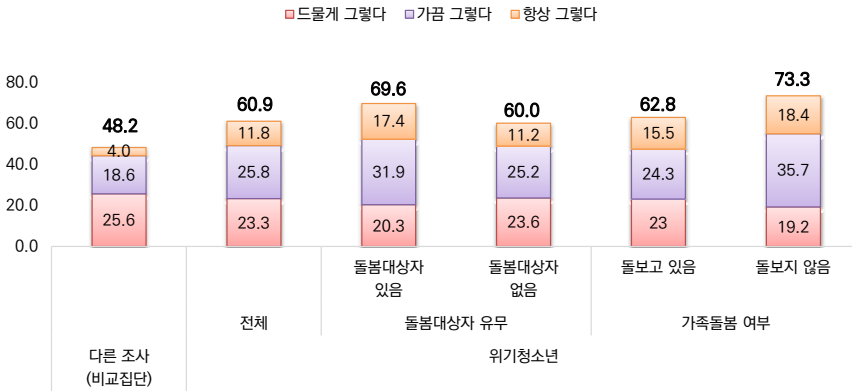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χ^2 (d.f.)
전체		4,252	39.0	23.3	25.8	11.8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4	30.4	20.3	31.9	17.4	28.926*** (3)
	돌봄대상자 없음	3,838	40.0	23.6	25.2	11.2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8	37.2	23.0	24.3	15.5	8.446*
	돌보지 않음	266	26.7	19.2	35.7	18.4	(3)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외로움 경험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한 결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일반청소년 48.2%에 비해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69.6%로 일반청소년 대비 21.4%p 더 높게 파악되었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라서는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73.3%)가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62.8%)보다 10.5%p 높게 파악되었다.

(단위: %)



주: 1) 이 문항의 비교집단인 '다른 조사'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64&conn_path=I20에서 2025.9.1. 인출.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11. 다른 조사와의 비교: 고립감_외로움을 느낀다

이어서, 고립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드물게+가끔+항상 그렇다) 비율은 전체 위기청소년 44.0%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53.6%로 9.6%p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이 49.0%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55.7%보다 6.7%p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18.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고립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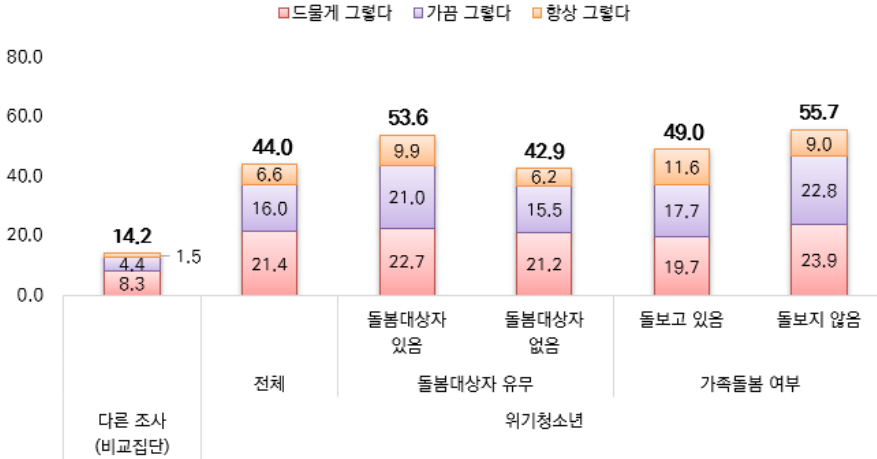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χ^2 (d.f.)	
전체	4,261	56.0	21.4	16.0	6.6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415	46.5	22.7	21.0	9.9	22.408*** (3)
	돌봄대상자 없음	3,846	57.1	21.2	15.5	6.2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47	51.0	19.7	17.7	11.6	3.440 (3)
	돌보지 않음	268	44.4	23.9	22.8	9.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12]에는 이를 일반청소년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일반청소년 14.2%에 비해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청소년은 53.6%로 일반청소년 대비 약 3.8배 높게 파악되었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라서는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55.7%)가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49.0%)보다 높았으나, 두 집단 모두 일반청소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립감 경험률을 나타냈다.

(단위: %)



주: 1) 이 문항의 비교집단인 '다른 조사'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64&conn_path=12에서 2025.9.1. 인출.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12. 다른 조사와의 비교: 고립감_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② 사회적 지지체계

가족돌봄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수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위기청소년 9.7%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8.6%로 1.1%p 낮게 나타났다. 2명 이상의 지지체계를 갖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체 81.3%에 비해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84.6%로 3.3%p 높았다.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 중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은 10.0%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7.9%보다 2.1%p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도움을 요청할 대상 유무

(단위: %)

구분		응답자수 (명)	없다	1명	2-3명	4명 이상	χ^2 (d.f.)
전체		3,672	9.7	9.0	39.5	41.8	-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279	8.6	6.8	39.4	45.2	2.797 (3)
	돌봄대상자 없음	3,393	9.8	9.2	39.5	41.5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90	10.0	6.7	46.7	36.7	4.195 (3)
	돌보지 않음	189	7.9	6.9	36.0	49.2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발굴 시스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가족돌봄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이 실제로 어떤 대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 조사에 참여한 전체 위기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72.9%), 친구/선후배(70.8%), 청소년기관이나 시설(39.7%), 학교 선생님(32.2%), 형제/자매(29.6%) 순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의 경우,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65.0%로 전체보다 7.9%p 낮았다. 반면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직원에 대한 의존도는 48.6%로 전체(39.7%)보다 8.9%p 높게 나타났다.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이 청소년기관이나 시설 직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40.7%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53.0%보다 12.3%p 낮았다. 반면,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답한 비율은 37.2%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집단(33.9%) 및 전체 응답자(32.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는 낮지만, 공적 지원체계인 청소년기관이나 학교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공적 지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접근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20. 위기청소년 실태조사(2024): 가족돌봄 상황별 도움을 요청할 대상(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수 (명)	부모님 또는 보호자	형제/ 자매	이웃/ 친척	친구/ 선호배	학교 선생님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기타
전체	3,803	72.9	29.6	16.1	70.8	32.2	39.7	7.3	2.3
돌봄대상자 존재 유무									
돌봄대상자 있음	338	65.0	23.4	16.2	67.9	35.2	48.6	5.2	2.9
돌봄대상자 없음	3,248	74.0	29.8	16.3	71.0	32.4	39.7	7.7	2.3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음	118	64.6	23.1	17.3	70.6	37.2	40.7	2.2	0.7
돌보지 않음	219	65.4	23.7	15.6	66.6	33.9	53.0	6.8	4.1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가족돌봄 여부는 가족 내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3) 복수응답 결과임.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국가승인 통계 자료를 재분석하여 이들의 기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자료와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의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현황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전자를 통해서는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구조, 경제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위기청소년 집단 중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삶의 만족도, 건강 인식, 정신건강 위험요인,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발견점

(1) 보이지 않는 돌봄의 역설

첫째, 가족돌봄 청소년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돌봄의 역설’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총조사」 표본자료 분석 결과,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는 9~24세 인구의 0.9%인 약 68,650명으로 보수적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가구 내 돌봄 필요 가족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돌봄 가능한 중장년 가족원이 부재한 경우에 한정된 최소 추정치로, 부분적 돌봄이나 보조적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규모는 이보다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이 비율을 2024년 기준 9~24세 인구수 7,712,387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2025.9.22.인출)에 적용해보면, 최소한 약 69,400여명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실제 가족돌봄에 관여하는 청소년의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청소년정책에서는 포착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가족돌봄 청소년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 구조적 취약성의 악순환

둘째,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총조사」 분석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 추정 가구의 월세 거주율은 36.7%로 일반가구 22.9%보다 13.8%p 높았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이나 취약한 경제적 상황은 사회활동 참여의 저하로 이어지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이것이 다시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로 연쇄되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특히 돌봄대상자가 있는 위기청소년의 우울 경험률은 43.6%로 일반청소년 27.7%보다 15.9%p 높게 나타나, 이들이 처한 상황이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취약성으로 확산됨을 시사하였다.

(3) 사회적 고립의 심화

셋째, 사회적 고립의 심화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물리적 접촉의 부족을 넘어 다층적 특성을 보였다. 사회활동 참여의 저하로 나타나는 활동적 고립, 이야기 할 사람 부족(65.1%)과 같은 관계적 고립, 혼자라고 느끼는 정서적 고립(62.3%),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고립(53.6%) 등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고립감은 일반청소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가족돌봄 상황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시간 부족의

문제를 넘어, 가족돌봄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기회와 여건에 구조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적응의 이중성과 지원체계의 한계

넷째,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이 심리적 측면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보이지만 신체적 부담은 더 큰 '적응의 이중성' 현상과,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지원체계의 한계가 감지되었다.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의 자기만족도는 67.1%로 돌봄 비수행자 52.5%보다 14.6%p 높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65.5% vs 50.6%로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 인식에서는 67.6% vs 72.8%로 오히려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수행이 청소년에게 자기효능감이나 존재 의미감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현재의 지원체계가 주로 '문제 중심' 접근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거나 신체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강점 기반' 접근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연령 증가에 따른 취약성 심화

다섯째, 가족돌봄 청소년의 취약성은 청소년 초기부터 시작되어 연령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구조를 보였다. 「인구총조사」에서 19~24세 후기청소년이 52.9%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 연령대에 돌봄 책임이 집중된다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돌봄 부담이 성인 전환기까지 지속되면서 발달 과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스트레스 극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실제 돌봄 수행자의 경우 52.0%로 일반청소년 35~37% 수준보다 17%p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 지표에서도 일반청소년과 상당한 격차를 보여 누적된 스트레스가 적응 역량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돌봄이라는 상황 자체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발달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청소년기 발달 과업의 성공적 수행과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기 발견 및 예방적 개입 시스템 구축

첫째, 조기 발견 및 예방적 개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은둔 경험률이 돌봄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돌봄 대상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 전의 조기 개입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 의료 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접촉점에서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내 돌봄 필요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개입하여 청소년이 과도한 돌봄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가족돌봄 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견 메커니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구조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원

둘째, 돌봄 책임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취약성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월세 거주율이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난 현실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 지원 등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나 취업 기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연속성 보장, 진로 설계 지원, 그리고 돌봄 부담으로 인해 제약받는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어야 한다. 특히 돌봄→경제적 제약→사회적 고립→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적절한 개입 지점을 설정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3) 가족돌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적극적 개입

셋째, 가족돌봄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청소년 대비 높은 고립감과 활동적·관계적·정서적·사회적 차

원이 중첩된 다층적 고립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여가 시간 확대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을 위해서는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속적 기회 제공, 돌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 지지 집단 구성,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돌봄 대체 서비스, 교통비 지원 등) 등 종합적인 사회적 연결망 복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 능력 자체에 구조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적인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돌봄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원 전략

넷째, 실제 돌봄 수행 여부에 따른 세분화 된 지원 전략과 함께, 기존의 문제 중심 접근에서 강점 기반 접근으로의 관점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위기청소년이 자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지만 신체적 건강 인식에서는 더 취약한 이중적 양상을 고려할 때, 획일적 지원보다는 차별화된 접근이 효과적이다. 실제 돌봄 수행자에게는 그들이 보유한 심리적 강점과 자기효능감을 활용하면서 신체적 부담 경감과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하고, 가족돌봄 상황에 있지만 실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가족 내 역할 갈등 해결과 심리적 지지를 우선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을 넘어, 이들이 가진 돌봄 역량과 적응력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 지원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의미한다.

(5)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다섯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가족돌봄 청소년이 주로 육체적 제약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현실과, 어머니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청소년 지원을 넘어서는 가족 단위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는 돌봄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분산, 그리고 공적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누적적 취약성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히 청소년기에 국한된 지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돌봄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이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림 III-13]에는 이 장에서 도출한 주요 발견점과 정책적 시사점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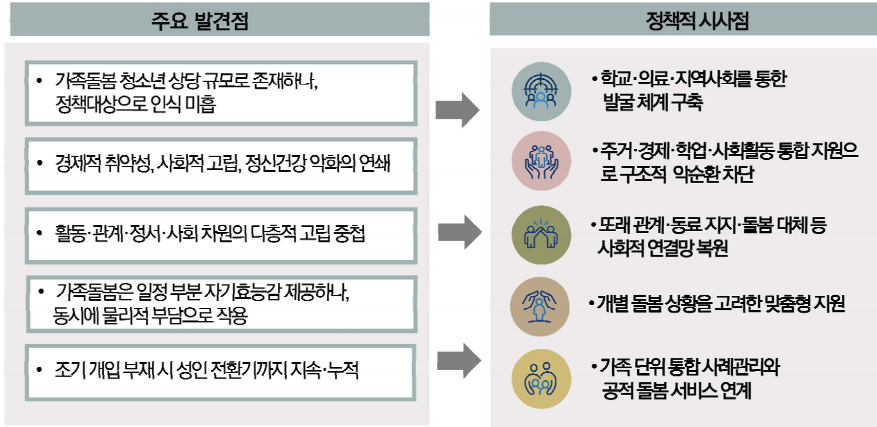


그림 III-13. 2차 자료 분석의 주요 발견점 및 시사점

○ — 제4장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 1. 법령 및 정책 분석 개요
- 2. 해외 정책 및 사례
- 3. 국내 법률 분석
- 4.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5. 국내 정책 분석
- 6. 소결 및 시사점

1. 법령 및 정책 분석의 개요

가족돌봄 청소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국내·외 법령과 정책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복지, 교육,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교차적으로 존재하는 정책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과 정책이 이들의 삶의 조건과 돌봄 수행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정책 사례, 국내 기존 법률 및 신규 제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과 민간기관의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전반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해외 법령 및 정책 사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호주, 그리고 인근 국가인 일본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 수단과 전달 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법령 분석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중심축으로 하되, 해당 제정법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제도 간 조정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유관 법률을 함께 검토하였다. 제정법이 새로운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은 분명하나, 가족돌봄 청소년이 복수의 제도와 정책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 이들이 어떻게 조명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²³⁾, 「아동복지법」²⁴⁾, 「청년기본법」²⁵⁾, 「아이돌봄 지원

22) 4장 1절, 3절, 5절, 6절은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2절은 정은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4절은 변정현 부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집필하였음.

법」²⁶⁾, 「장애인복지법」²⁷⁾, 「노인복지법」²⁸⁾, 「사회보장급여법」²⁹⁾, 「긴급복지지원법」³⁰⁾ 등 8개 법률을 선정하였으며, 정의 조항 유무, 연령 포괄 범위, 가족돌봄 관련 지원 항목의 포함 여부, 가족돌봄 수행 주체에 대한 정책적 인식 등을 주요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형성과정을 구성한 10개의 발의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각 발의안이 제시한 정책 요소가 최종 법률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제정법의 특성과 정책적 완결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항목은 제도 설계의 기반이 되는 정의 조항과 연령 규정, 정책계획 및 실태조사 체계 마련, 실행 기반에 해당하는 지원 항목과 금전 지원 조항, 전달체계와 사례관리 구조, 그리고 당사자 권리 보장 표현, 정보 연계 체계, 청소년 명시 여부 등을 포함하는 총 12개 정책 요소로 구성하였다.

국내 법령 분석의 연장선에서 지자체 제정 조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조례 분석은 제정법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가족돌봄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자 했던 지역 차원의 제도화 시도들을 포착하고, 향후 하위법령 설계와 지역 실행체계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가족돌봄’을 키워드로 추출한 104개의 조례이며(2025.5.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 가족돌봄 상황에 대한 정의 조항 포함 여부, 정책 대상 연령의 포괄 범위와 청소년 명시 유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조문의 구성, 서비스 항목의 구성 방식, 전달 조직 및 전달체계 구조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책 및 사업 분석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정책과 민관기관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 기반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23)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9841호, 2023.12.26. 타법개정]. 본 장에서 이하 동일.

24) 「아동복지법」[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본 장에서 이하 동일.

25) 「청년기본법」[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본 장에서 이하 동일.

26)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본 장에서 이하 동일.

27)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일부개정]. 본 장에서 이하 동일.

28) 「노인복지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본 장에서 이하 동일.

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법률 제20590호, 2024. 12. 20., 일부개정]. 본 장에서 이하 동일.

30)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9448호, 2023. 6. 13., 일부개정]. 본 장에서 이하 동일.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 실행 가능성과 지역 실행모델로서의 확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월드비전, 초록우산 등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도 함께 검토하였다. <표 IV-1>에는 이 장에서 실시한 법령 및 정책 분석의 목적과 분석 대상, 주요 분석 기준 등 분석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표 IV-1. 법령 및 정책 분석의 개요

분석 범주	세부 내용	분석 대상	주요 분석 기준
해외 사례	해외 법령 및 정책 체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호주, 일본 등 3개국 - 영국: 논의 선도국, 법적 정의 완비 - 호주: 지역사회 기반 통합서비스 - 일본: 최근 제도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및 법적 기반 대상자 규모 및 현황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주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운영 사례
국내 법률	기존 법률의 포섭 가능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보장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8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조항의 유무 정책 대상의 연령 지원 범위 및 내용 가족돌봄 수행 주체에 대한 인식
	제정법에 병합된 발의안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2025년 발의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관련 10개 법안 비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5.2.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설계(하위 4개 요소) 정책 실행 기반(하위 5개 요소) 당사자 보장 및 정책 연계(하위 3개 요소) 등 12개 정책요소 항목
지자체 조례	조례 제정 현황 및 구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104건(2025.5.1.검색 기준) - 광역 17건, 기초 87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기준 및 지원대상자 특성 정책계획 및 실태조사 수립 지원사업 유형 및 구성 분석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
국내 정책 및 사업	실행 정책 수준의 대응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 추진 정책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 정책 등 지자체 정책 사례 - 서울시 전담조직 운영 - 광주광역시 멘토링 사업 등 민간기관 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경 및 개요 전달체계 및 지원내용 의의 및 과제

2. 해외 정책 및 사례

1) 영국

(1) 정의 및 법적 기반

영국은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제96조³¹⁾와 「Children Act 1989」 제17ZA조³²⁾에 근거하여 ‘Young Carer’(이하 돌봄 청소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돌봄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 또는 타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급 돌봄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의미하고, 고용계약에 따른 업무나 자원봉사는 제외된다(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Children Act 1989). 특히 「Children Act 1989」 제17ZA조는 지방정부가 돌봄 청소년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돌봄 청소년 필요 평가(Young Carer’s Needs Assessment)’는 돌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영향 전반을 검토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한편, 영국은 돌봄 제공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은 ‘돌봄 청년(Young Adult Carer)’으로 별도 분류한다. 이들의 법적 권리는 「Care Act 2014」³³⁾의 ‘Transition for children to adult care and support, etc’ 조항에 근거하여 보장되며, 이는 아동기에서 성인기 돌봄 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이처럼 돌봄 제공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지위를 차등 규정하는 체계는 영국 돌봄 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돌봄을 받는 대상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Children Act 1989」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child in need)’로 규정되며,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Children Act 1989, Section 17³⁴⁾).

31) UK Legislation.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section/96>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32) UK Legislation. *Children Act 198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section/17ZA>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33) UK Legislation. *Care Act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23/contents/enacted>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34) UK Legislation. *Section 1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section/17>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영국의 돌봄 청소년은 단순한 가사 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신체적 돌봄, 정서적 지원, 가사 노동, 병원 동행, 재정 및 행정 업무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일을 수행한다(Carers Trust 홈페이지, About Young Carers). 아래 표는 영국에서 돌봄 청소년이 실제로 수행하는 주요 돌봄 범주와 그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2. 영국 돌봄 청소년의 돌봄 범주

돌봄 범주	세부 내용
신체적 돌봄	· 일상 위생 활동 보조 (세수, 옷 입기, 화장실 사용) · 병원 동행, 약 복용 관리
가사 관련	· 청소, 요리, 빨래, 장보기 등 전반인 집안 일 수행
정서적 지원	· 정신질환(예: 우울증)이 있는 가족의 대화 상대, 감정 조절 지원 등
형제자매 돌봄	· 등교 준비, 식사 및 숙제 돕기 등의 부모 역할 대체하는 돌봄
행정 및 가계 업무	· 가족 대신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 가계부 관리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 수행

* 출처: Carers Trust 홈페이지, *About Young Carers*. <https://carers.org/about-caring/about-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한 내용을 재구성
Gloucestershire Country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gloucestershire.gov.uk/media/b43hr2pa/young-carer-24.pdf>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한 내용을 재구성

(2) 규모 및 현황

영국은 공식 통계와 민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무급으로 가족을 돌보는 돌봄 청소년이 최소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Carers UK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기준 연령을 24세 이하로 보았을 때, 잉글랜드에는 약 334,300명의 돌봄 청소년이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이는 포레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웨일스의 경우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2.6%에 해당하는 약 22,600명이, 스코틀랜드는 약 52,300명(3.6%), 북아일랜드는 약 17,500명(3.0%)이 돌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 전체적으로 보면 약 426,700명, 전체 0~24세 인구의 약 2.2%가 무급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Carers UK 홈페이지, 2025.5.19.인출;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홈페이지, 2025년 5.19.인출).

표 IV-3. 영국 지역별 무급 돌봄 청소년 규모 및 비율(2021년 기준)

지역	무급 돌봄 청소년 수(명) ¹⁾	0~24세 전체 인구(명) ²⁾	비율(%)
잉글랜드	334,300	16,472,322	2.0%
웨일스	22,600	877,159	2.6%
스코틀랜드	52,300	1,466,635	3.6%
북아일랜드	17,500	589,799	3.0%
영국 전체	426,700	19,405,915	2.2%

* 출처 : 1) Carers UK 홈페이지. *Fact about carers*, <https://www.carersuk.org/media/ocxheq2c/facts-about-carers-dec-2024-final.pdf>. 2025년 5월 9일 인출
 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ensus-based statistics UK: 202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datasets/censusbasedstatisticsuk> 2021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잉글랜드의 세부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5~17세의 무급 돌봄 청소년수는 약 127,000명으로 전체 해당 연령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고, 18~24세는 약 230,000명으로 약 4.6%에 달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한편, 웨일스의 경우 5~17세는 약 8,200명(1.8%), 18~24세는 약 21,000명(4.3%)으로 잉글랜드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수치는 2021년 인구총조사(Census 2021)를 바탕으로 한 결과로, 특히 청소년기 후기(18~24세)에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저연령대 청소년(5~17세)의 비율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존재함을 보여준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표 IV-4.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연령대별 무급 돌봄 청소년 수 및 비율

지역	연령대	무급 돌봄 청소년 수(명)	비율(%)
잉글랜드	5~17세	127,000	1.4%
	18~24세	230,000	4.6%
웨일스	5~17세	8,200	1.8%
	18~24세	21,000	4.3%

*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3). *Census 2021: Unpaid care by age and sex, England and Wale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socialcare/datasets/unpaidcarebyageandsexenglandandwales>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한편, BBC는 공식 통계에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이른바 ‘숨은 돌봄 청소년(hidden young carers)’의 존재를 조명하며, 2018년 노팅엄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1~15세 청소년 가운데 약 7%가 일상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고강도 무급 돌봄(high-level unpaid care)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BC는 이를 바탕으로 공식 통계가 이러한 돌봄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BBC News, 2021). 또한 BBC는 2019~2020년 기준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돌봄 청소년의 수가 약 58,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팅엄대학교와의 연구 결과와 지방정부 통계 간의 격차를 근거로 상당수의 돌봄 청소년이 공적 식별 및 지원 체계 밖에서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BBC News, 2021).

이와 관련하여 Aldridge(2018)는 돌봄 청소년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보호자 응답을 기반으로 한 조사 방식은 돌봄 수행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응답자가 돌봄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규모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민간 주도의 일부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추정치가 제시되기도 하나, 이는 표본 편향이나 추정 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과대 추정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Aldridge는 다양한 조사 방식 간의 편차를 고려하여, 실태 해석 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돌봄 청소년 수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기 식별과 정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영국은 법률에 기반한 제도적 틀 하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돌봄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 돌봄 청소년 필요 평가 제도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영국의 지방정부(Local Authority)는 「Children Act 1989」 제17ZA조에 근거하여 돌봄 청소년(Young Carer)에 대한 법적 필요 평가(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를 수행해야 한다. 이 평가는 청소년이 연령에 비해 과도한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돌봄 활동이 교육, 건강,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 결과는 개별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적절한 공공서비스와 연계되는 절차로 이어진다.

해당 평가는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행되며, 단독 평가 또는 '아동에 대한 필요 평가(child in need assessment)'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는데, 평가 이후에는 학업 지원, 심리상담, 휴식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조치가 마련되며, 이는 돌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입으로 작용한다(NHS England 홈페이지, 2025).

② 재정적 지원

영국은 무급으로 가족을 돌보는 개인에 대한 재정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간병인 수당(Carer's Allowance)과 스코틀랜드의 돌봄 청소년 수당(Young Carer Grant)이 있다.

가. 간병인 수당(Carer's Allowance)

영국의 간병인 수당(Carer's Allowance)은 무급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는 개인에게 주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에서 운영한다. 이 수당은 국민보험 기여 여부와 무관한 비기여성 복지급여로 무급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2025년 기준 주당 £83.30의 수당이 개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GOV.UK, 2025a).

2025년 현재 간병인 수당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의 무급 돌봄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돌봄 대상자는 장애 생활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개인 독립 지원금(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간병 지원 수당(Attendance Allowance) 중 하나를 수령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순소득이 주당 £19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당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 수급이 제한된다(GOV.UK, 2025b).

이러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16세 미만 청소년은 제도적 접근이 불가능하며,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육을 병행하는 돌봄 청소년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간병인 수당은 무급 돌봄의 제도화를 구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돌봄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지닌다.

나. 돌봄 청소년 수당(Young Carer Grant)

스코틀랜드 정부는 16~18세 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Young Carer Grant'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수당은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무급 돌봄을 제공한 청소년에게 연 1회 £326.65의 일시금을 지급하며, 신청 자격은 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고, 수당 사용에 대한 용도 제한도 없다(Social Security Scotland, 2023).

이 제도는 돌봄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정규 교육을 병행하는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간병인 수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간병인 수당(Carer's Allowance) 수급자에 한해 별도의 보조금(Carer's Allowance Supplement)이 추가로 지급되지만, 'Young Carer Grant'는 독립적인 재정 지원 체계로서 돌봄 청소년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Social Security Scotland, 2023).

③ 지역사회 기반 휴식 지원 프로그램

영국은 돌봄 청소년의 신체적 및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과중한 돌봄 책임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NHS, 지방정부, 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제공되며, 돌봄 청소년이 일상적 책임에서 벗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가. 공공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³⁵⁾

- 주간 돌봄센터(Day Care Centres) : 낮 시간 동안 돌봄 대상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식사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이용 여부는 지방정부의 사전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 방문 돌봄 서비스(Homecare from a Paid Carer) : 돌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35) NHS England 홈페이지. *Carers' breaks and respite care*. <https://www.nhs.uk/social-care-and-support/support-and-benefits-for-carers/carer-breaks-and-respite-care/?utm>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일정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청소년이 자율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단기 요양시설(Short Stay in a Care Home) : 돌봄 대상자가 단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동안, 청소년은 여행이나 여가 활동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돌봄 일시 대행 서비스(Sitting Services) : 전문 돌봄 제공자나 자원봉사자가 일정 시간 동안 돌봄 대상자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돌봄 청소년이 외출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지역 자선단체나 돌봄 지원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 Carers Trust의 청소년 돌봄 지원 프로그램³⁶⁾ : ‘Carers Trust’는 지역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돌봄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캠프, 문화 체험, 또래 관계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는 돌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Action for Children의 청소년 지원 서비스³⁷⁾ : ‘Action for Children’은 돌봄 청소년이 학업과 돌봄 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단기 휴식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가족 중심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의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봄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돌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완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36) Carers Trust 홈페이지. *Getting support if you are a young carer or young adult carer*. <https://carers.org/getting-support-if-you-are-a-young-carer-or-young-adult-carer/getting-support-if-you-are-a-young-carer-or-young-adult-carer>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37) Action for Children 홈페이지. *Young carers: who are they and why do they need support?* <https://www.actionforchildren.org.uk/blog/young-carers-who-are-they-and-how-are-they-impacted/>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표 IV-5. 영국 돌봄 청소년 대상 휴식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운영주체
주간 돌봄센터 (Day Care Centre)	돌봄 대상자가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센터. 식사, 활동 프로그램 포함	지방정부 /지역 자선단체
방문 돌봄 서비스 (Homecare)	전문 돌봄인이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돌봄 제공. 청소년이 개인 시간 확보 가능	지방정부 /민간 제공자
단기 요양시설 (Short Stay)	돌봄 대상자가 며칠~수 주 동안 요양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청소년이 휴식 가능	지방정부 /요양기관
돌봄 일시 대행 서비스 (Sitting Service)	자원봉사자나 지원자가 일정 시간 돌봄 제공, 청소년이 외출 등 활동 가능	자선단체 /커뮤니티 단체
Respite Breaks	캠ป์, 문화체험 등 정서 회복 중심 청소년 전용 휴식 프로그램	Carers Trust (민간)
Action for Children 프로그램	상담, 가족 지원, 휴식 활동 등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Action for Children (민간)

* 출처: NHS England 홈페이지, Carers Trust 홈페이지, Action for Children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4) 주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운영 사례

영국은 돌봄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단위의 정책적 네트워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 참여와 정서적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 중심 프로그램과 정책 연계 기반의 장기적·통합적 지원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 및 행사 중심 지원

돌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중심의 캠페인·축제·단기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 Young Carers Action Day(YCAD) : Carers Trust의 주관으로 매년 3월 개최되는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돌봄 청소년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SNS 활동,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Carers Trust 홈페이지, Young Carers Action Day, 2025.5.14. 인출).
- Young Carers Festival(YCF) : YMCA Fairthorne Group과 The Children's Society가 공동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약 2,000명의 돌봄 청소년이 참가하며 캠핑,

문화활동, 정책 제안 세션 등이 운영된다. 또래 교류 및 휴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The Children's Society 홈페이지, 2025.5.14.인출).

- Respite Breaks : Carers Trust가 지역 기반으로 운영하는 단기 휴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 야외활동, 또래 만남 등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며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Carers Trust 홈페이지, Getting a break: Respite for carers).

② 정책 네트워크 및 지속적 서비스

돌봄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영국은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연계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Young Carers Alliance : Carers Trust가 2022년 발족한 전국 단위 정책 협력 네트워크로, 정책 담당자, 연구자, 실천가 및 당사자가 참여하여 정책-현장 간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Carers Trust 홈페이지, Young Carers Alliance).
- Empowering professionals : The Children's Society가 운영하는 교육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권리 교육, 정서 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The Children's Society 홈페이지, 2025.5.14.인출).
- Young Carers in Schools : The Children's Society와 Carers Trust가 공동으로 개발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으로, 교직원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 및 우수 운영 학교 인증 제도를 통해 돌봄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도모한다(Young Carers in Schools 홈페이지, 2025.5.14.인출).
- Young Carers Services : Spurgeons는 영국 내 약 80개 지역에서 일대일 상담, 가족 지원, 정서적 돌봄,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purgeons 홈페이지, 2025.5.14.인출).
- Action for Children의 통합 서비스 : 돌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Action for Children 홈페이지, 2025.5.14.인출).

이와 같이, 영국은 돌봄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단기적 프로그램과 지역 기반의 지속적·통합적 지원 체계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체계 내에서 돌봄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표 IV-6. 영국 돌봄 청소년 대상 주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현황

구분	운영기관	주요내용
Young Carers Action Day(YAC D) ³⁸⁾	Carers Trust	매년 3월 개최되는 전국 캠페인으로, 청소년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참여하는 권리 기반 활동. SNS 캠페인, 정치인 면담, 지역 이벤트 등 포함
Young Carers Festival(YCF) ³⁹⁾	YMCA Fairthorne Group & The Children's Society	11~17세 청소년 약 2,000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돌봄 청소년 축제. 캠핑, 공연, 체험활동, 정책 제안 세션 등으로 구성
Respite Breaks ⁴⁰⁾	Carers Trust	Carers Trust가 주관하는 청소년 전용 휴식 프로그램. 지역 캠프, 문화체험, 도래 교류 활동 등 정서 회복 중심
Young Carers Alliance ⁴¹⁾	Carers Trust	2022년 출범한 전국 네트워크로, 정책 담당자, 연구자, 청소년 등이 참여하여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Empowering professionals ⁴²⁾	The Children's Society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권리 교육, 지역 연계,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활동 운영. 실무자 교육도 포함
Young Carers in Schools ⁴³⁾	The Children's Society & Carers Trust	돌봄 청소년 조기 발견 및 학교 기반 지원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교직원 대상 가이드라인, 우수학교 인증 제공
Spurgeons Young Carers Services ⁴⁴⁾	Spurgeons	전국 80개 이상 프로젝트 운영. 1:1 상담, 가족 개입, 진로 및 전환기 지원, 멘토링, 정서적 지지 활동 포함
Action for Children 프로그램 ⁴⁵⁾	Action for Children	청소년 돌봄 제공자의 정서적 회복, 자조모임, 가족지원, 학업 지원 등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 운영

* 출처: 운영기관 홈페이지 참고하여 내용 재구성(기관별 출처는 각주 참고)

- 38) Carers Trust 홈페이지. *Young Carers Action Day*. <https://carers.org/young-carers-action-day/young-carers-action-day>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39) The Children's Society 홈페이지. *Young carers festival*.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information/young-people/young-carers/festival>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40) Carers Trust 홈페이지. *Getting a break: Respite for carers*. <https://carers.org/getting-a-break/getting-a-break-respite-for-carers>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41) Carers Trust 홈페이지. *Young Carers Alliance*. <https://carers.org/young-carers-alliance/young-carers-alliance>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42) The Children's Society 홈페이지. *Empowering professionals*.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information/professionals/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43) Young Carers in Schools 홈페이지. <https://www.youngcarersinschools.com/>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44) Spurgeons 홈페이지. *Young carers*. <https://spurgeons.org/how-we-help/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45) Action for Children 홈페이지. *Young carers: who are they and why do they need support?* <https://www.actionforchildren.org.uk/blog/young-carers-who-are-they-and-how-are-they-impacted/>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2) 호주

(1) 정의 및 법적 기반⁴⁶⁾

호주에서 ‘돌봄 청소년(Young Carer)’은 일반적으로 장애, 질병, 정신건강 문제, 노화, 약물 의존 등의 사유로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급으로 정기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2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연방 단위의 법률에 통일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 지침, 주·준주 단위 입법, 민간단체의 실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Carer Recognition Act 2010」을 통해 무급 돌봄 제공자(carer)의 사회적 기여와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돌봄 청소년에 대한 별도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법의 부속 문서인 Statement for Australia’s Carers에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역시 모든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잠재력 실현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인 권리 인정을 하고 있다.

한편, ‘Carers Australia’나 ‘Little Dreamers Australia’와 같은 주요 민간단체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은 돌봄 청소년을 ‘25세 이하로서 정기적으로 무급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Carers ACT 홈페이지⁴⁷⁾, Little Dreamers Australia 홈페이지⁴⁸⁾). 예를 들어, 연방정부의 ‘Young Carer Bursary Program’은 12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 중, 가족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를 해당 대상으로 간주한다(Young Carers Network, 2024, October).

이러한 실천적 정의에 따르면, 호주의 돌봄 청소년은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가족의 일상생활,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 심지어 행정 업무까지 폭넓게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Young Carers Network’⁴⁹⁾에 따르면, 호주의 돌봄

46) 이 내용은 UK Legislation. *Carer Recognition Act 2010*. <https://www.legislation.gov.au/C2010A00123/latest/text>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47) Carers ACT 홈페이지. *Young carers*. <https://www.carersact.org.au/for-carers/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48) Little Dreamers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littledreamers.org.au/programs/>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49) Young Carers Network. *Who are young carers?* <https://youngcarersnetwork.com.au/young-carers-info/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청소년은 단순한 가사 보조를 넘어 개인위생 보조, 병원 동행, 약물 복용 관리 등의 신체적 돌봄을 비롯해 청소, 요리, 세탁, 장보기 등의 가사 노동,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지원, 형제·자매의 학습 지도 및 등하교 지원, 행정 및 재정 업무 대행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state) 및 준주(territory) 정부 수준에서는 각기 독립적인 「Carers Recognition Act」를 제정하여 돌봄 제공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법령에서는 돌봄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NSW)는 「Carers (Recognition) Act 2010 (NSW)」⁵⁰⁾를 통해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가 돌봄인의 권리를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은 돌봄 청소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의 「Carers Recognition Act 2005 (SA)」⁵¹⁾ 및 부속 문서인 'South Australian Carers Charter'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과 청소년도 모든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돌봄 청소년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호주에서는 연방 및 주·준주 차원의 법·정책과 민간 실천 기준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법령보다는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제도적 보호와 현장 중심 지원이 병행되는 호주의 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를 반영한다.

(2) 규모 및 현황

호주에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무급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4세 이하 돌봄 청소년은 약 391,3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전체 무급 돌봄 인구의 약 12.9%에 해당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a⁵²⁾). 이는

50) NSW Legislation. *Carers (Recognition) Act 2010*. <https://legislation.nsw.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2010-020>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51) South Australian legislation. *Carers Recognition Act 2005*. https://www.legislation.sa.gov.au/_/legislation/lz/c/a/carers%20recognition%20act%202005/current/2005.55.auth.pdf?utm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5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a).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 <https://www.abs.g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latest-release>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2018년의 235,300명에서 증가한 것으로, 돌봄 청소년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8⁵³).

「2022년 장애·노화·돌봄 조사(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SDAC)」 세부 표(Table 32)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4세 이하 인구 중 무급 돌봄 청소년은 약 392,900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대비 약 5.02%로 파악되었고, 연령대별로는 15세 미만 청소년 중 약 105,000명이 부돌봄자(carer, but not a primary carer)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15세 미만 전체 인구 약 470만 명 대비 2.23%에 해당하였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b). 15세 미만 연령대는 SDAC에서 ‘주돌봄자(primary carer)’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부돌봄자’로만 집계된 반면,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총 287,900명이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대비 9.29%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체적으로 보면 24세 이하 인구 대비 돌봄 청소년 비율은 약 5% 수준으로 파악되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b).

표 IV-7. 호주의 연령대별 돌봄 청소년 규모 및 비율

(단위 : 천명, %)

연령	주돌봄자 (primary carer)	부돌봄자 (carer, but not a primary carer)	총 돌봄자	비율(%) ¹⁾
15세 미만	해당 없음	105.0	105.0	2.23
15세~24세	38.7	244.7	287.95 ⁴⁾	9.29
합계	38.7	349.7	392.95 ⁵⁾	5.02

* 주: 1) 해당 연령대의 총인구 규모 대비 총돌봄자 비율

* 출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b). *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2022* – Table 32: All persons, living in households, carer status, by age and sex at birth. <https://www.abs.g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latest-release>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5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8).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 <https://www.abs.g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2018>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54) 본 표의 합계는 반올림 이전의 연령대별 추정치를 합산하여 산출 반올림한 값으로, 주돌봄자와 부돌봄자 셀에 제시된 반올림 수치의 단순 합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해당 표의 수치는 원자료를 제공한 공식 통계의 산출값을 그대로 제시함.

55) 15세 미만 및 15~24세 연령대의 돌봄자 수를 합산한 값은 392,900명으로,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 요약보고서에 제시된 391,300명과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표본 가중치 적용, 연령구간 구분, 통계적 오차 등에 따른 것으로, 두 수치는 모두 ABS 공식 통계로서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함.

‘Carers Australia’는 무급 돌봄자를 대표하는 전국 대표 기구로 정부와 협력하여 정책 개선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관은 「Young Carers Roundtable 보고서」를 통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를 조명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약 246,000명 추정하였으며, 이 중 약 5만 명은 15세 미만 아동으로 추정하였다(Carers Australia, 2024). 이 보고서의 추정치는 정부 공식 통계인 약 391,300명보다 적은 수치인데, 이는 돌봄의 정의와 포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학계 또한 돌봄 청소년의 실제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Hamilton & Redmond(2020)는 돌봄 청소년들이 자신의 돌봄 활동을 가족을 위한 의무 또는 자연스러운 책임으로 여기거나, 타인의 낙인 우려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일부 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지 못해 조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계 해석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호주에는 연령대가 다양한 돌봄 청소년들이 있으며, 이들의 실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 통계뿐 아니라 민간 추정치와 학계의 분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정책 및 제도적 지원

호주는 돌봄 청소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및 사회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준주 정부 및 민간단체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① Young Carer Bursary Program

‘Young Carer Bursary Program’은 12세에서 25세 사이의 돌봄 청소년에게 연간 3,768호주달러(AUD)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과 돌봄 역할을 병행하는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부터 3년간 약 2,000만 AUD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25년에는 약 3,000명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 지원은 돌봄 청소년이 학업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4; 2025).

② Carer Gateway: 전국 통합지원 플랫폼

‘Carer Gateway’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무급 돌봄자 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비공식 돌봄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통해 돌봄 관련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단기 휴식(Respite Care), 기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 청소년 전용 서비스는 없으나 연령 제한이 없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용률은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디지털 접근성, 청소년의 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적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Carer Gateway 홈페이지, 2025).

③ 주·준주 및 민간 차원의 지역사회 기반 지원

각 주·준주는 자율적으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돌봄 청소년에 대한 보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 ‘Carers Victoria’는 중·고등학생 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Young Carer Scholarship Program’을 운영하며, 1인당 최대 500 AUD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교재 구입, 교통비, 학비, 돌봄 관련 비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Carers VIC Australia, 2025).

뉴사우스웨일스(NSW), 빅토리아(VIC), 퀸즐랜드(QLD) 등 주요 주·준주에서는 청소년 전담 상담 인력 배치, 포레 지시 프로그램, 학교 기반 조기 식별 및 조정 체계, 임시 휴식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Carers NSW는 청소년 전담 지원 인력 (Young Carer Support Workers)을 통해 개별 정서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술 습득 워크숍 등을 실시하며, 학교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해 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를 대상으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 세션도 제공한다(Carers NSW, 2024).

(4) 주요 네트워크 운영 사례 및 프로그램

호주에서는 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및 온라인 중심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 및 주정부, 민간단체는 돌봄 청소년에게 접근성과 포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 장학금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전국 단위 돌봄 청소년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정서적 지지, 사회적 참여,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및 학교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전국 단위 돌봄 청소년 지원 플랫폼

주요 플랫폼으로는 ‘Carers Australia’가 운영하는 ‘Young Carers Network (YCN)’, 연방정부 주도의 통합지원 포털인 ‘Carer Gateway’, 그리고 ‘Carers NSW’가 학교와 연계해 운영하는 ‘Young Carer Hub’가 있다. 각 플랫폼은 정보 제공, 지역 서비스 연계, 교육기관 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아래 표에는 주요 플랫폼의 운영 주체, 주요 기능 및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8. 전국 단위 돌봄 청소년 지원 플랫폼

구분	운영주체	주요 기능 및 특징
Young Carers Network (YCN) ¹⁾	Carers Australia (연방 정부 지원)	돌봄 청소년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장학금 신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Carer Gateway ²⁾	연방정부	전 연령 대상 포괄적 간병인 지원
Carers NSW – Young Carer Hub ³⁾	Carers NSW (주정부 단체)	학교 기반 조기 식별 시스템, 교사용 자료 제공, 지역 서비스 연계 기능 포함

* 출처 : 1) Young Carers Network. <https://youngcarersnetwork.com.au/>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2) Carer Gateway, Support for young carers. <https://www.carergateway.gov.au/your-life-carer/your-life-around-caring/experiences-backgrounds/support-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3) Carers NSW, Young carer hub. <https://www.carersnsw.org.au/services-and-support/information-hubs/young-carer-hub>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② 주요 단위 프로그램 및 행사

돌봄 청소년 지원은 전국 단위 플랫폼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지, 학업 지속 지원, 또래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과 행사로 이루어진다. 이들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대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예컨대, ‘Young Carers Connect(YCC)’의 프로그램은 온라인 소그룹 대화 형식으로 운영되며, 정기적인 Zoom 기반 모임을 통해 돌봄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지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Young Carers Network 홈페이지, 2025.5.19. 인출).

민간단체 ‘Little Dreamers Program’은 호주 전역의 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단체는 정서 지원, 리더십 개발, 학업 및 여가 활동 지원,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Big Dreamers, Dream

Experience, School Holiday Program, Online Tutor, The Young Carer Project, 'I Care. Do You?'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Little Dreamers Australia 홈페이지, 2025. 5.19.인출).

한편, 'National Carers Week'는 돌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 캠페인으로, 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돌봄인의 존재와 기여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National Carers Week 홈페이지, 2025.5.19.인출). 또한, ABC Heywire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리더십 및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돌봄 청소년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ABC Australia 홈페이지, 2025.5.19.인출).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는 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IV-9. 주요 단위 프로그램 및 행사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주체 및 특징
정서 지원 ¹⁾	Young Carers Connect(YCC)	Carers Australia·Little Dreamers 공동 운영. Zoom 기반 정기 소그룹 대화 지원.
종합 서비스 ²⁾	Little Dreamers Programs	호주 전역의 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Big Dreamers : 13~14세 대상, 워크숍 리트릿, 멘토링, 졸업식 등 리더십 프로그램 - Dream Experience : 4~25세 대상, 소원 성취 등 특별한 경험 제공 - School Holiday Program : 방학기간을 활용한 영화 관람, 공연, 테마파크 등 여가활동 지원 - The Young Carer Project : 교사 교육, 학생 지원, 낙인 완화 활동 - Online Tutor : 온라인 학습 지원, 자원봉사자 연결 - I Care. Do You? : 전국민대상 돌봄 청소년 인식 제고 캠페인
캠페인 주간 ³⁾	National Carers Week	연방 및 민간 공동 개최. 돌봄인 인식 제고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 주간 행사.
리더십 활동 ⁴⁾	ABC Heywire Program	농촌 청소년 대상. 스토리텔링·정책 제안. 돌봄 청소년도 참여 가능.

* 출처 : 1) Young Carers Network 홈페이지. <https://youngcarersnetwork.com.au/>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2) Little Dreamers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littledreamers.org.au/>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3) National Carers Week 홈페이지. <https://carersweek.com.au/about/>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4) ABC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abc.net.au/heywire/>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3) 일본

(1) 정의 및 법적 기반⁵⁶⁾

일본은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2018년 법률 제71호)을 통해 ‘영케어러(ヤングケアラー, 이하 돌봄 청소년)’ 개념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개정에서는 가족 내 간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과도한 돌봄 책임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을 정책적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돌봄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강화하였다.

동법 제2조 제7항은 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때 ‘과도한 돌봄’이란 단순한 가사 노동을 넘어, 학습권·놀이권·또래 관계 형성과 같은 아동·청소년 발달에 필수적인 경험을 제한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정은 돌봄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문제로 국한하던 기존 인식을 넘어서, 공공정책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이슈로 전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법률 조항은 돌봄 청소년의 존재를 단순히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을 공공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명확히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가족 내 사적 역할이 아닌 공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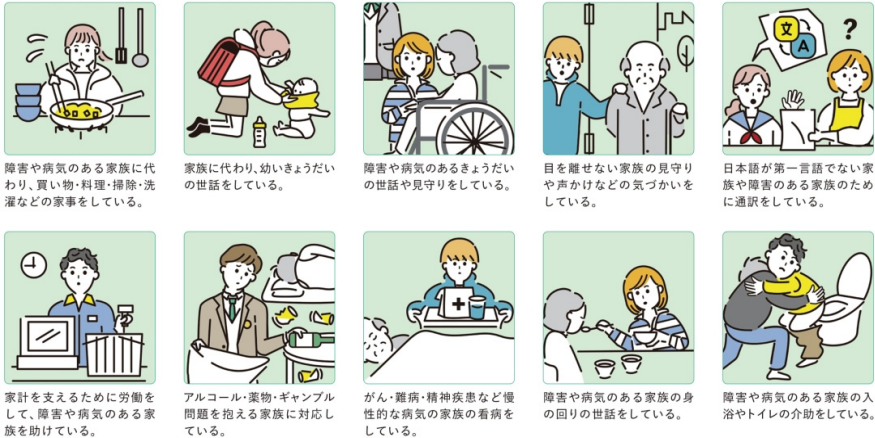
후생노동청(2025)⁵⁷⁾과 아동가정청(2025)⁵⁸⁾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돌봄 청소년이 수행하는 돌봄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가족을 대신한 가사 노동(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둘째, 형제·자매 돌봄(육아, 등·하교 지원, 놀이 상대), 셋째, 신체적 간병 및 이동 보조(외출 동행, 휠체어 지원, 투약 관리), 넷째, 정서·인지적 지원(정신질환 가족과의 대화, 감정 조절 도움), 다섯째,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병원 예약, 약 복용 관리, 서비스 신청), 여섯째, 통역 및 정보 전달(다문화장애 가족 지원), 일곱째, 경제적 책임(알바 등 생계 기여, 중독 가족 관리) 등 다양하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일상 지원을 넘어

56) 이 내용은 일본 e-gov 법령검색.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1AC0000000071>, 2025년 7월 10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57) 후생노동성(2025). 영케어러 지원 현황. <https://www.mhlw.go.jp/content/10601000/001510066.pdf>, 2025년 7월 15일 인출.

58) 아동가정청(2025). 영케어러 정보. <https://www.cfa.go.jp/policies/young-carer>, 2025년 7월 10일 인출.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생활 유지,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핵심적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가족 내 주요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출처 : 아동가정청(2025). 영케어러 정보. <https://www.cfa.go.jp/policies/young-carer>. 2025년 7월 10일 인출

그림 IV-1.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영역 예시

한편,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동 법률 제2조 제1항은 ‘청년(若者)’을 ‘대체로 30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돌봄 청소년에 대해 별도로 연령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후생노동성 등 관계 부처의 시행 지침에서는 필요시 지원 대상을 40세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25).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30세 미만이 돌봄 청소년의 기준 연령으로 간주되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연한 연령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규모 및 현황

일본에서는 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2022)의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5.7%, 전일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1%가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야간제 고등학생의 8.5%, 통신제⁵⁹⁾ 고등학생의 11.0%가 돌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일제 학생에 비해 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돌봄

부담이 큰 청소년일수록 시간적 유연성이 보장되는 학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후생노동성, 2022). 통신제는 주로 온라인 또는 우편 기반의 비대면 학습을, 야간제는 주간 수업 대신 저녁 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제로, 이들 학제는 상대적으로 돌봄과 학업의 병행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가족돌봄에 사용되는 하루 평균 시간은 약 3.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조에 따라 돌봄 시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4.3시간으로, 양부모 가정(3.8시간)이나 3세대 동거 가정(2.9시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2021). 이는 가정 내 가용한 돌봄 인력의 수와 구조가 청소년의 돌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V-10. 일본의 학년별 돌봄 청소년 비율

(단위 : %)

구분	중등 2학년	고등 2학년		
		전일제	야간제	통신제
비율	5.7	4.1	8.5	11.0

* 출처: 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2021). 중고생 영케어러 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murc.jp/wp-content/uploads/2021/04/koukai_210412_7.pdf 에서 2025년 7월 15일 인출.

한편, 일본종합연구소가 2022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 9,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가 가족돌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일본종합연구소, 2022). 돌봄 대상은 주로 형제자매(71.0%)였으며, 부모(19.8%)와 조부모 등도 일부 포함되었고, 돌봄 시작 시기는 10~12세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취학 전부터 시작한 경우도 약 17%에 달했다. 특히 저연령대의 경우,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돌봄을 수행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일부 아동이 발달 수준에 비해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일본종합연구소, 2022).

조사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특정 학령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평균 3~4시간 가족돌봄을 수행하며, 일부는 하루 7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59) 전일제는 일반적으로 주간 수업을 받는 학제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학교에 등교하는 형태임. 야간제는 주간 대신 저녁 시간대에 수업을 듣는 학제, 통신제는 온라인이나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높은 학제 형태임(후생노동성, 2022).

경제적 여건, 구성 형태,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 등 사회적 조건은 돌봄 부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 기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일본종합연구소, 2022).

(3)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일본에서는 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점차 정비해 왔다. 특히 2020년대 이후,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조기 발견 시스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강화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① 학교 중심의 조기 발견 체계 및 교육적 대응

학교는 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식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핵심 공간 중 하나이다. 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등 학교 내 전문 인력은 학생의 생활 전반을 관찰하며, 돌봄 관련 징후를 발견하면 학교 내부 협의체를 통해 외부 기관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2022). 이러한 조기 발견 체계는 돌봄 청소년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과 지침서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업 결손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심리상담, 방과후 학습 지원, 지역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청소년의 생활 및 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24).

② 지방정부의 제도화와 지역 밀착형 지원 체계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영케어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 및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개별 사례에 기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25). 이러한 창구에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이 배치되며, 지역 병원, 학교,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기관 연계형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지역 내 자원을 중심으로 돌봄 청소년이 겪는 문제에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책 실행의 일선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중앙정부 주도 정책과 민관 협력 모델

중앙 차원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중심이 되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24). 주요 정책에는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 돌봄과 관련한 정보 제공, 당사자 자조 모임 지원,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된다(후생노동성, 2024). 또한 문부과학성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2022).

지자체에는 ‘영케어러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개별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유관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자 중 선발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한 개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후생노동성, 2024).

일본 정부는 돌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도 정비, 전문 인력 확보, 민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일부 선도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나 실행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4) 주요 네트워크 운영 사례 및 프로그램

최근 일본에서는 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된 민관 협력 기반 지역 프로그램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조기 발견, 심리적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며 지역 단위에서 제도화와 실천이 병행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① Nippon Foundation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⁶⁰⁾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은 ‘영케어러와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들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 자원과 원활하게 연결되어 적절한 도움을

60) 이 내용은 Nippon Foundation 홈페이지(2025). <https://www.nippon-foundation.or.jp/what/projects/youngcarer> 에서 2025년 7월 15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재단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정보 제공, 돌봄 부담 경감 프로그램 개발, 정서적 지원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또래와 교류하며 상호 지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및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돌봄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정책 제안과 지원 체계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민간 지원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Nippon Foundation 홈페이지, 2025).

②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사례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2022년 9월부터 ‘영케어러 SO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실질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형 도움 제공자를 통해 주 2회, 하루 2시간 이내의 생활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돌봄 청소년의 일상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천적 사례로 향후 유사 정책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다카사키시 홈페이지, 2025).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는 상담 체계의 강화, 생활 지원 서비스, 경제적 보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돌봄 청소년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돌봄 청소년 전용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청소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사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케어러 응원금’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학생에게 월 5,000엔, 고등학생에게 월 15,000엔의 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이라는 실질적 지원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가와구치시 홈페이지, 2025).

효고현 아мага사키시는 2019년부터 ‘아동 성장지원센터’와 ‘시립 유스 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 대상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해당 시설은 돌봄 청소년 지원의 거점으로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적절한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2022년부터는 ‘피어 서포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또래 간 집단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돌봄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자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효고현 홈페이지, 2025).

③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⁶¹⁾

일본에서는 돌봄 청소년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비형식적 지원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Balloon Society(ふうせんの会)'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와 자조를 중심에 둔 'Balloon Caf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돌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예: Zoom)을 활용한 정기 소규모 모임(つどい)을 통해 돌봄 청소년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돌봄 청소년이 전문가 또는 훈련된 서포터와 1:1 또는 그룹 상담을 비밀보장 하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alloon Society는 또래 간 교류와 심리적 지원을 통해 당사자의 자율성과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는 민간 기반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공공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민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Balloon Society 홈페이지, 2025).

3. 국내 법률 분석

1) 유관 법률 검토

(1) 분석 대상 및 방법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법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해당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정책적 접점이 있는 기존 법령 체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지만,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은 교육, 복지, 청소년,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적으로 교차되는 대상이므로, 기존 법률 중 어느 것이 이들을 지원할 수 있고 어디에 정책적 공백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일은 향후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먼저 기존에 적용 중인 주요 유관 법률의 적용 대상, 지원

61) 이 내용은 Balloon Society 홈페이지(2025). <https://ycballoon.org/en/activities/index.html> 에서. 2025년 7월 24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검토 대상 법률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였다. 첫째, 기존 복지체계에서의 '돌봄' 정의와의 대조이다. 대부분의 복지 법률은 돌봄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해당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돌봄 수행자를 제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러한 경향성을 짚어보 고자 하였다. 둘째, 지원대상 연령의 중첩 가능성이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초등학생 연령 대부터 후기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년기본법」의 적용 연령과 일정 부분 겹친다. 따라서 해당 법률들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제도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셋째, 기존 위기 지원 성격의 법률에서 가족돌봄 상황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상황이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어 포섭되는지는 불확실하다. 본 분석은 이러한 한계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가족돌봄 상황이 기존 위기지원 제도의 대상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내용 검토는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정의 조항의 유무'이다. 여기에서는 검토 대상 법률에서 가족돌봄 주체 또는 가족돌봄 상황에 대해 정의 조항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대상이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법적 지원의 근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 '정책 대상의 연령'이다. 여기에서는 아동(18세 미만), 청소년(9~24세), 청년(19~34세) 등 법률별로 상이한 연령 구간 중, 가족돌봄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원 범위 및 내용'이다. 법률에 포함된 정책 수단과 지원 항목 중 가족돌봄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가족돌봄 수행 주체에 대한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법률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또는 청년'이라는 주체를 정책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는 법률이 다양한 가족돌봄 상황을 포괄하고, 실제 정책 대상자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다.

(2) 분석 결과

상술한 기준과 항목을 적용해 총 8개의 유관 법률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정의 조항의 배제성

검토한 8개 법률 중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법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은 각각의 정책대상 연령 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존재하나, ‘가족돌봄’이라는 생활상태 또는 책임을 기준으로 한 유형 구분은 없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보호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부모, 성인 자녀 등 전통적인 부양자를 전제로 하며 미성년 수행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라는 제도화된 성인 돌봄 제공자만을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 내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한 돌봄은 오히려 제도적 범주의 바깥에 위치한다. 「사회보장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역시 ‘위기상황’,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정의만 존재할 뿐, 돌봄 제공자로서의 정책 주체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② 연령 구조의 중첩성과 실질적 포섭의 한계

표면적으로는 「아동복지법」(18세 미만), 「청소년복지 지원법」(9~24세), 「청년기본법」(19~34세) 등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연령대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들은 모두 연령 외에 정의와 위기 유형에 근거해 정책 대상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가족을 돌보는 상황은 정의나 위기 유형 모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 일반적인 구조 불평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족 내 돌봄 책임과 같은 관계 기반 부담은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포섭 가능성이 낮은 고연령층 대상 법률이며, 「사회보장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제도 작동 방식상 미성년자의 접근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지원 조항에서 가족돌봄 상황의 미반영

법률별로 다양한 지원 항목이 존재하나, 이들 대부분은 돌봄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은 정책상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는 학교중단,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가족돌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동법 시행령⁶²) 제7조 참조).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보호, 위탁,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지만, 이 역시 보호를 받는 아동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아동은 정책 설계 밖에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며, 위기 유형은 생계 곤란, 재해, 실직 등으로 제한된다. 「사회보장급여법」 또한 서비스 접근권을 가진 수급권자 또는 가족을 지원하는 성인 보호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미성년 보호자는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도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심리·정서 지원은 존재하지만, 가족 내 청소년이 수행하는 돌봄의 실태는 정책적으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④ 가족돌봄 수행 주체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비

기존 유관 법률 검토에서 나타난 가장 주된 문제는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청소년이 법률 상 정의, 정책 대상 분류, 지원 조항 등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책상 ‘보호자’라는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청소년이 공식적으로 보호자 지위를 인정받거나, 돌봄 부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법률적으로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에서 ‘부양의무자’와 ‘보호자’를 정의하고 있지만 연령 기준은 법문 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 조문 상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여타 법령 및 행정실무에서 미성년자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⁶³).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해보면,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사실상 가족 내 돌봄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제도상 보호자나 부양의무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돌봄 수행에 수반되는 부담이나 책임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유관 법률은 대부분 ‘돌봄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 청소년과 같은 ‘돌봄의

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17호, 2024. 4. 16., 일부개정].

63)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보호의무자)에서는 ‘미성년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서는 신청주체에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미성년자,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공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법제가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포섭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유관 법률 검토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복지 및 청소년 관련 법률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제도 내 정책 주체로서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법률은 '돌봄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은 보호자도, 수급자도, 정책적으로 고려되는 행위 주체도 아닌 위치에 놓여 있다. 이 같은 기존 체계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발굴조차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가족돌봄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할 연령대가 개별 법률의 적용 범위와 형식적으로는 중첩되더라도,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 즉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는 정책 대상 분류 기준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은 제도적으로 정책 범주 밖에 위치하거나, 공식 정책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각 법률에서 제공하는 지원 조항은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이나 보호 필요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가족돌봄 상황은 이러한 위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설계 하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미성년자, 특히 청소년은 기존 행정체계 내에서 명시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자격 부여나 권리 인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러한 기존 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최근 신규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도화한 최초의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검토하겠지만, 이 제정법은 기존 법령들이 정의하지 않았던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정책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전달체계 마련 등 다층적인 제도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완 입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가 포섭하지 못했던 대상을 정책적으로 구체화 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V-11. 가족돌봄 청소년의 제도적 포섭 여부에 대한 유관 법률 비교

법률명	정의 조항에 가족돌봄 주체 포함 여부	정책 대상 연령 범위	지원 내용에 가족돌봄 상황 반영	제도적 한계 요약
청소년복지지원법	없음	• 9~24세	• 위기청소년 개념은 있으나 가족돌봄은 미포함	• 위기 유형에 가족돌봄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동복지법	없음 (보호대상 아동 중심 설계, 돌봄 수행 아동은 포함되지 않음)	• 18세 미만	• 보호대상 아동 중심의 구조이며, 가족을 돌보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보호대상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은 정책 주체로서 고려되지 않음
청년기본법	없음	• 19~34세	• “취약계층 청년”에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규정하며, 가족돌봄은 별도 명시되지 않음.	• 가족돌봄 상황은 취약청년 개념에 명시되지 않음
아이돌봄지원법	없음 (전문 돌봄제공자만 포함)	•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 대상이며, 가족 내 청소년 보호자 배제	• 돌봄 수행자는 자격자만 해당, 가족 내 청소년은 정책 범주 밖에 위치함
장애인복지법	없음	• 모든 연령 (장애인 중심)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가능하나, 돌봄 주체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별도 고려 미포함	• 장애인 가족 지원은 존재하나, 미성년 보호자에 대한 명시적 지원은 부재
노인복지법	없음 (보호자 정의는 있으나 청소년은 전제되지 않음)	• 65세 이상 노인	• 노인을 위한 공식 돌봄체계 중심,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별도 고려 미포함	• 돌봄 수혜자 지원을 전제로 하며, 돌봄 대상자에 대한 고려는 미비. 미성년자 보호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긴급복지지원법	없음 (돌봄 부담은 위기사유로 명시되지 않음)	• 제한 없음	• 위기 대응 중심으로 생계·질병·실직 등 단기 위기만 포섭하며, 가족을 돌보는 상황은 위기 사유로 언급되지 않음	• 위기 사유로 가족돌봄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일시적 위기 대응 중심으로 가족돌봄의 장기돌봄과 사각지대 해결 미흡
사회보장급여법	없음	• 제한 없음	• 서비스는 있으나 수행 주체로서 가족돌봄 청소년은 고려되지 않음	• 급여 단위는 존재하나, 대상 정의에서 가족돌봄 수행 청소년은 명시되지 않음

* 출처: 각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4.30. 인출.

2) 가족돌봄 관련 제정 법률 분석

다음으로, 법률 검토의 일환으로 2025년 제정·공포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법률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라는 정책대상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이 향후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정 과정에서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합 대상이 되었던 10개 법률안 중 어떤 내용들이 최종 법률에 수용되고 어떤 내용들이 제외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법률의 실효성 제고와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해당 제정법의 형성과정에서 병합 대상이 된 10개의 제정안 및 개정안을 검토하여 각 법안에 담긴 정책 핵심요소가 최종 법률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제정법에서 제도적으로 포섭되지 못한 사각지대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분석 대상 및 방법

검토 대상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제출된 총 10건의 관련 법률 발의안이다. 이들 법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명시한 법안(예: 서영석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위기청년 또는 취약계층 청년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가족돌봄 청년도 포함 가능한 범주로 설정한 법안(예: 김성원 의원안, 조승환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서미화 의원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모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최종 제정 과정에서 병합되었다. 이에 여기에서는 각각의 법안에 담긴 핵심 조항이 최종 법률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IV-12.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병합 대상 10개 법률안 주요 특징(발의일 순)

구분	법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핵심 정책대상	주요 특징 요약
A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안)	서영석	2024. 7.31.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에 초점을 두고, 아동·청소년·청년을 포괄적으로 포함(34세 이하)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가족돌봄수당 포함
B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김성원	2024. 8.19.	취약청년 (청년기본법 상 청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청년의 유형으로 가족돌봄 청년명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내용 포함
C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조승환	2024. 8.22.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정의(청년기본법 상 청년) 복지·주거·자립·건강·교육 등 다영역 정책 수단 포함
D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김미애	2024. 10.8.	위기청년 (가족돌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청년의 범주로 가족돌봄 청년을 명시(청년기본법 상 청년에 한함)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구조 포함
E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정춘생	2024. 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안명에 아동·청소년·청년 모두 명시 및 연령범위 34세 이하로 포괄적 설정 정의·실태조사·기본계획·지원센터·사례관리 등 체계적 포함
F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조은희	2024. 11.11.	취약계층 청년 (청년기본법 상 청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이유에는 가족돌봄 청년이 언급되었으나, 법조문 상 취약청년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포괄적 규정
G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강선우	2024. 11.14.	아동 (가족돌봄 아동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 연계체계 등 지원 기반 신설
H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법안 (제정안)	강선우	2024. 12.30.	가족돌봄 아동·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아동·청년 대상(34세 이하)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포함
I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제정안)	서미화	2025. 1.7.	위기청년 (청년기본법 상 청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청년의 유형으로 가족돌봄 명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자기돌봄비 포함
J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안)	김남희	2025. 1.2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안명에 아동·청소년·청년 모두 명시 및 연령범위 34세 이하로 포괄적 설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자기돌봄비, 다영역 지원, 사례관리 등 포함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5.4.5. 인출.

본 분석에서는 △기초 제도 설계 요소, △정책 실행 기반 요소, △당사자 보장 및 정책 연계 요소를 중심으로 총 12개의 핵심 정책요소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 제도 설계 요소'에서는 정책대상 정의, 연령기준, 정책계획 수립 체계, 실태조사 등 제도 설계를 위한 기본 조항을 분석하였다. '정책 실행 기반 요소'에서는 금전적 지원, 서비스 항목, 전달체계, 사례관리 등 실제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였다. '당사자 보장 및 정책 연계 요소'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인식, 정보 접근성, 청소년 연령층의 제도적 포함 등 대상자 중심 정책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기준으로 삼았다. 검토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IV-13>와 같다.

표 IV-13. 발의안 및 제정법 검토 기준

분류 기준	정책요소명	항목 설명
기초 제도 설계	연령 포괄 범위	• 법률의 정의 조항 또는 적용 대상에서 아동, 청소년(9~24세), 청년 연령층을 구조적으로 포괄하고 있는지 여부
	정의 조항	• 가족돌봄 당사자에 대한 정책 대상 정의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실태조사 조항	•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주기 명시 여부
	정책계획 체계	•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 책임 구조 명시 여부
정책 실행 기반	지원 항목의 포괄성	• 교육, 건강, 주거, 자립 등 다영역에 걸친 복합 지원 항목 포함 여부
	금전적 지원 조항	• 자기돌봄비, 자립지원금 등 금전성 지원 항목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소득요건 명시	•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적용 규정 또는 관련 시행령 위임 조항 여부
	전달체계 및 전담조직	• 전담부서 지정, 지역 전달체계 구축, 센터 설치 등 정책 전달 기반 명시 여부
	사례관리 구조	• 사례의 발굴-진단-계획-연계 등 단계적 지원 구조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자 보장 및 정책 연계	권리 보장 표현	• 가족돌봄 당사자의 권리 선언 또는 권리 기반 정책 의지가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정보 연계 체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등 시스템 연계 조항의 존재 여부
	청소년 명시 포함	• 조문 내에서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9~24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분석 결과

〈표 IV-14〉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된 10개 제정안 및 개정안을 대상으로, 검토 기준으로 선정한 12개 항목의 반영 여부를 조문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항목은 해당 법안의 조문 내 포함 여부에 따라 명시적 포함(●), 부분 포함 또는 불명확(△), 미포함(x)으로 구분하였다.

이미 새로운 신규 법안이 제정된 상황에서 본 분석의 목적은 각각의 발의안이 얼마나 완성도 높게 정책 요소를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핵심 정책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법안들에서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하위법령 설계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광범위하게 공통 반영된 정책 요소는 정의 조항, 실태조사, 정책계획 체계, 그리고 지원 항목의 포괄성 등 제도적 기반 관련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당사자에 대한 개념 정립, 실태 파악,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의 기본적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입법자 간에 비교적 공유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정보 연계 체계’와 ‘사례관리 구조’는 제한적으로 언급되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연령 포괄성과 청소년 명시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사각지대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청년(19~34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을 제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의 명시 여부와 관련해 대부분의 발의안에서 명칭에 아동 또는 청년만 명시되고 청소년의 직접적 언급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족돌봄 문제에 관한 지원 법안 입안 과정에서, 청소년이 독립된 정책 대상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법령 내에서 실질적인 보호 주체로 설정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이는 향후 정책대상 설정에서 중요한 보완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권리 보장 표현은 다수의 법안에서 목적조항 또는 기본이념 수준에서 선언적으로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전적 지원 항목 역시 일부 발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 IV-1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주요 입법안의 정책 설계 요소 반영 현황 및 비교표

구분	기초 제도 설계				정책 실행 기반					당사자 보장 및 정책 연계			비고
	연령 포괄 범위	정의 조항	실태 조사 조항	정책 계획 체계	지원 항목의 포괄성	금전적 지원 조항	소득 요건 명시	전달 체계 및 전담 조직	사례 관리 구조	권리 보장 표현	정보 연계 체계	청소년 명시 포함	
A안	●	●	●	●	●	●	●	●	●	●	×	●	• 정보연계 관련 내용 부재
B안	×	●	●	●	●	×	●	△	×	△	●	×	•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에 한정
C안	×	●	●	●	●	●	●	●	△	△	×	×	•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에 한정
D안	×	●	●	●	●	●	●	●	●	△	●	×	•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에 한정
E안	●	●	●	●	●	●	●	●	●	●	×	●	•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 포괄 • 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정보 연계 내용은 부재
F안	×	△	●	●	●	×	●	●	×	△	△	×	•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에 한정 • 정의 조항에 가족돌봄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G안	△	●	●	×	●	×	△	●	△	△	×	×	• 아동복지법 상 아동(18세 미만)에 한정 • 개인별 계획·기관 연계는 있으나 사례관리 구조 제한적
H안	●	●	●	●	●	●	●	●	●	●	●	×	• 34세 이하 연령을 포괄하나, 청소년 용어는 누락
I안	×	●	●	●	●	●	●	●	△	●	×	×	•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에 한정 • 발굴·연계 및 통합서비스 언급은 있으나 사례관리 구조 제한적
J안	●	●	●	●	●	●	●	●	●	●	●	●	•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 포괄

주: 명시적 포함 ●, 부분 포함 또는 불명확 △, 미포함 X로 표기하였으며, 연구진 작성.

요약하면, 여기에서 검토한 10개 발의안은 각각 개별적으로는 정책 제안의 다양성과 의미를 지니지만, 공통적으로 논의된 핵심 정책요소는 기초 제도 설계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 포괄성 및 청소년 명시 측면에서는 반복적으로 한계를 보였다. 또한 사례관리 및 정보연계 등 정책 실행 기반과 당사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보완과 하위 법령 설계 과정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IV-15>에는 상술한 비교틀을 준거로, 최종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기존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된 정책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총 12개 항목 중 11개 항목은 법률 조문 내에 충실히 반영되어 ‘명시적 포함(●)’으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1개 항목은 ‘부분 포함(△)’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정의 조항, 실태조사, 정책계획 체계, 다차원적 지원 항목, 금전 지원, 사례관리 구조, 권리 보장 표현, 정보 연계 체계 등은 모두 개별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실행 기반 및 행정 체계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법제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요건 명시 경우, 본문 내 구체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하위법령 설계 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책 대상 측면에서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일부 조문에서 관련 시설 언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만, 대상 규정이나 정의 조항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이 분명하게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제정 법은 기존 법안들이 제시한 주요 정책요소를 전반적으로 포괄하였으나, 청소년 명시적 직접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보완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제정법은 기존 10개 법안의 공통된 정책 요소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정책대상 명확성 문제는 일부 항목에서 여전히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법률 개정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15. 최종 제정법과의 비교 및 반영 수준 분석

정책요소		반영 여부	내용
기초 제도 설계	연령 포괄 범위	●	• 34세 이하 아동·청년으로 규정하여 포괄적 연령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연령 포섭(제2조)
	정의 조항	●	•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
	실태조사 조항	●	•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의무 명시, 협조 요청 조항 포함(제8조)
	정책계획 체계	●	• 5년 단위 기본계획(제6조) 및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수립·시행의 의무 명시
정책 실행 기반	지원항목의 포괄성	●	•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 자기돌봄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종합적 지원 반영(제15~21조)
	금전적 지원 조항	●	• 자기돌봄비 지급, 시설급여 이용 지원, 서비스 이용료 지원 명시(제19조)
	소득요건 명시	●	• 법률에 구체적인 소득기준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의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제19조 제3항).
	전담체계 및 전담조직	●	• 전담조직 지정 및 위탁(제22조), 정책센터 지정(제25조) 관련 조항 포함
	사례관리 구조	●	• 사례관리의 정의(제2조), 사례의 발굴·상담·계획 등 지속 관리 구조(제10조~14조) 규정
당사자 보장 및 정책 연계	권리보장 표현	●	•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제3조 제3항)
	정보 연계 체계	●	• 사회보장시스템의 활용(제23조) 및 위기가동·청년 데이터 제공·활용(제24조) 가능함을 명시
	청소년 명시 포함	△	• 법률명 및 정의에는 청소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조항(예: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을 명시한 제10조 등에 청소년 관계 법령 상 청소년 관계 시설을 포함하는 구조 유지

* 자료: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46호, 2025.3.25.제정] 각 조문을 검토하여, 연구진 작성.

4.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⁶⁴⁾

1) 조례 분석의 개요 및 제정 현황

여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제정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2022년 2월 「가족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 대책

64) 4절(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은 변정현 부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집필하였음.

수립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5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 법률 제정 이전부터, 일부 지자체는 정부 정책 방향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왔다. 이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등록된 조례 중 ‘가족돌봄’을 명칭에 포함한 조례를 수집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정의, 정책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의 내용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차원의 법령 기반에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조문 텍스트를 1차로 탐색한 뒤, 각 조문의 수, 지자체 수준, 조례에 포함된 주요 내용과 항목을 파악하여 기초 코딩을 수행하였다. 둘째, 조례가 상위 법률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9~24세)이 정책 대상으로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셋째, 코딩 결과를 다시 검토하며 조문 해석의 누락이나 오류 여부를 교차 점검하여 정확도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코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특성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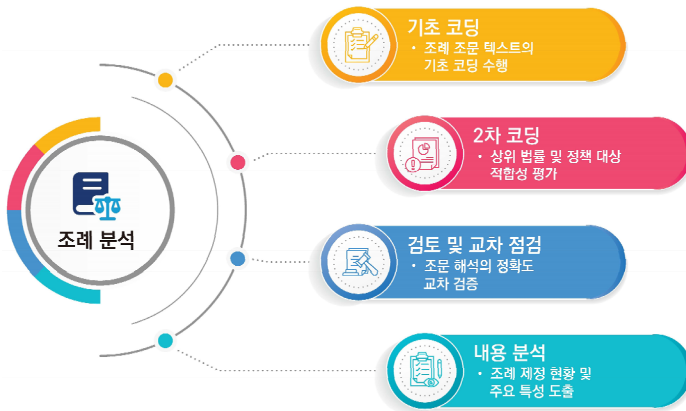


그림 IV-2. 조례 내용분석 절차

분석 대상이 된 조례는 2025년 5월 1일 기준, '가족돌봄'을 키워드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총 104개의 조례를 확인하였다. 이 중 대전광역시에는 '아동'과 '청년' 대상별로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총 2건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제외하면, 전국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1건씩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개 시·도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75개 시 중 34개 시(45.3%), 82개 군 중 11개 군(13.4%), 69개 구 중 41개 구(59.4%)가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하면, 2025년 5월 1일 기준 총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103개 지자체(42.4%)가 가족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기초 지자체에서는 구청의 조례 제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022.2.11.)였다. 연도별로 제정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개(경남 김해시, 서울 서대문구), 2023년 42개(인천 미추홀구 등), 2024년 53개(경기도 의왕시 등), 2025년 5개(서울시 성동구 등)로 파악된다. 이는 사회적 인식 확산 및 법률 제정 논의에 따라 점차 관련 조례 제정도 가속화되었음을 방증한다.

표 IV-16. 자치단체 중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총 규모 (개)	조례 보유 지자체(개)	제정 비율	제정 조례 수(개)	조례명에 '청소년' 포함(개)	대상자에 청소년 연령대(9~24세) 포함(개)
광역(시도)	17	17	100.0%	18 ¹⁾	12	13 ²⁾
기초	시	75	34	45.3%	34	29
	군	82	11	13.4%	11	10
	구	69	41	59.4%	41	39
소계	243	103	42.4%	104	90	87 ³⁾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5.5.1. 검색 추출. 17개 광역단체 18개 조례, 86개 기초단체 86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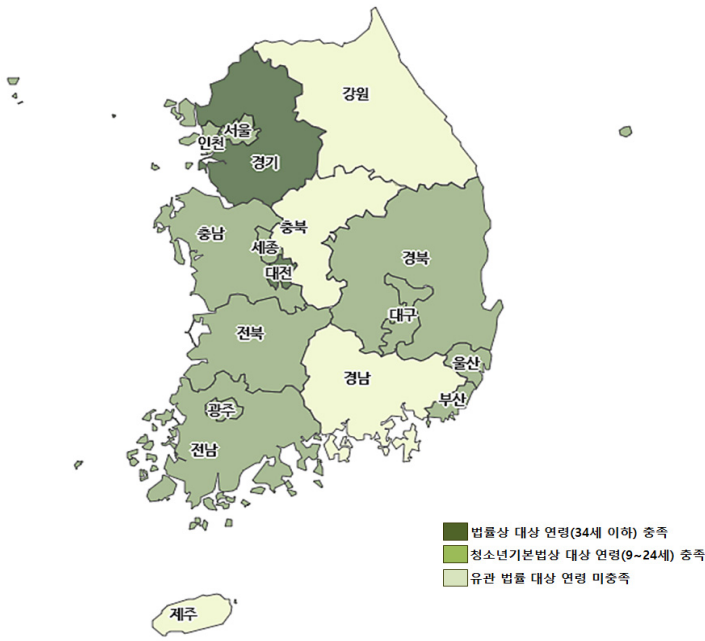
- * 주: 1) 대전광역시는 대상별 별도로 2개(아동, 청년)의 조례 제정
 2) 대전광역시 2개 조례(아동:0~17세, 청년:18~39세) 통합 해석시 9~24세 포함
 3) 대전광역시 2개 조례를 통합하여 103개 기준 87개임.

총 104개의 '가족돌봄' 관련 조례 중, 조례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은 90건으로 전체의 86.5%에 해당하였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조례는 86건이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아동'(18세 미만)과 '청년'(18~39

세)에 대한 조례를 각각 별도로 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청소년 연령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9~24세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총 87건이며, 이는 전체 103개 지자체 중 84.4%에 해당한다.

2) 연령 기준 및 돌봄 대상자 특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모두 가족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나, 연령 기준의 충족 여부에는 차이가 있었다. 상위 법률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기아동·청년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정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조례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2곳으로 파악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아동'(18세 미만)과 '청년'(18세~39세)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 조례를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법률상 연령 기준인 34세 이하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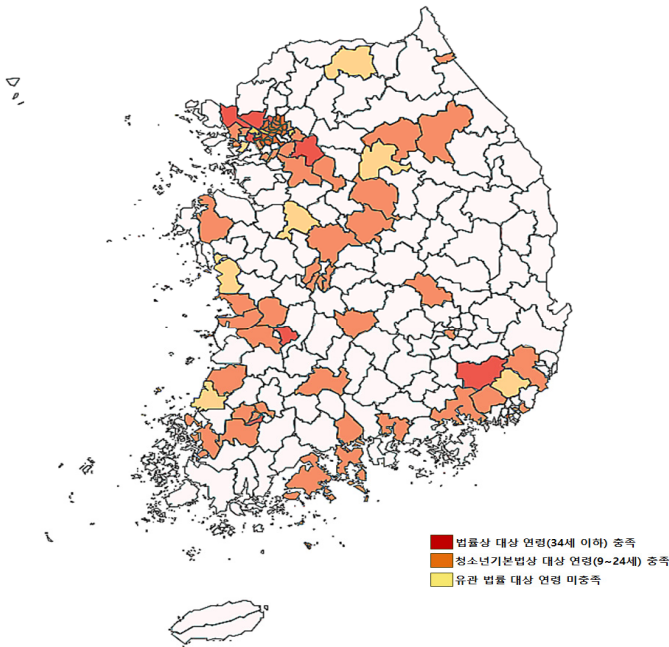


* 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에서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계지도 이미지 구성

그림 IV-3. 광역 지자체의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한편, 13개 시·도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9세~24세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개 시·도는 유관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해당 연령대가 상위 법률 또는 「청소년 기본법」 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가족돌봄 관련 조례는 총 86건이며, 이 중 조례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한 경우는 78건(90.7%)으로, 대다수 조례가 청소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살펴보면, '9세~34세'로 명시한 조례가 24건(2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상위 법률에서는 정책대상자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적 연령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8곳(9.3%)에 불과하였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세~24세)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74건(86.0%)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12건이 「청소년 기본법」상 연령을 포함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 지자체 조례의 연령 기준 반영 현황은 [그림 IV-4]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 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에서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계지도 이미지 구성

그림 IV-4. 기초 지자체의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표 IV-17〉과 〈표 IV-18〉에는 각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조례의 연령 범위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두 자료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연령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 법률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령 요건(34세 이하)을 명확히 충족하는 조례는 9건(8.7%)에 그쳤다. 연령 범위별로는 ‘9~34세’로 명시한 조례가 30건(광역 6, 기초 24)으로 2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9~39세’ 27건(광역 5, 기초 22)으로 26.0%, ‘9~24세’ 11건(광역 0, 기초 11) 10.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청년기본법’ 또는 해당 지역의 청년 조례에 근거한 연령 정의를 포함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률이 정한 청소년 연령(9~24세)이 사각지대 없이 포섭되는 사례는 86건(광역 13, 기초 73)으로 83.5%를 차지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2025.5.1. 기준 현행 조례의 16.5%는 청소년 연령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17. 광역 지자체 조례의 연령 범위 분포

연령 범위	지자체 수	비율	해당 지자체
9~34세	6	35.3%	•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인천, 전남
9~39세	5	29.4%	• 부산, 세종, 울산, 전북, 충남
13~39세	3	17.6%	• 경남, 제주, 충북
14~39세	1	5.9%	• 강원
34세 이하	1	5.9%	• 경기
기타 (두 조례 분리)	1	5.9%	• 대전(18세 미만, 18~39세)
합계	17	100.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광역 지자체 조례 총 18건(대전광역시 2건)(2025.5.1.기준)

표 IV-18. 기초 지자체 조례의 연령 범위 분포

연령 범위	지자체 수	비율	비고
9~34세	24	27.9%	최다빈도 연령 범위
9~39세	22	25.6%	
9~24세	11	12.8%	청소년기본법 상 연령 범위
9~45세	5	5.8%	
9~49세	1	1.2%	
13~34세	1	1.2%	

연령 범위	지자체 수	비율	비고
13~39세	2	2.3%	
13~24세	1	1.2%	
14~34세	4	4.7%	
14~39세	1	1.2%	
18~45세	1	1.2%	
19~34세	1	1.2%	
19~39세	1	1.2%	
24세 이하	3	3.5%	
34세 이하	4	4.7%	상위법률 상 연령 규정
39세 이하	3	3.5%	
연령 규정 부재	1	1.2%	광주광역시 남구
합계	86	100.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기초 지자체 조례 총 86건(2025.5.1.기준)

다음으로 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관련 법률에서는 대상자를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구체적인 속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경남 김해시는 지원 대상자를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104개 조례 모두 지원 대상자를 ‘가족’ 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조례는 이를 부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 특정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⁶⁵⁾에 따른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정신·신체 질병(103건, 99.0%), 장애(101건, 97.1%), 고령(57건, 54.8%), 약물 및 알코올 문제(30건, 28.8%), 부모의 사망·이혼·가출(28건, 2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소한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경기 광명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경우(울산 울주군, 충남 천안시) 등을 명시한 조례도 일부 존재한다.

6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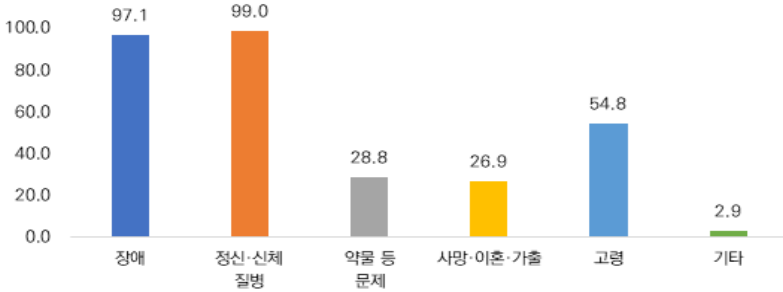


그림 IV-5. 조례의 돌봄 대상자 사유 유형별 분포

한편, 조례에 명시된 돌봄 대상자의 연령 및 행위적 요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92건, 88.5%),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 지거나 함께하는 경우(60건, 57.7%), 동일한 주소지에서의 동거(8건, 7.7%) 등의 순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돌봄 제공자가 성년인 가족구성원 2인 이상인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로는 강원도 속초시·원주 시·화천군, 경기도 광명시, 경남 사천시, 충남 보령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경남 사천시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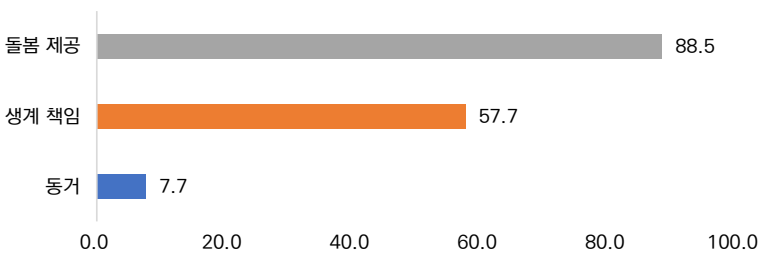


그림 IV-6. 조례의 지원 대상 요건 유형별 분포

3)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조문 현황

다음으로, 조례의 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법적 체계가 지자체 조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104개 조례 중 99개 조례(95.2%)가 ‘계획’ 관련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중 93개 조례(89.4%)는 기본계획·지원계획·추진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72개 조례(69.2%)는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21개 조례(20.2%)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었다. 계획의 명칭은 조례별로 다소 상이하였으며, ‘지원계획’(47건, 45.2%), ‘기본계획’(42건, 40.4%), ‘추진계획’(4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기본계획 항목(목표 및 추진방향, 조사 연구 및 홍보, 인력양성, 재원확보 등)과 유사하게, 조례에서도 방침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조사 및 제도, 인력, 재원, 전달체계·협력방안 등의 세부 항목이 함께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시각화한 <그림 IV-7>에 따르면, 계획 수립 조항 중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관련 항목은 89.4~87.5% 수준으로 높은 포함률을 보인 반면, ‘조사·제도’(26.9%), ‘인력’(36.5%), ‘재원’(22.1%)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조례 중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 경우는 53건(51.0%)으로, 이 중 43건(41.3%)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었다. 시행계획의 주기를 1년으로 명시한 조례는 45건(43.3%)이었다. 반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주기(57건, 54.8%)가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기간 미기재(21건, 20.2%), 4년 주기(12건, 11.5%), 1년 주기(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조례는 시행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같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조례는 총 16개 지역(예: 경북 구미시, 대구광역시, 서울 종로구, 전라북도 등)이며, 이외에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 또는 같음하도록 한 조례는 3개 지역(경기 부천시, 전남 광양시, 충남 서산시)에서 확인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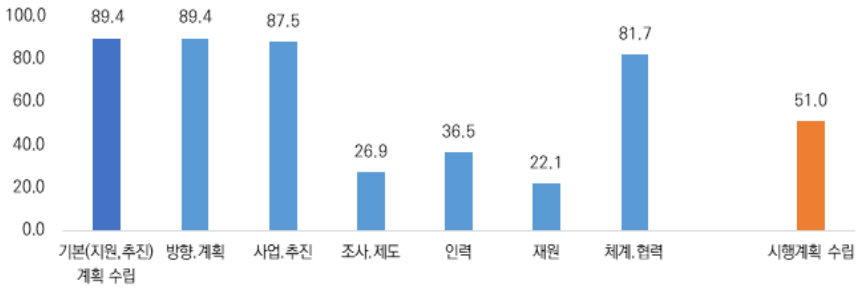


그림 IV-7. 조례 내용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내용 포함 현황

다음으로,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조문을 분석하였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104개 조례 중 97개 조례(93.3%)에서 실태조사 관련 조문이 확인되었다. 이 중 11개 조례(10.6%)는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86개 조례(82.7%)는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었다.

실태조사의 주기를 명시한 조례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3년 주기로 명시한 조례는 2건(광주광역시, 서울 동작구), 4년 주기는 3건(광주 남구, 서울 마포구, 서울 종로구), 5년 주기는 7건(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울산 울주군, 전남 고흥군·여수시, 충북 청주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로, 대전광역시의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로 가족돌봄 아동 실태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및 충남 천안시의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지자체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족돌봄 지원이 사회보장급여 제공이라는 복지 행정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본 분석에서 검토한 104개 조례의 담당 부서를 확인한 결과, ‘복지정책과’ 등 복지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경우가 74건(7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

으로는 담당 부서를 명시하지 않은 조례가 9건(8.7%)이었고, 청소년 관련 부서 8건(7.7%), 가정·가족 관련 부서 7건(6.7%), 인구정책 관련 부서와 청년 관련 부서가 각각 2건(1.9%), 교육 관련 부서와 기획예산 부서가 각각 1건(1.0%)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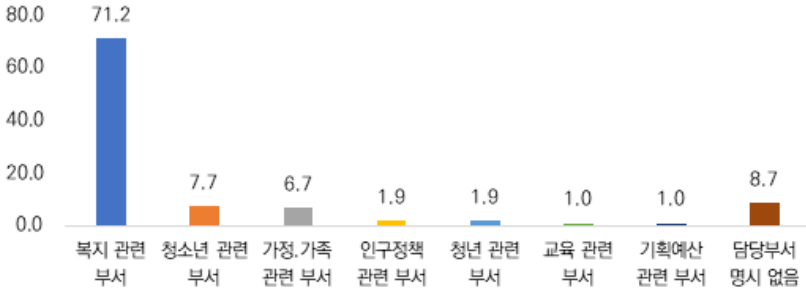


그림 IV-8. 조례 담당 부서의 분포

4) 지원사업 내용 관련 조문 현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에는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제16조(건강관리 지원),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제18조(주거지원), 제19조(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등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104개 조례에 명시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사업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04개 중 101개 조례(97.1%)가 대상자 지원사업의 유형을 각 호 형식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며, 조례당 평균 7.4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IV-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조례에 명시된 지원 항목 중 ①~⑦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에 해당하는 범주로 확인되며, ⑧번 이후 항목은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조례별로 추가로 명시된 자율적 지원사업 항목들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① 심리·정서 상담으로, 전체 104개 중 101개 조례(97.1%)에서 해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⑧ 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98개, 94.2%), ⑤ 취업지원(93개, 89.4%), ⑨ 문화·체육 활동 지원(89개,

85.6%), ⑩ 필요 용품 지원(85개, 81.7%), ⑪ 인식개선 및 홍보(75개, 72.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④ 직업훈련 및 자기계발 지원(65개, 62.5%), ③ 교육 및 학습 지원(60개, 57.7%), ⑫ 종료 후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55개, 52.9%), ⑥ 주거 및 생활 지원(29개, 27.9%), ⑬ 돌봄가족에 대한 간병·요양·의료관리 지원(26개, 25.0%), ② 건강 교육 및 의료지원(25개, 24.0%), ⑭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9개, 8.7%), ⑦ 특별지원급여(7개, 6.7%) 등의 항목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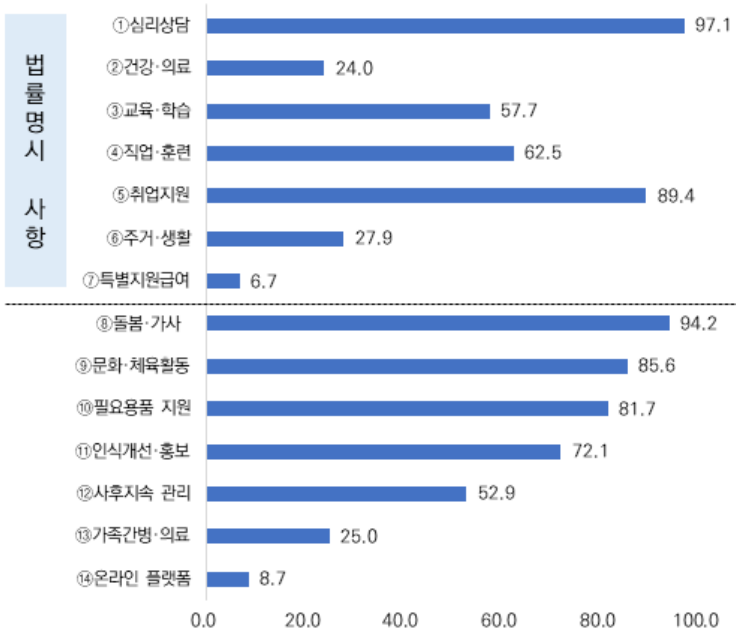


그림 IV-9. 조례의 지원사업 관련 조문 현황

특히 ‘특별지원급여’ 항목을 명시한 7개 조례 중,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 동구, 울산 울주군, 인천 동구, 전북 김제시 등 6개 지역 조례에서는 ‘수당’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돌봄가족의 범위를 연소 자녀까지 확장하여 양육 지원을 포함한

사례(광주광역시), 후원 연계, 동행 지원, 공공시설 이용 지원, 이동수단 지원 등의 특화 사업을 명시한 조례도 확인되었다.

5)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 관련 조문 현황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들은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조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반 조성)에서는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제25조(정책센터 설치), 제26조(전문기관 인증), 제27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과 정책센터 설치, 그리고 실천 현장에서의 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조례에서도 유사한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전체 104개 조례 중 101개 조례(97.1%)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97개 조례(93.3%)는 조례에서 명시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별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포함한 조례는 14개(13.5%)였으며, 그중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내용까지 조례에 포함하고 있었다.

협력체계와 관련해서는, 93개 조례(89.4%)가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을 명시하였고, 28개 조례(26.9%)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 또는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은 41개 조례(39.4%)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8개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광주 서구와 서울 동작구의 조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실무협의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기존 복지급여 체계 안에서 포괄하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검토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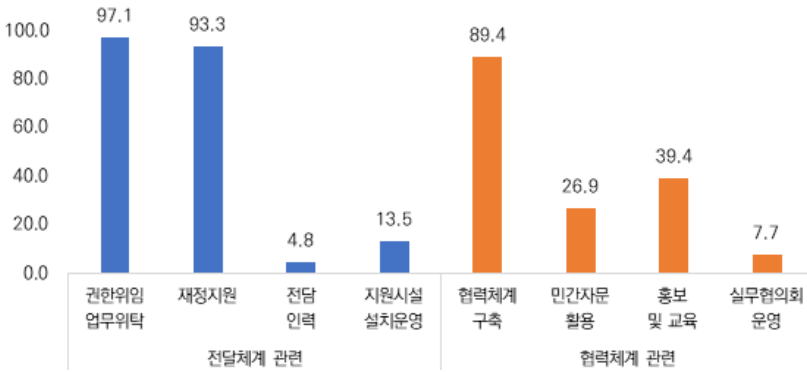


그림 IV-10. 조례의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 관련 조문 현황

5. 국내 정책 분석

1) 중앙부처 추진 정책

(1)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⁶⁶⁾

① 배경 및 개요

가족돌봄 청소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상정한 중앙부처 추진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신 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21.). 이 사업은 기존 복지 전달체계로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전담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시범사업은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가족돌봄 청년들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본인의 자립이 지연되고 빈곤의 대물림이 악순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9.19.). 사업의 핵심 목적은 권역별

66)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9.19.).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8.13.).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00호. “2024년 신 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공고(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취약청년 전담 공공 허브 역할을 수행할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 부담으로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13.).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되며,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총 9개 지역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에는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되어 취약 청년의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기관으로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울산), 충북기업진흥원(충북), 전북사회서비스원(전북)이 지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정식 개소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13.). 2024년 기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국비 3,403백만 원이며, 국비 70% 지원에 자치단체보조 30%의 비율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에는 2,094백만 원(자기돌봄비 1,248백만 원 포함)이 배정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21.).

② 전달체계 및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소)년’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13.). 이러한 대상자 정의 방식은 기존의 소득·재산 중심 복지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접근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21.).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담인력이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을 상시 발굴한다. 전문 인력은 상담을 통해 전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때, 선정 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 부재 등을 고려해서 선별하게 된다. 다만,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에 한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13.).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홈페이지]¹⁾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 **가족돌봄청(소)년이란?**
가족 사업장 이전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 **지원요건?**
① 만 13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
② 24~25년 사업장 지원 기간(연도) **2024년 12월** 까지 해당
③ 만 13~14세 미만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④ (가족돌봄) 중립소득 100%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⑤ 가구 내 가족돌봄(수당)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①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에 지급(연 200만원)
② 전담지원과 상담 요 자기돌봄지원 수당 필요 (중립소득 100% 이상)
③ (의존가족) 의료비용 서비스 연계
(환소) 5대 서비스 연* (※ 전담지원과 상담 요 서비스 결함)
* 안전, 용산, 주택, 장애 거주 지원 대상

▶ **신청방법**
① 사업장 대상자 현황은 본 온라인 신청과 제출하신 개인정보발령통지서를 통해 검토하여 통지받은 연락처로 별도 연락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② 사업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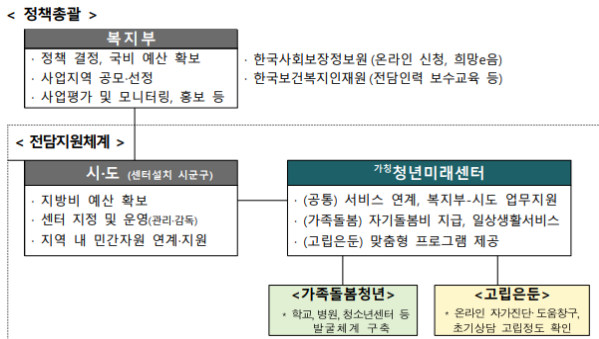
[가족돌봄청(소)년 시범사업 신청 안내문]²⁾

* 출처: 1)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www.mohw2030.co.kr/panel.asp> 에서 2025.7.23. 인출.
2)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s://capi.kmaresearch.co.kr/survey/20240265/index_1.asp에서 2025.7.23. 인출.

그림 IV-11.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홈페이지

나. 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총괄, 국비 예산 확보 및 교부, 시범사업 공모·선정,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전담인력 보수교육을 지원하며, 광역 시·도는 지방비 예산 확보 및 교부, 사업수행기관 지정·운영(관리·감독), 지역사회 자원 연계·지원 등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2024.2.).



출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2024.2.). 3쪽.

그림 IV-12. 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

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제 사업 수행 주체는 광역 시·도별로 지정된 '청년미래센터'다. 청년미래센터는 실제 사업 수행 주체로서 전담인력 채용,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집행 및 정산 보고, 사업 홍보 및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데, 센터별로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5명의 전담인력이 배정되고, 해당 전담인력이 '돌봄 코디네이터'로서 밀착 사례관리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13.).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청년미래센터의 기능 및 인력 구성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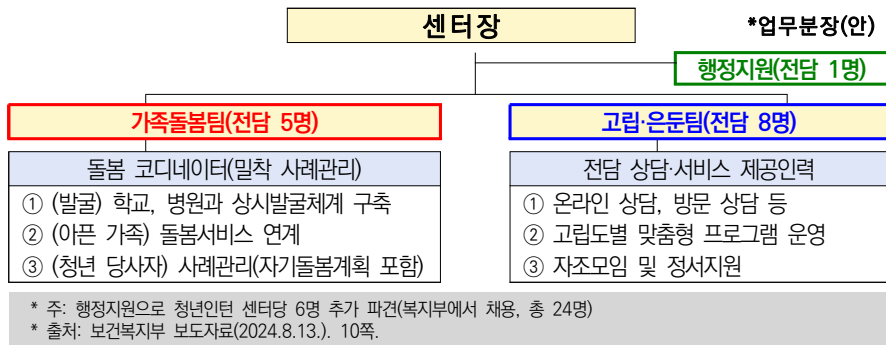


그림 IV-13. 청년미래센터 기능 및 인력 구성

다. 지원 서비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전담인력이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년 본인의 학업·일자리·정서 지원과 부양가족의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이 스스로 미래 계획(자기돌봄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심리적 지지와 계획 실천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13.).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표 IV-19.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 주요 지원 서비스

구분	주요 특징 요약
자기돌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자기계발에 투자하도록 지원하고자, 연 최대 200만원 한도의 자기돌봄비 지급(우리카드 先포인트로 지급) 자기돌봄계획에 따른 지급여부 월별 확인 대상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제공

구분	주요 특징 요약
돌봄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이 가족의 돌봄 수요에 맞춰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 식사 지원 등 재가 돌봄 의료 서비스 연계 이른 가족을 위한 돌봄지원사 파견 등으로 청소년의 간병 부담 분담
통합사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 사례관리자가 청소년 당사자의 주거법을 취업 장학금 등 맞춤형 지원을 종합 연계 청소년 본인마 지속 상담하여 중장기 자립계획(자립돌봄계획) 수립을 돕고, 실행과정에서 심리 지원 제공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8.13.) 내용을 표로 재구성.

③ 의의 및 과제

이 사업은 기존의 청소년·청년 대상 복지 전달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최초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소득·재산 중심의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피하여 돌봄 전담 여부 중심으로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환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취약청년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한 점 등도 진일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2025년 2월 기준 가족돌봄청년 1호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초기 성과가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30.),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청년정책’ 중심으로 설계되어 ‘청소년’은 정책대상에 온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가족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현실에 상당수 존재하고, 특히 연령이 어린 청소년일수록 더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3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의 배제, 돌봄 대상 가족과의 동거 요건(비동거 가족돌봄 배제), 가족 내 다른 성인 구성원 존재 시 지원 제외 등의 다소 엄격한 기준은 실제 가족돌봄 상황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떨어져 살면서도 주기적으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년이나, 형식적으로는 다른 성인 가족구성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의 사례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들은 정책의 포용성을 제한하고 새로운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향후 정책 개선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교육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직접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요 학생지원정책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포괄적 지원 대상 안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상술한 2가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교육정책의 틀 안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어떻게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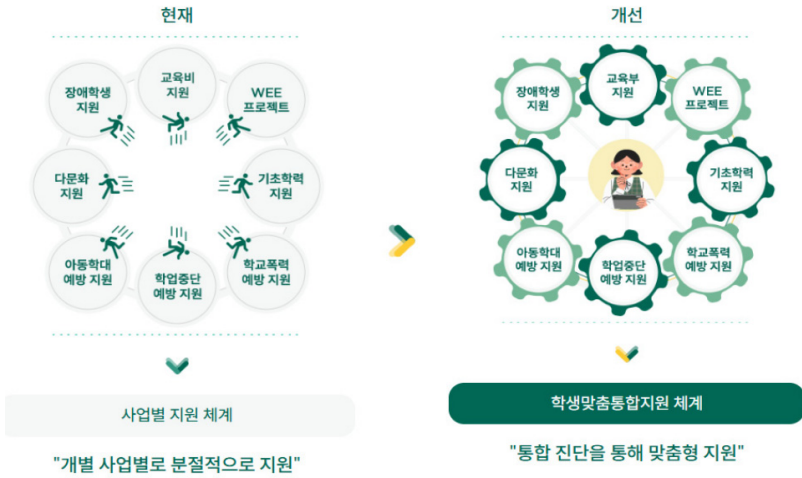
①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가. 배경 및 개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핵심 학생지원정책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과거에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서, 부서 및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지원 단절이 발생했으며, 각 기관 및 업무담당자 간 인식의 차이 등으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3-4).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롭게 설계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는 학생이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5.7.30.인출). 가족돌봄 청소년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 복합적 어려움의 전형에 해당한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습결손, 돌봄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사업의 목적 역시 ‘학생이 학습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전라남도교

육청, 2025),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황을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5), 8쪽.

그림 IV-14.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개선

나. 전달체계 및 지원 내용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전달체계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에 상당히 유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학교 단위의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등 다양한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한국교육개발원, 2025), 가족돌봄 청소년의 다양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는 잦은 지각이나 과제 미제출을 통해, 보건교사는 피로나 스트레스 증상을 통해, 상담교사는 심리적 어려움을 통해(한국교육개발원, 2025)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발굴된 가족돌봄 청소년에게는 교육복지안전망, Wee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교육 영역의 지원체계가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동 사업은 2026년 법 시행과 함께 전국 모든 학교로 확산될 예정이어서, 향후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유용한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시하는 지원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가진 복합적인 수요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 가정에,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은 돌봄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은 돌봄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겪는 청소년에, 긴급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의료 지원 등 연계는 위기상황에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IV-20.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영역(안)

영역	내용
학업 지원	• 기초학력 지원, 학업중단 예방(학업중단속려제, 대안교육(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진로 등
심리·정서 지원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 지원 등
이주배경 특수교육	• 이주배경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등
돌봄·안전·건강 지원	•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학생 건강개선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경제·생활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 제공,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등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5). 7쪽.

선도학교 예산 구성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맞춤 지원비(긴급지원비)’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발달을 위해 의식주·위생·건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물 또는 서비스 보충 지원(공공부조, 지역 내 자원 우선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해 생필품 전달, 학생과 병원에 동행하여 치료비 납부, 심리검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176).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의의 및 과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무척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학교 기반의 체계적 발굴, 지역사회 자원 연계, 2026년 전국 확산 등은 모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유리한 조건들이다.

무엇보다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에 있어 학교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가정 내 역할 특성 상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에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교사들의 일상적 관찰을 통해 조기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이 효과적인 발굴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임교사의 지속적 관찰, 보건교사의 건강상태 체크, 상담교사의 심리상태 파악 등 다각도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어, 발굴 측면에서는 다른 정책 대비 상당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관련 정책문서에서는 '가족돌봄 부담'이 명시적 지원 사유로 제시되지 않아, 교직원들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부족하다. 한국교육개발원(2025)이 개발·보급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이드북」에 따르면, 교직원이 교내 통합지원팀에 작성·제출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신청서(안)' 양식 중 '학생 기본사항'의 '가족현황'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선택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 여타 사례나 지원 사유에서는 가족돌봄이 구체적 항목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을 위한 체크리스트나 지표 개발, △교직원 대상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 교육 강화, △가족돌봄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개발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②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가. 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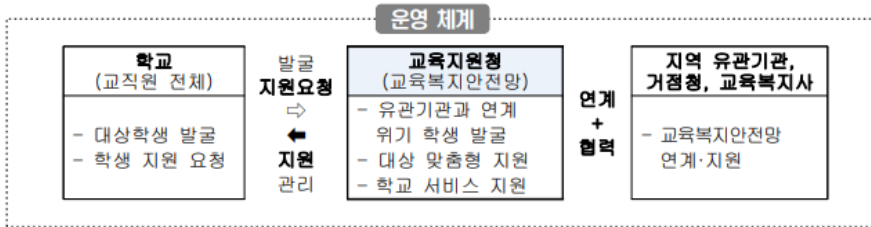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일컫는다(전라남도교육청, 2025: 11).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기본 생활이 곤란한 학생, △가정 내 학대·방임이 의심되는 학생,

△기초학력 부족·학습결손이 우려되는 학생, △그 밖의 긴급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전라남도교육청, 2025).

가족돌봄 청소년은 이러한 지원대상 기준에 복합적으로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방임 우려, 돌봄 부담으로 인한 학습결손, 가족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복지안전망이 주로 놓여준 지역의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족돌봄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높은 부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용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달체계 및 지원 내용

교육복지안전망의 전달체계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에 적합한 지역 밀착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학교 교직원 전체가 위기학생 발굴에 참여하며, 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같이 명확한 지원 기준이 없는 대상의 발굴과 지원에 유리하다.



* 출처: 전라남도교육청(2025), 12쪽.

그림 IV-15.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체계

교육복지안전망의 지원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필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들로 구성된다. 긴급생활지원(생필품, 조식·석식, 병원 진료 및 치료비, 영양제, 집수리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 가정에 즉각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심리·정서지원(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상담비)은 돌봄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에, 가족기능강화(위기가정 치유 프로그램,

가정방문, 가족상담·치료, 부모교육 등)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속한 가족 전체의 기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학습복지지원(교과학습 보충 교재, 진로활동 체험비, 진로상담비 등)은 돌봄으로 인한 학습 결손 보완에 효과적이다.

표 IV-21. 교육복지안전망 지원 내용 세부 사항

영역	내용
긴급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조식·석식, 병원 진료 및 치료비, 영양제, 집수리 등 ※ 생활필수품은 가능하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지급 금지
심리·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지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험·실습 재료 구입 •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상담비 지출
가족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정 치유 프로그램 • 가정방문, 가족상담·치료, 부모교육 등
학습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집 및 참고서 등 교과학습 보충을 위한 교재 구입 • 진로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습·실험 재료, 입장권, 체험비, 진로상담비 등 • 정서지원 권장도서,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각종 도서 구입 등 ※ 사설 학원비 및 인터넷 수강료 지원 금지

* 출처: 전라남도교육청(2025). 32쪽, “[붙임5]. 교육복지안전망 예산집행 기준” 표를 재구성.

특히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복합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과 연계하여 실시한 ‘월드비전 연계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은 교육복지안전망이 외부 자원과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 2025년 시범 운영하는 이 사업은 ‘돌봄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봄 행위를 수행하는’ 9세~19세 이하의 학생을 선정의 공통기준으로 제시하고, 세부 돌봄 유형 구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주돌봄자 청소년’을 신청 가능 자격으로 명시하였으며, 선정될 경우 주돌봄자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2025.5). ‘생계·돌봄·미래 영역 통합지원을 통해 돌봄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업 목적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핵심을 정확히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2.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한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월드비전 연계 사례

영역	내용																														
사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호자로서 장기간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계·돌봄·미래 영역 통합지원을 통해 돌봄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 공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9세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족돌봄 청(소)년 돌봄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봄 행위를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 																														
돌봄 유형 구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기준에 2개 이상 해당하는 주돌봄자 청(소)년만 신청 가능 - 가족의 입원, 질병 등으로 신체적 돌봄 및 정신 건강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 가족의 생계 활동 불가로 생계 활동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부모 없이 형제·자매의 일상 생활 영위를 돕고 있는 경우 - 요리, 세탁, 청소 등 아픈 가족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전적 지원: 주돌봄자 1인 200만원 지원 생계/ 돌봄/ 미래 영역 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신청 가능한 통합 지원 미래 영역 필수 신청 (최소 1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주돌봄자 기준 상한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생계</th> <th colspan="2">돌봄</th> <th colspan="2">미래(필수)</th> </tr> <tr> <th>항목</th> <th>최대 상한액</th> <th>항목</th> <th>최대 상한액</th> <th>항목</th> <th>최대 상한액</th> </tr> </thead> <tbody> <tr> <td>생활비</td> <td>100만원</td> <td>의료비</td> <td>200만원</td> <td>교육비</td> <td>200만원</td> </tr> <tr> <td>주거비</td> <td>200만원</td> <td>간병비</td> <td>200만원</td> <td>삼시상담비</td> <td>100만원</td> </tr> <tr> <td>주거환경 개선비</td> <td>200만원</td> <td>-</td> <td>-</td> <td>자기관리비</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생계		돌봄		미래(필수)		항목	최대 상한액	항목	최대 상한액	항목	최대 상한액	생활비	100만원	의료비	200만원	교육비	200만원	주거비	200만원	간병비	200만원	삼시상담비	100만원	주거환경 개선비	200만원	-	-	자기관리비	100만원
생계		돌봄		미래(필수)																											
항목	최대 상한액	항목	최대 상한액	항목	최대 상한액																										
생활비	100만원	의료비	200만원	교육비	200만원																										
주거비	200만원	간병비	200만원	삼시상담비	100만원																										
주거환경 개선비	200만원	-	-	자기관리비	100만원																										

* 출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2025.5). 2-3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다. 의의 및 과제

교육복지안전망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취약계층 학생’으로 포괄하여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부터 가족기능 강화까지 포괄하는 지원 영역, 지역 밀착형 전달체계, 외부 자원과의 연계 사업과 같은 특화 모델 개발 등은 모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유리한 조건들이다. 특히 용인교육지원청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월드비전 연계 사업’은 기존 교육복지안전망 틀 안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적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통해 단순히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들의 특성과 필요에 특화된 지원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확산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복지안전망의 일반적 지원대상 기준에는 가족돌봄 부담이 명시되지 않아, 용인교육지원청 사례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지침에도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3)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2023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수용자 자녀, 자살 사고사 유족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채무상속 위기청소년 등과 함께 ‘신 소외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발굴 지원을 정책과제로 포함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관계부처 합동, 2023).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인지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정책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구체적인 사업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제7차 기본계획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과제로 제시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정책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청소년안전망과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섭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인식 변화와 현실적 한계를 바탕으로, 성평등가족부의 기존 청소년 정책과 가족 정책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

가. 배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이다(여성가족부, 2025). 운영 주체는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이며,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이 주된 사업 내용으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 관리 모니터링도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25).

가족돌봄 청소년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경험하는 상황(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바로 청소년안전망이 대응해야 할 '위기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청소년안전망 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나. 전달체계 및 지원 내용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사업운영 지침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를 담당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사업을 총괄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실제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진행, 청소년안전망 사례회의 운영 지원, 긴급대응체계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25: 72).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위한 위기청소년 발굴기관 및 연계기관, 그리고 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의료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치유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비롯해, 가정지원까지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강조된다(여성가족부, 2025).

표 IV-23.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

영역	내용
위기청소년 발굴 (발굴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발굴: 청소년상담1388, 아웃리치 • 상담복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e아동행복지원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교육: 학교, 시·도 교육청 및 지원청 • 범죄·비행: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 의료: 공공보건 의료기관(보건소 등) • 노동: 지방고용노동청 등 • 여성: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연계 ↓ ↓ 의뢰

영역	내용
청소년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청소년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구성 등 지역 내 청소년안전망 운영 총괄 - 긴급대응 체계 운영 - 위기청소년특별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통합사례회의 등 지원 - 긴급상황 시 심리외상지원 - 위기청소년 연계서비스 지원 - 고위기청소년 대상 직접 상담 서비스 - 고위기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연계 ↓ ↑ 협조

연계 기관 및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또래상담(학교폭력),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 사회적 보호: 쉼터(가출), 긴급구조 일시보호, 청소년자립지원관(가출), 청소년회복지원 시설 •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긴급지원(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임대주택 지원 • 교육 및 학업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업중단) • 자활지원: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근로보호, 취업지원), 각종 직업 체험 •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긴급지원(법률지원 등) • 의료지원: 건강검진(학교밖), 공공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 병원 등) •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체험시설 • 치유지원: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가정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부모문제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성문제 지원: 성문제상담(1366),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	---

* 출처: 여성가족부(2025). 73쪽 그림을 표로 재구성.

청소년안전망 운영체계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심의실무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제7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체계 마련’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24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388 청소년상담전화를 통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역할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비대면 상담(전화·문자 상담, 청소년

포털 온라인 상담)은 이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지원 방식이 될 수 있다. 상담 지원 영역 측면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겪는 돌봄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또래관계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상담 과정에서 가족돌봄 부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에 특화된 상담을 제공하는 체계는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동반자’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안전망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처럼 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에게 유용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정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즉시적 필요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학업지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상담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돌봄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심리클리닉은 향후 가족돌봄으로 인한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은 제7차 기본계획의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확대 계획과 연계되어, 향후 가족돌봄 청소년의 장기간 돌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제공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 의의 및 과제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공식적 정책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이 청소년복지 영역의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기존의 청소년안전망 체계가 가족돌봄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섭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국 240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한 직접 지원, 집중심리클리닉을 통한 전문 치료 등이 향후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책대상으로의 인정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발굴 기준과 지원 매뉴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과제이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발굴 기준이나 지원 프로토콜에는 가족돌봄 부담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상담사들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식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도구와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가. 배경 및 개요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2024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책 방안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고, 보유 자원의 한계로 인해 정책지원 체계로 유입되지 못하거나 소외되기 쉽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형태에 대한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관계기관 합동, 202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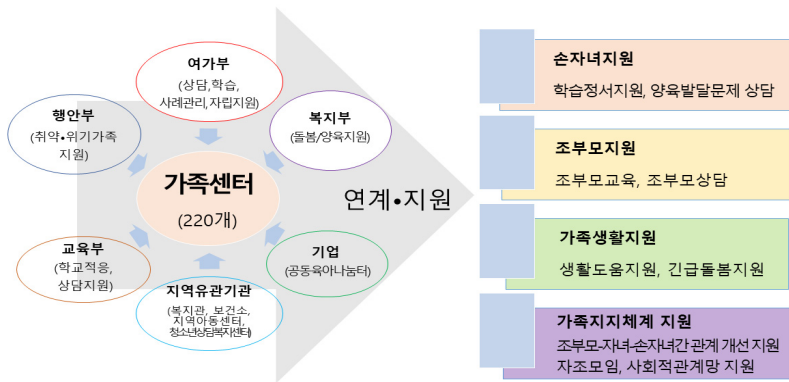
해당 내용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지만, 가족돌봄 청소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조손가족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조부모 돌봄, 가사노동 등의 가족돌봄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형적인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기에는 5대 중점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 가족돌봄 청소년에 해당하는 ‘손자녀 지원’이 별도의 중점과제로 설정되어 있다(관계기관 합동, 2024.12).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시된 조손가족 실태조사와 간담회에서 수집된 ‘조부모(본인)가 아프거나 손자녀가 아플 때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필요’, ‘흩어져 있는 정부 서비스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 필요’ 등의 현장 목소리(관계기관 합동, 2024.12)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전달체계 및 지원 내용

조손가족 지원방안의 전달체계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로 구성되며,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가족센터가 조손가족 발굴의 허브 역할을 하고,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있어 이 체계의 장점은 가족 단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별 청소년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며,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조손가족 청소년 정서 지원 강화'라는 방침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안전망 활용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4.12). 8쪽.

그림 IV-16. 조손가족 대상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조손가족 지원방안의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가족돌봄 손자녀 지원 강화 영역에서 제시된 긴급돌봄 서비스와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2025년 130개 시·군·구로 확대될 예정이며, 일상돌봄 서비스는 '조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18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가족돌봄 청소년을 직접적 대상으로 한다(관계기관 합동, 2024.12).

손자녀 심리·정서 지원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연계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정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며, 학령기 아동

학습지원 강화에서는 조손가족 아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꿈사다리 지원대상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돌봄으로 인한 교육 결손 문제에 대응한다(관계기관 합동, 2024.12).

표 IV-24. 손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세부 내용

과제명	세부 내용
조손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습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조손가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조손가족 등 저소득층 우수 학생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24년 중고등→'25년 초등까지) 학업 중단 이후에도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교육청, 경찰청, 상담기관 등) 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상담·교육 지원 강화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손가족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필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및 청소년안전망 내 필요 서비스 연계 -가족센터와 청소년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조손가족 청소년 지원 강화
가족돌봄 손자녀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조손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대상자(19세 이상,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령 무관)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3~39세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4.12). 14~15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다. 의의 및 과제

'조손가족 아동 지원방안'은 성평등가족부 정책 중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가장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며,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가족돌봄청소년 정책 대상 인정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제시한 것은 성평등가족부 내 청소년 정책과 가족 정책 간의 연계를 보여주며,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 체계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조부모 지원을 통한 간접적 효과와 손자녀 직접 지원을 통한 직접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효과적 모델로 기능한다.

그러나 정책의 확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도 존재한다. 현재 조손가족 지원방안은

조손가족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가족 형태의 가족돌봄 청소년(예: 한부모가족, 일반가족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차 기본계획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정책대상으로 인정한 만큼, 조손가족 지원방안에서 개발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모델을 다른 가족 유형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

(1)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① 배경 및 개요

서울시는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원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포용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지자체 사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돌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3.7.31.). 전담기구 설치의 핵심 배경은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용어의 생소함과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인식이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표적집단면접(FGI)에서도, 면접을 통해 본인이 가족돌봄 청년임을 알게 된 참여자가 대다수였다고 언급된 바 있다(서울정책 아카이브, 2024.5.30.).

서울시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지원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것이다. 초기에는 14세~34세로 시작하였으나, 9세~34세로 하한 연령을 낮추어 저연령대 청소년도 지원 대상으로 포섭한 데 이어, 2024년 5월 19일 조례 개정을 통해 9세~39세로 상한 연령을 확대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4.5.19.). 이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39세로 규정함에 따라 일치시킨 것이며, 가족돌봄 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명칭도 ‘가족돌봄 청년’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4.5.19.).

② 전달체계 및 지원 내용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전담기구로 두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를 제공한다(서울시 보도자료, 2023.7.31.). 발굴 및 연계 체계는 동주민센터, 학교,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유관기관에서 가족돌봄 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발견되면 전담기구로 연계하고, (1차) 초기상담 및 주요정책 안내, (2차) 개별 심층상담 및 정책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며,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제공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서울시 보도자료, 2023.7.31.).

표 IV-25.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주요 내용

세부과제	내용
공공·민간 분야 활용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병원 사회사업팀, 자치구, 서울시 유관부서 (학생) 교육청, 학교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년)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전담기구를 활용한 대상자 개별 관리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구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상담(기본정보), 2차 상담(돌봄생활, 소득 등) 후 정책 안내 및 연계 가족돌봄청년 사후관리,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등
복지·청년정책을 연계·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청년정책을 연계·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지원정책 및 기관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지원사업 및 기관 - (사업) 돌봄청년, 돌봄대상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기존 복지정책망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 자치구별 사례관리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margin: -10px -10px 10px -10px;">민간자원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H,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 분야 민간자원 활용 * 굿네이버스, 효림의료재단, 복지법인 기아대책 등 연계·활용 </div> </div>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소통(청년몽땅정보통, 복지포털) 오프라인 활동(청년활동지원센터 등)

*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24.7.31.). 7쪽을 재구성.

지원 내용은 기존 정책 연계와 민간자원 활용으로 구분된다. 2023년 사업 모니터링 결과,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한 정책과 서비스는 생계(29.5%), 돌봄(14.0%), 의료(12.3%), 심리(9.8%), 문화(8.2%), 주거(8.2%), 교육·취업(4.9%), 금융(3.3%)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정책아카이브, 2024.5.30.). 민간자원 활용 측면에서는 LH(주택지원), 민간 복지법인(간병, 생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서울시 보도자료, 2023.7.31.), 2024년에는 4억 8천만원 규모의 민간 후원 자원을 연계하여 생계·주거·의료·학습비 등을 지원하였다(서울정책아카이브, 2024.5.30.).

연령 확대에 따른 맞춤형 접근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스스로 가족돌봄 청(소)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를 전국 최초로 개발했는데,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청년용과 청소년용을 각각 눈높이에 맞게 제작하였다(서울정책아카이브, 2024.5.30.). 또한 간편인증이 어려운 9~13세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별도의 접근 경로를 마련하여 전담기구로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서울시 청년포맷정보통, 2025.7.28. 인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합니까?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청이 있는 자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청장년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스스로 신청할 능력이 있는 상황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

신청은 본인 및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가족돌봄청년
후원자 연결
생계·주거·의료·학습비
지원 가능

가족돌봄청년 체크리스트
1~5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미만입니까?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3. 본인이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며, 본인 신청이 '가족돌봄' 또는 '신청'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 4. 본인이 현재 신청한 가족돌봄 유형이 '가족돌봄'입니까?
- 5. 본인이 가족 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 6. 본인이 가족 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 7. 본인이 가족 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 8. 본인이 가족 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 가족돌봄지원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 가족돌봄지원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 가족돌봄지원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받으려면?

문의시간 | 평일(월~금) 09:00~19:00
주말(토·일) 09:00~19:00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팀
@youngcare_seoul

[청년용 체크리스트]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합니까?
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청이 있는 자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스스로 신청할 능력이 있는 상황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

신청은 본인 및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가족돌봄청년
후원자 연결
생계·주거·의료·학습비
지원 가능

가족돌봄청년 체크리스트
1~5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미만입니까?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3. 가족 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 4. 신청서 작성 후 가족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 5. 신청서 작성 후 가족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 6. 신청서 작성 후 가족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 7. 신청서 작성 후 가족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 8. 신청서 작성 후 가족돌봄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했습니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 가족돌봄지원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 가족돌봄지원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 가족돌봄지원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받으려면?

문의시간 | 평일(월~금) 09:00~19:00
주말(토·일) 09:00~19:00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팀
@youngcare_seoul

[청소년용 체크리스트]

* 출처: 서울복지재단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체크리스트. <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342/view.do?nttId=6390666&menuNo=201655> 에서 2025.7.28. 인출.

그림 IV-17.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가진단표

③ 의의 및 과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의 가장 큰 의의는 전국 최초의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한 선도적 모델 제시이다. 이를 통해 2024년 4월 말 기준, 총 293명의 가족돌봄 청년에게 62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2,765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서울정책아카이브, 2024.5.30.).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전담기구 재이용 의사’가 평균 87.4점, ‘추천 의향’은 평균 86.2점, ‘전반적 서비스만족’은 평균 79.3점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서울정책아카이브, 2024.5.30.).

지원대상 연령의 단계적 확대는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4세~34세에서 시작하여 9세~39세로 확대함으로써,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당사자 네트워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령을 확대한 것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정책의 확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전담기구의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1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전체의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민간자원 연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다른 지역으로의 모델 확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원대상 연령은 청소년 연령층까지 포섭하고 있지만, 사업명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어, 청소년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 광주광역시 ‘일상돌봄 서비스 및 자립기반 취약청년 대상 사업’

① 배경

광주광역시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비교적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로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가족돌봄 청(소)년처럼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2-track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5개 자치구 모두가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3년 10월부터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3.9.21.). 또한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자녀, 가족돌봄청년 등을 포함한 ‘자립기반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 진로 역량 강화,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해시태그 멘토링 사업」을 2025년부터 운영함으로써, 가족돌봄 청년이 돌봄 부담을 넘어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5.5.18.).

② 전달체계 및 사업 내용

2023년부터 시행된 일상돌봄 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자치구 심사와 선정을 거쳐 바우처를 발급하고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기준 국비 4억 6,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방비 2억이 투입되어 총 6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었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3.9.21.).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대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하여 부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허준기, 김윤영, 박재형, 2024: 55).

사업 내용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특화 서비스로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소셜 다이닝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특히 돌봄필요 청년/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간병 교육 서비스,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등도 가능하다(허준기, 김윤영, 박재형, 2024: 55).

표 IV-26.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내용

구분	내용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돌봄, 가사, 동행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
특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병원 동행 서비스 • 심리 지원 서비스 • 휴식 지원 서비스 • 소셜 다이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간병 교육 서비스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출처: 허준기, 김윤영, 박재형(2024). 55쪽, [그림 2-4] 내용의 일부를 표로 재구성.

한편, 2025년부터 운영되는 ‘해시태그 멘토링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청년,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기반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들이 정서적 고립, 정보 부족, 진로 혼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5.5.18.).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운영 첫 해에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 20명을 선발하여 전문가 5명과 4:1 비율로 매칭해 약 5개월 간 총 20회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5.5.18.).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는 진로 설정, 학업·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을 포함한 자립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멘토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코칭, 진로 탐색 등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외부 자원 연계도 돕는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5.5.18.). 앞서 살펴본 일상돌봄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층 및 청년층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해시태그 멘토링 사업’은 청년층의 필요를 고려한 좀 더 차별화 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③ 의의 및 과제

광주광역시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결합하여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해시태그 멘토링 등 자립 기반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 완화 이후의 사회진입 경로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주요 사업이 가족돌봄 청(소)년만을 위한 독립 사업이 아닌, 일상돌봄 사업 내 일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가족돌봄 수행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특성으로 인해 잠재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자치구 및 수행기관 간 사례 관리 역량 차이로 인한 서비스 질 불균형 가능성도 존재한다.

3) 민간기관 추진 사업

(1) 배경

민간 부문에서도 돌봄 부담을 지닌 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사업은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그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나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실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기관들은 지역 단위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경제·정서·교육·진로 등 다차원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다.

특히 민간기관들은 정부의 법률·제도 기반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정책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민간 부문의 선도적 개입은 정부 정책이 시작되기 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했으며, 이후 제도화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 곳으로는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2) 사업 내용

① 월드비전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월드비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청년 중에서 가족 내 주요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질병·장애로 인한 장기간 돌봄 제공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자립정보온 홈페이지, 2025.8.14. 인출). 지원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학교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과 사례 발굴을 통해 이루어진다(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2025.5). 신청서는 사회복지사가 작성하도록 하여 개인이 몰래 어려움을 감추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사례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월드비전 카드뉴스, 2025.8.14. 인출).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교육복지 안전망, 지역 아동·청소년복지기관, 지자체 등이 연계되어 숨은 대상자 발굴에 협력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생계, 돌봄, 미래 준비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생계 지원에는 생활비,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가 포함되고, 돌봄 지원은 의료비, 간병비 등 가족구성원 돌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해당한다. 미래 준비 지원에는 교육비,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 등 청소년 본인의 학업·정서·진로 지원이 포함된다. 각 영역별 지원은 개인 상황에 따라 주돌봄자는 최대 300만원, 부돌봄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월드비전 카드뉴스, 2025.8.14. 인출).

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가족돌봄 아동지원사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아동지원사업’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 보호자의 질병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호자를 돌보고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안내문, 2025.8.14.인출).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돌봄, 교육, 건강, 주거 관련 현금 지원으로, 1가구 당 10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안내문, 2025.8.14. 인출).

표 IV-27. 초록우산 ‘가족돌봄 아동지원사업’ 지원항목 예시

구분	지원항목 예시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생계비, 생활용품구입비 • 보호자 가사돌봄서비스(간병비, 장기요양급여, 가사서비스비, 돌봄서비스비), 보호자 의료비, 보호자 보장구 구입비, 장애보호자 이동비용 • 문화생활지원(취미, 여가활동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및 예체능 학습비(학원, 학습지, 온라인 강의 등) • 학용품구입비, 교재비, 도서구입비 • 자격증 취득비, 자격증 취득 관련 응시료, 자격증 취득 관련 프로그램비 및 교육비 • 학교 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수술비 및 치료비, 치과 치료비 등) •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 일반 전월세 보증금 • 기타: 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이사비용, 필수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가구(아동용 책상, 침대 등)

*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다품: 다함께 품다’ 사업 안내문(2025.8.14. 인출).

(3) 의의 및 한계

민간기관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은 정부 제도 마련 이전부터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맞춤형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 정서 회복, 자립역량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로 이들 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협력 구조는 대상자 발굴과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장학금·심리상담·진로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며, 다수 사업이 기업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안정적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6.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정책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 주요국(영국, 호주, 일본)의 법령 및 정책 체계, 국내 기존 유관 법률 8개와 신규 제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의 정책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포괄성 확보

첫째, 정책 대상 정의와 관련하여 청소년 연령층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5년 2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 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연령 하한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병합된 10개 발의안 검토 결과, 대부분이 청년(19~34세) 중심으로 설계되어 청소년 연령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취약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돌봄 관련 정책 논의가 청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청소년이 주변화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조례와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감지된다. 조례 분석 결과,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9~24세)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한 조례는 84.4%에 그쳤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13세 이하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명칭도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으로 ‘청년’에 방점이 찍혀 있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9~18세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돌봄 병행의 이중 부담이 크고, 발달 단계상 정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하위법령 설계 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9~24세)을 정의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홍보 전략·서비스 설계 등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성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돌봄 상황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영국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범주를 신체적 돌봄, 가사 관련, 정서적 지원, 형제자매 돌봄, 행정 및 가계 업무 등 5개 범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돌봄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돌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이 있다.

조례 분석 결과에서도 지자체별로 가족돌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책 대상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서의 혼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무 현장에서 대상자 판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가족돌봄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시행령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대상자 판별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13세 이상 연령 조건, 동거 요건, 성인 가족구성원 존재 시 제외 등의 제약 조건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떨어져 살면서도 주기적으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년이나, 형식적으로는 다른 성인 가족구성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의 사례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은 정책의 포용성을 제한하고 새로운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의 배제는 연령이 어린 청소년일수록 더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개선 과정에서 가족돌봄 상황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 돌봄 여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제정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요건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방식의 내실화

첫째, 경제적 지원의 적정성 확보 및 지급 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는 자기돌봄비로 연 200만원을 일시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가와구치시의 '영케어러 응원금'은 초·중학생에게 월 5,000엔, 고등학생에게 월 15,000엔을 본인 명의 계좌로 정기 송금하고 있어 지급 방식과 금액 수준 측면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금 방식은 긴급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나, 매월 지속되는 돌봄 현실을 고려할 때 정기적 지원에 비해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 1회 지급 후 나머지 기간 동안 지원 공백이 발생하며, 청소년이 예측 가능한 수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 정기 지급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돌봄 시간·강도·연령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수당'과 같은 지자체 지급 수당과 보건복지부 자기돌봄비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지방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조정 메커니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및 자립 역량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은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영국은 Young Carers Festival 등 포레 교류 프로그램을, 일본재단은 정서적 지원 활동과 포레 커뮤니티 형성을, 호주는 개별 정서 상담 및 포레 지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 책임, 학업, 포레관계의 중첩된 부담 속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의 경우 조례 분석 결과 대다수의 조례가 심리상담, 취업지원, 문화체육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의규정이며, 자원·인력 조항 포함율이 낮아 실행력 담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월드비전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민간기관은 생계·돌봄-미래의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하여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 다각도의 접근을 실행해 왔으며, 이는 심리·정서적 안정과 장기적 자립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례의 심리·상담 조항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원·인력 조항과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영케어러 코디네이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한 것처럼 전담 인력에 심리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민간기관의 노하우를 정부 정책에

통합하며, 또래 지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고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립 이후까지 연계된 지속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지원 항목의 포괄성과 개별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례 분석 결과, 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한 조례는 97.1%로 대부분의 조례가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었으며, 조례당 평균 7.4개의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교육, 건강, 주거, 문화, 자립 등 다영역에 걸친 복합 지원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포괄적 지원 항목의 나열만으로는 개별 청소년의 상황에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영국의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모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돌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영향 전반을 검토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체계를 도입하여, 청소년 개인의 돌봄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정책 실행체계 및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

정책 실행체계 및 전달체계 측면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 제시가 필요하다. 조례 분석 결과,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 지원 항목, 계획 수립 주기 등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지역 간 정책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 조례안에는 법정 연령 기준, 가족돌봄 상황의 구체적 정의, 필수 지원 항목, 강행규정 중심의 계획 수립 체계, 재원·인력 확보 조항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조례안 공유를 통해 지역 간 정책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대상자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 발견 및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협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등 학교 내 전문 인력을 통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중심 발견 체계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중심의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교사,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등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기존 교육 분야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에서 발견된 청소년을 청년미래센터 등 지역 내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영국의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모델처럼, 발굴→진단→계획→연계→평가의 단계별 체계를 마련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 분석 결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을 명시한 조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다기관 협력 기반의 통합 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다기관 협력을 위한 정보연계 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기존 법률과의 연계 및 제도 간 정합성 제고

기존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유관 법률과의 조정 및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8개 기존 유관 법률 분석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법률이 확인되지 않았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경우 위기청소년 개념은 존재하나 가족돌봄은 위기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은 정책 주체로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기존 법률 체계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정법 시행과 함께 기존 유관 법률과의 연계 지점을 명확히 하고, 가족돌봄 수행 주체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유형에 ‘가족돌봄 수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 기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 분석에서 일부 지역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한 사례가 확인된 바, 이러한 모델의 확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 간 중복 지원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정법에서 소득 요건 등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하위법령 설계 시 기존 유관 법률의 지원 기준과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 기준, 연령 기준, 지원 내용 등에서 제정법과 기존 법률 간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조례 분석에서 나타난 지자체별 상이한 연령 기준과 지원 내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자가 법률 간, 제도 간 틈새에 놓이거나 중복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정책 확산 및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의 확산 및 지속가능성 확보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시범사업의 점진적 확산이 요구된다. 현재 4개 광역(인천·울산·충북·전북)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점진적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 측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어떤 지원 항목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었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적절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간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국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인력·인프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복지·교육·청소년·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복지·교육복지·청년정책·사회보장정책이 교차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각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영국의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일본의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협업, 호주의 연방-주정부-민간 협력 모델 등은 모두 부처 간, 정부 간, 공공-민간 간 협력을 제도화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민간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족돌

봄 청소년이 학교에서 발견되면 지역 내 지원체계로 연계되고, 필요시 의료·주거·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사례관리 표준화, 다기관 협력 프로토콜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V-18]에는 이 장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18. 국내·외 법령 및 정책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개선 방향

○ — 제5장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 2. 가족돌봄 경험 기본 실태
- 3. 학업 및 근로 현황과 가족돌봄의 영향
-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 5.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 6.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
- 7. 선행조사와의 비교
- 8. 소결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의 개발

(1) 조사내용의 개발 절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개발되었다. 제II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분석틀을 조사설계의 기본 토대로 하여, 생태체계 이론, 아동권리 기반 접근, 그리고 세부 분석이론들이 조사영역과 문항 개발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론적 기반 위에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초안을 도출하고, 연구진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유관 분야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통해 조사 영역과 조사항목(안)의 적절성을 검증하였으며,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연구진과 조사 분야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조사표(안)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승인번호 202505-HR-고유-010). 조사내용 설계 절차는 [그림 V-1]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67) 5장은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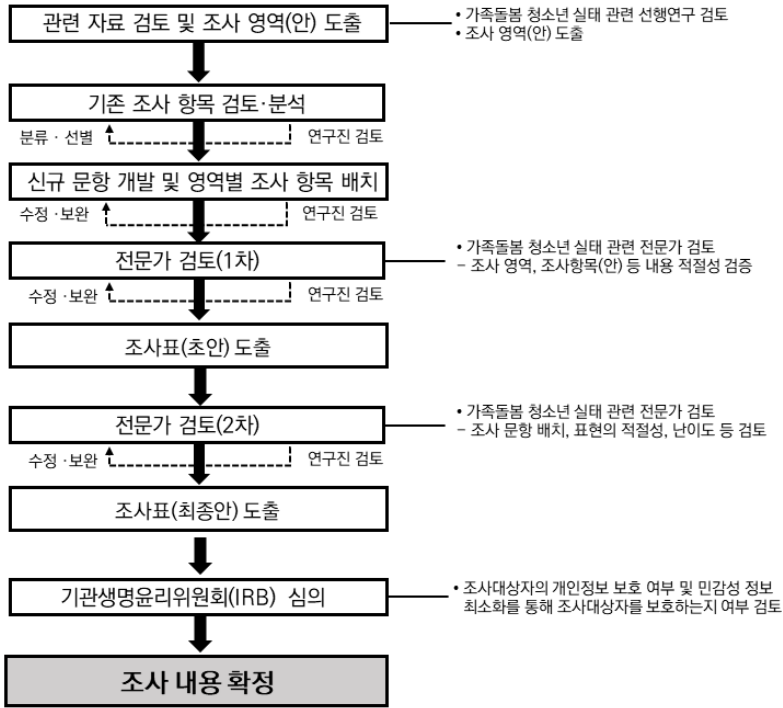


그림 V-1. 조사내용 설계 절차

(2) 조사내용의 구성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유관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서 제II장에서 정리한 이론적 분석틀에 기반하여 △사전 질문, △돌봄 경험 및 어려움,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욕구,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일반적 특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사전 질문]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기본 특성과 가족돌봄 대상자 유무, 돌봄 수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을 정의하고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생태 체계 이론의 미시체계 내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토대가 된다. [돌봄 경험 및 어려움] 영역에서는 ‘역할 긴장 이론’에 기반하여 돌봄 실태,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학업·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학생 역할과 돌봄 제공자 역할 간의 갈등과 과부하를 측정하여 발달권 침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욕구] 영역에서는 현행 지원 정책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지지' 이론의 관점에서 필요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의 참여권 관점에서 당사자의 지원 욕구를 직접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영역에서는 '회복탄력성 이론'을 적용하여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과 보호 요인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생애 주기 관점'에서 청소년기 돌봄 경험이 장기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발달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 영역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상술한 이론 기반의 조사설계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의 다층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정책 개입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V-1]에는 조사내용 설계에 반영된 이론적 프레임과 그에 따른 조사항목 설계 구조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V-1. 이론적 분석틀과 조사항목의 연계

이론적 분석틀		주요 조사항목
생태체계 이론	미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구성 현황: 가족구성원, 돌봄 대상 가족 돌봄 기본 실태: 돌봄 시작 시기, 주돌봄자 여부, 돌봄 시간, 돌봄 활동 내용 학업 현황: 재학 중인 학교급, 학교/일 병행 여부 돌봄 대상자 특성: 기능 제약 수준, 돌봄 필요 이유
	중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탐색 경험: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 탐색 여부, 정보 접근성 학업 지장: 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 경험, 학업 중단 의향 지원 자원 연계: 가족돌봄에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외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가족돌봄 관련 지원 서비스 인지, 일상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돌봄서비스 경험: 6개 돌봄 서비스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비용 부담 생활 복지 지원 수혜 경험: 8개 분야별 지원 수혜 여부, 도움 정도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거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태도: 가족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향후 지원 욕구: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 의향, 지원 거부 이유 가구 배경 특성: 가구 소득, 수급자 여부, 부모 국적
	시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시작 연령: 가족돌봄을 시작한 연령, 돌봄 기간 진로 영향: 돌봄으로 인한 진로/취업 준비 어려움 생애 변화: 연령별 돌봄 경험 차이

이론적 분석틀		주요 조사항목
아동 권리 기반 접근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 인식, 신체 건강 유지 어려움 개인 시간: 본인 시간의 충분성, 필요한 개인 시간 경제적 부담: 생활비 마련 어려움, 생계 지원 부담감 돌봄 어려움: 신체적 피로, 정신 건강 유지 어려움
	발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 지속성: 학교 생활 유지 어려움, 학업/근로 중단 의향 진로 준비: 진로 목표 및 자신감, 진로 준비 정도 문화여가: 문화여가 활동 어려움, 개인 시간 활용 희망 내용 사회적 관계: 친구들과 어울리기, 단체 활동 참여 어려움
	보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어려움: 돌봄 방법 모름, 관계에서의 어려움, 역할 분담 갈등 정서적 지지: 나를 돌봐줄 어른 부재, 우울 정도 과도한 부담: 돌봄 부담감, 피로감, 화남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필요성: 돌봄 지원, 복지 지원, 진로·자기계발 지원 필요성 개인 욕구: 개인 시간 활용 희망 내용, 필요한 지원 유형 의견 반영: 향후 지원 의향, 서비스 지원 거부 이유
세부 분석 이론	역할 긴장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갈등: 학생과 돌봄 제공자 역할 간 충돌 돌봄 부담: 돌봄 부담, 돌봄으로 항상 피곤 생활 중심성: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짐
	생애 주기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계획: 돌봄으로 인한 미래 계획 어려움 진로 영향: 진로 준비가 어려운 이유, 진로 확신 정도
	회복탄력성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태도: 내가 원해서 가족을 돌봄, 돌봄이 매우 중요함 진로 발달: 진로 설계 역량, 진로 확신 강점 요소: 주돌봄자가 된 이유 중 긍정적 동기
	사회적 지지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지 자원: 가족돌봄에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정보 지지: 지원 정보 인지 경로, 정보 탐색의 용이성 제도적 지지: 각종 지원 수혜 경험, 서비스 도움 정도 지지 공백: 나를 돌봐줄 어른 부재, 지원 미이용 사유

(3) 전문가 검토

① 전문가 검토 개요

선행연구 검토와 여러 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거쳐 작성한 설문지 초안에 대해서 7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 측면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연구 또는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학계/현장 전문가 4인을 선정하였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 조직 대표도 검토위원으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문항구성 등 조사의 형식과 관련한 검토를 위해 청소년 대상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분야 전문가 2인을 포함하였다.

표 V-2. 전문가 검토 참가자

구분	비고	
내용전문가 (5인)	전문가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연구 수행 복지분야 연구 전문가
	전문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연구 수행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복지분야 연구 전문가
	전문가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 담당자 아동복지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전문가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 담당자 아동복지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전문가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 당사자 조직 대표 및 관련 저서 집필
조사전문가 (2인)	전문가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관 실무책임자 청소년 대상 다수의 설문조사 실사 운영
	전문가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관 자료수집 실무담당자 청소년 대상 다수의 설문조사 및 웹조사 실사 운영

② 문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전문가 검토 결과, 스크리닝 문항, 돌봄 활동 유형, 주돌봄자 개념, 서비스 인지와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검토 의견으로는 스크리닝 문항 보완, 돌봄 시간 측정 방식의 다양화, 돌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진로 설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 추가를 비롯해, 선택지 구성 시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의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 문항 구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조사문항(안)을 개선하였다. 전문가 검토의 주요 의견과 그에 대한 반영 방안을 <표 V-3>에 정리하였다.

표 V-3. 전문가 검토 의견 및 반영 방안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사전질문 (스크리닝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는 언어적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 수정 및 돌봄 예시 보완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대상가족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대상가족에 대한 동거여부와 돌봄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설문결과와 충분한 해석을 위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 수정 • 다만, 응답편의성을 고려해 돌봄사유는 돌봄대상자별로 파악하지 않고 단 일문항에 대한 복수응답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돌봄 경험 및 그로 인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지원’,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항목에 대한 예시 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문지 전반에 걸쳐 예시 추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시간을 묻는 문항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시간 투입 조건과 양상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평일 돌봄과 주말 돌봄을 나누어 질문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과 주말의 돌봄 시간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돌봄자가 된 이유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에’라는 항목이 다른 보기 항목과 범주가 다르고, 돌봄의 주된 이유를 개인의 애정에 귀속시킬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의 주된 이유가 개인의 애정에 귀속되지 않도록 선택지 표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기 항목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입장에서 중복되어 보일 우려가 있는 선택지 통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하여, 돌봄 대상과의 관계적 어려움(돌봄의 갈등 등)과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돌봄 역할 분담에 따른 갈등 등)은 구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대상과의 관계적 어려움 및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을 구분하도록 문항 구성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지원에 대한 부담 파악의 경우, 본인 소득 중 생계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소득 중 가족의 생계지원에 투입되는 비용의 비율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및 서비스 인지 경로에 대한 기존 문항의 경우, 정보 수집 주체와 경로에 대한 선택지가 혼재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경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수집 주체와 경로가 구분되도록 선택지의 표현을 수정 보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돌봄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정책명은 잘 모르지만 서비스 내용은 알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질문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안한 이유로 ‘신청-이용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선택지 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지에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를 추가하여 수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 해결 여부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가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과 유사함. 도움 정도보다 어려움 해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택지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항 선택지를 문제에 대한 해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및 서비스 수요를 묻는 문항에 대해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세부 문항내용에 대해 예시를 추가함.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및 서비스 수요 항목 중, '진로 및 교육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등의 항목 간 중복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항목 간 중복 우려가 있는 선택지는 통합하여 세부문항을 축소하고 중복 우려를 해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을 위한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과 관련하여,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시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항목 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지에 '친구들과 함께 놀기'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함.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탐색과 계획 수립 관련 문항의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과 비가족돌봄 청소년 간 응답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항은 가족돌봄 상황이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므로, 현행 유지함.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어린 청소년은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항은 정확한 응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개략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수준을 범주로 제시하여 유지하고자 함.

(4) 최종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선행연구 검토, 이론적 분석틀 반영, 연구진 집중 논의를 거쳐 도출된 조사내용(안)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 등 체계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은 <표 V-4>와 같다.

표 V-4. 조사내용의 구성 및 출처

영역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사전 질문	• 연령	SQ1	• 연구진 작성
	• 성별	SQ2	• 연구진 작성
	• 지역	SQ3	• 연구진 작성
	•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	SQ4	•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현(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 좀 더 복잡한 활동을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	SQ4-1	• 함선우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 일부 수정
	• 그 돌봄대상자를 돌보고 있는지 여부	SQ5	• 이수영 외(2023)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 일부 수정
	•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	SQ6	• 함선우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 일부 수정

영역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돌봄 경험 및 어려움	• 현재 동거 중인 가족	A1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 일부 수정
	•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수	A1-1	• 연구진 작성
	• 함께 살고 있는 기타 친척의 수	A1-2	
	• 가족 중 돌봄대상자	A2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 일부 수정
	• 돌봄이 필요한 이유(돌봄대상자의 상태)	A3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를 기초로, 연구진 일부 수정
	• 가족을 돌보기 시작한 나이	A4	• 서보람(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 주돌봄자 여부	A5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설명문 일부 수정
	• 주돌봄자가 된 이유	A5-1	• 서보람(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 가족 중 주돌봄자	A5-2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돌봄활동을 위한 투입 시간(평일, 주말)	A6 A6-1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2023).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 수정
	• 돌봄활동의 내용(수행하는 역할)	A7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를 기초로, 연구진 일부 수정
	• 돌봄에 대한 생각	A8	• 1)~3), 5)~6)은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4)는 서보람(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A9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2023).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 학업일과 관련한 현재 상황 및 재학 중인 경우, 학교급	A10 A10-1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일을 하는 경우, 고용 형태	A10-2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 일을 하는 경우, 소득 중 가족돌봄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	A10-3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 학업 또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	A10-4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돌봄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석 경험 여부	A11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 돌봄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석 빈도	A11-1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 돌봄으로 인한 학업/일 중단 의사	A12	• 연구진 작성
	• 돌봄으로 인한 학업/일 중단을 생각한 이유	A12-1	• 연구진 작성
	• 가족의 생계지원에 대한 부담	A13	• 최명애, 이슬기(2023). '전라남도 가족돌봄 청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욕구	•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B1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기초로, 연구진 일부 수정
	•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경험 여부	B2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의 용이성	B2-1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은 이유	B2-2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 '일상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B3	• 연구진 작성
	• 가족돌봄에 도움을 주는 대상	B4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를 기초로, 연구진 일부 수정
	•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B5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이용 여부에 대한 문항은 참조, 도움 정도는 연구진 추가)
	• 돌봄서비스의 도움 정도	B5-1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 여부	B5-2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B6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이용 여부에 대한 문항은 참조, 도움 정도는 연구진 추가)
	• 복지서비스의 도움 정도	B6-1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돌봄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 수준	B6-2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돌봄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B6-3	•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의향	B7	• 서보람(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진 수정
	•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B7-1	• 서보람(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진 수정
	• 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	B8	•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현(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와 함선유 외(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진 수정
• 본인을 위한 시간이 충분한지 여부	B9	• 연구진 작성	

영역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 본인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수요	B9-1	•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환(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문항 참고하여 연구진 수정
	• 본인을 위한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	B9-2	•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환(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문항 참고하여 연구진 수정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 삶의 만족도	C1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우울 정도	C2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주관적 건강 평가	C3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진로 설계 역량	C4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진로 확산	C5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문항과 서보람(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 진로 준비 정도	C6	• 서보람(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진 수정
	• 진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C6-1	• 서보람(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진 수정
일반적 특성	•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P1	•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환(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P2	•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환(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 다문화가정 여부	P3	• 최영준 외(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2)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현재 가족을 돌보고 있는 9~24세 청소년 577명이다.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목표 표본을 5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77명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모집단 정보가 부재하여 확률표집을 통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집단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인 대면조사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조사가 더 적절하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여 지원기관 협조와 온라인 패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자를 확보하였다. 연령 범위는 기존 연구가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13세 미만 저연령대까지 포함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포착되지 못했던 어린 나이부터 돌봄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범위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정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그동안 정책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집단으로, 이들의 규모나 실태에 대한 기초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정책대상을 세밀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발굴과 실태 파악이 우선 과제이므로, 대상 범위를 좁히기보다는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돌봄 대상으로 민법상 가족 외 친인척을 포함하고, 동거·비동거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 돌봄과 주돌봄자·부돌봄자를 모두 포괄하였다.

조사대상 표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주요 지원기관과 조사회사 패널을 활용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 시범사업 전달체계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비확률표집의 한계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표집 과정을 통해 확보된 응답자의 구성은 <표 V-5>과 같다.

표 V-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577	100.0
성별	남자	218	37.8
	여자	359	62.2
연령	13세 미만	133	23.1
	13~18세	248	43.0
	19~24세	196	34.0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6.0
	주돌봄자 아님	369	64.0
돌봄 제공 유형	직접 돌봄	358	62.0
	직접 돌봄+경제적 부양	203	35.2
	경제적 부양	16	2.8
돌봄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79.4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20.6
평균 주당 돌봄 시간 ¹⁾	주 15시간 미만	234	40.6
	주 15시간 이상	343	59.4

구분		빈도(명)	비율(%)
돌봄사유 ²⁾	신체건강 및 장애	312	54.1
	정신건강 및 발달	154	26.7
	사회환경 및 기타	216	37.4
돌봄가족 기능상태	ADL(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476	82.5
	IADL(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101	17.5
가구 소득수준 ³⁾	300만원 미만	170	29.5
	300만원~499만원	140	24.3
	500만원 이상	137	23.7
	잘 모르겠다	130	22.5

- 주: 1) 평균 주당 돌봄 시간은 주중 및 주말 하루 평균 돌봄시간으로 조사된 것을 활용하여 재산출한 뒤, 범주화하였음.
 2) 돌봄사유는 신체적 장애, 지적 장애, 정신질환 및 장애, 중독 관련 질환, 만성질환, 언어·문화적 어려움, 기타 등 7가지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신체건강 및 장애(신체적 장애, 만성질환)', '정신건강 및 발달(지적장애, 정신질환, 중독)', '사회환경 및 기타(언어·문화적 어려움, 기타)'로 분류하였음.
 3) 이후 제시된 가구 소득수준별 분석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하고 결과를 산출하였음.

3) 분석 결과의 구성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V-2]와 같은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다. 먼저, '①가족돌봄 경험 기본 실태'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현황과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기능 제약 수준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돌봄을 시작한 시기 등 돌봄의 배경과 맥락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주돌봄자 여부 및 그 역할, 하루 평균 돌봄 시간, 구체적인 돌봄 활동 내용 등 돌봄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돌봄에 대한 태도와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②학업 및 근로 현황과 가족돌봄의 영향'에서는 돌봄이 청소년의 일상생활, 특히 학업과 근로 활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학업 및 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 등 학업이나 일에 지장을 받은 경험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돌봄 때문에 학업이나 근로를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과 그 이유, 그리고 본인 소득 중 가족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비중 등 경제적 부담 정도도 살펴보았다.

'③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에서는 돌봄이 청소년의 내면적 상태와 미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삶의 만족도, 우울 정도,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심리·정서적 웰빙 상태를 확인하고, 진로 설계 역량, 진로 확신, 진로 준비 수준 등 미래 설계와

관련된 역량과 준비도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 경험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4]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족돌봄 관련 지원 서비스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점검하였다. 가족돌봄 관련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와 정보 획득 경로, 정보 탐색 경험 및 접근의 용이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 각종 지원 분야별 수혜 경험과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도 함께 분석하여 현재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향후 지원 방향과 욕구를 파악하였다. 향후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의향과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의 이유를 확인하고, 돌봄 지원, 생활·복지 지원, 진로 및 자기계발 지원 등 영역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개인 시간의 충분성과 필요한 개인 시간, 개인 시간 활용 희망 내용 등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의 일상적 욕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 선행조사와의 비교’에서는 비교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를 실시함으로써 지난 3년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간의 정책 효과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분석에서 사용된 배경변인은 선행연구 결과와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 주돌봄 여부, 가구 소득수준을 핵심변인으로 활용하되, 돌봄 시간, 돌봄 기간, 동거 여부 등은 각 문항의 내용적 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포함하였다. 이 같은 흐름을 따라 제시된 분석 결과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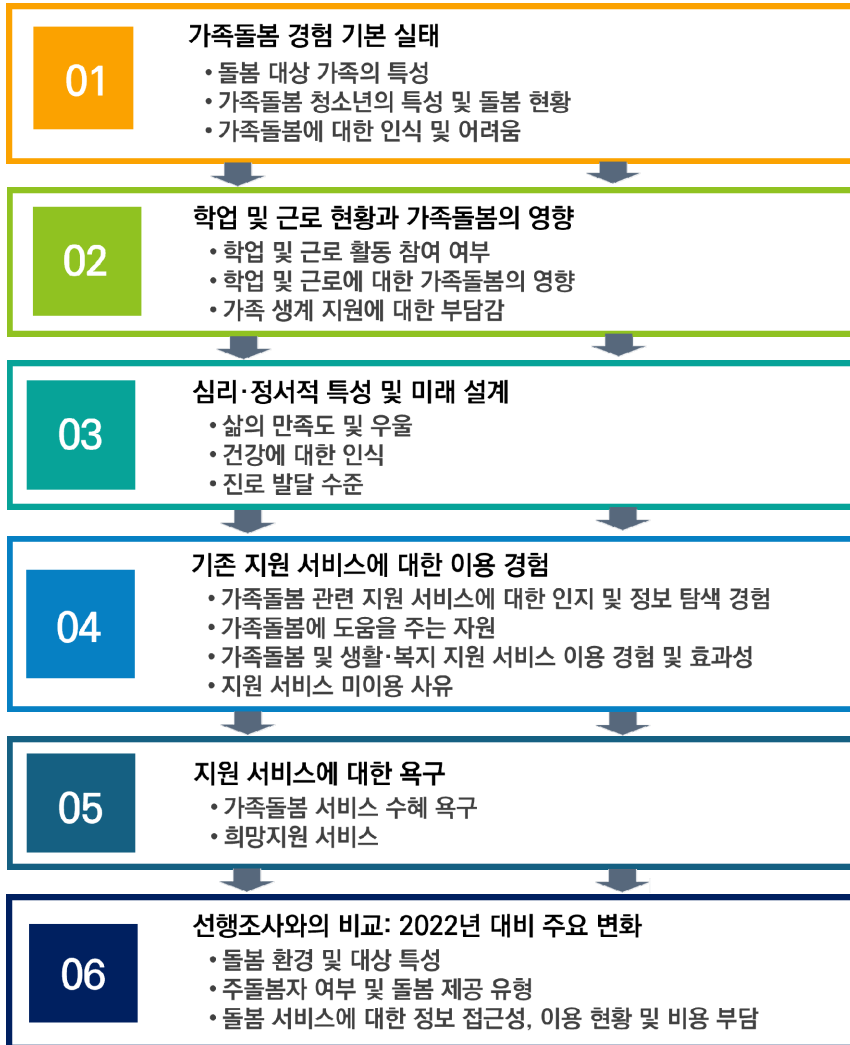


그림 V-2.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구성과 흐름

2. 가족돌봄 경험 기본 실태

1) 돌봄대상자 특성

(1) 돌봄대상 가족의 기능 제약

가족돌봄의 강도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기능 제약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 생활능력(ADL)⁶⁸⁾ 제약 가족이 있다는 응답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단적 생활능력(IADL)⁶⁹⁾ 제약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17.5%였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돌봄자인 경우,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88.0%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79.4%보다 8.6%p 높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기본적 생활능력에 제약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어 상당한 신체적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6. 돌봄대상 가족의 기능 제약 유형

구분		사례수 (명)	기본적 생활능력 (ADL) 제약	수단적 생활능력 (IADL) 제약	χ^2 (d.f.)
전체		577	82.5	17.5	-
성별	남자	218	85.3	14.7	1.937 (1)
	여자	359	80.8	19.2	
연령	13세 미만	133	87.2	12.8	2.943 (2)
	13~18세	248	80.2	19.8	
	19~24세	196	82.1	17.9	
주돌봄자 여부	주돌봄자	208	88.0	12.0	6.777** (1)
	주돌봄자 아님	369	79.4	20.6	

주: * α .05, ** α .01, *** α .001

68)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Katz, 1963; 배다영·박은빈, 2022에서 재인용),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며, ADL의 제한은 기본적인 생존 능력 및 신체적인 기능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배다영·박은빈, 2022).

69)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전화 사용하기, 쇼핑하기, 식사 준비하기 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토대로 측정하며, 주위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과 독립적인 생활 영위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개념이다(Lawton & Brody, 1969; 배다영·박은빈, 2022에서 재인용).

(2)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형제자매'를 돌본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외)할머니' 31.5%, '어머니' 25.0%, '아버지' 19.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함선유 외(2022)의 조사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주로 형제자매와 조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돌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주돌봄자는 어머니를 돌본다는 비율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돌봄자는 형제자매를 돌본다는 비율이 40.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돌봄자의 경우 주로 어머니를 돌본다는 결과는 앞서 제Ⅲ장에서 실시한 「인구총조사」 2% 표본자료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형제자매부터 부모까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으며, 주돌봄자 여부에 따라 돌봄 대상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의 경우 (외)할머니 38.8%, 어머니 28.1%, 아버지 26.5%로 조부모와 부모를 돌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반면 형제자매를 돌보는 비율은 28.1%로 13세 미만(45.9%)과 13~18세(4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부모와 부모 등 윗세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커지며, 실질적인 가장이자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표 V-7. 돌봄 대상자(중복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아버지	어머니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형제 자매	기타 친척
전체		577	19.9	25.0	17.3	31.5	38.3	4.2
성별	남자	218	20.2	28.9	19.7	27.1	34.4	5.5
	여자	359	19.8	22.6	15.9	34.3	40.7	3.3
연령	13세 미만	133	15.0	22.6	18.8	27.8	45.9	4.5
	13~18세	248	17.3	23.8	15.3	27.8	42.3	5.2
	19~24세	196	26.5	28.1	18.9	38.8	28.1	2.6
주돌봄자 여부	주돌봄자	208	27.4	36.5	14.4	28.4	35.1	2.9
	주돌봄자 아님	369	15.7	18.4	19.0	33.3	40.1	4.9

돌봄대상자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동거'는 20.6%였다. 이는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돌봄 대상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율의 청소년들이 비동거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이 주돌봄자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16.3%가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상태라고 답했다. 이는 가족돌봄의 유형이 단순히 물리적 동거 여부로만 구분될 수 없으며, 동거하지 않더라도 정서적·경제적·실질적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9~24세 청소년의 경우 돌봄대상자와 비동거하는 비율이 30.1%로 13세 미만(12.0%)과 13~18세(1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가족돌봄 책임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 비동거 비율이 23.0%로 주돌봄자인 경우의 16.3%보다 6.7%p 높게 나타나, 주돌봄자일수록 돌봄대상자와 동거하며 밀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8. 돌봄대상 가족과의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돌봄대상자와 동거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χ^2 (d.f.)
전체		577	79.4	20.6	-
성별	남자	218	78.9	21.1	0.049 (1)
	여자	359	79.7	20.3	
연령	13세 미만	133	88.0	12.0	18.014*** (2)
	13~18세	248	82.3	17.7	
	19~24세	196	69.9	30.1	
주돌봄자 여부	주돌봄자	208	83.7	16.3	3.636* (1)
	주돌봄자 아님	369	77.0	23.0	

주: * $p < .05$, ** $p < .01$, *** $p < .001$

(3) 돌봄 사유

가족돌봄이 필요한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응답한 돌봄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만성질환이 3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장애 26.2%, 언어·문화적인 어려움 18.7%,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16.5%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성질환, 신체장애 등 질병이나 신체적 건강 문제가 주요 사유로 작용하지만, 정신질환 및 장애(16.5%)와 언어·문화적인 어려움(18.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가족돌봄의 원인이 신체적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성을 보여준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돌봄 비율이 41.2%로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32.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에서는 언어·문화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돌봄 비율도 2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표 V-9. 돌봄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신체적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질환 및 장애	중독 관련 질환	만성 질환	언어· 문화적인 어려움	나이가 어려서	기타	
전체	577	26.2	10.1	16.5	3.5	35.0	18.7	12.3	8.1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8.4	10.1	18.8	5.8	37.0	23.6	8.2	7.7
	주돌봄자 아님	369	24.9	10.0	15.2	2.2	33.9	16.0	14.6	8.4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30.0	13.5	16.5	5.9	41.2	21.8	8.8	4.1
	300만원~499만원	140	24.3	7.9	18.6	2.1	40.0	19.3	10.0	6.4
	500만원 이상	137	28.5	9.5	16.1	3.6	32.8	16.1	9.5	10.2

주: 1) 중독 관련 질환은 술, 마약, 도박 등에 대한 중독을, 만성질환은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건강상태 문제(예: 고혈압, 당뇨병, 암 등)를, 언어·문화적인 어려움에는 통역, 서류 읽기 보조 등이 포함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4) 가구 배경 특성

가족돌봄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8.9%, 차상위계층이 11.6%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비율은 30.5%에 달해 약 3명 중 1명이 공적 지원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참여 청소년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한 경우 기초생활수

급자 비율이 31.3%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11.9%보다 19.4%p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일수록 성인 돌봄자가 부재하거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청소년이 주돌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5.5%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13세 미만의 '잘 모르겠다' 응답이 50.4%로 높게 나타난 것과 함께 고려해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진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0. 가구의 경제적 특성

구분		사례수 (명)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당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577	18.9	11.6	31.9	41.8
연령	13세 미만	133	6.8	7.5	36.8	50.4
	13~18세	248	20.2	11.7	27.8	44.4
	19~24세	196	25.5	14.3	33.7	32.7
주돌봄자 여부	주돌봄자	208	31.3	16.3	23.1	36.5
	주돌봄자 아님	369	11.9	8.9	36.9	44.7

2) 가족돌봄 청소년 특성 및 돌봄 현황

(1) 돌봄 참여 현황

① 가족 내 돌봄 분담 방식

가족 내에서 돌봄이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다른 가족이 함께 돌봄'이 84.7%로 가장 많았고, '나 혼자 돌봄' 12.5%, '나는 돌보지 않고 다른 가족이 돌봄'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다른 가족구성원과 돌봄을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주돌봄자는 혼자서 돌봄을 담당하는 비율이 26.9%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4.3%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가족과 함께 돌봄을 분담하는 비율이 93.0%로 상당히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혼자 돌봄을 하는 비율이 21.8%로 다른 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일수록 청소년이 단독으로 돌봄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혼자 돌봄을 하는 비율이 17.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표 V-11. 가족 내 돌봄 분담 방식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나 혼자 돌봄	나와 다른 가족이 함께 돌봄	나는 돌보지 않고, 다른 가족이 돌봄	χ^2 (d.f.)	
전체	577	12.5	84.7	2.8	-	
연령	13세 미만	133	8.3	90.2	1.5	11.403* (4)
	13~18세	248	10.9	87.1	2.0	
	19~24세	196	17.3	78.1	4.6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6.9	70.2	2.9	62.531*** (2)
	주돌봄자 아님	369	4.3	93.0	2.7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21.8	75.3	2.9	24.790*** (4)
	300만원 ~ 499만원	140	9.3	87.1	3.6	
	500만원 이상	137	3.6	92.7	3.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② 생계 지원 여부 및 형태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제적 부양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생계 지원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생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62.0%였고, 일부 부담 33.8%, 전부 부담 4.2%로 나타나, 응답자의 38.0%의 청소년이 경제적 부양 역할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19~24세는 생계 비용을 부담한다는 비율(전부+일부)이 63.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주돌봄자인 경우 생계 비용 부담 비율(전부+일부)이 54.8%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28.5%)보다 높게 나타나,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경제적 부양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생계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전부+일부)이 52.3%로 다른 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일수록 청소년의 경제적 기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2. 가족 생계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생계 비용 전부 부담	생계 비용 일부 부담	생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χ^2 (d.f.)
전체		577	4.2	33.8	62.0	-
연령	13세 미만	133	4.5	10.5	85.0	102.038*** (4)
	13~18세	248	0.4	29.4	70.2	
	19~24세	196	8.7	55.1	36.2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9.6	45.2	45.2	50.665*** (2)
	주돌봄자 아님	369	1.1	27.4	71.5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8.2	44.1	47.6	16.777** (4)
	300만원 ~ 499만원	140	5.0	33.6	61.4	
	500만원 이상	137	1.5	30.7	67.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③ 돌봄 제공 형태

돌봄 제공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돌봄'만 제공하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 돌봄+경제적 부양' 35.2%, '경제적 부양만 하는 경우 2.8%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 형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19~24세는 직접 돌봄+경제적 부양 비율이 59.2%로 13~18세의 27.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였으며, 주돌봄자인 경우 직접돌봄+경제적 부양 비율이 51.9%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25.7%보다 역시 2배 가량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직접돌봄+경제적 부양 비율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단순히 신체적 돌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다차원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령이 높고, 주돌봄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돌봄과 경제적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13. 돌봄 제공 형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직접 돌봄	경제적 부양만	직접 돌봄+ 경제적 부양	χ^2 (d.f.)
전체		577	62.0	2.8	35.2	-
연령	13세 미만	133	85.0	1.5	13.5	92.203*** (4)
	13~18세	248	70.2	2.0	27.8	
	19~24세	196	36.2	4.6	59.2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45.2	2.9	51.9	40.813*** (2)
	주돌봄자 아님	369	71.5	2.7	25.7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47.6	2.9	49.4	15.146** (4)
	300만원 ~ 499만원	140	61.4	3.6	35.0	
	500만원 이상	137	67.9	3.6	28.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가족돌봄을 시작한 시기

가족돌봄을 시작한 연령을 조사한 결과, 13~18세에 시작한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9-12세 27.9%, 9세 미만 20.1%, 19~24세 14.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돌봄 시작 연령은 13.01세였으며, 19세가 되기 전에 돌봄을 시작한 비율이 85.8%에 달해 대부분의 가족돌봄이 아동·청소년기에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현재 19~24세 응답자 중 17.4%가 13세 미만부터 돌봄을 시작해 최소 6년 이상의 장기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동일 연령대의 41.8%는 19~24세에 돌봄을 시작해, 성인기 신규 돌봄 진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돌봄기간별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5년 이상 장기 돌봄자의 36.7%가 9세 미만부터 돌봄을 시작해 매우 어린 나이부터 가족돌봄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족돌봄이 일시적 도움이 아닌 장기적 생활패턴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조기 돌봄자일수록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V-14. 가족을 돌보기 시작한 연령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9세 미만	9~12세	13~18세	19~24세	χ^2 (d.f.)
전체		577	13.01	4.68	20.1	27.9	37.8	14.2	-
연령	13세 미만	133	8.51	1.95	46.6	53.4	0.0	0.0	348.826*** (6)
	13~18세	248	12.54	3.53	18.1	26.2	55.6	0.0	
	19~24세	196	16.66	4.33	4.6	12.8	40.8	41.8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3.57	4.72	18.3	22.1	41.8	17.8	8.786* (3)
	주돌봄자 아님	369	12.69	4.63	21.1	31.2	35.5	12.2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15.72	4.44	0.0	32.6	40.2	27.2	95.169*** (9)
	1년 이상 3년 미만	164	14.23	4.42	10.4	29.9	40.2	19.5	
	3년 이상 5년 미만	133	13.12	4.61	22.6	19.5	41.4	16.5	
	5년 이상	188	10.54	3.83	36.7	29.8	31.9	1.6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13.75	4.69	14.7	28.2	39.4	17.6	3.792 (6)
	300만원~499만원	140	13.16	5.11	21.4	27.1	34.3	17.1	
	500만원 이상	137	12.99	4.58	21.2	28.5	36.5	13.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주돌봄자 여부 및 역할

① 주돌봄자 여부

가족 내 돌봄 체계에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돌봄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돌봄자 36.0%, 부돌봄자 64.0%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9~24세는 주돌봄자 비율이 49.5%로 여타 연령대보다 높았다. 다만 13세 미만도 24.1%가 주돌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가구 소득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주돌봄자 비율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일수록 청소년이 주돌봄자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V-15. 주돌봄자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주돌봄자	주돌봄자 아님	χ^2 (d.f.)
전체		577	36.0	64.0	-
연령	13세 미만	133	24.1	75.9	25.544*** (2)
	13~18세	248	31.9	68.1	
	19~24세	196	49.5	50.5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52.4	47.6	37.073*** (2)
	300만원 ~ 499만원	140	25.7	74.3	
	500만원 이상	137	22.6	77.4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② 주돌봄자가 된 이유

청소년이 주돌봄자가 되는 구체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주돌봄자가 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앞서 주돌봄자라고 답한 응답자(208명)를 대상으로 한 결과, 가장 주된(1순위) 이유로는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43.3%로 가장 많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21.2%, '내가 돌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13.9% 순이었다. 주요 배경변인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5.1%로 다른 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수록 청소년이 불가피하게 주돌봄자 역할을 맡게 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가 개별 가정의 선택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표 V-16. 주돌봄자가 된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돌봄대상 가족이 내가 돌봐주길 원해서	내가 돌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에	주변에 돌봐줄 기관이나 제도가 없어서	기타	χ^2 (d.f.)	
전체	208	43.3	9.1	13.9	21.2	9.6	1.4	1.4	-	
연령	13세 미만	32	25.0	9.4	15.6	28.1	15.6	3.1	3.1	13.483 (12)
	13~18세	79	41.8	7.6	15.2	25.3	7.6	2.5	0.0	
	19~24세	97	50.5	10.3	12.4	15.5	9.3	0.0	2.1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89	55.1	5.6	9.0	19.1	9.0	1.1	1.1	22.787* (12)
	300만원-499만원	36	30.6	22.2	11.1	16.7	16.7	2.8	0.0	
	500만원 이상	31	22.6	12.9	25.8	25.8	9.7	3.2	0.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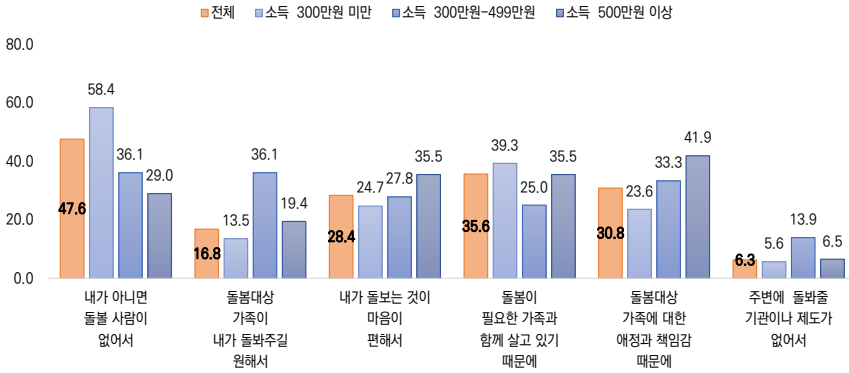
2) 주돌봄자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주돌봄자가 된 이유에 대한 1순위+2순위 응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47.6%로 가장 높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35.6%,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에' 3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주돌봄자가 되는 주된 이유가 가족 내 돌봄 공백과 물리적 근접성,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임을 보여준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8.4%로 다른 소득층(300-499만원 36.1%, 500만원 이상 29.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에'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소년이 주돌봄자가 되는 동기가 다름을 시사한다. 저소득층에서는 돌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의 성격이 강하고, 고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발적 동기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주: 1) 주돌봄자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V-3. 주돌봄자가 된 이유(1순위+2순위)

(4) 돌봄 시간

① 평일 하루 평균 돌봄 소요시간

가족돌봄의 실질적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돌봄 시간을 조사하였다. 먼저, 하루 평균 돌봄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하가 32.6%로 가장 많았고, 2-3시간 31.7%, 4-7시간 24.8%, 8시간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돌봄시간은 3.58시간(표준편차 3.67)이었으며, 4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 비율도 35.7%에 달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는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돌봄자인 경우 8시간 이상 돌봄 비율이 17.8%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7.0%보다 10.8%p 높았다. 돌봄기간에 따른 차이도 유의했는데, 돌봄기간이 길수록 평균 돌봄시간도 증가하여 1년 미만 2.35시간에서 5년 이상 4.19시간으로 나타나 장기 돌봄자일수록 더 집약적인 돌봄 부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8시간 이상 돌봄 비율이 14.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표 V-17. 하루 평균 가족돌봄 소요 시간(평일)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1시간 이하	2~3 시간	4~7 시간	8시간 이상	χ^2 (d.f.)
전체	577	3.58	3.67	32.6	31.7	24.8	10.9	-
연령	13세 미만	133	3.14	4.03	42.1	36.1	13.5	19.607** (6)
	13~18세	248	3.50	3.43	31.9	31.9	26.6	
	19~24세	196	3.98	3.69	27.0	28.6	30.1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4.84	4.01	13.9	33.2	35.1	62.918*** (3)
	주돌봄자 아님	369	2.87	3.26	43.1	30.9	19.0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2.35	2.77	59.8	21.7	12.0	49.099*** (9)
	1년 이상 3년 미만	164	3.42	3.60	32.3	36.0	22.6	
	3년 이상 5년 미만	133	3.77	3.76	30.1	33.8	23.3	
	5년 이상	188	4.19	3.91	21.3	31.4	34.0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4.06	3.74	25.3	32.9	27.1	11.490 (6)
	300만원 ~ 499만원	140	3.36	3.66	38.6	30.7	20.7	
	500만원 이상	137	2.96	3.17	39.4	31.4	21.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② 주말 하루 평균 돌봄 소요시간

주말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26.3%, 2~3시간 28.2%, 4~7시간 25.0%, 8시간 이상 20.5%로 파악되었다. 평일과 비교하면 8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 비율이 평일 10.9%에서 주말 20.5%로 약 2배 증가하여, 주말에 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돌봄자인 경우 주말 8시간 이상 돌봄 비율이 31.3%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14.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말에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돌봄 부담이 평일보다 현저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휴식이나 개인 시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며, 특히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주말조차 온전한 휴식 시간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8. 하루 평균 가족돌봄 소요 시간(주말)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1시간 이하	2~3 시간	4~7 시간	8시간 이상	χ^2 (d.f.)
전체		577	4.49	4.29	26.3	28.2	25.0	20.5	-
연령	13세 미만	133	3.88	4.51	29.3	39.1	17.3	14.3	16.715* (6)
	13~18세	248	4.57	4.23	27.4	23.4	27.8	21.4	
	19~24세	196	4.81	4.19	23.0	27.0	26.5	23.5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6.13	4.86	13.0	22.6	33.2	31.3	53.071*** (3)
	주돌봄자 아님	369	3.57	3.62	33.9	31.4	20.3	14.4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2.73	2.65	42.4	29.3	20.7	7.6	34.987*** (9)
	1년 이상 3년 미만	164	4.11	3.94	26.8	32.9	24.4	15.9	
	3년 이상 5년 미만	133	4.88	4.72	25.6	28.6	21.1	24.8	
	5년 이상	188	5.41	4.62	18.6	23.4	30.3	27.7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4.94	4.57	21.8	28.8	24.7	24.7	9.671 (6)
	300만원 ~ 499만원	140	4.40	3.87	22.9	33.6	24.3	19.3	
	500만원 이상	137	3.88	3.76	34.3	24.8	24.1	16.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③ 개인 시간 욕구

가족돌봄으로 인한 개인 시간 제약 정도와 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 인식 및 필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충분하다'는 응답이 60.0%,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0.0%로 나타났다. 필요한 개인 시간으로는 2-4시간이 5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8시간 27.0%, 8시간 이상 10.6%, 1시간 이내 5.0% 순이었다. 주돌봄자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주돌봄자의 52.4%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는 33.1%로 19.3%p 차이를 보였다. 주돌봄자는 필요 시간에서도 5-8시간(30.8%), 8시간 이상(11.1%)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주당 돌봄시간별로는 15시간 이상 집단에서 시간 부족 응답이 49.9%로 15시간 미만 집단(25.6%)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개인 시간 확보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자신을 위한 시간 인식 및 필요 시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충분성		필요 시간				
		충분 하다	충분하지 않다	1시간 이내	2~4시간	5~8시간	8시간 이상	
전체	577	60.0	40.0	5.0	57.4	27.0	10.6	
연령	13세 미만	133	58.6	41.4	8.3	66.9	19.5	5.3
	13~18세	248	61.3	38.7	4.0	52.4	29.0	14.5
	19~24세	196	59.2	40.8	4.1	57.1	29.6	9.2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47.6	52.4	5.3	52.9	30.8	11.1
	주돌봄자 아님	369	66.9	33.1	4.9	59.9	24.9	10.3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67.4	32.6	6.5	54.3	31.5	7.6
	1년 이상 3년 미만	164	63.4	36.6	3.7	63.4	22.0	11.0
	3년 이상 5년 미만	133	57.9	42.1	4.5	54.1	30.1	11.3
	5년 이상	188	54.8	45.2	5.9	55.9	27.1	11.2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74.4	25.6	6.0	60.3	23.1	10.7
	주15시간 이상	343	50.1	49.9	4.4	55.4	29.7	10.5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53.5	46.5	3.5	51.8	32.4	12.4
	300만원 ~ 499만원	140	60.0	40.0	6.4	62.9	25.7	5.0
	500만원 이상	137	61.3	38.7	5.1	62.8	24.8	7.3

주: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가족돌봄 청소년의 일상에서 부족하거나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개인 시간 활용 희망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휴식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자기계발 등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설계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기'가 25.1%로 가장 높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 24.8%, '잠을 충분히 자기' 20.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항목이 약 70%를 차지하여 휴식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13세 미만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가 54.1%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19~24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 27.0%, '잠을 충분히 자기' 25.0%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피로 회복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돌봄 여부별로는 주돌봄자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 22.1%, '잠을 충분히 자기' 19.7%로 상대적으로 휴식 욕구가 높았고,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26.8%)가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단순한 휴식과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 부담이 클수록 신체적 휴식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시사한다.

표 V-20. 본인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것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	잠을 충분히 자기	학교공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습	돈을 벌 수 있도록 취업하여 일하기	친구들과 함께 놀기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담,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참여	기타	χ^2 (d.f.)
전체		577	24.8	20.1	15.3	7.1	25.1	2.8	4.9	-
연령	13세 미만	133	20.3	6.8	8.3	2.3	54.1	1.5	6.8	99.167** * (12)
	13~18세	248	25.4	23.4	16.1	6.5	21.0	2.4	5.2	
	19~24세	196	27.0	25.0	18.9	11.2	10.7	4.1	3.1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2.1	19.7	16.3	11.5	22.1	4.8	3.4	17.723** (6)
	주돌봄자 아님	369	26.3	20.3	14.6	4.6	26.8	1.6	5.7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30.4	18.5	7.6	9.8	23.9	3.3	6.5	24.603 (18)
	1년 이상 3년 미만	164	19.5	22.0	17.1	7.3	28.7	0.6	4.9	
	3년 이상 5년 미만	133	27.1	15.0	16.5	6.8	29.3	1.5	3.8	
	5년 이상	188	25.0	22.9	16.5	5.9	19.7	5.3	4.8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26.9	22.2	13.2	5.6	24.8	1.7	5.6	5.998 (6)
	주15시간 이상	343	23.3	18.7	16.6	8.2	25.4	3.5	4.4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25.9	20.6	15.9	9.4	21.8	2.9	3.5	9.490 (12)
	300만원~499만원	140	21.4	21.4	20.7	5.0	22.9	2.9	5.7	
	500만원 이상	137	27.7	19.0	14.6	7.3	27.7	1.5	2.2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5) 돌봄 활동 내용

가족돌봄 청소년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돌봄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하는 일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집안일 지원'이 58.1%로 가장 많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36.7%, '다른 가족 돌보기(형제자매 등)' 34.1%, '아픈 가족 돌보기' 29.3% 순이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가사노동부터 직접적인 신체 돌봄까지 다양한 영역의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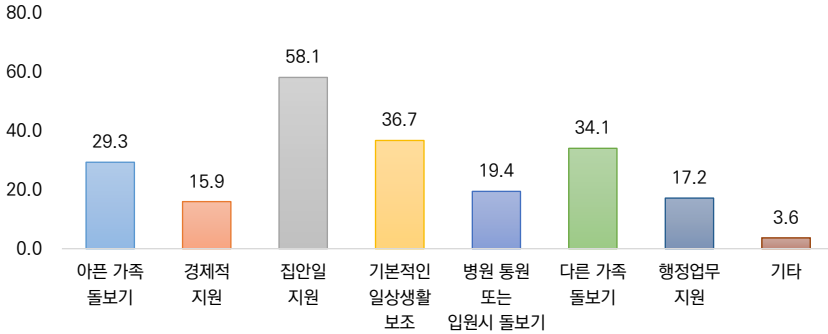


그림 V-4. 가족을 돌보기 위해 주로 하는 일(중복응답)

주돌봄자는 집안일 지원(64.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38.5%), 아픈 가족 돌보기(37.0%) 순이었다. 부돌봄자 역시 집안일 지원(54.2%)이 가장 높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35.8%), 다른 가족 돌보기(34.1%)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주돌봄자의 경우 병원 통원 또는 입원시 돌보기(29.8%)와 경제적 지원(26.0%) 비율이 부돌봄자(각각 13.6%, 10.3%)보다 2배 이상 높아, 의료 관련 돌봄과 경제적 부양에서 주돌봄자의 책임이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포괄적인 돌봄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1. 가족을 돌보기 위해 주로 하는 일(중복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아픈 가족 돌보기	경제적 지원	집안일 지원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병원 통원 또는 입원 시 돌보기	다른 가족 돌보기 (형제·자매 등)	행정 업무 지원	기타
전체	577	29.3	15.9	58.1	36.7	19.4	34.1	17.2	3.6
연령	13세 미만	133	21.1	3.8	45.1	44.4	9.0	45.9	4.5
	13~18세	248	30.6	11.7	65.7	33.5	19.4	37.9	4.8
	19~24세	196	33.2	29.6	57.1	35.7	26.5	21.4	1.5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아픈 가족 돌보기	경제적 지원	집안일 지원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병원 통원 또는 입원 시 돌보기	다른 가족 돌보기 (형제·자 매 등)	행정 업무 지원	기타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7.0	26.0	64.9	38.5	29.8	34.1	24.5	1.9
	주돌봄자 아님	369	24.9	10.3	54.2	35.8	13.6	34.1	13.0	4.6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 15시간 미만	234	16.7	10.3	45.3	31.2	11.1	29.5	19.2	5.6
	주 15시간 이상	343	37.9	19.8	66.8	40.5	25.1	37.3	15.7	2.3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32.9	24.1	66.5	36.5	22.9	34.1	23.5	2.9
	300만원~499만원	140	30.0	16.4	52.9	40.0	20.7	29.3	14.3	3.6
	500만원 이상	137	28.5	10.9	44.5	47.4	17.5	29.9	12.4	3.6

주: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가족돌봄에 대한 인식 및 어려움

(1) 가족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결과를 개괄하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율(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이 82.5%로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해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 70.9%, '가족을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내 생활이 이루어진다' 52.2%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들에서는 '가족을 돌본 이후로 항상 피곤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43.0%로 높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 41.3%,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화난다' 22.5% 순으로 파악되었다.

상술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이지만, 동시에 상당수가 돌봄으로 인한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 이상이 돌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돌봄으로 인해 피곤하다는 응답을 나타냈고, 5명 중 1명 이상이 가족돌봄에 대해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인 점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가치 인식과 실제 경험 사이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돌봄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것은 학업, 진로 탐색,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 고유의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할 시기에 돌봄이 생활의 중심축이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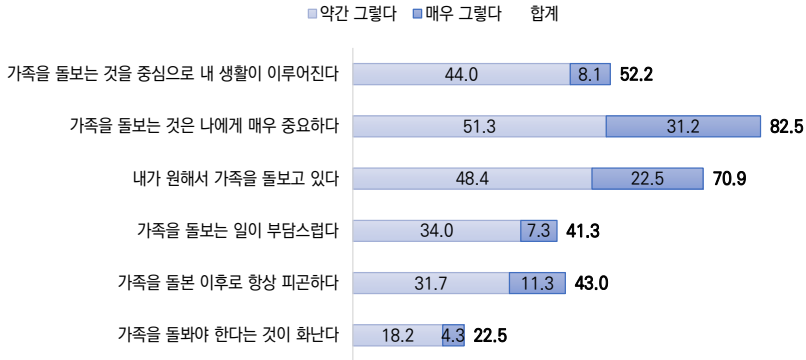


그림 V-5. 가족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주요 배경변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띈다. 주돌봄자인 경우 3개 문항에서 모두 부돌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돌봄 중심 생활'에서는 76.0%로, 부돌봄자 38.8%에 비해 37.2%p의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 주당 돌봄 시간에 따른 차이도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 주 1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3개 문항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내, 돌봄 시간이 길수록 돌봄에 대한 몰입도와 정체성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기간별로는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돌봄기간이 길수록 '돌봄 중심 생활' 응답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1년 미만 42.4% → 5년 이상 56.9%), 장기간 돌봄을 지속하면서 돌봄이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됨을 보여준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봄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돌봄 제공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적응 과정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돌봄 중심 생활' 응답률이 59.2%로 가장 높았으나, '돌봄 중요성'과 '내가 원해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문항에서는 오히려 13세 미만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돌봄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돌봄 중심 생활' 60.6%, '돌봄 중요성' 86.5%로 다른 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내가 원해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은 64.1%로, 여타 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주돌봄자이거나 장시간 돌봄을 제공할수록 개인 생활이 돌봄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표 V-22. 가족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중심성과 가치 부여

(단위: %)

구분		가족을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내 생활이 이루어진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원해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
전체		52.2	82.5	70.9
연령	13세 미만	46.6	85.7	74.4
	13~18세	49.6	81.5	71.0
	19~24세	59.2	81.6	68.4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76.0	85.6	75.5
	주돌봄자 아님	38.8	80.8	68.3
돌봄 기간	1년 미만	42.4	77.2	69.6
	1년 이상 3년 미만	48.8	78.7	67.7
	3년 이상 5년 미만	56.4	86.5	72.2
	5년 이상	56.9	85.6	73.4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 15시간 미만	30.8	77.4	67.9
	주 15시간 이상	66.8	86.0	72.9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60.6	86.5	64.1
	300만원~499만원	48.6	77.1	69.3
	500만원 이상	40.1	78.1	73.0

주: 1)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의 합산값(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임.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다음으로, <표 V-23>에는 가족돌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제시된 3개 문항 가운데, '가족을 돌본 이후로 항상 피곤하다'가 43.0%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 41.2%,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화난다' 22.5% 순이었다. 이는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높은 돌봄 가치 인식과 대조적인 양면적 감정을 보여준다.

주요 배경변인별로는 주돌봄자인 경우 3개 문항 모두에서 부돌봄자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항상 피곤하다'에서는 50.5%와 38.8%로 11.7%p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3개 문항 모두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특히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에서 49.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이는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인적 목표와 돌봄 책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됨을 시사한다.

돌봄기간별로는 앞서 살펴본 긍정적 인식과 대조적인 패턴을 보인다. 돌봄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여,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1년 미만 30.4%에서 5년 이상 44.7%로, '항상 피곤하다'는 32.6%에서 48.4%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앞서 확인한 돌봄 적응 과정과 동시에 누적된 피로와 부담감이 병존함을 보여주며, 장기 돌봄자들이 복합적인 감정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 주당 돌봄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3개 문항 모두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 돌봄 시간이 길수록 피로감과 부담감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3개 문항 모두 높은 부정적 인식을 보여,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수록 돌봄 부담이 가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돌봄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술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주돌봄자, 장시간 돌봄 제공자, 성인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V-23. 가족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부담감과 스트레스

(단위: %)

구분		가족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	가족을 돌본 이후로 항상 피곤하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 화난다
전체		41.2	43.0	22.5
연령	13세 미만	36.1	38.3	21.8
	13~18세	37.5	41.1	20.6
	19~24세	49.5	48.5	25.5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46.6	50.5	28.4
	주돌봄자 아님	38.2	38.8	19.2
돌봄 기간	1년 미만	30.4	32.6	16.3
	1년 이상 3년 미만	39.0	39.6	19.5
	3년 이상 5년 미만	46.6	46.6	25.6
	5년 이상	44.7	48.4	26.1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 15시간 미만	34.2	30.3	18.8
	주 15시간 이상	46.1	51.6	25.1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50.6	55.9	31.2
	300만원~499만원	41.4	37.9	20.0
	500만원 이상	38.7	33.6	19.7

주: 1)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의 합산값(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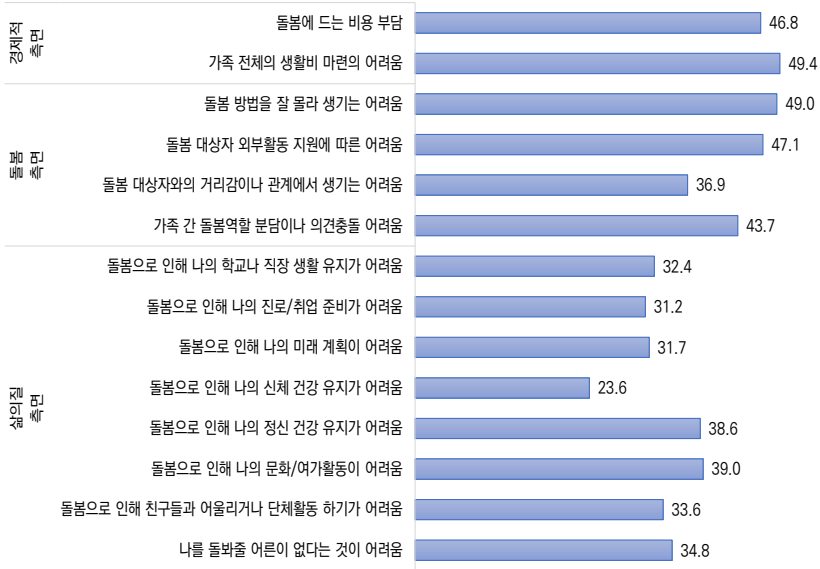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그림 V-6]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체감하는 어려움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개괄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족 전체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과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46.8%)이 상위를 차지했다. '돌봄 측면'에서는 돌봄 방법을 잘 몰라 생기는 어려움(49.0%)과 돌봄 대상자 외부활동 지원에 따른 어려움(47.1%)이 높게 나타나 돌봄 기술과 실무적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질' 측면에서는 문화·여가 활동의 어려움(39.0%)과 정신 건강 유지의 어려움(38.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업/진로 관련 어려움들(학교나 직장 생활 유지 32.4%, 진로/취업 준비 31.2%, 미래 계획 31.7%)이 30% 이상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신체 건강 유지의 어려움(23.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경제적 어려움과 실무적인 돌봄 어려움이 5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삶의 질 관련 어려움들은 30~4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당장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 실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적 발달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이 경제적 지원과 실질적 돌봄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개인적 성장과 미래 설계를 위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단위: %)



주: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의 합산값(약간 어렵다+매우 어렵다)임.

그림 V-6.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종합)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배경변인별로 개별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V-24>에는 경제적 부담과 실질적 돌봄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전체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이 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돌봄 방법을 잘 몰라 생기는 어려움 49.0%, 돌봄 대상자 외부활동 지원 어려움 47.1%,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 46.8%, 가족 간 돌봄 역할 분담이나 의견 충돌로 인한 어려움 43.7% 순이었다.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생활비 마련 어려움(62.8%)과 돌봄 비용 부담(61.7%)이 다른 연령대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이는 성인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가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돌봄자인 경우 6개 문항 모두에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63.5%)과 생활비 마련 어려움(67.3%)에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보다 25%p 이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평균 주당 돌봄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도 6개 문항 모두에서 높은 어려움을 보여, 돌봄 강도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4.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측면 및 돌봄 측면

(단위: %)

구분	경제적 측면		돌봄 측면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	가족 전체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	돌봄 방법을 잘 몰라 생기는 어려움	돌봄 대상자 외부활동 지원에 따른 어려움(외출, 병원동행 등)	돌봄 대상자와의 거리감이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	가족 간 돌봄 역할 분담이나 의견충돌로 인한 어려움	
전체	46.8	49.4	49.0	47.1	36.9	43.7	
연령	13세 미만	28.6	28.6	54.1	51.9	36.1	37.6
	13~18세	44.8	50.0	44.0	45.6	35.5	43.5
	19~24세	61.7	62.8	52.0	45.9	39.3	48.0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63.5	67.3	53.8	49.5	39.4	48.6
	주돌봄자 아님	37.4	39.3	46.3	45.8	35.5	40.9
돌봄 기간	1년 미만	39.1	45.7	51.1	51.1	32.6	32.6
	1년 이상 3년 미만	43.9	43.9	49.4	43.9	38.4	43.9
	3년 이상 5년 미만	45.1	45.9	53.4	51.9	39.8	45.1
	5년 이상	54.3	58.5	44.7	44.7	35.6	47.9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 15시간 미만	32.5	33.3	45.3	40.2	35.9	34.2
	주 15시간 이상	56.6	60.3	51.6	51.9	37.6	50.1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63.5	67.6	56.5	54.1	41.2	47.6
	300만원~499만원	52.9	53.6	49.3	49.3	38.6	44.3
	500만원 이상	31.4	29.2	42.3	44.5	37.2	40.1

주: 1)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의 합산값(약간 어렵다+매우 어렵다)임.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다음으로, <표 V-25>에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삶의 질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문항 가운데 '문화·여가 활동의 어려움'이 39.0%로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 유지의 어려움'이 38.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나를 돌봐줄 어른이 없다는 어려움' 34.8%, '친구 관계 및 단체 활동이 어려움' 33.6%, '학교/직장 생활 유지가 어려움' 32.4%,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움' 31.7%, '진로/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움' 31.2% 순이었다. 미래 설계 관련 항목들(학교/직장 생활 32.4%, 진로/취업 준비 31.2%, 미래 계획 31.7%)이 모두 30%를 초과하는 응답률을 나타내, 응답자 3명 중 1명 비율로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이 청소년기 핵심 발달과업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요 배경변인별로는 주돌봄자와 고부담 돌봄 집단에서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주돌봄자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부돌봄자보다 2배 내외의 높은 어려움을 보였으며, 특히 학교/직장 생활 유지(48.6% 및 23.3%), 진로/취업 준비(49.5% 및 20.9%), 정신건강 유지(52.9% 및 30.6%) 어려움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어려움도 증가하여, 주 15시간 이상 돌봄 제공자는 학교/직장 생활 유지 어려움이 41.1%로 15시간 미만(19.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돌봄기간이 길수록 누적 효과도 나타나, 5년 이상 장기 돌봄자는 1년 미만 돌봄자에 비해 정신건강(43.6% 및 31.5%) 및 문화·여가 활동(45.7% 및 30.4%)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진로 관련 어려움이, 저소득층에서는 전반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현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미래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돌봄자, 장시간·장기간 돌봄 제공자, 저소득층 등 고부담 집단에서 어려움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V-25.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삶의 질 측면

(단위: %)

구분	학업/진로 및 미래 설계 측면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측면				
	돌봄으로 학교/직장 생활 유지가 어려움	돌봄으로 진로/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움	나를 돌봐줄 어른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신체 건강 유지가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정신 건강 유지가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문화·여가 활동이 어려움	돌봄으로 친구 관계 및 단체활동이 어려움	
전체	32.4	31.2	31.7	34.8	23.6	38.6	39.0	33.6	
연령	13세 미만	22.6	21.8	20.3	27.1	17.3	24.8	38.3	33.1
	13~18세	28.2	29.4	30.2	29.8	21.8	36.7	37.1	30.6
	19~24세	44.4	39.8	41.3	46.4	30.1	50.5	41.8	37.8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48.6	49.5	49.0	52.9	33.7	52.9	53.8	46.6
	주돌봄자 아님	23.3	20.9	22.0	24.7	17.9	30.6	30.6	26.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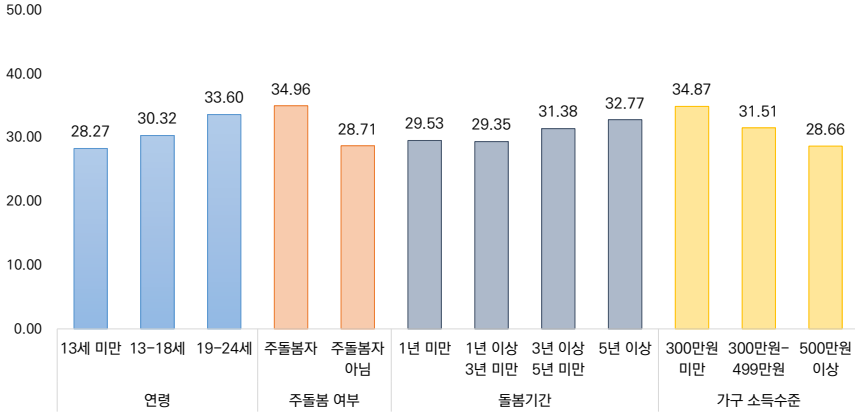
구분		학업/진로 및 미래 설계 측면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측면			
		돌봄으로 학교/직장 생활 유지가 어려움	돌봄으로 진로/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움	나를 돌봐줄 어른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신체 건강 유지가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정신 건강 유지가 어려움	돌봄으로 나의 문화 여가 활동이 어려움	돌봄으로 친구 관계 및 단체활동이 어려움
돌봄 기간	1년 미만	27.2	23.9	23.9	29.3	16.3	31.5	30.4	25.0
	1년 이상 3년 미만	28.0	23.8	25.6	28.7	21.3	33.5	32.9	26.2
	3년 이상 5년 미만	34.6	34.6	33.1	33.8	24.1	42.9	42.9	36.1
	5년 이상	37.2	38.8	39.9	43.6	28.7	43.6	45.7	42.6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 15시간 미만	19.7	14.5	17.9	22.2	15.0	28.6	23.9	18.4
	주 15시간 이상	41.1	42.6	41.1	43.4	29.4	45.5	49.3	44.0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48.2	43.5	47.1	55.9	33.5	52.9	52.9	44.1
	300만원-499만원	33.6	35.7	32.9	29.3	28.6	40.0	38.6	33.6
	500만원 이상	24.1	21.2	21.2	25.5	15.3	28.5	32.8	28.5

주: 1)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의 합산값(약간 어렵다+매우 어렵다)임.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V-7]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전체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4개 문항의 합산값을 산출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합산 점수의 평균은 30.96점(표준편차 9.84)으로 나타났다. 이는 14개 문항 기준 문항당 평균 2.21점 수준으로,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중간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19~24세가 33.60점으로 가장 높았고, 13~18세 30.32점, 13세 미만 28.27점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부담이 증가하였다. 주돌봄 여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는데, 주돌봄자의 경우 34.96점으로 부돌봄자(28.71점) 보다 6.25점 높았다. 돌봄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움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1년 미만 29.53점에서 5년 이상 32.77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했고,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34.87점으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28.66점으로 가장 낮아 6.21점 차이를 보였다.

(단위: 점)



주: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 14개 문항(1점-4점에 대한 합산값으로, 최소값 14~최대값 56의 범위를 가짐)

그림 V-7. 가족돌봄으로 어려움: 14개 문항 합산값 평균 비교

3. 학업 및 근로 현황과 가족돌봄의 영향

1) 학업 및 근로 활동 참여 여부

학업과 경제활동 참여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다.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학교만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고, ‘일만 다니고 있다’ 16.3%,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닌다’ 12.3%,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는다’ 16.6% 등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 6명 중 1명 비율로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않고 있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띈다.

배경변인별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13~18세에서 ‘일만 하고 있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나 의무교육 연령대에서도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에만 종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19~24세에서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는다’는 비율이 16.8%를 차지했다.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도 유의했는데, 주돌봄자 중 21.6%가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않아 돌봄 부담이 정상적인 사회 참여를 제약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않는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아,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 참여 배제가 중첩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26. 학업 및 근로 활동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학교만 다님	일만 하고 있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님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음	χ^2 (d.f.)	
전체	577	54.8	16.3	12.3	16.6	-	
연령	13세 미만	133	97.0	0.8	1.5	0.8	207.137*** (6)
	13~18세	248	55.6	9.7	9.7	25.0	
	19~24세	196	25.0	35.2	23.0	16.8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9.4	22.1	16.8	21.6	31.038*** (3)
	주돌봄자 아님	369	63.4	13.0	9.8	13.8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38.2	25.3	12.4	24.1	46.635*** (6)
	300만원 ~ 499만원	140	63.6	10.7	18.6	7.1	
	500만원 이상	137	66.4	12.4	10.2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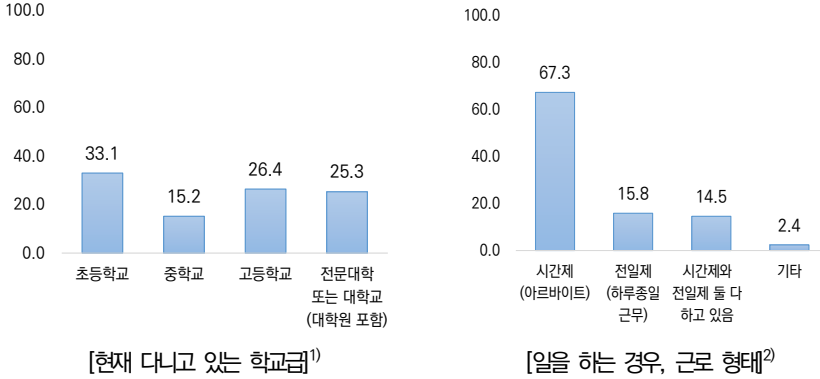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한편, 학교에 다닌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학 중인 학교급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33.1%, 중학교 15.2%, 고등학교 26.4%, 고등교육(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대학원) 25.3%로 파악되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33.1%를 차지한 점은 아동보호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 형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시간제(아르바이트)'라는 응답이 6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일제' 15.8%, '시간제와 전일제 둘 다 하고 있음' 14.5%, 기타 2.4% 순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시간제와 전일제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응답이 14.5%를 차지한 것은 가족돌봄과 함께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단위: %)



주: 1)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n=387)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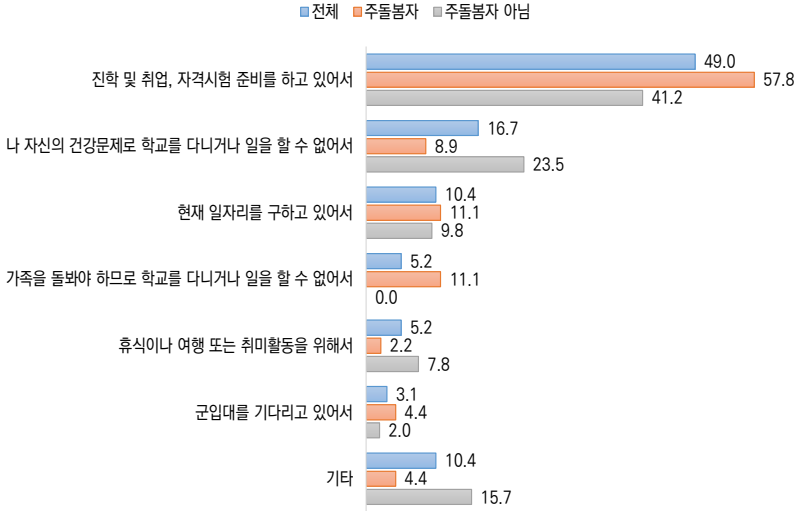
2)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n=165)에 한함.

그림 V-8. 학업 및 근로 활동 참여 현황: 학교급 및 근로 형태

[그림 V-9]에는 학업이나 근로 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n=96명)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진학 및 취업, 자격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가 49.0%로 가장 높았고, ‘나 자신의 건강문제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없어서’ 16.7%,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서’ 10.4%,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없어서’ 5.2% 순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배경변인중에서는 주돌봄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돌봄자의 경우 ‘진학 및 취업, 자격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하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11.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학업이나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 중 상당수가 진학/취업 준비 중이지만, 건강문제나 기타 돌봄 관련 제약으로 인한 비참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가족돌봄이 청소년기 주요 과업인 학업 및 근로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주: 1) 학업이나 근로 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n=96명)를 대상으로 함.

2) 주돌봄 여부에 따른 $\chi^2=14.949(d.f.=6, p<.05)$.

그림 V-9. 학업이나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2) 학업 및 근로에 대한 가족돌봄의 영향

(1) 학업 및 근로에 대한 지장

가족돌봄이 학업 및 근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2%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경험자(174명)를 대상으로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년에 1-3회 정도’가 39.1%로 가장 많았고, ‘한달에 1회 정도’ 36.2%, ‘일주일에 1회 정도’ 17.2%, ‘거의 매일’ 7.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달에 1회 이상’ 이 같은 경험을 한다는 응답이 유경험자의 60.9%를 차지한 것은 가족돌봄이 청소년의 학업 연속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경변인의 경우,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돌봄자의 46.6%가 지각/조퇴/결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부돌봄자(20.9%)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평균 주당 돌봄시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주 15시간 이상 돌봄하는 청소년

년의 41.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주 15시간 미만의 13.7%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47.6%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에서 16.1%로 가장 낮아 경험률이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일수록 학업이나 근로 활동에 더 큰 지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27. 가족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 경험 여부 및 빈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험 빈도							χ^2 (d.f.)
		없다	있다	거의 매일	일주일에 1회 정도	한달에 1회 정도	일년에 1~3회 정도		
전체	577	69.8	30.2	7.5	17.2	36.2	39.1	-	
연령	13세 미만	133	78.9	21.1	0.0	17.9	32.1	50.0	8.136* (2)
	13~18세	248	69.4	30.6	13.2	17.1	28.9	40.8	
	19~24세	196	64.3	35.7	4.3	17.1	45.7	32.9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53.4	46.6	8.2	19.6	37.1	35.1	41.933** * (1)
	주돌봄자 아님	369	79.1	20.9	6.5	14.3	35.1	44.2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79.3	20.7	10.5	15.8	26.3	47.4	8.116* (3)
	1년 이상 3년 미만	164	72.0	28.0	4.3	19.6	39.1	37.0	
	3년 이상 5년 미만	133	69.9	30.1	7.5	17.5	32.5	42.5	
	5년 이상	188	63.3	36.7	8.7	15.9	39.1	36.2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86.3	13.7	12.5	9.4	18.8	59.4	50.763** * (1)
	주15시간 이상	343	58.6	41.4	6.3	19.0	40.1	34.5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52.4	47.6	11.1	14.8	30.9	43.2	36.362** * (2)
	300만원~499만원	140	72.1	27.9	2.6	20.5	43.6	33.3	
	500만원 이상	137	83.9	16.1	4.5	22.7	40.9	31.8	

주: 1) 경험 빈도는 가족돌봄으로 지각/조퇴/결석을 해본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제시된 χ^2 는 경험 여부에 대한 검증량이며,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및 근로 중단 의향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및 근로 중단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5%가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배경변인별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19~24세는 31.6%로 13세 미만의 9.8%보다 3.2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 선택과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기에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화됨을 보여준다. 또한 중고생 시기에 해당하는 13~18세 5명 중 1명이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한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업 중단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장기적으로 이들의 교육 기회와 진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돌봄자의 38.5%가 중단 의향을 경험한 반면 부돌봄자는 11.9%에 그쳤고, 평균 주당 돌봄시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주 15시간 이상 돌봄하는 청소년의 30.3%가 중단 의향을 경험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발달 과업과 돌봄 책임 간 갈등이 심화되어 청년기 가족돌봄자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28.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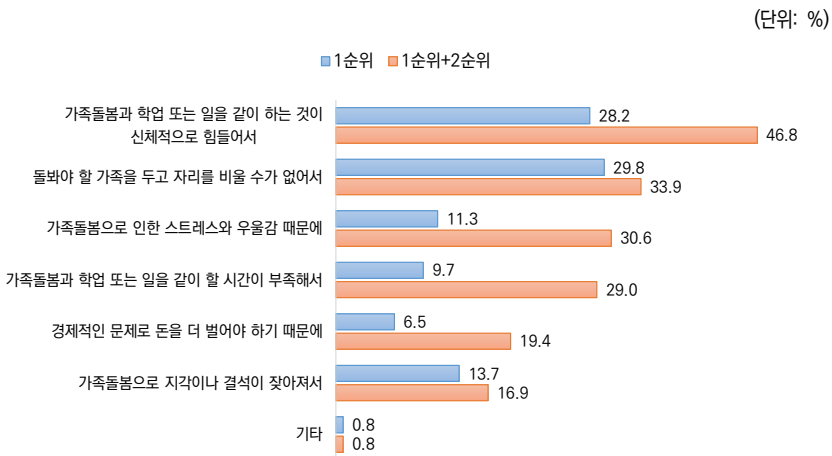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d.f.)
전체		577	21.5	78.5	-
연령	13세 미만	133	9.8	90.2	23.211*** (2)
	13~18세	248	19.8	80.2	
	19~24세	196	31.6	68.4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8.5	61.5	55.522*** (1)
	주돌봄자 아님	369	11.9	88.1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7.6	92.4	23.248*** (3)
	1년 이상 3년 미만	164	16.5	83.5	
	3년 이상 5년 미만	133	24.1	75.9	
	5년 이상	188	30.9	69.1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8.5	91.5	39.087*** (1)
	주15시간 이상	343	30.3	69.7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32.9	67.1	16.626*** (2)
	300만원~499만원	140	20.0	80.0	
	500만원 이상	137	13.9	86.1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V-10]에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돌봐야 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족돌봄과 학업 또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28.2%, ‘가족돌봄으로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져서’ 13.7%, ‘가족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 11.3%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2순위를 종합하면 신체적 어려움(46.8%)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33.9%)이 상위 2개 이유를 차지했으며, 가족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30.6%), 가족돌봄과 학업 또는 일을 같이 할 시간 부족(29.0%)도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물리적 시간 부족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돌봄 대상자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주: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124)를 대상으로 함.

그림 V-10.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사유

3) 가족 생계 지원에 대한 부담감

가족돌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165명)는 평균 33.03%의 수입을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별로는 10% 초

과~30% 이하가 35.8%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 26.7%, 30% 초과~50% 이하와 50% 초과가 각각 18.8%였다. 전체적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37.6%에 달했다.

주돌봄자는 수입의 50% 초과분을 가족돌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28.4%로 부돌봄자(9.5%) 보다 3배 높았다. 평균 주당 돌봄시간에 따른 차이도 뚜렷해 주 15시간 이상 돌봄하는 청소년은 평균 39.14%를 사용해 주 15시간 미만의 18.5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족돌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26.6%로 여타 소득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일수록 개인 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을 가족돌봄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29. 수입 중 가족돌봄에 쓰이는 비용의 비중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χ^2 (d.f.)
전체		165	33.03	24.33	26.7	35.8	18.8	18.8	-
연령	13세 미만	3	53.33	20.82	0.0	33.3	0.0	66.7	5.830 (6)
	13~18세	48	32.92	24.66	25.0	37.5	16.7	20.8	
	19~24세	114	32.54	24.23	28.1	35.1	20.2	16.7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81	40.12	26.15	18.5	30.9	22.2	28.4	13.842** (3)
	주돌봄자 아님	84	26.19	20.35	34.5	40.5	15.5	9.5	
돌봄 기간	1년 미만	21	20.95	20.95	47.6	42.9	0.0	9.5	11.848 (9)
	1년 이상 3년 미만	39	36.67	25.79	20.5	35.9	20.5	23.1	
	3년 이상 5년 미만	32	35.31	25.14	25.0	28.1	28.1	18.8	
	5년 이상	73	33.56	23.47	24.7	37.0	19.2	19.2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49	18.57	17.08	57.1	26.5	12.2	4.1	35.547*** (3)
	주15시간 이상	116	39.14	24.41	13.8	39.7	21.6	25.0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64	37.97	25.71	17.2	37.5	18.8	26.6	14.164* (6)
	300만원~499만원	41	33.66	22.89	24.4	39.0	19.5	17.1	
	500만원 이상	31	24.19	22.48	48.4	22.6	22.6	6.5	

주: 1) 일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165)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이어서, 가족 생계 지원에 대한 부담감을 조사한 결과, 62.4%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돌봄자는 75.6%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해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48.7%) 보다 26.9%p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매우 부담됨' 응답률이 30.8%로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4.0%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돌봄자이면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청소년이 가족 생계지원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30. 가족 생계지원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담되지 않음		부담됨		χ^2 (d.f.)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				
전체	234	2.69	0.85	9.4	28.2	37.6	62.4	46.2	16.2	-	
연령	13세 미만	23	2.13	0.92	34.8	17.4	52.2	47.8	47.8	0.0	29.246*** (6)
	13~18세	83	2.58	0.87	12.0	31.3	43.4	56.6	43.4	13.3	
	19~24세	128	2.87	0.78	3.1	28.1	31.3	68.8	47.7	21.1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119	2.96	0.72	1.7	22.7	24.4	75.6	53.8	21.8	25.710*** (3)
	주돌봄자 아님	115	2.42	0.90	17.4	33.9	51.3	48.7	38.3	10.4	
돌봄 기간	1년 미만	34	2.38	0.89	17.6	35.3	52.9	47.1	38.2	8.8	13.528 (9)
	1년 이상 3년 미만	64	2.59	0.85	12.5	26.6	39.1	60.9	50.0	10.9	
	3년 이상 5년 미만	45	2.67	0.93	11.1	31.1	42.2	57.8	37.8	20.0	
	5년 이상	91	2.89	0.77	3.3	25.3	28.6	71.4	50.5	20.9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67	2.54	0.91	14.9	29.9	44.8	55.2	41.8	13.4	3.979 (3)
	주15시간 이상	167	2.75	0.82	7.2	27.5	34.7	65.3	47.9	17.4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91	3.00	0.89	8.8	13.2	22.0	78.0	47.3	30.8	41.042*** (6)
	300만원~499만원	60	2.65	0.68	5.0	31.7	36.7	63.3	56.7	6.7	
	500만원 이상	50	2.24	0.77	16.0	48.0	64.0	36.0	32.0	4.0	

주: 1) 가족의 생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고 답한 응답자 및 가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n=234)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1) 삶의 만족도

가족돌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6.10점(표준편차 2.26)으로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이 6.95점으로 가장 높았고, 19~24세가 5.77점으로 가장 낮아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돌봄자는 5.58점으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6.39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5.50점으로 가장 낮았고, 300만원 이상 중·고소득층에서는 6.36~6.37점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이는 주돌봄자, 저소득층, 연령이 높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표 V-31.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d.f.)	
전체	577	6.10	2.26	-	
성별	남자	218	6.50	2.26	3.411** (575)
	여자	359	5.85	2.22	
연령	13세 미만	133	6.95	1.94	13.213*** (2)
	13~18세	248	5.90	2.24	
	19~24세	196	5.77	2.34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5.58	2.57	-3.900*** (350.095)
	주돌봄자 아님	369	6.39	2.01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6.40	1.88	2.015 (3)
	1년 이상 3년 미만	164	6.25	2.24	
	3년 이상 5년 미만	133	6.14	2.25	
	5년 이상	188	5.79	2.42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5.50	2.33	8.464*** (2)
	300만원~499만원	140	6.36	2.04	
	500만원 이상	137	6.37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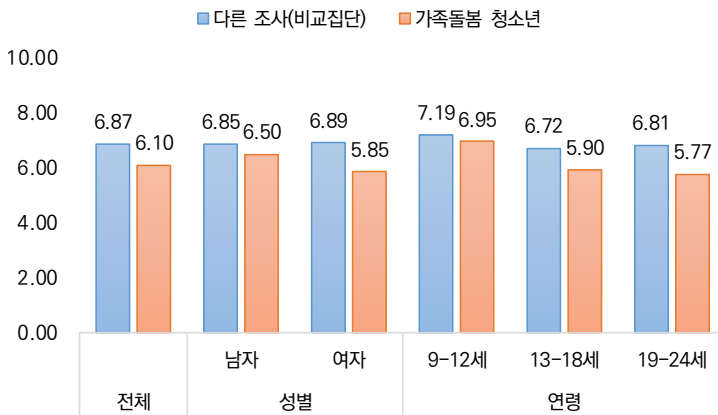
주: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로 측정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2)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V-11]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비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은 6.10점으로 비교 집단의 점수(6.87점)보다 0.77점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6.50점 및 6.85점(0.35점 차이), 여성의 경우 5.85점 및 6.89점(1.04점 차이)으로 특히 여성 가족돌봄 청소년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19~24세에서 5.77점 및 6.81점으로 1.04점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단위: 점)



주: 다른 조사(비교집단)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나타냄.

그림 V-11. 비교집단과의 비교: 삶의 만족도

2) 우울 정도

다음으로, <표 V-32>에는 우울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값은 4.58점(표준편차 2.68)으로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우울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배경변인별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4.84점으로 남성(4.17)보다 0.67점 높았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이 3.20점으로 가장 낮았고, 19~24세가

5.05점으로 가장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돌봄 여부에 따른 차이도 감지되었는데, 주돌봄자의 경우 5.14점으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4.27점)보다 0.87점 높게 파악되었다. 돌봄기간별로는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하여, 1년 미만 3.93점에서 5년 이상 5.18점까지 상승했다($F=5.919$, $p<.01$).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5.18점으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4.12점으로 가장 낮았다($F=6.204$, $p<.01$). 이상의 결과는 여성, 연령이 높은 청소년, 주돌봄자, 저소득층 등에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돌봄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32. 우울감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d.f.)
전체		577	4.58	2.68	-
성별	남자	218	4.17	2.71	-2.907** (575)
	여자	359	4.84	2.64	
연령	13세 미만	133	3.20	2.39	24.818*** (2)
	13~18세	248	4.96	2.66	
	19~24세	196	5.05	2.61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5.14	2.80	3.773*** (575)
	주돌봄자 아님	369	4.27	2.57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3.93	2.71	5.919** (3)
	1년 이상 3년 미만	164	4.24	2.67	
	3년 이상 5년 미만	133	4.61	2.65	
	5년 이상	188	5.18	2.61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5.18	2.77	6.204** (2)
	300만원 ~ 499만원	140	4.63	2.35	
	500만원 이상	137	4.12	2.71	

주: 1) '전혀 우울하지 않다=0'~'매우 우울하다=10'로 측정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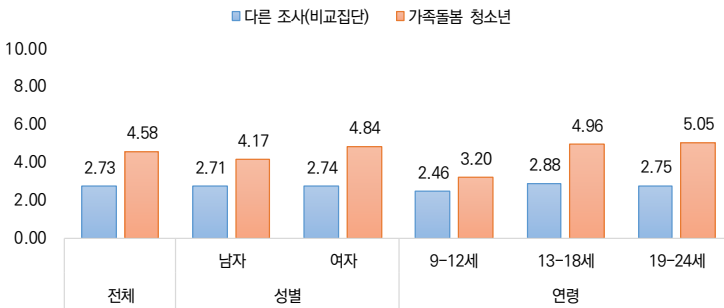
2) * $p <.05$, ** $p <.01$, *** $p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가족돌봄 청소년의 우울감 수준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은 4.58점으로 전국 청소년 2.73점보다 1.85점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4.17점 및 2.71점(1.46점 차이), 여성은 4.84점 및 2.74점(2.10점 차이)으로 모두 적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높은 우울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19~24세에서 5.05점 및 2.75점으로 2.30점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전국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점)



주: 여기에서 다른 조사(비교집단) 결과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임.

그림 V-12. 비교집단과의 비교: 우울감

3) 건강에 대한 인식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청소년들의 건강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표 V-33>에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이 78.0%로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돌봄자의 긍정 응답률이 71.6%로 부돌봄자(81.6%)보다 10.0%p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돌봄 부담이 클수록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33.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신체적 건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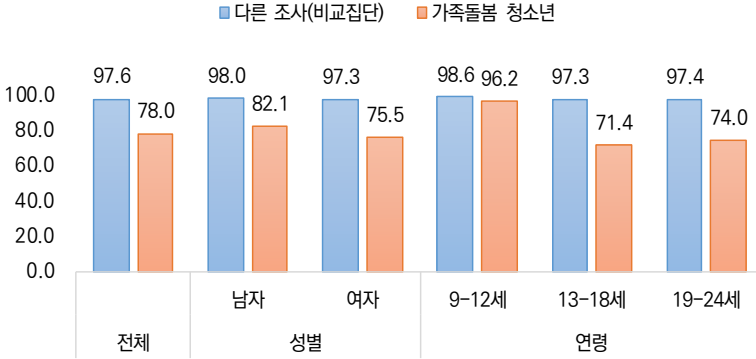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577	3.8	18.2	22.0	78.0	55.3	22.7	-	
연령	13세 미만	133	0.8	3.0	3.8	96.2	62.4	33.8	38.866*** (6)
	13~18세	248	4.4	24.2	28.6	71.4	50.8	20.6	
	19~24세	196	5.1	20.9	26.0	74.0	56.1	17.9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6.7	21.6	28.4	71.6	48.6	23.1	12.058** (3)
	주돌봄자 아님	369	2.2	16.3	18.4	81.6	59.1	22.5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3.3	12.0	15.2	84.8	65.2	19.6	16.863 (9)
	1년 이상 3년 미만	164	3.7	17.7	21.3	78.7	52.4	26.2	
	3년 이상 5년 미만	133	3.8	12.0	15.8	84.2	60.2	24.1	
	5년 이상	188	4.3	26.1	30.3	69.7	49.5	20.2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6.5	24.7	31.2	68.8	45.3	23.5	16.830* (6)
	300만원 ~ 499만원	140	2.1	19.3	21.4	78.6	62.9	15.7	
	500만원 이상	137	2.2	14.6	16.8	83.2	60.6	22.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 인식 수준을 좀 더 밀착해서 이해하기 위해, 전국 수준에서 실시된 일반 청소년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비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가족돌봄 청소년은 78.0%로 전국 청소년 97.6%보다 19.6%p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82.1% 및 98.0%(15.9%p 차이), 여성은 75.5% 및 97.3%(21.8%p 차이)로 특히 여성에서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낮은 건강 인식을 나타냈으며, 특히 19~24세에서 74.0% 및 97.4%로 23.4%p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체감하는 신체적 건강 수준이 전국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편임을 시사한다.

(단위: %)



주: 다른 조사(비교집단)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이며, 제시된 수치는 동의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그림 V-13. 비교집단과의 비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다음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 건강하다는 긍정 응답이 66.6%로 신체적 건강(78.0%)보다 11.4%p 낮았다. 연령별로는 긍정 응답 비율이 13세 미만 91.0%에서 19~24세 56.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돌봄자의 긍정 응답률은 55.3%로 부돌봄자의 72.9%보다 17.6%p 낮았으며, 돌봄 기간이 길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돌봄 부담이 클수록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 인식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34.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정신적 건강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4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577	9.4	24.1	33.4	66.6	44.7	21.8	-	
연령	13세 미만	133	0.0	9.0	9.0	91.0	58.6	32.3	53.892*** (6)
	13~18세	248	12.9	25.4	38.3	61.7	39.9	21.8	
	19~24세	196	11.2	32.7	43.9	56.1	41.3	14.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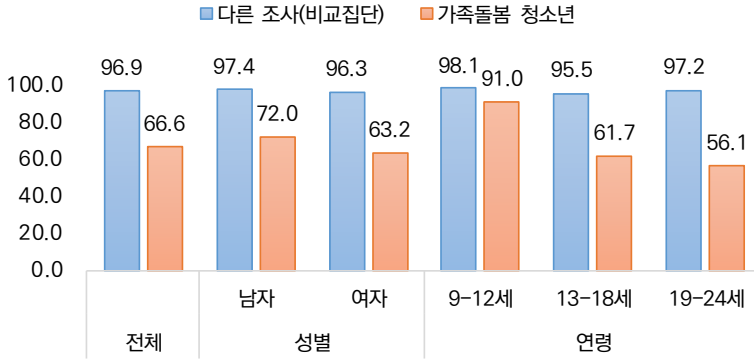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3.9	30.8	44.7	55.3	35.1	20.2	20.456*** (3)
	주돌봄자 아님	369	6.8	20.3	27.1	72.9	50.1	22.8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9.8	16.3	26.1	73.9	48.9	25.0	19.361* (9)
	1년 이상 3년 미만	164	6.7	25.6	32.3	67.7	38.4	29.3	
	3년 이상 5년 미만	133	7.5	22.6	30.1	69.9	52.6	17.3	
	5년 이상	188	12.8	27.7	40.4	59.6	42.6	17.0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14.1	27.1	41.2	58.8	38.8	20.0	12.806* (6)
	300만원 ~ 499만원	140	5.0	27.1	32.1	67.9	49.3	18.6	
	500만원 이상	137	5.1	26.3	31.4	68.6	46.0	22.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국 수준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 긍정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긍정 응답률은 66.6%로 비교집단 청소년 96.9%보다 30.3%p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2.0%로 비교집단 조사(97.4%) 보다 25.4%p 낮았고, 여성은 63.2%로 비교집단(96.3%) 보다 33.1%p 낮아 여성에서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19~24세에서 56.1%로 전국 동일 연령대 97.2%보다 41.1%p의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정신적 건강 인식이 매우 낮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단위: %)



주: 다른 조사(비교집단)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이며, 제시된 수치는 동의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그림 V-14. 비교집단과의 비교: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4) 진로 발달 수준

(1) 진로 설계 역량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로 설계 역량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역량은 중간 수준을 보였으나, 실제 진로 탐색 행동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문항별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가 73.5%로 가장 높았고,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71.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67.9%,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67.9%,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66.2% 순이었다. 그에 비해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는 51.0%로 가장 낮았다. 주돌봄자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부돌봄자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부담이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표 V-35. 진로 설계 역량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전체	577	5.4	28.4	33.8	66.2	46.6	19.6	-	
	연령	13세 미만	133	1.5	18.8	20.3	79.7	58.6	21.1	17.504** (6)
		13~18세	248	6.0	29.4	35.5	64.5	45.2	19.4	
		19~24세	196	7.1	33.7	40.8	59.2	40.3	18.9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8.7	30.3	38.9	61.1	38.5	22.6	13.067** (3)
		주돌봄자 아님	369	3.5	27.4	30.9	69.1	51.2	17.9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8.2	30.6	38.8	61.2	42.9	18.2	12.071 (6)
		300만원 ~ 499만원	140	3.6	30.0	33.6	66.4	51.4	15.0	
500만원 이상		137	2.2	22.6	24.8	75.2	56.9	18.2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전체	577	4.9	21.7	26.5	73.5	50.8	22.7	-	
	연령	13세 미만	133	0.8	19.5	20.3	79.7	54.9	24.8	13.624* (6)
		13~18세	248	5.2	18.5	23.8	76.2	53.6	22.6	
		19~24세	196	7.1	27.0	34.2	65.8	44.4	21.4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7.7	26.0	33.7	66.3	41.8	24.5	13.784** (3)
		주돌봄자 아님	369	3.3	19.2	22.5	77.5	55.8	21.7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7.6	24.7	32.4	67.6	45.9	21.8	11.812 (6)
		300만원 ~ 499만원	140	2.9	25.0	27.9	72.1	56.4	15.7	
500만원 이상		137	2.2	19.0	21.2	78.8	57.7	21.2		
(3)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전체	577	6.4	25.6	32.1	67.9	44.4	23.6	-	
	연령	13세 미만	133	2.3	33.1	35.3	64.7	51.9	12.8	22.091** (6)
		13~18세	248	7.7	21.0	28.6	71.4	41.9	29.4	
		19~24세	196	7.7	26.5	34.2	65.8	42.3	23.5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0.1	23.6	33.7	66.3	37.5	28.8	14.736** (3)
		주돌봄자 아님	369	4.3	26.8	31.2	68.8	48.2	20.6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10.6	26.5	37.1	62.9	37.6	25.3	19.634** (6)
		300만원 ~ 499만원	140	2.9	28.6	31.4	68.6	50.7	17.9	
500만원 이상		137	1.5	28.5	29.9	70.1	48.2	21.9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전체	577	5.2	23.4	28.6	71.4	48.5	22.9	-	
	연령	13세 미만	133	1.5	31.6	33.1	66.9	50.4	16.5	21.073** (6)
		13~18세	248	5.6	20.2	25.8	74.2	44.4	29.8	
		19~24세	196	7.1	21.9	29.1	70.9	52.6	18.4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8.2	22.1	30.3	69.7	45.2	24.5	6.889 (3)
		주돌봄자 아님	369	3.5	24.1	27.6	72.4	50.4	22.0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9.4	24.1	33.5	66.5	47.6	18.8	16.113* (6)
		300만원 ~ 499만원	140	2.1	22.9	25.0	75.0	57.1	17.9	
500만원 이상		137	1.5	21.9	23.4	76.6	52.6	24.1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전체	577	6.2	25.8	32.1	67.9	43.3	24.6	-	
	연령	13세 미만	133	7.5	36.1	43.6	56.4	45.9	10.5	30.431*** (6)
		13~18세	248	4.0	21.0	25.0	75.0	41.5	33.5	
		19~24세	196	8.2	25.0	33.2	66.8	43.9	23.0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0.6	22.6	33.2	66.8	39.9	26.9	12.707** (3)
		주돌봄자 아님	369	3.8	27.6	31.4	68.6	45.3	23.3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8.2	25.9	34.1	65.9	42.9	22.9	8.358 (6)
		300만원 ~ 499만원	140	2.1	28.6	30.7	69.3	47.9	21.4	
		500만원 이상	137	2.9	27.0	29.9	70.1	45.3	24.8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전체	577	15.3	33.8	49.0	51.0	34.8	16.1	-	
	연령	13세 미만	133	17.3	39.1	56.4	43.6	36.8	6.8	12.253 (6)
		13~18세	248	14.1	31.0	45.2	54.8	35.9	19.0	
		19~24세	196	15.3	33.7	49.0	51.0	32.1	18.9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8.8	24.5	43.3	56.7	36.5	20.2	14.513** (3)
		주돌봄자 아님	369	13.3	39.0	52.3	47.7	33.9	13.8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15.9	33.5	49.4	50.6	35.9	14.7	1.150 (6)
		300만원 ~ 499만원	140	12.9	33.6	46.4	53.6	39.3	14.3	
		500만원 이상	137	14.6	36.5	51.1	48.9	35.0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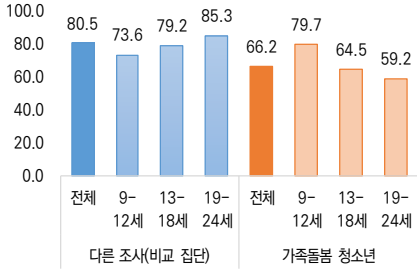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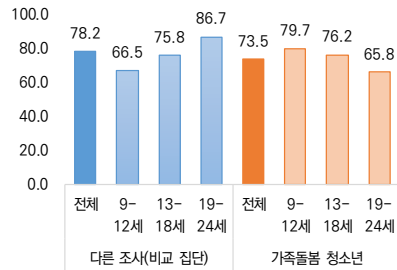
[그림 V-15]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진로 발달 수준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6개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률을 기준으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6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가장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이었는데, 일반 청소년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80.5%를 나타낸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66.2%에 머물러 14.3%p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더 주목할 점은 연령에 따른 발달 패턴의 차이이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진로 자기효능감이 대체로 향상되는 정상적인 발달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능감이 감소하는 역행 패턴을 나타냈다. 이는 가족돌봄 부담이 청소년기 핵심 발달과업인 진로 탐색과 준비를 지속적으로 제약하여, 연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진로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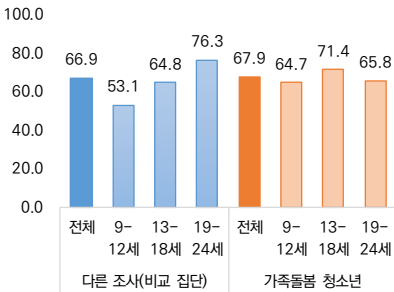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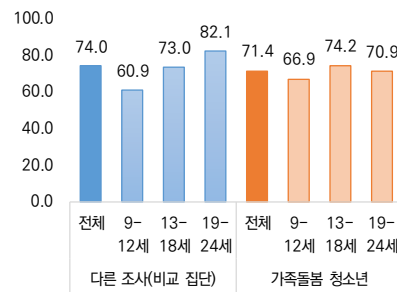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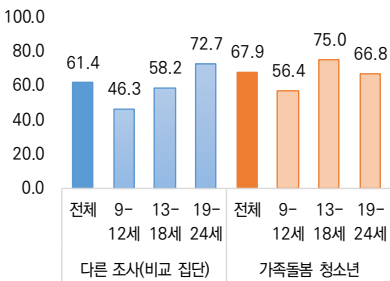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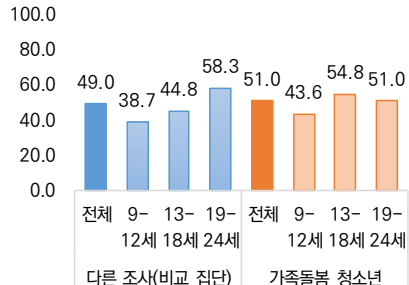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적이 있다]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나는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주: 여기에서 다른 조사(비교집단) 결과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이며, 제시된 수치는 동의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그림 V-15. 비교집단과의 비교: 진로 효능감 6개 문항

(2) 진로 확신 수준

다음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진로 확신 수준을 조사한 결과, 4개 문항 모두 긍정 응답률이 60% 이상을 나타냈다.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78.5%로 가장 높았고,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70.4%,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65.5%, '나는 내 미래가 안정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61.7% 순으로 파악되었다. 여타 문항에 비해 '내 미래가 안정적인 것이라 생각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0% 초반에 머문 결과가 눈길을 끈다. 바꿔 말하면 가족돌봄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6. 진로목표 및 진로자신감: 세부문항별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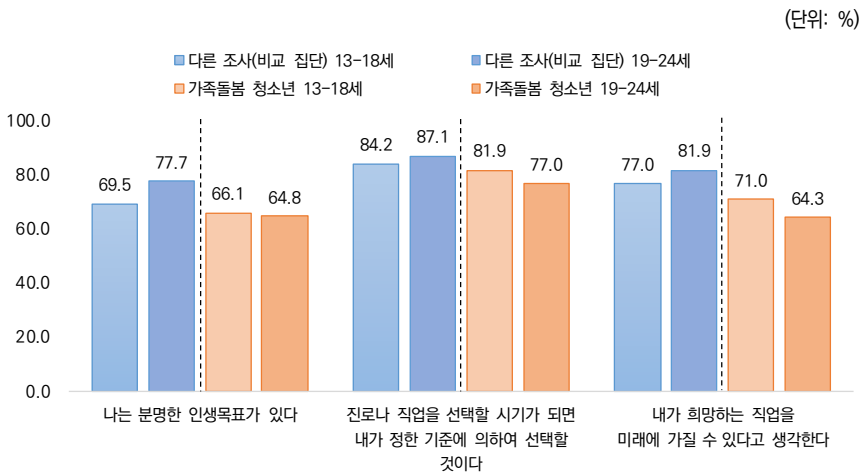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응답자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577	2.81	0.88	7.5	27.0	34.5	65.5	42.1	23.4
②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577	2.97	0.75	4.0	17.5	21.5	78.5	56.0	22.5
③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77	2.89	0.83	5.4	24.3	29.6	70.4	46.8	23.6
④ 나는 내 미래가 안정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577	2.68	0.87	10.2	28.1	38.3	61.7	44.7	17.0

[그림 V-16]에는 이 같은 결과를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인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만,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진로 확신 수준에 포함된 4개 문항 가운데 '나는 내 미래가 안정적인 것이라 생각한다'를 제외한 3개 문항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해당 문항은 9~12세의 저연령대를 제외한 13~24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비교 가능한 3개 문항을 대상으로, 비교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13~24세 응답값만을 대상으로 상호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진로 확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비교

집단인 일반 청소년은 대체로 13~18세에 비해 19~24세에 진로 확산 수준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에는 13~18세에 비해 19~24세의 긍정 응답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과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는 문항의 경우, 비교 집단인 일반청소년 19~24세의 긍정응답률은 77.7%를 나타낸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 19~24세는 64.8%를 보여 12.9%p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19~24세의 긍정응답률을 비교해보면, 일반청소년 81.9% vs 가족돌봄 청소년 64.3%로 17.6%p의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 다른 조사(비교집단) 결과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이며, 제시된 수치는 동의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그림 V-16. 비교집단과의 비교: 진로 확산 수준(13~18, 19~24세)

(3) 진로 준비 현황 및 제약 요인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진로 준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로 준비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사하였다. 향후 진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약간 준비되어 있다'+ '매우 준비되어 있다')이 47.7%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부정 응답('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이 52.3%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성인기로 접어든 19~24세 연령대에서도 진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긍정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13세 미만에서 긍정 응답률이 36.8%로 가장 낮았고 19~24세에서 51.0%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앞서 살펴본 결과와 연계해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 진로 준비 수준은 미흡한 편임을 시사한다. 특히 성인 전환기에 해당하는 19~24세에서도 진로 준비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가족돌봄 부담이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 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V-37. 진로 준비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약간 준비되어 있다	매우 준비되어 있다			
전체	577	12.7	39.7	52.3	47.7	42.8	4.9	-	
연령	13세 미만	133	13.5	49.6	63.2	36.8	35.3	1.5	18.983** (6)
	13~18세	248	9.3	39.9	49.2	50.8	43.5	7.3	
	19~24세	196	16.3	32.7	49.0	51.0	46.9	4.1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4.4	37.0	51.4	48.6	42.8	5.8	1.953 (3)
	주돌봄자 아님	369	11.7	41.2	52.8	47.2	42.8	4.3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15.9	43.5	59.4	40.6	37.1	3.5	7.988 (6)
	300만원 ~ 499만원	140	10.7	39.3	50.0	50.0	45.7	4.3	
	500만원 이상	137	9.5	42.3	51.8	48.2	40.1	8.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표 V-38〉에는 진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30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주된(1순위) 이유로는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가 26.8%로 가장 높았고,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24.8%, '경제적 부담으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없어서' 24.5%, '가족을 돌보느라 진로 준비를 할 여력이

안 되어서' 9.6%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거나 정보 미흡, 경제적 여건으로 파악되지만, 가족돌봄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응답도 10명 중 1명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배경변인별로는 돌봄 강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3세 미만은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13~18세와 19~24세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제약으로 나타났다. 주돌봄자와 5년 이상 장기 돌봄자, 주 15시간 이상 고강도 돌봄자는 '경제적 부담'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부담' 응답이 42.6%로 전체 평균(24.5%)보다 18.1%p 높게 나타나, 돌봄 강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현실적 제약이 진로 준비의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38. 진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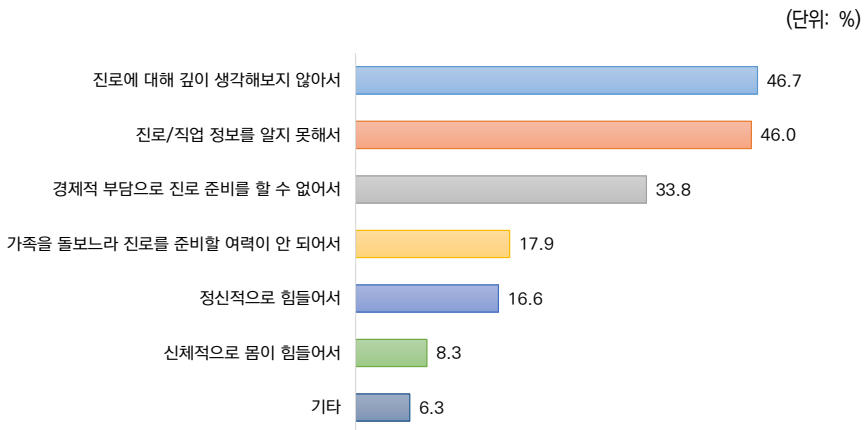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가족을 돌보느라 진로를 준비할 여력이 안 되어서	경제적 부담으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진로/ 직업 정보를 알지 못해서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신체적 으로 몸이 힘들어서	정신적 으로 힘들어서	기타	χ^2 (d.f.)	
전체	302	9.6	24.5	24.8	26.8	2.6	7.3	4.3	-	
연령	13세 미만	84	10.7	11.9	29.8	39.3	1.2	0.0	7.1	31.017** (12)
	13~18세	122	8.2	27.9	21.3	23.8	4.1	9.8	4.9	
	19~24세	96	10.4	31.3	25.0	19.8	2.1	10.4	1.0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107	15.0	37.4	20.6	14.0	2.8	8.4	1.9	30.092*** (6)
	주돌봄자 아님	195	6.7	17.4	27.2	33.8	2.6	6.7	5.6	
돌봄 기간	1년 미만	49	4.1	24.5	20.4	36.7	2.0	10.2	2.0	29.785* (18)
	1년 이상 3년 미만	81	7.4	14.8	33.3	29.6	0.0	8.6	6.2	
	3년 이상 5년 미만	69	11.6	20.3	23.2	33.3	2.9	4.3	4.3	
	5년 이상	103	12.6	35.0	21.4	15.5	4.9	6.8	3.9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130	3.8	16.2	29.2	33.8	1.5	10.0	5.4	24.338*** (6)
	주15시간 이상	172	14.0	30.8	21.5	21.5	3.5	5.2	3.5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01	12.9	42.6	14.9	21.8	1.0	6.9	0.0	40.553*** (12)
	300만원-499만원	70	10.0	18.6	34.3	22.9	2.9	2.9	8.6	
	500만원 이상	71	5.6	12.7	32.4	32.4	4.2	8.5	4.2	

주: 1) 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부정 응답한 응답자(n=302)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V-17]에는 진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1,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산출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46.0%, '경제적 부담으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없어서' 33.8%, '가족을 돌보느라 진로 준비를 할 여력이 안 되어서' 17.9%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 부족'을 가장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이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성찰할 심리적·시간적 여유가 제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자원 접근성에서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 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부정 응답한 응답자(n=302)를 대상으로 함.

그림 V-17. 진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1순위+2순위)

5.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1)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

(1)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인지도 및 정보 접근 경로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정보 접근 경로를

조사한 결과, 68.1%가 관련 서비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나, 31.9%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응답자 가운데 약 1/3 이상이 지원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 인지 경로로는 '인터넷 검색(온라인 포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이 24.1%로 가장 많았고, '주민센터나 복지기관(가족센터, 복지관, 고용센터 등)' 23.1%,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21.7%, '지인(친척, 친구, 이웃 등)' 19.1%, '학교'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정보 탐색과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 습득이 주된 경로임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시설'을 통한 정보 습득(21.7%)이 '학교'(13.2%)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13~18세에서는 '청소년시설'을 통한 정보 습득이 32.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조사 응답자 중 일부가 청소년시설을 통해 조사에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표본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V-39.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인지도 및 정보 접근 경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인지 경로(중복응답)								
				내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	지인	학교	주민 센터나 복지 기관	청소년 시설	종교 기관	의료 기관	인쇄 홍보물 또는 언론 매체	기타
전체	577	31.9	68.1	24.1	19.1	13.2	23.1	21.7	4.0	7.6	7.8	1.7
연령	13세 미만	133	33.8	66.2	15.8	25.6	21.1	23.3	6.8	6.0	5.3	5.3
	13~18세	248	31.5	68.5	22.2	15.7	14.9	21.0	32.3	2.4	6.9	0.8
	19~24세	196	31.1	68.9	32.1	18.9	5.6	25.5	18.4	4.6	10.2	0.5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6.4	73.6	29.8	16.8	13.5	30.8	26.4	4.8	8.7	1.0
	주돌봄자 아님	369	35.0	65.0	20.9	20.3	13.0	18.7	19.0	3.5	7.0	2.2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21.8	78.2	27.1	15.9	11.2	32.9	30.6	4.7	8.2	1.8
	300만원~499만원	140	32.9	67.1	24.3	24.3	17.9	20.0	16.4	5.0	8.6	0.0
	500만원 이상	137	32.8	67.2	31.4	27.7	10.9	20.4	11.7	4.4	10.9	2.9

주: 1) '들어본 적 있다' 응답은 100에서 '전혀 들어본 적 없다' 값을 제외한 것으로, 세부 보기(인지 경로)의 합과 다를 수 있음.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일상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이어서 <표 V-40>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19~64세) 및 9~39세의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일컫는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소개, 2025.9.12. 인출).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9~39세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소개, 2025.9.12. 인출⁷⁰⁾).

분석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71.4%가 정부의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8.6%에 그쳤다. 정책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모르고 있어 2024년부터 시행된 일상돌봄서비스 정책의 홍보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배경변인별로는 주돌봄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돌봄자의 인지 비율이 36.5%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24.1%) 보다 12.4%p 높았다.

돌봄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라도 차이를 보였는데, 비동거하는 경우 인지 비율이 42.0%로 동거하는 경우의 25.1%보다 16.9%p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일상돌봄서비스가 동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동거 돌봄자들이 물리적 거리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평균 주당 돌봄시간에 따라서는 주 1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인지 비율이 34.1%로 주 15시간 미만의 20.5%보다 13.6%p 높았다. 이는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탐색이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7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소개,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900>에서 2025.9.12. 인출.

표 V-40. '일상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	χ^2 (d.f.)
전체		577	28.6	71.4	-
연령	13세 미만	133	29.3	70.7	3.979 (2)
	13~18세	248	24.6	75.4	
	19~24세	196	33.2	66.8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6.5	63.5	10.048** (1)
	주돌봄자 아님	369	24.1	75.9	
돌봄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25.1	74.9	13.224*** (1)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42.0	58.0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20.5	79.5	12.597*** (1)
	주15시간 이상	343	34.1	65.9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28.8	71.2	1.282 (2)
	300만원~499만원	140	33.6	66.4	
	500만원 이상	137	34.3	65.7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 탐색 경험

(1) 정보 탐색 경험 여부 및 용이성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탐색 경험을 조사한 결과, 67.8%가 관련 정보를 '찾아본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찾아본 적 있다'는 응답은 32.2%로 나타나, 약 2/3가 능동적인 정보 탐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19~24세의 정보 탐색 경험이 40.3%로 13세 미만(24.1%)보다 16.2%p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능동적 정보 탐색이 활발했다. 주돌봄자의 정보 탐색 경험은 45.7%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24.7%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비동거 돌봄자는 43.7%로 동거 돌봄자의 29.3%보다 14.4%p 높았고, 주 15시간 이상 돌봄 제공자는 41.4%로 주 15시간 미만 돌봄 제공자의 18.8%보다 2.2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책임이 크고 강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욕구와 탐색 역량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특히 주돌봄자와 고강도 돌봄 제공자의 높은 정보 탐색률은 이들이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41.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정보 탐색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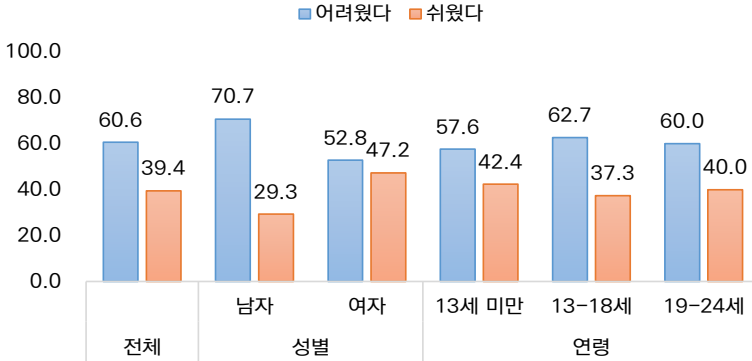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d.f.)
전체		577	32.2	67.8	-
연령	13세 미만	133	24.1	75.9	10.365** (2)
	13~18세	248	30.2	69.8	
	19~24세	196	40.3	59.7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45.7	54.3	26.885*** (1)
	주돌봄자 아님	369	24.7	75.3	
돌봄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29.3	70.7	9.016** (1)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43.7	56.3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8.8	81.2	32.513*** (1)
	주15시간 이상	343	41.4	58.6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38.2	61.8	1.241 (2)
	300만원 ~ 499만원	140	35.7	64.3	
	500만원 이상	137	32.1	67.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 응답자(188명)를 대상으로 정보 탐색의 용이성을 조사한 결과, '어려웠다'는 응답이 60.6%로 '쉬웠다'는 응답 39.4%보다 21.2%p 높아 다수가 정보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배경변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남성의 70.7%가 정보 탐색이 '어려웠다'고 응답해 여성의 52.8%보다 17.9%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도 60.0%가 어렵다고 응답해 연령이 증가해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서비스 정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정보 활용 능력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정보 접근성과 이해 용이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단위: %)



주: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n=188).

그림 V-18.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정보 탐색의 용이성

(2)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정보 미탐색 이유

가족돌봄 관련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 정보 탐색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391명)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몰라서'가 31.2%로 가장 많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22.8%,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1.2% 순으로 파악되었다. 상위 3개 항목이 75.2%를 차지해 정보 접근 방법 부재와 서비스 존재 자체에 대한 무지가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는데, 13세 미만은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몰라서'가 41.6%로 가장 높았으나, 19~24세는 '정보를 찾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2.8%로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증가했다. 평균 주당 돌봄시간별로는 주 15시간 미만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7.9%로 높았으나, 주 15시간 이상은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몰라서'가 37.8%로 가장 높아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정보 접근 방법의 어려움이 컸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가 28.6%로 여타 소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0만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30.1%로 가장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보 접근 방법 안내와 서비스 존재에 대한 홍보 강화, 고강도 돌봄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전달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42.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정보를 탐색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찾아볼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신청/ 이용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정보를 찾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χ^2 (d.f.)
전체	391	21.2	6.9	31.2	22.8	5.9	6.4	2.8	2.8	-
연령	13세 미만	101	21.8	8.9	41.6	15.8	5.9	1.0	1.0	26.947* (14)
	13~18세	173	24.9	5.8	27.2	25.4	5.2	5.2	3.5	
	19~24세	117	15.4	6.8	28.2	24.8	6.8	12.8	3.4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190	27.9	7.4	24.2	23.7	4.2	6.3	3.7	16.582* (7)
	주15시간 이상	201	14.9	6.5	37.8	21.9	7.5	6.5	2.0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05	5.7	9.5	33.3	28.6	8.6	9.5	3.8	32.068** (14)
	300만원~499만원	90	23.3	5.6	36.7	20.0	4.4	6.7	1.1	
	500만원 이상	93	30.1	8.6	25.8	14.0	5.4	6.5	4.3	

주: 1)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가족돌봄에 도움을 주는 자원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지원 자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이 있다'는 응답이 74.4%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는 응답도 25.6%를 차지해 4명 중 1명은 혼자 돌봄을 감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에서 '도움을 주는 자원이 없다'는 응답이 18.8%로 가장 낮았으나, 13~18세(28.6%)와 19~24세(26.5%)에서는 약 27% 내외가 지원 자원 부재를 경험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돌봄 기간별로는 1년 미만 단기 돌봄자의 32.6%가 지원 자원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5년 이상 장기 돌봄자는 23.9%로 8.7%p 낮은 수치를 나타내 돌봄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차 지원 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26.5%가 지원 자원이 없다고 응답해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19.7%보다 6.8%p 높았다.

지원 자원 유형으로는 '친척'이 33.8%로 가장 많았고, '주민센터나 복지기관' 23.4%, '청소년시설' 14.0% 순이었다. 비공식적 지원망인 친척과 친구·이웃을 합하면 45.8%로

개인적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주민센터나 복지기관' 이용이 32.9%로 높았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친척' 의존도가 43.8%로 가장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V-43. 가족돌봄에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기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 기관도 없음	도움을 주는 사람/ 기관이 있음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기관(중복응답)								
				친척	친구, 동료 또는 이웃	학교 선생님	주민 센터나 복지기관	청소년 시설	종교 기관	의료 기관	기타	
전체	577	25.6	74.4	33.8	12.0	8.7	23.4	14.0	5.9	6.2	5.5	
연령	13세 미만	133	18.8	81.2	39.1	9.8	9.0	27.8	7.5	9.8	5.3	10.5
	13~18세	248	28.6	71.4	33.9	12.1	8.1	21.8	14.9	5.2	4.8	3.6
	19~24세	196	26.5	73.5	30.1	13.3	9.2	22.4	17.3	4.1	8.7	4.6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7.9	72.1	25.0	13.5	12.5	25.0	20.2	7.2	6.7	4.3
	주돌봄자 아님	369	24.4	75.6	38.8	11.1	6.5	22.5	10.6	5.1	6.0	6.2
돌봄 기간	1년 미만	92	32.6	67.4	27.2	12.0	10.9	14.1	16.3	7.6	5.4	6.5
	1년 이상 3년 미만	164	24.4	75.6	36.6	9.8	4.3	22.0	12.8	5.5	4.3	6.1
	3년 이상 5년 미만	133	24.8	75.2	39.1	12.8	12.8	25.6	13.5	6.8	6.0	3.8
	5년 이상	188	23.9	76.1	30.9	13.3	8.5	27.7	14.4	4.8	8.5	5.9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26.5	73.5	21.8	12.4	8.8	32.9	20.6	7.1	5.3	2.9
	300만원~499만원	140	30.7	69.3	39.3	14.3	7.1	13.6	6.4	5.7	7.9	5.0
	500만원 이상	137	19.7	80.3	43.8	12.4	11.7	21.2	12.4	3.6	6.6	5.8

주: 1)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이 있음' 비율은 100에서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값을 제외한 것으로, 세부 보기의 합과 다를 수 있음.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4)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1)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족돌봄 청소년 중 43.2%가 제시된 6개 돌봄서비스(돌봄, 이동, 식사, 가사, 돌봄가족 지원, 돌봄 보조기기 지원) 중 최소 1개 이상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절반 이상(56.8%)이 어떠한 돌봄지원 서비스도 받은 적이 없음을 의미하며, 상당수가 공식적 지원 없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49.0%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39.8%보다 9.2%p 높았다. 평균 주당 돌봄시간별로는 주 15시간 이상 고강도 돌봄자의 이용률이 46.4%로 주 15시간 미만의 38.5%보다 7.9%p 높아 돌봄 책임과 강도가 클수록 서비스 이용 경험이 증가했다. 가구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47.4%로 가장 높았고, 300~499만원 중소득층에서 41.4%로 가장 낮았으며,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44.1%였다. 이는 앞서 확인한 정보 인지도 부족과 탐색 어려움이 실제 서비스 미이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적극적인 아웃리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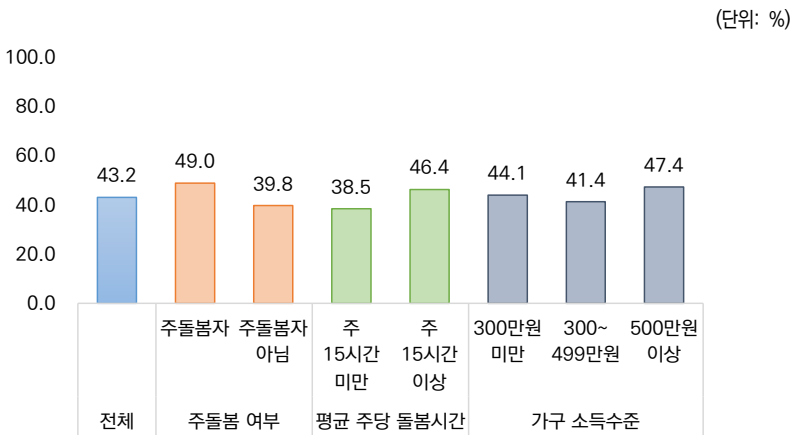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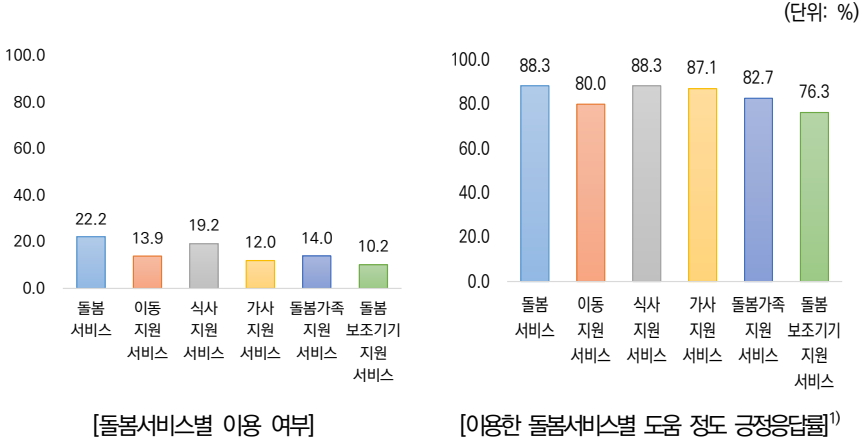


그림 V-19.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률: 종합 이용률

돌봄서비스별 이용률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개 돌봄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10~22%에 머물러,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돌봄서비스(재가방문, 시설 이용)’가 22.2%로 가장 높았고, ‘식사지원 서비스’ 19.2%, ‘돌봄가족 지원 서비스’ 14.0%, ‘이동지원 서비스’ 13.9%, ‘가사지원 서비스’ 12.0%,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10.2%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률은 낮았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률이 80%를 상회했으며,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서비스’가 각각 88.3%로 가장 높았고, ‘가사지원 서비스’ 87.1%, ‘돌봄가족 지원 서비스’ 82.7%, ‘이동지원 서비스’ 80.0%,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76.3% 순이었다. 이는 가족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이지만 실제 이용한 경우 서비스 효과성과 만족도는 높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 1) 도움 정도는 각 서비스별로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그림 V-20. 가족돌봄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① 돌봄서비스

세부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V-44>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집이나 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22.2%로 나타났으며, 53.7%는 이용 경험이 ‘없다’, 24.1%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24.1%)과 19~24세(2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돌봄자의 이용률이 24.5%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20.9%보다 3.6%p 높았다. 주 15시간 이상 고강도 돌봄자의 이용률이 23.3%로 주 15시간 미만의 20.5%보다 2.8%p 높아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비스 이용자의 88.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매우 도움이 된다’ 41.4%, ‘약간 도움이 된다’ 46.9%였으며, 부정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에서 긍정 응답이 96.9%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91.2%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은 제한적이지만 실제 이용한 경우 서비스 효과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표 V-44.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돌봄 서비스(재가방문, 시설 이용)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22.2	53.7	24.1	1.6	10.2	11.7	88.3	46.9	41.4	
연령	13세 미만	133	24.1	48.9	27.1	0.0	3.1	3.1	96.9	46.9	50.0
	13~18세	248	19.8	54.8	25.4	2.0	14.3	16.3	83.7	49.0	34.7
	19~24세	196	24.0	55.6	20.4	2.1	10.6	12.8	87.2	44.7	42.6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4.5	51.9	23.6	2.0	11.8	13.7	86.3	45.1	41.2
	주돌봄자 아님	369	20.9	54.7	24.4	1.3	9.1	10.4	89.6	48.1	41.6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20.5	53.0	26.5	2.1	6.3	8.3	91.7	47.9	43.8
	주15시간 이상	343	23.3	54.2	22.4	1.3	12.5	13.8	86.3	46.3	40.0
돌봄가족 기능상태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476	24.6	52.3	23.1	1.7	10.3	12.0	88.0	46.2	41.9
	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101	10.9	60.4	28.7	0.0	9.1	9.1	90.9	54.5	36.4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17.6	55.9	26.5	3.3	10.0	13.3	86.7	26.7	60.0
	300만원~499만원	140	25.7	56.4	17.9	2.8	11.1	13.9	86.1	63.9	22.2
	500만원 이상	137	24.8	56.2	19.0	0.0	8.8	8.8	91.2	50.0	41.2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② 이동지원 서비스

다음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13.9%로 나타났으며, 60.7%는 이용한 적이 '없다', 25.5%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17.3%)에서 가장 높았고, 19~24세(12.2%)에서 낮게 나타났다. 돌봄가족 기능상태별로는 ADL(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상태인 경우 이용률이 16.0%로 IADL(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4.0%보다 4배 높았다.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80.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 41.3%, '약간 도움이 된다' 38.8%였으며, 부정 응답은 20.0%였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에서 긍정 응답이 91.3%로 가장 높았고,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85.4%)가 주돌봄자(71.9%)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표 V-45.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이동지원 서비스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13.9	60.7	25.5	3.8	16.3	20.0	80.0	38.8	41.3	
연령	13세 미만	133	17.3	53.4	29.3	4.3	4.3	8.7	91.3	39.1	52.2
	13~18세	248	13.3	59.3	27.4	3.0	27.3	30.3	69.7	36.4	33.3
	19~24세	196	12.2	67.3	20.4	4.2	12.5	16.7	83.3	41.7	41.7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5.4	59.1	25.5	6.3	21.9	28.1	71.9	21.9	50.0
	주돌봄자 아님	369	13.0	61.5	25.5	2.1	12.5	14.6	85.4	50.0	35.4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3.7	58.5	27.8	3.1	12.5	15.6	84.4	40.6	43.8
	주15시간 이상	343	14.0	62.1	23.9	4.2	18.8	22.9	77.1	37.5	39.6
돌봄가족 기능상태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476	16.0	59.7	24.4	3.9	15.8	19.7	80.3	39.5	40.8
	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101	4.0	65.3	30.7	0.0	25.0	25.0	75.0	25.0	50.0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14.1	57.1	28.8	8.3	8.3	16.7	83.3	33.3	50.0
	300만원~499만원	140	14.3	67.1	18.6	0.0	20.0	20.0	80.0	55.0	25.0
	500만원 이상	137	17.5	65.0	17.5	0.0	25.0	25.0	75.0	29.2	45.8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③ 식사지원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19.2%로 나타났으며, 52.5%는 이용한 경험이 '없다', 28.2%는 '모른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25.5%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15.7%보다 9.8%p 높았다. 돌봄가족 기능상태별로는 ADL인 경우 20.8%, IADL인 경우 11.9%로 신체적 기능 제약이 심할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25.9%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12.4%로 소득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자의 88.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부정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에서 긍정 응답이 96.2%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도 90.9%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식사지원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 책임이 큰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46.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식사지원 서비스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19.2	52.5	28.2	1.8	9.9	11.7	88.3	47.7	40.5	
연령	13세 미만	133	19.5	47.4	33.1	0.0	3.8	3.8	96.2	46.2	50.0
	13~18세	248	19.4	50.4	30.2	0.0	14.6	14.6	85.4	50.0	35.4
	19~24세	196	18.9	58.7	22.4	5.4	8.1	13.5	86.5	45.9	40.5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5.5	46.2	28.4	3.8	9.4	13.2	86.8	45.3	41.5
	주돌봄자 아님	369	15.7	56.1	28.2	0.0	10.3	10.3	89.7	50.0	39.7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7.9	51.7	30.3	2.4	9.5	11.9	88.1	42.9	45.2
	주15시간 이상	343	20.1	53.1	26.8	1.4	10.1	11.6	88.4	50.7	37.7
돌봄가족 기능상태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476	20.8	51.3	27.9	2.0	10.1	12.1	87.9	45.5	42.4
	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101	11.9	58.4	29.7	0.0	8.3	8.3	91.7	66.7	25.0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25.9	45.3	28.8	4.5	4.5	9.1	90.9	43.2	47.7
	300만원~499만원	140	16.4	58.6	25.0	0.0	8.7	8.7	91.3	60.9	30.4
	500만원 이상	137	12.4	65.7	21.9	0.0	23.5	23.5	76.5	52.9	23.5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④ 가사지원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12.0%로 나타났으며, 62.9%는 이용 경험이 '없다', 25.1%는 '모른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15.9%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9.8%보다 6.1%p 높았다. 돌봄가족 기능상태별로는 ADL인 경우 13.7%로 IADL 4.0%보다 약 3배 높아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 지원 필요성이 컸다.

도움 정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87.1%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을 나타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7.1%로 과반을 차지해 가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지원 서비스는 이용률이 12.0%로 낮은 편이지만 이용한 경우 높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돌봄가족을 위한 우선적 지원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V-47.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가사지원 서비스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12.0	62.9	25.1	1.4	11.4	12.9	87.1	30.0	57.1	
연령	13세 미만	133	11.3	59.4	29.3	0.0	13.3	13.3	86.7	26.7	60.0
	13~18세	248	8.9	66.1	25.0	0.0	13.6	13.6	86.4	36.4	50.0
	19~24세	196	16.3	61.2	22.4	3.0	9.1	12.1	87.9	27.3	60.6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5.9	57.2	26.9	3.0	9.1	12.1	87.9	24.2	63.6
	주돌봄자 아님	369	9.8	66.1	24.1	0.0	13.5	13.5	86.5	35.1	51.4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1.1	61.5	27.4	0.0	18.5	18.5	81.5	37.0	44.4
	주15시간 이상	343	12.5	63.8	23.6	2.3	7.0	9.3	90.7	25.6	65.1
돌봄가족 기능상태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476	13.7	60.7	25.6	1.5	12.1	13.6	86.4	28.8	57.6
	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101	4.0	73.3	22.8	0.0	0.0	0.0	100.0	50.0	50.0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11.8	61.2	27.1	5.0	5.0	10.0	90.0	30.0	60.0
	300만원~499만원	140	11.4	66.4	22.1	0.0	17.6	17.6	82.4	23.5	58.8
	500만원 이상	137	14.6	70.1	15.3	0.0	20.0	20.0	80.0	40.0	40.0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⑤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14.0%로 나타났으며, 57.4%는 이용 경험이 '없다', 28.6%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20.2%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10.6%)보다 2배 높아 실질적인 돌봄 책임을 지는 청소년의 휴식과 지원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17.3%)과 19~24세(15.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13~18세(11.3%)에서 낮았다. 돌봄가족 기능상태별로는 ADL인 경우 14.7%로 IADL(10.9%)보다 조금 더 높았다.

서비스 이용자의 82.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약간 도움이 된다' 50.6%, '매우 도움이 된다' 32.1%였으며, 부정 응답은 17.3%였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에서 긍정 응답이 95.7%로 가장 높았고, IADL의 경우 90.9%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는 다른 돌봄서비스와 달리 가족돌봄 청소년 자신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맞춤형 휴식 및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V-48.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14.0	57.4	28.6	4.9	12.3	17.3	82.7	50.6	32.1	
연령	13세 미만	133	17.3	48.9	33.8	0.0	4.3	4.3	95.7	34.8	60.9
	13~18세	248	11.3	59.3	29.4	10.7	10.7	21.4	78.6	57.1	21.4
	19~24세	196	15.3	60.7	24.0	3.3	20.0	23.3	76.7	56.7	20.0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0.2	50.5	29.3	4.8	11.9	16.7	83.3	45.2	38.1
	주돌봄자 아님	369	10.6	61.2	28.2	5.1	12.8	17.9	82.1	56.4	25.6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3.2	56.0	30.8	3.2	12.9	16.1	83.9	54.8	29.0
	주15시간 이상	343	14.6	58.3	27.1	6.0	12.0	18.0	82.0	48.0	34.0
돌봄가족 가능상태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476	14.7	56.1	29.2	4.3	14.3	18.6	81.4	51.4	30.0
	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101	10.9	63.4	25.7	9.1	0.0	9.1	90.9	45.5	45.5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14.7	57.1	28.2	8.0	16.0	24.0	76.0	36.0	40.0
	300만원~499만원	140	17.9	57.9	24.3	4.0	12.0	16.0	84.0	56.0	28.0
	500만원 이상	137	13.1	65.7	21.2	5.6	16.7	22.2	77.8	55.6	22.2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⑥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마지막으로,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10.2%로 나타났으며, 60.1%는 이용 경험이 '없다', 29.6%는 '모른다'고 응답해 약 90%가 미이용 상태로 6개 돌봄서비스 중 가장 낮았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12.5%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8.9%보다 3.6%p 높았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13.5%)에서 높았고, 13~18세(7.7%)에서 낮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18.2%로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7.6%보다 10.6%p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76.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다른 돌봄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 39.0%, '약간 도움이 된다' 37.3%였으며, 부정 응답은 23.7%로 6개 서비스 중 가장 높았다.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는 이용률과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함께 보조기기 적합성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49. 가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10.2	60.1	29.6	5.1	18.6	23.7	76.3	37.3	39.0	
연령	13세 미만	133	13.5	52.6	33.8	0.0	16.7	16.7	83.3	33.3	50.0
	13~18세	248	7.7	60.9	31.5	5.3	21.1	26.3	73.7	26.3	47.4
	19~24세	196	11.2	64.3	24.5	9.1	18.2	27.3	72.7	50.0	22.7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2.5	56.3	31.3	7.7	19.2	26.9	73.1	42.3	30.8
	주돌봄자 아님	369	8.9	62.3	28.7	3.0	18.2	21.2	78.8	33.3	45.5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1.1	59.0	29.9	0.0	15.4	15.4	84.6	30.8	53.8
	주15시간 이상	343	9.6	60.9	29.4	9.1	21.2	30.3	69.7	42.4	27.3
돌봄가족 가능상태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476	11.1	59.7	29.2	5.7	18.9	24.5	75.5	32.1	43.4
	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101	5.9	62.4	31.7	0.0	16.7	16.7	83.3	83.3	0.0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7.6	61.8	30.6	7.7	0.0	7.7	92.3	46.2	46.2
	300만원~499만원	140	10.0	62.9	27.1	7.1	21.4	28.6	71.4	35.7	35.7
	500만원 이상	137	18.2	62.0	19.7	4.0	32.0	36.0	64.0	32.0	32.0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

앞서 살펴본 돌봄, 이동지원, 식사지원, 가사지원, 돌봄 가족 지원, 돌봄 보조기기 지원 등 6개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서비스 이용자 중 54.2%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해 과반수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38.2%, '전부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7.6%였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는 62.7%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300-499만원 중소득층에서는 58.6%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별 지원 체계의 차이를 보였다.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전액 부담 비율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전액 부담 비율이 12.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13~18세에서 무료 이용 비율이 6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과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한 무료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으나, 중간 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표 V-50.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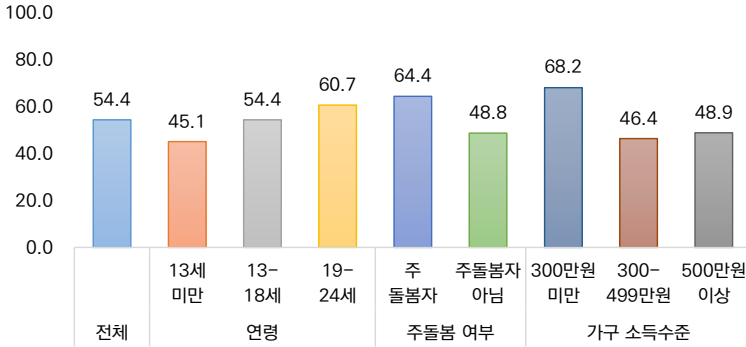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부 부담하고 있다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	부담하지 않는다 (무료제공 또는 무료지원)	χ^2 (d.f.)	
전체	249	7.6	38.2	54.2	-	
연령	13세 미만	59	5.1	42.4	52.5	6.918 (4)
	13~18세	96	4.2	35.4	60.4	
	19~24세	94	12.8	38.3	48.9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102	9.8	39.2	51.0	1.455 (2)
	주돌봄자 아님	147	6.1	37.4	56.5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75	5.3	32.0	62.7	14.606** (4)
	300만원~499만원	58	8.6	58.6	32.8	
	500만원 이상	65	13.8	38.5	47.7	

주: 1) 제시된 6개 유형의 가족돌봄 관련 지원 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n=249)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5)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다음으로, 8개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학업·취업, 문화·체육 활동,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건강관리, 법률상담 지원)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제시된 8개 서비스 중 한 번이라도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54.4%로 파악되었다. 이는 바깥 말하면 어떠한 생활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응답자 비율이 45.6%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19~24세의 이용률이 60.7%로 가장 높았고, 주돌봄자는 64.4%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48.8%)보다 15.6%p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도 31.8%가 미이용 상태였으며, 300~499만원과 500만원 이상에서는 각각 53.6%, 51.1%가 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조사는 청소년시설이나 복지기관 등을 통해 일부 참여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공적 지원체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미수혜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주: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그림 V-21.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률: 종합 이용률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률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활동 지원이 29.3%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 27.2%, 생활비 지원 24.6%,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23.9%, 건강관리 지원 23.2%, 주거비 지원 19.1% 순이었다. 반면 법률상담 지원은 5.9%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법률상담 지원을 제외하 고도 대부분 서비스의 이용률이 20~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서비스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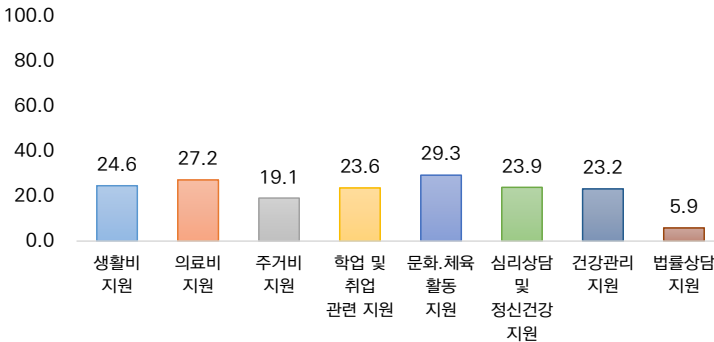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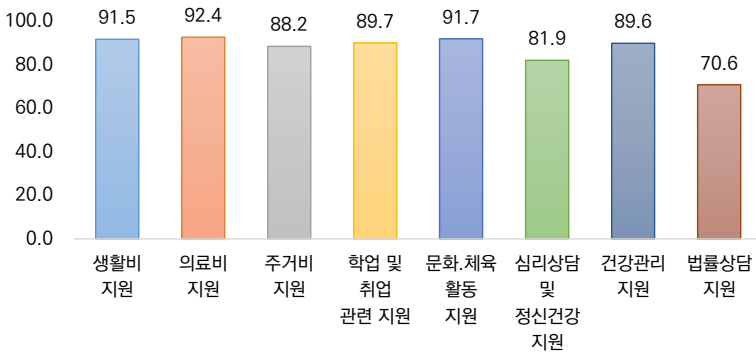


그림 V-22. 생활·복지 서비스별 이용 여부

각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의료비 지원이 92.4%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문화·체육 활동 지원 91.7%, 생활비 지원 91.5%,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 89.7%, 건강관리 지원 89.6%, 주거비 지원 88.2%,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81.9% 순이었다. 법률상담 지원의 만족도는 70.6%로 가장 낮았다.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의 높은 만족도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장 절실한 기본 욕구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체육 활동 지원(91.7%)과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89.7%)의 높은 만족도는 가족돌봄으로 제약받는 청소년의 여가·자기계발 욕구와 미래 설계에 대한 갈망이 크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단위: %)



주: 도움 정도는 제시된 8개 생활·복지 서비스별로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그림 V-23. 생활·복지 서비스별 도움 정도

① 생활비 지원

〈표 V-51〉~〈표 V-58〉에는 8개 서비스별로 각각 이용 여부와 도움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생활비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4.6%로 나타났으며, 46.8%는 이용한 경험이 '없다', 28.6%는 '모른다'고 응답해 약 4명 중 1명이 생활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38.0%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17.1%) 보다 20.9%p 높았다. 연령 별로는 13~18세(27.8%)와 19~24세(27.6%)에서 높았고, 동거 여부로는 돌봄대상자와 동거하는 경우 26.0%로 비동거(19.3%)보다 높았다. 특히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41.8%로 가장 높았고, 300-499만원 17.1%, 500만원 이상 11.7% 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 지원 수혜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돌봄 청소년

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도움 정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91.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부정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생활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서비스로서 높은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51.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생활비 지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24.6	46.8	28.6	2.8	5.6	8.5	91.5	45.8	45.8	
연령	13세 미만	133	14.3	51.9	33.8	5.3	10.5	15.8	84.2	36.8	47.4
	13~18세	248	27.8	45.6	26.6	2.9	4.3	7.2	92.8	50.7	42.0
	19~24세	196	27.6	44.9	27.6	1.9	5.6	7.4	92.6	42.6	50.0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8.0	35.1	26.9	3.8	6.3	10.1	89.9	43.0	46.8
	주돌봄자 아님	369	17.1	53.4	29.5	1.6	4.8	6.3	93.7	49.2	44.4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26.0	45.4	28.6	2.5	5.9	8.4	91.6	43.7	47.9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19.3	52.1	28.6	4.3	4.3	8.7	91.3	56.5	34.8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7.1	51.3	31.6	0.0	5.0	5.0	95.0	47.5	47.5
	주15시간 이상	343	29.7	43.7	26.5	3.9	5.9	9.8	90.2	45.1	45.1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41.8	35.3	22.9	4.2	7.0	11.3	88.7	35.2	53.5
	300만원~499만원	140	17.1	57.9	25.0	0.0	8.3	8.3	91.7	62.5	29.2
	500만원 이상	137	11.7	64.2	24.1	0.0	0.0	0.0	100.0	75.0	25.0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②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7.2%로 나타났으며, 44.4%는 '이용한 적 없다', 28.4%는 '모른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38.0%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21.1%보다 16.9%p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4세가 37.2%로 가장 높았고 13세 미만은 18.0%로 낮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41.2%로 가장 높았고, 300-499만원 22.9%, 500만원 이상 21.9%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원 수혜 비율이 높았다. 서비스 이용자의 92.4%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 56.1%,

‘약간 도움이 된다’ 36.3%였으며, 부정 평가는 7.6%에 불과했다. 의료비 지원은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V-52.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의료비 지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27.2	44.4	28.4	3.2	4.5	7.6	92.4	36.3	56.1	
연령	13세 미만	133	18.0	48.1	33.8	4.2	0.0	4.2	95.8	37.5	58.3
	13~18세	248	24.2	45.2	30.6	1.7	6.7	8.3	91.7	36.7	55.0
	19~24세	196	37.2	40.8	21.9	4.1	4.1	8.2	91.8	35.6	56.2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8.0	38.0	24.0	3.8	2.5	6.3	93.7	39.2	54.4
	주돌봄자 아님	369	21.1	48.0	30.9	2.6	6.4	9.0	91.0	33.3	57.7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27.9	43.4	28.6	2.3	3.9	6.3	93.8	35.9	57.8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24.4	47.9	27.7	6.9	6.9	13.8	86.2	37.9	48.3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20.5	46.6	32.9	2.1	6.3	8.3	91.7	33.3	58.3
	주15시간 이상	343	31.8	42.9	25.4	3.7	3.7	7.3	92.7	37.6	55.0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41.2	35.9	22.9	4.3	2.9	7.1	92.9	28.6	64.3
	300만원~499만원	140	22.9	52.1	25.0	3.1	6.3	9.4	90.6	43.8	46.9
	500만원 이상	137	21.9	54.0	24.1	0.0	10.0	10.0	90.0	53.3	36.7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③ 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으며, 51.1%는 ‘이용한 적 없다’, 29.8%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26.4%로 부돌봄자(14.9%) 보다 11.5%p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4세가 21.9%로 가장 높았고 13세 미만은 14.3%로 가장 낮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28.8%로 가장 높았고, 300~499만원 14.3%, 500만원 이상 13.9% 순으로 저소득 가정의 지원 수혜율이 현저히 높았다.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주거비 지원 이용자의 88.2%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 47.3%, ‘약간 도움이 된다’ 40.9%였으며, 부정

응답은 11.8%에 그쳤다. 이는 주거비 지원이 가족돌봄 청소년의 기본적 생활 기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53.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주거비 지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19.1	51.1	29.8	3.6	8.2	11.8	88.2	40.9	47.3	
연령	13세 미만	133	14.3	54.1	31.6	5.3	5.3	10.5	89.5	42.1	47.4
	13~18세	248	19.4	51.2	29.4	2.1	12.5	14.6	85.4	39.6	45.8
	19~24세	196	21.9	49.0	29.1	4.7	4.7	9.3	90.7	41.9	48.8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6.4	45.2	28.4	5.5	3.6	9.1	90.9	45.5	45.5
	주돌봄자 아님	369	14.9	54.5	30.6	1.8	12.7	14.5	85.5	36.4	49.1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19.9	50.0	30.1	3.3	6.6	9.9	90.1	41.8	48.4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16.0	55.5	28.6	5.3	15.8	21.1	78.9	36.8	42.1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5.8	53.4	30.8	0.0	8.1	8.1	91.9	48.6	43.2
	주15시간 이상	343	21.3	49.6	29.2	5.5	8.2	13.7	86.3	37.0	49.3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28.8	45.9	25.3	4.1	6.1	10.2	89.8	36.7	53.1
	300만원~499만원	140	14.3	60.0	25.7	5.0	10.0	15.0	85.0	55.0	30.0
	500만원 이상	137	13.9	62.8	23.4	0.0	21.1	21.1	78.9	47.4	31.6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④ 법률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5.9%로 8개 생활복지 서비스 중 가장 낮았다. 60.8%는 '이용한 적 없다', 33.3%는 '모른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11.1%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3.0%보다 3.7배 높았고, 연령별로는 19~24세(9.2%)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봄 대상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이용률이 10.1%로 동거하는 경우(4.8%)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원거리 돌봄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정, 의료 동의서 작성 등 법적 권한 확보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법률상담 지원 이용자의 70.6%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나 다른 지원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 29.4%, '약간 도움이 된다' 41.2%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은 29.4%로 여타 서비스보다 높았다. 법률상담 지원은 접근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표 V-54.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법률상담 지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5.9	60.8	33.3	5.9	23.5	29.4	70.6	41.2	29.4	
연령	13세 미만	133	3.8	59.4	36.8	20.0	0.0	20.0	80.0	40.0	40.0
	13~18세	248	4.4	59.3	36.3	0.0	36.4	36.4	63.6	45.5	18.2
	19~24세	196	9.2	63.8	27.0	5.6	22.2	27.8	72.2	38.9	33.3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11.1	53.4	35.6	8.7	17.4	26.1	73.9	39.1	34.8
	주돌봄자 아님	369	3.0	65.0	32.0	0.0	36.4	36.4	63.6	45.5	18.2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4.8	60.9	34.3	4.5	27.3	31.8	68.2	45.5	22.7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10.1	60.5	29.4	8.3	16.7	25.0	75.0	33.3	41.7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3.4	61.5	35.0	0.0	37.5	37.5	62.5	25.0	37.5
	주15시간 이상	343	7.6	60.3	32.1	7.7	19.2	26.9	73.1	46.2	26.9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5.9	63.5	30.6	10.0	40.0	50.0	50.0	0.0	50.0
	300만원~499만원	140	9.3	61.4	29.3	0.0	30.8	30.8	69.2	46.2	23.1
	500만원 이상	137	5.1	69.3	25.5	0.0	0.0	0.0	100.0	85.7	14.3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⑤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취업 준비 제약을 지원하는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3.6%로 나타났으며, 48.0%는 '이용한 적 없다', 28.4%는 '모른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32.7%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18.4%) 보다 14.3%p 높아 돌봄 책임이 클수록 개인 발달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대상자와 동거하는 청소년의 이용률이 26.4%로 비동거(12.6%)보다 13.8%p 높았는데, 이는 학업 및 취업 지원의 공급 조건에서 동거를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13~18세(27.4%)와 19~24세(26.0%)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에

서 35.3%로 가장 높았으며 300-499만원 17.9%, 500만원 이상 13.1% 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이 공적 지원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89.7%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 54.4%, '약간 도움이 된다' 35.3%였으며, 부정 응답은 10.3%였다.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93.3%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500만원 이상은 77.8%로 15.5%p 낮아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감 효과 차이를 보였다.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높은 효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55.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학업 및 취업 지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23.6	48.0	28.4	2.9	7.4	10.3	89.7	35.3	54.4	
연령	13세 미만	133	12.8	52.6	34.6	5.9	5.9	11.8	88.2	35.3	52.9
	13~18세	248	27.4	44.4	28.2	2.9	5.9	8.8	91.2	42.6	48.5
	19~24세	196	26.0	49.5	24.5	2.0	9.8	11.8	88.2	25.5	62.7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2.7	42.3	25.0	2.9	8.8	11.8	88.2	33.8	54.4
	주돌봄자 아님	369	18.4	51.2	30.4	2.9	5.9	8.8	91.2	36.8	54.4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26.4	46.3	27.3	2.5	7.4	9.9	90.1	33.1	57.0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12.6	54.6	32.8	6.7	6.7	13.3	86.7	53.3	33.3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7.9	50.9	31.2	0.0	4.8	4.8	95.2	31.0	64.3
	주15시간 이상	343	27.4	46.1	26.5	4.3	8.5	12.8	87.2	37.2	50.0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35.3	42.4	22.4	3.3	3.3	6.7	93.3	26.7	66.7
	300만원-499만원	140	17.9	53.6	28.6	0.0	16.0	16.0	84.0	48.0	36.0
	500만원 이상	137	13.1	62.8	24.1	5.6	16.7	22.2	77.8	55.6	22.2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⑥ 문화·체육 활동 지원

가족돌봄으로 인해 제약받기 쉬운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지원하는 문화·체육 활동 지원 서비스는 8개 지원 분야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29.3%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4%는 ‘이용한 적 없다’, 25.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38.0%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24.4%) 보다 13.6%p 높았고,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의 이용률이 33.2%로 15시간 미만(23.5%)보다 9.7%p 높았다. 이는 돌봄 부담이 클수록 개인적 여가 시간 확보가 어려워 공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45.9%로 가장 높았고, 300-499만원 19.3%, 500만원 이상 17.5% 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체육 지원 수혜율이 높았다.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이용자의 91.7%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 47.9%, ‘약간 도움이 된다’ 43.8%였으며, 부정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문화·체육 활동 지원은 가족돌봄으로 제약받는 청소년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56.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화·체육 활동 지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29.3	45.4	25.3	3.0	5.3	8.3	91.7	43.8	47.9	
연령	13세 미만	133	22.6	47.4	30.1	6.7	3.3	10.0	90.0	53.3	36.7
	13~18세	248	31.5	42.7	25.8	2.6	5.1	7.7	92.3	50.0	42.3
	19~24세	196	31.1	47.4	21.4	1.6	6.6	8.2	91.8	31.1	60.7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8.0	38.5	23.6	3.8	6.3	10.1	89.9	39.2	50.6
	주돌봄자 아님	369	24.4	49.3	26.3	2.2	4.4	6.7	93.3	47.8	45.6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29.9	43.9	26.2	2.9	4.4	7.3	92.7	44.5	48.2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26.9	51.3	21.8	3.1	9.4	12.5	87.5	40.6	46.9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23.5	47.9	28.6	1.8	0.0	1.8	98.2	56.4	41.8
	주15시간 이상	343	33.2	43.7	23.0	3.5	7.9	11.4	88.6	37.7	50.9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45.9	34.7	19.4	3.8	2.6	6.4	93.6	41.0	52.6
	300만원~499만원	140	19.3	57.9	22.9	0.0	7.4	7.4	92.6	44.4	48.1
	500만원 이상	137	17.5	61.3	21.2	4.2	16.7	20.8	79.2	45.8	33.3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⑦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가족돌봄 스트레스와 정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3.9%로 나타났으며, 50.8%는 '이용한 적 없다', 25.3%는 '모른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이용률은 34.1%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의 18.2%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돌봄 책임이 클수록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의 이용률도 27.7%로 15시간 미만(18.4%)보다 9.3%p 높았다. 연령별로는 13~18세(25.8%)와 19~24세(25.5%)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33.5%로 가장 높았으며 300~499만원 20.7%, 500만원 이상 14.6%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자의 81.9%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나 다른 지원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매우 도움이 된다' 31.2%, '약간 도움이 된다' 50.7%였으며, 부정 응답은 18.1%로 비교적 높았다.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의 경우, 접근성 확대와 함께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57.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23.9	50.8	25.3	2.2	15.9	18.1	81.9	50.7	31.2	
연령	13세 미만	133	18.0	52.6	29.3	8.3	12.5	20.8	79.2	62.5	16.7
	13~18세	248	25.8	49.2	25.0	0.0	20.3	20.3	79.7	45.3	34.4
	19~24세	196	25.5	51.5	23.0	2.0	12.0	14.0	86.0	52.0	34.0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34.1	41.8	24.0	2.8	12.7	15.5	84.5	49.3	35.2
	주돌봄자 아님	369	18.2	55.8	26.0	1.5	19.4	20.9	79.1	52.2	26.9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23.8	50.9	25.3	1.8	17.4	19.3	80.7	48.6	32.1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24.4	50.4	25.2	3.4	10.3	13.8	86.2	58.6	27.6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18.4	53.8	27.8	2.3	18.6	20.9	79.1	48.8	30.2
	주15시간 이상	343	27.7	48.7	23.6	2.1	14.7	16.8	83.2	51.6	31.6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33.5	44.7	21.8	1.8	14.0	15.8	84.2	42.1	42.1
	300만원~499만원	140	20.7	57.9	21.4	0.0	20.7	20.7	79.3	58.6	20.7
	500만원 이상	137	14.6	65.7	19.7	5.0	15.0	20.0	80.0	60.0	20.0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⑧ 건강관리 지원

가족돌봄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3.2%로 나타났으며, 48.9%는 '이용한 적 없다', 27.9%는 '모른다'고 답했다.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의 89.6%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 44.0%, '약간 도움이 된다' 45.5%였으며, 부정 응답은 10.4%로 낮았다. 건강관리 지원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하기 쉬운 청소년에게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58.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건강관리 지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여부			부정			긍정			
		있다	없다	모른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577	23.2	48.9	27.9	2.2	8.2	10.4	89.6	45.5	44.0	
연령	13세 미만	133	19.5	50.4	30.1	7.7	7.7	15.4	84.6	30.8	53.8
	13~18세	248	24.2	47.6	28.2	0.0	11.7	11.7	88.3	48.3	40.0
	19~24세	196	24.5	49.5	26.0	2.1	4.2	6.3	93.8	50.0	43.8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26.4	47.6	26.0	3.6	5.5	9.1	90.9	41.8	49.1
	주돌봄자 아님	369	21.4	49.6	29.0	1.3	10.1	11.4	88.6	48.1	40.5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22.7	48.7	28.6	1.9	7.7	9.6	90.4	46.2	44.2
	돌봄대상자와非同거	119	25.2	49.6	25.2	3.3	10.0	13.3	86.7	43.3	43.3
평균 주당 돌봄 시간	주15시간 미만	234	21.4	48.3	30.3	2.0	6.0	8.0	92.0	44.0	48.0
	주15시간 이상	343	24.5	49.3	26.2	2.4	9.5	11.9	88.1	46.4	41.7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25.9	48.8	25.3	2.3	4.5	6.8	93.2	47.7	45.5
	300만원~499만원	140	17.1	57.1	25.7	0.0	16.7	16.7	83.3	45.8	37.5
	500만원 이상	137	23.4	55.5	21.2	3.1	12.5	15.6	84.4	40.6	43.8

주: 1) 사례수는 이용 여부에 대한 사례수이며, 도움 정도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6) 지원 서비스의 전반적 효과성

앞서 살펴본 가족돌봄 및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314명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해결되었다(약간+대부분)'는 긍정적 평가는 77.4%로 파악되었다. 그러

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응답은 12.7%에 그치고 대다수의 응답이 ‘약간 해결되었다’(64.6%)는 반응을 나타내, 지원 서비스를 통한 근본적 해결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결되지 않았다(전혀+별로)’는 부정 응답은 22.6%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원 서비스들이 가족돌봄 청소년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보다는 부분적 완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59. 지원 서비스의 돌봄 어려움 해결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약간 해결 되었다	대부분 해결 되었다			
전체	314	2.2	20.4	22.6	77.4	64.6	12.7	-	
연령	13세 미만	60	1.7	16.7	18.3	81.7	61.7	20.0	6.830 (6)
	13~18세	135	3.0	20.0	23.0	77.0	63.0	14.1	
	19~24세	119	1.7	22.7	24.4	75.6	68.1	7.6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134	2.2	23.9	26.1	73.9	62.7	11.2	1.981 (3)
	주돌봄자 아님	180	2.2	17.8	20.0	80.0	66.1	13.9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16	3.4	19.0	22.4	77.6	68.1	9.5	5.921 (6)
	300만원 ~ 499만원	65	0.0	21.5	21.5	78.5	66.2	12.3	
	500만원 이상	67	0.0	17.9	17.9	82.1	67.2	14.9	

주: 1) 가족돌봄 관련 6개 서비스 및 생활복지 관련 8개 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314)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표 V-60>에는 앞서 살펴본 6가지 종류의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돌봄 어려움 해결 수준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식사지원 서비스와 가사지원 서비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식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긍정 응답률이 81.1%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75.8%)보다 5.3%p 높았으며, 특히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응답이 21.1%로 9.1%보다 12.0%p 높았다.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긍정 응답률이 81.6%로 비이용자(76.6%)보다 5.0%p 높았고,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응답이 26.5%로 10.2%보다 16.3%p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인 식사지원과 가사 지원이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각별히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표 V-60.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돌봄 어려움 해결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약간 해결 되었다	대부분 해결 되었다			
전체	314	2.2	20.4	22.6	77.4	64.6	12.7	-	
돌봄 서비스	이용 안 함/모름	228	2.6	22.4	25.0	75.0	64.0	11.0	4.321 (3)
	이용함	86	1.2	15.1	16.3	83.7	66.3	17.4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안 함/모름	259	2.3	20.1	22.4	77.6	65.6	12.0	1.029 (3)
	이용함	55	1.8	21.8	23.6	76.4	60.0	16.4	
식사 지원 서비스	이용 안 함/모름	219	2.3	21.9	24.2	75.8	66.7	9.1	8.693* (3)
	이용함	95	2.1	16.8	18.9	81.1	60.0	21.1	
가사 지원 서비스	이용 안 함/모름	265	2.3	21.1	23.4	76.6	66.4	10.2	9.966* (3)
	이용함	49	2.0	16.3	18.3	81.6	55.1	26.5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안 함/모름	242	2.1	21.5	23.6	76.5	64.5	12.0	1.237 (3)
	이용함	72	2.8	16.7	19.5	80.6	65.3	15.3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이용 안 함/모름	266	2.3	21.8	24.1	75.9	65.0	10.9	6.381 (3)
	이용함	48	2.1	12.5	14.6	85.4	62.5	22.9	

주: 1) 가족돌봄 관련 6개 서비스 및 생활복지 관련 8개 서비스 중 하더라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314)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표 V-61〉에는 ‘생활·복지 지원’ 영역 8개 하위 서비스에 대해 각각의 이용 경험 여부가 전반적인 돌봄 어려움 해결에 미치는 체감 효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8개 서비스 중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을 이용한 경우 긍정 응답률이 84.5%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71.9%)보다 12.6%p 높았다. 특히 돌봄 관련 어려움이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응답에서 17.6%로 미이용 집단(9.0%)보다 8.6%p 높게 나타나,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를 위한 교육·취업 지원이 당사자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당장의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취업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각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이 미이용 집단보다 일관되게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는데, 비록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책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표 V-61.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돌봄 어려움 해결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약간 해결 되었다	대부분 해결 되었다				
전체	314	2.2	20.4	22.6	77.4	64.6	12.7	-	
생활비 지원	이용 안 함/모름	172	2.3	23.8	26.1	73.8	64.5	9.3	5.770 (3)
	이용함	142	2.1	16.2	18.3	81.7	64.8	16.9	
의료비 지원	이용 안 함/모름	157	3.2	23.6	26.8	73.3	63.1	10.2	4.571 (3)
	이용함	157	1.3	17.2	18.5	81.5	66.2	15.3	
주거비 지원	이용 안 함/모름	204	2.5	20.1	22.6	77.5	65.7	11.8	0.682 (3)
	이용함	110	1.8	20.9	22.7	77.2	62.7	14.5	
학업 및 취업 지원	이용 안 함/모름	178	3.4	24.7	28.1	71.9	62.9	9.0	10.921* (3)
	이용함	136	0.7	14.7	15.4	84.5	66.9	17.6	
문화·체육 활동 지원	이용 안 함/모름	145	2.1	26.2	28.3	71.8	62.1	9.7	6.804 (3)
	이용함	169	2.4	15.4	17.8	82.3	66.9	15.4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이용 안 함/모름	176	0.6	20.5	21.1	78.9	67.0	11.9	5.518 (3)
	이용함	138	4.3	20.3	24.6	75.4	61.6	13.8	
건강관리 지원	이용 안 함/모름	180	1.7	23.3	25.0	75.0	65.6	9.4	6.048 (3)
	이용함	134	3.0	16.4	19.4	80.6	63.4	17.2	
법률상담 지원	이용 안 함/모름	280	1.8	19.6	21.4	78.7	66.6	12.1	4.963 (3)
	이용함	34	5.9	26.5	32.4	67.6	50.0	17.6	

주: 1) 가족돌봄 관련 6개 서비스 및 생활복지 관련 8개 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314)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가족돌봄 청소년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중 서비스 이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서비스 이용 수준에 따른 체감 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 응답률이 높아져, 1-3개 이용 시 72.3%에서 4-6개 이용 시 80.4%, 7개 이상 이용 시 83.1%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응답에서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1-3개 이용 시 8.5%에서 7개 이상 이용 시 23.9%로 약 3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단일 서비스보다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때 가족돌봄 청소년의 어려움 해결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가 단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향후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V-62. 지원 서비스 이용 수준에 따른 돌봄 어려움 개선 효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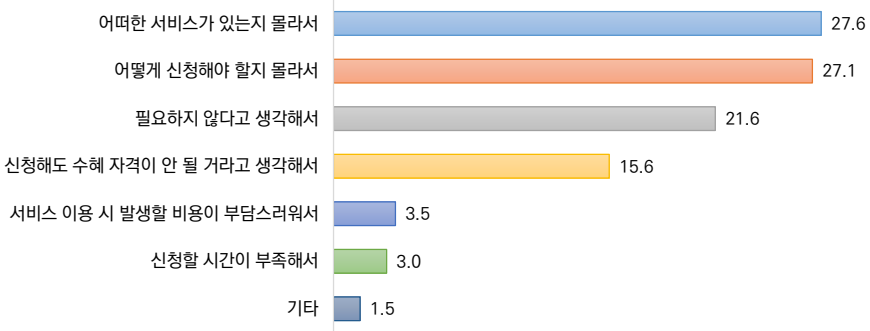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부정			긍정			χ^2 (d.f.)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약간 해결 되었다	대부분 해결 되었다			
전체	314	2.2	20.4	22.6	77.4	64.6	12.7	-	
지원 서비스 이용 수준	1~3개 이용	141	2.1	25.5	27.6	72.3	63.8	8.5	13.756* (6)
	4~6개 이용	102	2.0	17.6	19.6	80.4	69.6	10.8	
	7개 이상 이용	71	2.8	14.1	16.9	83.1	59.2	23.9	

주: 1) 가족돌봄 관련 6개 서비스 및 생활복지 관련 8개 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314)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7)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가족돌봄 및 생활복지를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가 2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27.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21.6%,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15.6%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보 부족과 절차 미숙지가 전체 미이용 사유의 54.7%를 차지해,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 자체를 모르거나 접근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서비스 홍보 강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단위: %)



주: 가족돌봄 및 생활 복지를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n=199)를 대상으로 함.

그림 V-24.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주요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연령에 따른 미이용 사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3세 미만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가 4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9~24세에서는 ‘신청해도 수혜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27.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 접근의 한계가, 성인기에 가까울수록 자격 요건에 대한 부담이 주요 장벽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어린 저연령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아웃리치 서비스를, 청년층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완화나 명확한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63. 가족돌봄 및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청할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신청해도 수혜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 지 몰라서	기타	χ^2 (d.f.)	
전체	199	21.6	3.0	27.1	15.6	3.5	27.6	1.5	-	
연령	13세 미만	56	12.5	0.0	33.9	10.7	1.8	41.1	0.0	33.061** (12)
	13~18세	89	29.2	1.1	25.8	11.2	4.5	24.7	3.4	
	19~24세	54	18.5	9.3	22.2	27.8	3.7	18.5	0.0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청할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신청해도 수혜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 지 몰라서	기타	χ^2 (d.f.)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58	19.0	6.9	29.3	13.8	3.4	25.9	1.7	4.785 (6)
	주돌봄자 아님	141	22.7	1.4	26.2	16.3	3.5	28.4	1.4	
돌봄가족 가능상태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157	18.5	3.2	28.0	15.3	3.8	29.3	1.9	5.456 (6)
	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42	33.3	2.4	23.8	16.7	2.4	21.4	0.0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41	24.4	4.9	19.5	17.1	4.9	29.3	0.0	13.431 (12)
	300만원~499만원	61	21.3	3.3	39.3	21.3	3.3	11.5	0.0	
	500만원 이상	45	22.2	2.2	22.2	15.6	4.4	31.1	2.2	

주: 1)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6개) 및 생활복지 서비스(8개) 중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6.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

1) 가족돌봄 서비스 수혜 욕구

향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참여 장벽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8%가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해 상당히 높은 수요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3세 미만(84.2%)과 19~24세(81.6%)에서 높았고, 주돌봄자는 82.7%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73.4%)보다 9.3%p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85.3%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돌봄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나 돌봄 사유에 따른 지원 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비동거 돌봄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 비가시적인 돌봄 영역에서도 공식적 지원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거부 사유로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가 20.1%로 가장 높았고, '나의 상황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19.4%, '가족이 돌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8.7% 순이었다. 이는 높은 정책 수요에도 불구하고 타인 개입에 대한 거부감과 사생활 노출 우려, 전통적 돌봄 가치관 등이 서비스 이용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 설계 시 이러한 심리적 저항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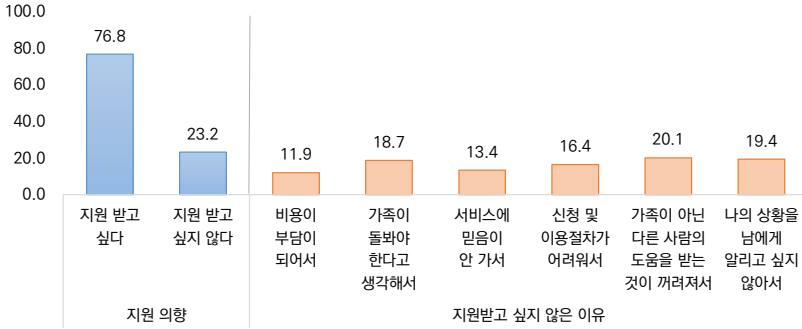


그림 V-25.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향 및 거부 사유

표 V-64.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향 및 거부 사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지원을 받고 싶다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	지원받고 싶지 않은 이유						
				비율이 부담이 되어서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비스에 믿음이 안 가서	신청 및 이용절차가 어려워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나의 상황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전체	577	76.8	23.2	11.9	18.7	13.4	16.4	20.1	19.4	
연령	13세 미만	133	84.2	15.8	9.5	23.8	14.3	23.8	23.8	4.8
	13~18세	248	69.0	31.0	13.0	19.5	13.0	13.0	18.2	23.4
	19~24세	196	81.6	18.4	11.1	13.9	13.9	19.4	22.2	19.4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82.7	17.3	8.3	8.3	22.2	22.2	16.7	22.2
	주돌봄자 아님	369	73.4	26.6	13.3	22.4	10.2	14.3	21.4	18.4
동거 여부	돌봄대상자와 동거	458	77.5	22.5	10.7	20.4	12.6	15.5	21.4	19.4
	돌봄대상자와 비동거	119	73.9	26.1	16.1	12.9	16.1	19.4	16.1	19.4
돌봄 사유	신체건강	312	79.8	20.2	11.1	20.6	11.1	17.5	23.8	15.9
	정신건강	154	81.2	18.8	13.8	10.3	13.8	13.8	24.1	24.1
	사회환경 및 기타	216	74.1	25.9	10.7	19.6	14.3	19.6	16.1	19.6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70	85.3	14.7	16.0	8.0	16.0	16.0	20.0	24.0
	300만원~499만원	140	72.1	27.9	5.1	20.5	15.4	15.4	17.9	25.6
	500만원 이상	137	77.4	22.6	22.6	19.4	16.1	9.7	25.8	6.5

주: 1) 사례수는 지원 의향 여부에 대한 응답자수이며, 지원받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희망지원 서비스

(1) 가족돌봄 지원 영역

가족돌봄 청소년의 영역별 지원 욕구를 조사한 결과,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특히 식사 지원 68.4%, 집안일 지원 68.9%, 돌봄 보조기기 지원 52.0%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주돌봄자는 대부분 영역에서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특히 식사 지원 74.0%와 집안일 지원 66.3%에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보다 각각 17.9%p, 11.6%p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499만원 중간소득층에서 여러 영역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 돌봄 지원 64.3%, 집안일 지원 63.6%, 돌봄 보조기기 지원 55.0%로 다른 소득구간보다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돌봄 책임이 클수록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며, 중간 소득층에서도 상당한 지원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중간 소득층의 높은 수요는 기존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지원 대상 확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포괄적 지원이 제공되지만, 수급 기준을 넘는 중간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벽효과’로 인해 오히려 더 높은 지원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65. 희망지원 서비스 배경변인별 비교: 가족돌봄 지원 영역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돌봄 지원 (간병, 보호자 지원 등)	이동 지원 (병원 이동, 외출 동행 등)	식사 지원 (도시락 배달, 식사 지원 등)	집안일 지원 (청소, 빨래, 설거지 등)	돌봄 보조기기 지원 (휠체어, 전동침대 등)	
전체	577	58.9	54.8	62.6	58.9	44.5	
연령	13세 미만	133	68.4	60.2	66.2	65.4	47.4
	13~18세	248	50.4	46.8	56.0	47.6	37.1
	19~24세	196	63.3	61.2	68.4	68.9	52.0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63.0	60.1	74.0	66.3	44.7
	주돌봄자 아님	369	56.6	51.8	56.1	54.7	44.4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58.2	55.3	69.4	62.9	43.5
	300만원~499만원	140	64.3	60.0	62.9	63.6	55.0
	500만원 이상	137	63.5	57.7	56.9	59.1	48.9

주: 1) 각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생활·복지 지원 영역

생활·복지 지원 5개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는 가운데 배경변인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생활비 지원 87.2%, 의료비 지원 85.2%, 법률상담 지원 51.5%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 반면, 13~18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돌봄 여부별로는 주돌봄자가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요를 나타냈으며, 특히 생활비 지원 85.6%, 의료비 지원 85.6%, 심리상담 지원 71.6%에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보다 각각 13.5%p, 13.5%p, 15.2%p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생활비 지원 87.6%, 의료비 지원 84.7%, 주거비 지원 80.6%로 여타 소득집단에 비해 높은 수요를 보였다. 다만, 법률상담 지원은 300~499만원 중간소득층에서 4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술한 결과는 연령별, 돌봄 책임 수준별, 소득계층 등 가족돌봄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중간 소득층의 높은 법률지원 수요는 현재 저소득층 중심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V-66. 희망지원 서비스 배경변인별 비교: 생활·복지 지원 영역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생활비 지원 (식사, 주거비 등)	의료비 지원 (병원비, 약값 등)	주거비 지원 (전월세, 전기·수도 등 관리비)	심리상담 지원 (정서지원, 정신건강 상담 등)	법률상담 지원 (후견인, 법률문서 작성 등)	
전체	577	76.9	76.9	72.6	61.9	45.1	
연령	13세 미만	133	75.9	75.2	72.9	66.2	45.9
	13~18세	248	69.4	71.4	66.9	54.4	39.5
	19~24세	196	87.2	85.2	79.6	68.4	51.5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85.6	85.6	82.7	71.6	51.9
	주돌봄자 아님	369	72.1	72.1	66.9	56.4	41.2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87.6	84.7	80.6	67.6	47.1
	300만원~499만원	140	77.9	77.1	71.4	60.0	48.6
	500만원 이상	137	70.1	73.0	66.4	61.3	42.3

주: 1) 각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진로 및 자기계발 지원 영역

진로 및 자기계발 지원 영역은 전체적으로 66.9~74.0%의 높은 수요를 나타내 가족돌봄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건강관리 지원 81.6%,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78.1%, 휴식 지원 76.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고, 13~18세는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66.9%, 휴식 지원 57.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돌봄자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요를 나타냈으며, 특히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83.2%, 건강관리 지원 83.2%에서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보다 각각 15.7%p, 14.4%p 높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돌봄 책임이 클수록 자기 발전 기회가 제약되어 외부 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83.5%, 건강관리 지원 79.4%로 높은 수요를 보였으나,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68~72%의 상당한 수요를 나타냈다.

표 V-67. 희망지원 서비스 배경변인별 비교: 진로 및 자기계발 지원 영역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장학금,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문화·스포츠 배우처 등)	건강관리 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식습관 운동 상담 등)	휴식 지원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공 등)	
전체	577	73.1	72.1	74.0	66.9	
연령	13세 미만	133	70.7	75.9	74.4	70.7
	13~18세	248	70.6	66.9	67.7	57.3
	19~24세	196	78.1	76.0	81.6	76.5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208	83.2	79.8	83.2	75.0
	주돌봄자 아님	369	67.5	67.8	68.8	62.3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0	83.5	78.2	79.4	71.2
	300만원~499만원	140	66.4	68.6	70.0	62.9
	500만원 이상	137	67.9	68.6	72.3	68.6

주: 1) 각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종합해보면, 14개 지원 서비스 중 9개 항목에서 60% 이상의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나, 돌봄 보조기기 지원(44.5%)과 법률상담 지원(45.1%)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를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생활·복지 영역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 생활비 지원 76.9%, 의료비 지원

76.9%, 주거비 지원 72.6% 순이었다. 진로 및 자기개발 지원 영역에서는 건강관리 지원 74.0%,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73.1%,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72.1% 순이었고, 돌봄 지원 영역에서는 식사 지원 62.6%, 돌봄 지원/집안일 지원이 각각 5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기본적 생활 안정부터 개인적 성장까지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진로·자기개발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아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선 발달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은 이러한 다차원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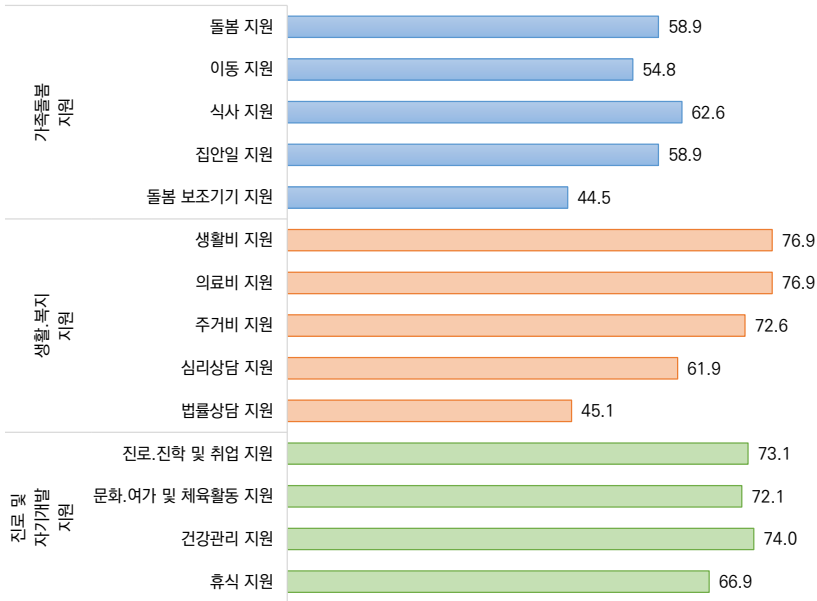


그림 V-26. 희망지원 서비스 필요성 인식 수준(종합)

3) 희망지원 서비스 우선순위

〈표 V-68〉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14개 서비스 가운데 상위 7가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순위를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연령별로 희망 지원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3세 미만의 경우 1순위로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생활비 지원을 75.9%가 선택하였고, 3순위로 의료비 지원을 75.2%가 선택하여 발달 단계 특성상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3~18세는 1순위로 의료비 지원 71.4%, 2순위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70.6%를 선택하여 건강관리와 함께 진로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4세는 1순위로 생활비 지원 87.2%, 2순위로 의료비 지원 85.2%를 선택하여 성인기 전환 시기에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19~24세의 생활비 지원 욕구(87.2%)는 13~18세(69.4%)보다 17.8%p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생활비 지원 87.6%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건강관리 지원(72.3%)이 2순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욕구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68. 희망지원 서비스 우선순위(상위 7개)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전체	생활비 지원 / 의료비 지원 (76.9)	건강관리 지원 (74.0)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73.1)	주거비 지원 (72.6)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72.1)	휴식 지원 (66.9)	
연령	13세 미만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생활비 지원 (75.9)	의료비 지원 (75.2)	건강관리 지원 (74.4)	주거비 지원 (72.9)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 휴식 지원 (70.7)	
	13~18세	의료비 지원 (71.4)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 (70.6)	생활비 지원 (69.4)	건강관리 지원 (67.7)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 주거비 지원 (66.9)	휴식 지원 (57.3)
	19~24세	생활비 지원 (87.2)	의료비 지원 (85.2)	건강관리 지원 (81.6)	주거비 지원 (79.6)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 (78.1)	휴식 지원 (76.5)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생활비 지원 / 의료비 지원 (85.6)	건강관리 지원/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83.2)	주거비 지원 (82.7)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79.8)	식사 지원 (74.0)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주돌봄자 아님	생활비 지원 / 의료비 지원 (72.1)		건강관리 지원 (68.8)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67.8)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 (67.5)	주거비 지원 (66.9)	휴식 지원 (62.3)	
가구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생활비 지원 (87.6)	의료비 지원 (84.7)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83.5)	주거비 지원 (80.6)	건강관리 지원 (79.4)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78.2)	휴식 지원 (71.2)
	300만원~499만원	생활비 지원 (77.9)	의료비 지원 (77.1)	주거비 지원 (71.4)	건강관리 지원 (70.0)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68.6)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66.4)	휴식 지원 (62.9)
	500만원 이상	의료비 지원 (73.0)	건강관리 지원 (72.3)	생활비 지원 (70.1)	휴식 지원/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 (68.6)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67.9)	주거비 지원 (66.4)	

주: 각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기준 상위 7개 순위를 제시함.

7. 선행조사와의 비교

이 절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태 변화와 정책 환경의 개선 효과를 점검해보기 위해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모집단 정보가 불확실하여 2022년과 2025년 조사 모두 확률표집이 아닌 편의표집을 통해 수행되었으므로 대표성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두 조사 간 표집 방법과 모집 경로의 차이로 인해 엄밀한 통계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2022년 조사는 13~34세(청소년 13~18세, 청년 19~34세)를 대상으로 한 반면, 2025년 조사는 9~24세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 범위에 차이가 있다. 비교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한 공통 연령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2022년 보고서에서 연령대별 세부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일부 항목의 경우 19세 이상 연령에서 2022년은 19~34세, 2025년은 19~24세 자료를 비교하게 되어 직접 비교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19세 이상 연령대의 비교 결과는 이러한 연령 범위 차이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최근 3년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조사결과와의 비교는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지표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돌봄 환경 및 돌봄 대상자의 특성(돌봄 필요 가족수, 돌봄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돌봄 대상자의 기능 상태 등), △주돌봄자 여부 및 돌봄 제공 유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 항목에 대한 2022년과 2025년 조사 결과가 전반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아래에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 돌봄 환경 및 대상 특성

돌봄 대상 가족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수, 동거 여부, 가족 관계, 기능 상태 등을 2022년과 비교 분석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 수를 비교한 결과, 13~18세 청소년층에서는 돌봄 필요 가족이 1명인 경우가 2022년 76.7%에서 2025년 77.8%로 1.1%p 증가했고, 2명 이상인 경우는 23.3%에서 22.2%로 1.1%p 감소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19세 이상에서는 연령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제한적이거나, 2025년 조사(19~24세)에서 돌봄 필요 가족이 1명인 경우가 68.4%, 2명 이상이 31.6%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초기(19~24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3명 중 1명이 복수 가족을 동시에 돌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돌봄 대상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청년 초기부터 다중 돌봄 부담을 감당하는 비율이 30%를 웃돌아 조기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다만 두 조사 간 표집 방법과 모집 경로의 차이를 고려할 때, 관찰되는 변화가 실제 돌봄환경 변화를 반영하는지 표본 특성 차이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표 V-69.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필요 가족 수

(단위: %)

구분	2022년(선행연구)		2025년(본 연구)	
	13-18세	19-34세	13-18세	19-24세
1명	76.7	67.1	77.8	68.4
2명 이상	23.3	32.9	22.2	31.6

주: 1)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81쪽 (표 4-3-7).

2) 19세 이상은 연령범위 차이로 인해(2022년: 19-34세, 2025년: 19-24세) 직접 비교에 제약이 있음.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의 동거 여부를 비교한 결과, 13~18세 청소년층에서는 동거 비율이 2022년 73.6%에서 2025년 82.3%로 8.7%p 증가했고, 비동거 비율은 26.4%에서 17.7%로 8.7%p 감소했다. 19세 이상에서는 연령 범위 차이로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2025년 조사(19~24세)에서 동거 비율이 69.9%로 2022년 조사(61.8%)보다 높았다. 특히 13~18세에서 동거 비율이 상승한 점은 청소년이 가족돌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학업과 돌봄을 병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V-70.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필요 가족과의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2022년(선행연구)		2025년(본 연구)	
	13-18세	19-34세	13-18세	19-24세
동거	73.6	61.8	82.3	69.9
비동거	26.4	38.2	17.7	30.1

주: 1)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81쪽 <표 4-3-7>.

2) 19세 이상은 연령범위 차이로 인해(2022년: 19-34세, 2025년: 19-24세) 직접 비교에 제약이 있음.

다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기능 제약 수준을 비교한 결과, IADL(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가족돌봄 비율이 2022년 31.5%에서 2025년 19.8%로 감소한 반면, ADL(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가족돌봄 비율은 2022년 68.5%에서 2025년 80.2%로 증가했다. 19세 이상에서는 연령 범위 차이로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13~18세 집단과 마찬가지로 2025년 조사(19~24세)에서 ADL 제약 가족돌봄이 높게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확률표집에 기반한 대표성 있는 표본이 아니므로 엄밀한 통계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가족돌봄 청소년이 담당하는 돌봄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IADL 제약보다 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ADL 제약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청소년의 돌봄 부담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V-71.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가족의 기능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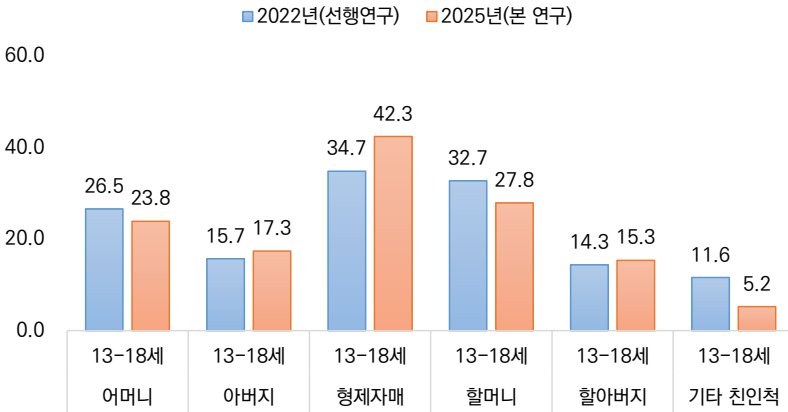
구분	2022년(선행연구)		2025년(본 연구)	
	13-18세	19-34세	13-18세	19-24세
IADL(수단적 생활능력 제약)	31.5	26.7	19.8	17.9
ADL(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68.5	73.3	80.2	82.1

주: 1)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83쪽 <표 4-3-8>.

2) 19세 이상은 연령범위 차이로 인해(2022년: 19-34세, 2025년: 19-24세) 직접 비교에 제약이 있음.

돌봄 대상 가족과의 관계는 2022년 및 2025년 조사 모두 형제·자매>할머니>어머니>아버지>할아버지>기타 친인척 순으로 동일한 순위를 보여 청소년 가족돌봄에서 나타나는 관계별 패턴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형제자매 돌봄이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청소년이 포괄 세대의 돌봄을 담당하는 특수한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 돌봄의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는데, 이는 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 고령자와 중년 여성을 돌보아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청소년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주: 1)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59쪽 <표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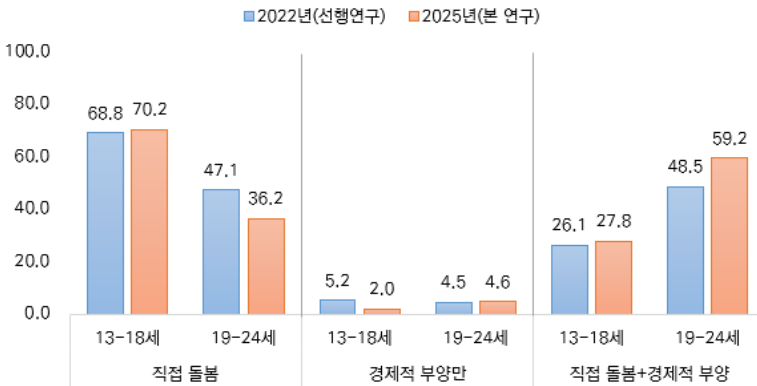
2) 연령 범위 차이를 고려하여 13~18세 응답결과만 제시하였으며, 중복응답 결과임.

그림 V-27.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대상 가족과의 관계

2) 주돌봄자 여부 및 돌봄 제공 유형

다음으로, [그림 V-28]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제공 유형별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두 조사의 표집 방법과 설계가 다르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전반적인 변화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24세 청년층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찰된다. 직접 돌봄만 제공하는 비율이 2022년 47.1%에서 2025년 36.2%로 감소한 반면, 직접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담당하는 복합형은 48.5%에서 59.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3~18세 청소년의 경우 직접 돌봄 중심의 패턴이 유지되는(68.8%→70.2%) 경향을 보인 반면, 19~24세에서는 돌봄 역할의 복합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청년기 가족돌봄자들이 직접적인 돌봄 제공에서 나아가 가계의 경제적 책임까지 동시에 담당하게 되는 ‘이중 부담’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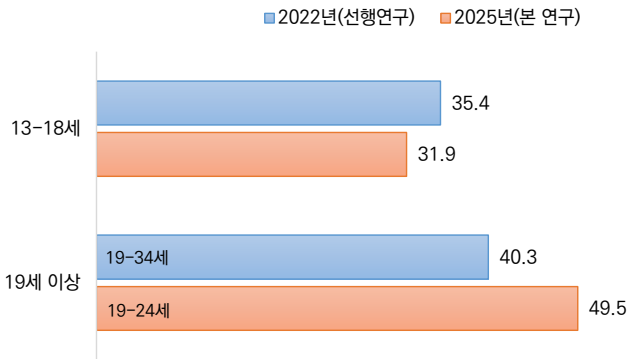
주: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56쪽 <표 4-1-1>에서 돌봄자로 분류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재산출한 비율임.

그림 V-28.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제공 유형

가족돌봄 청소년 중에서 주된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 주돌봄자의 비율 변화를 통해 돌봄 역할과 부담의 집중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V-29]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13~18세 청소년층에서는 주돌봄자 비율이 2022년 35.4%에서 2025년 31.9%로 3.5%p 낮게 파악되었다. 19세 이상에서는 연령 범위가 다르므로(2022년 19~34세 vs 2025년 19~24세)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2025년 조사에서 19~24세의 주돌봄

자 비율이 49.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조사의 19~34세 40.3%와 비교할 때 약간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청소년기에는 주돌봄 역할이 다소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청년 초기 단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주돌봄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24세에서 관찰되는 높은 주돌봄자 비율은 사회 진출과 자립 준비가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돌봄 책임을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주: 1)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59쪽 <표 4-1-6>.
 2) 19세 이상은 연령범위 차이로 인해(2022년: 19~34세, 2025년: 19~24세) 직접 비교에 제약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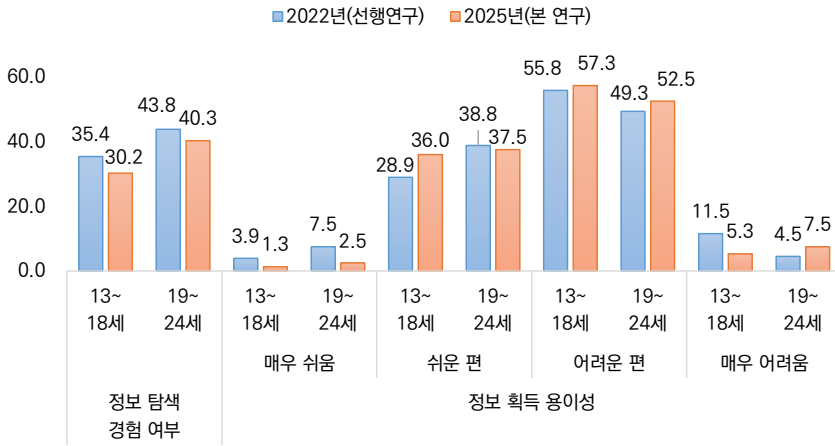
그림 V-29. 선행조사와의 비교: 주돌봄자 비율

3)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최근 2-3년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2022년과 2025년의 정보 접근성 수준을 비교해보았다. 두 조사 간 표집 방법의 차이를 감안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탐색 경험 여부는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보탐색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보 탐색의 용이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연령대별로 상반된 변화가 나타났다. 13~18세 청소년층은 '쉽다'는 긍정 응답이 32.8%에서 37.3%로 4.5%p 증가했고, '어렵다'는 부정 응답은 67.3%에서 62.6%로 4.7%p 감소했다. 반면 19~24세 청년층에서는 '쉽다'는 응답이 46.3%에서 40.0%로 6.3%p 감소했고, '어렵다'는 응답은 53.8%에서 60.0%로 6.2%p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 개선 효과가 연령 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24세 청년층에서 정보 접근 어려움이 심화된 점은 학교라는 공적 정보 제공 체계에서 벗어나면서 정보 접근 경로가 제한되는 문제를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층에서는 현재의 학교 기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되, 청년층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청년센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전달 채널 구축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위: %)



주: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136쪽 <표 5-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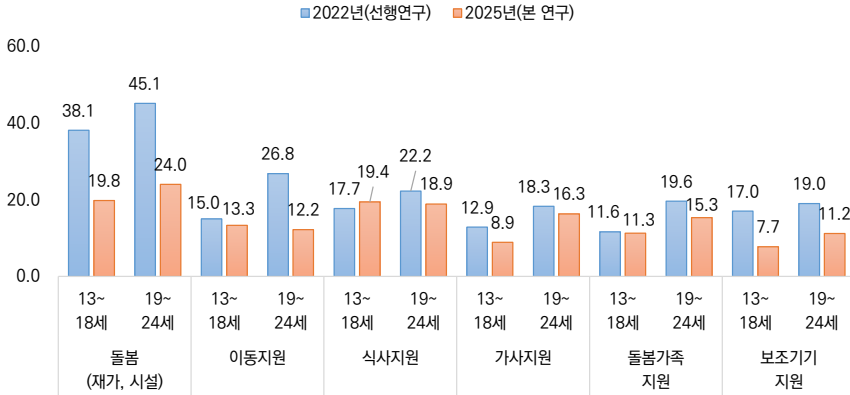
그림 V-30. 선행조사와의 비교: 가족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4)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비용 부담 주체

연령별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이용률 감소가 관찰되었다. 돌봄(재가·시설) 서비스의 경우 13~18세에서는 38.1%에서 19.8%로, 19~24세에서는 45.1%에서 24.0%로 감소했다. 이동지원, 가사지원, 보조기기 지원은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하락했으나, 식사지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러한 수치 차이가 실제 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응답자 집단의 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22년 조사와 2025년 조사는 서로 다른 연구 설계와 모집 방식을 통해 수행되었으므로, 이 결과는 서비스 이용

현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참고 자료로 해석하되, 보다 정확한 변화 추이 파악을 위해서는 향후 동일한 조사설계 하에서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단위: %)



주: 1)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122쪽 <표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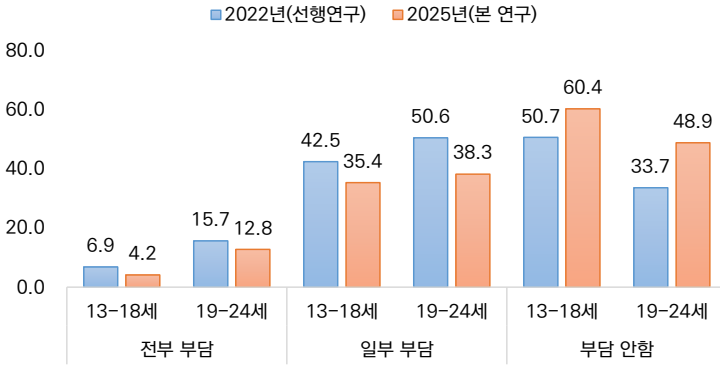
2) 제시된 수치는 각 서비스별로 '이용함', '이용안함', '모른다' 선택지 중, '이용함' 응답 결과임.

그림 V-31.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의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족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전부 부담'은 13~18세에서 6.9%에서 4.2%로, 19~24세에서 15.7%에서 12.8%로 감소했다. '일부 부담'도 13~18세에서 42.5%에서 35.4%로, 19~24세에서 50.6%에서 38.3%로 감소했다. 반대로 '부담 안함' 응답은 두 연령대 모두에서 증가해 13~18세에서는 50.7%에서 60.4%로, 19~24세에서는 33.7%에서 48.9%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족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시사한다. 다만 두 조사의 응답자 특성과 조사 설계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책 환경의 개선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방법론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단위: %)



주: 비교 대상은 함선유 외(2022), 126쪽 <표 5-1-10>.

그림 V-32. 선행조사와의 비교: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8. 소결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주요 발견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 청소년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부담 구조가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577명 중 36.0%가 주돌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돌봄 제공 형태에서는 직접돌봄만 하는 경우가 62.0%, 직접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35.2%로 나타나, 상당수가 다차원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직접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병행하는 비율이 59.2%로 높게 나타나, 성인기 진입과 함께 경제적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돌봄 강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체계 구축과 청년기 가족돌봄자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가족돌봄이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발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0.2%가 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을 경험했으며, 21.5%는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9~24세의 경우 이 비율이 31.6%에 달해 진로 결정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 확신 정도에서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 발달이 저해되는 역행 패턴을 나타냈다. 진로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24.5%)과 돌봄으로 인한 여력 부족(9.6%)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내 지원 체계와 가족돌봄 청소년 맞춤형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돌봄과 학업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됨을 방증한다.

셋째, 가족돌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가 비교 대상으로 살펴본 전국 수준 청소년 조사 결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6.10점으로 비교 집단(6.87점)보다 0.77점 낮았고, 우울감은 4.58점으로 비교 집단(2.73점)보다 1.85점 높았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66.6%로 비교 집단(96.9%)보다 30.3%p 낮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여성, 주돌봄자, 저소득층, 장기 돌봄자일수록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에서는 경제적 측면(생활비 마련 49.4%, 돌봄 비용 46.8%)과 정신건강 유지(38.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휴식 프로그램 등 예방적 개입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정책-수요자 간 연결고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1.9%에 달했고, 정부의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71.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60.6%가 어려웠다고 응답해 정보 접근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6개 가족돌봄 서비스 중 최소 1개 이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3.2%에 그쳤으며, 8개 생활복지 서비스는 54.4%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27.6%)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27.1%)가 주요하게 나타나 정보 부족이 핵심 장벽임을 확인했다. 이는 찾아가는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청소년시설과 학교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지원 필요성이 드러나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13세 미만의 경우 가족돌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고(중요성 85.7%, 자발성 74.4%) 삶의 만족도도 6.9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 부담과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19~24세는 경제적 부담과 진로 갈등이 심화되는 반면, 13~18세는 학업 지장과 또래 관계 제약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개인 시간 활용 희망에서도 13세 미만은 '친구들과 함께 놀기'(54.1%)가 압도적

이었으나, 19~24세는 '쉬기'(27.0%)와 '잡자기'(25.0%)가 높아 연령별 욕구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는 아동기에는 놀이 및 사회성 발달 지원, 청소년기에는 학습권 보장 및 또래 관계 지원, 청년기에는 자립 기반 마련 및 진로 개발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돌봄 강도에 따른 격차가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고강도 돌봄자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돌봄자와 주 15시간 이상 고강도 돌봄 제공자는 학업 지장, 심리적 어려움, 서비스 이용 욕구 등 모든 영역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였다. 주돌봄자의 지각·조퇴·결석 경험률은 46.6%로 부돌봄자 20.9%의 2배 이상이었 고, 학업·직장 중단 의향도 38.5%로 부돌봄자 11.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개인 시간 부족 체감률도 주돌봄자 52.4%, 주 15시간 이상 돌봄자 49.9%로 높게 나타나 돌봄 강도가 삶의 질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확인했다. 이는 돌봄 강도별 차별화된 지원 체계와 고강도 돌봄자를 위한 휴식 지원 서비스, 대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집중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높은 지원 수요에도 불구하고 심리적·문화적 장벽이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고 있어 문화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향후 지원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76.8%로 높은 정책 수요를 보였으나, 거부 사유로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20.1%), '상황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19.4%),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18.7%) 등이 나타났다. 14개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44.5-76.9%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생활비 지원(76.9%), 의료비 지원(76.9%), 건강 관리 지원(74.0%)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이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와 낙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높은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규모 확대가 요구된다.

<표 V-72>에는 상술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함의와 시사점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V-72.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p>① 가족 돌봄 경험 기본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대상: 형제자매 38.3%로 가장 많고, (외)할머니 31.5%, 어머니 25.0%, 아버지 19.9% 순 •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ADL) 가족이 82.5%, 수단적 생활능력 제약(IADL) 17.5% • 돌봄 필요 이유: 만성질환 35.0%, 신체적 장애 26.2%, 언어·문화적 어려움 18.7%, 정신질환 및 장애 16.5%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기본적 생활능력 제약 가족을 돌보고 있어 신체적 돌봄 부담이 크므로 돌봄 대체 서비스 확대 필요 • 형제자매 돌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돌봄 지원자 선정 시 형제자매 돌봄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 필요 • 질병, 장애 외 '언어·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한 돌봄도 상당수 차지해, 돌봄 대상자 선정 시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돌봄자 36.0%, 특히 19~24세는 49.5%가 주돌봄자 역할 수행 • 주돌봄자가 된 이유(1+2순위):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47.6%로 가장 많음,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35.6%, '애정과 책임감' 30.8% • 저소득층(300만원 미만)에서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58.4%로 타 소득층 대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이 청소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가족 내 돌봄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향 • 가족돌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단위 공적 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필요 • 저소득층일수록 불가피하게 주돌봄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하루 평균 돌봄시간 3.58시간, 4시간 이상 돌보는 비율 35.7% • 주말 하루 평균 돌봄시간 4.49시간 •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봄에 소요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고강도 돌봄 청소년을 위한 휴식 지원 서비스 등 청소년 휴식권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돌봄 대체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지원)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돌봄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일 지원 58.1%,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36.7%, 다른 가족 돌보기(형제자매 등) 34.1%, 아픈 가족 돌보기 29.3%, 병원 통원 또는 입원시 돌보기 19.4%, 행정업무 지원 17.2%, 경제적 지원 15.9% 순 → 가사노동부터 직접적인 신체 돌봄까지 다양한 영역의 돌봄 활동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가사지원을 넘어 간병, 행정·경제적 역할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돌봄 수행 • 돌봄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진로·미래 고민 등 복합적 어려움 호소 • 주돌봄자, 장시간 돌봄자, 저소득층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수준이 더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체육 활동으로 개인 시간 확보 지원 • 전문 심리상담 및 토레 멘토링 등 정서 지원 방안 마련 • 가족 단위 통합 지원으로 가족 갈등 완화 및 돌봄 부담 분산
<p>② 학업/근로 현황과 가족 돌봄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만 다님 54.8%, 일만 함 16.3%, 학교+직장 12.3%, 둘 다 안 함 16.6% - 13~18세 중 근로만 하는 경우 9.7% - 19~24세 중 학교·직장 모두 미참여 16.8% • 주돌봄자의 21.6%가 학교·직장 모두 미참여 • 저소득층(300만원 미만)에서 24.1%가 학교·직장 모두 미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연령대 청소년의 학업 중단 및 청년의 사회 참여 배제 문제 우려 •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학습·진로 지원 강화 - 가족돌봄 상황을 고려한 학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영향	재학 중인 학교급과 근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을 받아야 할 초등학교도 상당수 포함되어 아동보호 관점에서 우려 - 아동기 가족돌봄 조기 발굴 및 예방적 개입 강화 필요 •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비율이 14.5%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을 시사 	
	가족 돌봄으로 인한 학업·근로 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으로 인해 지각·조퇴·결석 경험률 30.2%, 주돌봄자의 유경험률은 46.6% •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근로를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 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돌봄자 38.5%, 19~24세 31.6% •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1+2순위): 신체적으로 힘들(46.8%), 돌봄 대상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음(33.9%), 스트레스와 우울(30.6%), 시간 부족(29.0%)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습 공백 최소화 지원 필요 • 진로·직업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가족 단위 통합 지원으로 돌봄 부담 근본적 경감 • 장기 상담 및 심리 지원으로 정서적 소진 예방
	경제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지원을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은 평균 33%의 수입을 돌봄에 사용 - 50%를 초과하는 비율도 18.8% 차지 - 저소득층(300만원 미만)에서 경제적 부담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청소년 자기돌봄비 지원 확대(학용품, 생필품 등) • 긴급 생계비 및 주거지원 강화
③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집단 대상 조사와 비교 시, 가족돌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주돌봄자, 장기 돌봄자, 저소득층에서 만족도 더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지지 집단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 복원 • 문화·여가·체육 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일상 회복 지원
	우울 및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감 평균 10점 만점에 4.58점으로 일반청소년(2.73점) 대비 1.85점 높음 - 여성(4.84점)이 남성(4.17점)보다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주돌봄자일수록, 돌봄 기간이 길수록 우울감 높음 - 저소득층(300만원 미만)에서 5.18점으로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활성화 - 장기 상담 지원으로 실질적 효과 달성 • 학교 Wee 프로젝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강화 • 주돌봄자, 장기 돌봄자 등 고강도 돌봄 청소년 우선 지원
	주관적 건강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집단(비돌봄 청소년) 대비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식 낮음 •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건강 인식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등)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활성화
	진로발달 및 미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탐색과 계획 수립의 어려움 호소 • 돌봄으로 인한 학업·진로·미래 계획 수립 제약 • 진로 준비를 못하는 이유: 진로에 대한 고려 부족, 정보 부족, 경제적 부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진로 체험 및 멘토링 기회 제공 • 자립 준비를 위한 금융·생활 교육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p style="text-align: center;">④ 기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관련 지원 서비스 인지를 68.1%로 비교적 높으나, 정보 탐색 경험은 32.2%에 불과 정보 탐색 시 60.6%가 어려움 경험 정보 미탐색 이유: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모름(31.2%),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름(22.8%), 필요 없다고 생각(21.2%)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 19~24세에서도 40.3%만 정보 탐색 경험 있어 연령 증가해도 접근성 낮음 정보 인지 경로는 인터넷 검색 24.1%, 주민센터나 복지기관 23.1%, 청소년시설 21.7%, 지인 19.1%, 학교 13.2%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톱 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쉬운 언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 채널 등 적극 활용 학교·병원·청소년시설 등 청소년의 동선을 고려한 정보 제공 강화(아우রি치) 정보 접근 방법 안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지원 서비스(6개 유형)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43.2% 유형별로는 돌봄서비스 이용률 22.2%로 가장 높고, 식사지원 19.2%, 돌봄 가족 지원 14.0%, 이동지원 13.9%, 가사지원 12.0% 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이지만, 이용자 체감 효과는 높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및 비용 경감 방안 마련 서비스별 이용률 격차 해소 이용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지원 서비스(8개 유형)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54.4% 유형별로는 문화·체육활동 지원 29.3%, 의료비 지원 27.2%, 생활비 지원 24.6%,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23.9% 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단, 법률지원은 70.6%로 비교적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별 이용률은 20%~30% 안팎으로 높지 않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아,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로의 적극 포섭이 효율적임을 시사 → 기존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14개 지원 서비스(돌봄 지원 6개, 생활 지원 8개) 중 7개 이상 다중 서비스 이용 시 문제 '대부분 해결' 23.9%로 가장 높음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수록 효과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패키지형 지원 필요 경제 지원, 돌봄 지원, 심리 지원, 학업 지원 등 통합 제공 사례관리 중심의 다차원적 욕구 해소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27.6%),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27.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1.6%) 순 13세 미만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41.1%로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저연령 청소년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6.8%가 향후 지원 받고 싶다고 응답하여 높은 정책 수요 확인 지원 거부 이유: 가족 아닌 사람의 도움이 꺼려짐(20.1%), 상황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음(19.4%),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18.7%), 신청 및 이용 절차 어려움(16.4%)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규모 확대 필요 가족 중심 가치관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및 낙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희망 지원 서비스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비 지원(76.9%), 의료비 지원(76.9%), 건강관리 지원(74.0%) 순으로 높음 그 외 진로·진학·취업 지원(73.1%), 주거비 지원(72.6%), 문화·여가·체육 활동 지원(72.1%), 휴식 지원(66.9%), 식사 지원(62.6%) 심리상담 지원(61.9%) 등 14개 서비스 영역 모두 44% 이상 응답률을 나타내, 전영역 비교적 높은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지원, 돌봄 지원, 심리 지원, 진로 지원 등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통합 지원 필요 생활비·의료비·건강관리 등 기본 생존권 보장 우선
희망 지원 서비스 (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대별 차이 뚜렷 13세 미만: 문화·여가·체육 활동 지원/생활비 지원(75.9%) 공동 1순위 13~18세: 의료비 지원(71.4%),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70.6%) 19~24세: 생활비 지원(87.2%), 의료비 지원(8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 13세 미만: 발달권 보장 및 여가 활동 지원 중점 13~18세: 경제 지원 및 학업 지원 강화 19~24세: 경제적 자립 및 진로 지원 중점
⑥ 시계열 비교: 2022년 대비 주요 변화	돌봄 대상 및 돌봄 제공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제자매 돌봄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형제자매 돌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 필요 연령대별 돌봄 유형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필요: 13~18세는 직접 돌봄 부담 경감 중점, 19~24세는 경제적 지원 강화 청년기로 이행하면서 돌봄 부담이 더 복합화되는 양상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 필요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지원 확대로 가족의 직접 비용 부담이 다소 경감된 것은 긍정적 성과 그러나 여전히 13~18세의 39.6%, 19~24세의 51.1%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어, 무상 지원 확대 또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강화 필요

○ — 제6장 가족돌봄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결과

- 1. 면담조사 개요
- 2.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
- 3. 현장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결과
- 4. 소결 및 시사점

1. 면담조사 개요

이 장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부담,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의 효과와 한계, 희망하는 세부적 지원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질적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개별 면담 대상은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9명 및 관련 실무 수행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은 돌봄 책임으로 인한 일상 및 학업의 제약, 진로 계획의 변화, 정서적 부담, 제도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단순한 가사 노동 을 넘어, 돌봄 활동이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삶과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장전문가 면담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굴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한계 또는 어려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상황, 돌봄 제도화 과정에서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전문가들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을 제공하였다.

본 면담조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202504-HR-고유-010)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1) 면담 참여자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질적인 생활 경험과 정책적 지원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가족 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과 이들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

71) 6장은 정은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과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은 총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중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로, 연구진이 직접 연락하여 섭외하였다. 면담자 구성은 성별, 연령, 가족돌봄 형태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면담 섭외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의 면담 거부로 인해 실제 면담은 동의한 9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면담을 통해 가족돌봄 과정에서 겪는 학업의 어려움, 진로 제약,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공유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는 <표 VI-1>에 제시하였다.

표 VI-1.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 대상자 구성

참가자	출생년도	성별	돌봄 대상	주돌봄자 여부	돌봄 시작 연령	학업 이력
청소년A	2004	남자	아버지	주돌봄	10세	고교 졸업-대학 휴학중
청소년B	2008	남자	외할머니	주돌봄	17세	고교 재학중
청소년C	2007	남자	남동생	부돌봄	13세	고교 재학중
청소년D	2003	여자	어머니, 남동생	주돌봄	14세	고교 졸업-대학 재학중
청소년E	2004	여자	외할머니	주돌봄	15세	고교 중퇴-검정고사-대학 휴학중
청소년F	2004	남자	할머니, 아버지	주돌봄	7세	고교 졸업-대학 휴학중
청소년G	2008	여자	어머니	주돌봄	17세	고교 중퇴-검정 고시 준비 중
청소년H	2008	여자	언니	부돌봄	15세	고교 중퇴-검정고시 합격
청소년I	2006	여자	외할머니	부돌봄	13세	고교 중퇴-검정고시 합격

현장전문가 면담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공공기관, 민간 복지기관, 지역 기반 실천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접촉하며 실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정책의 현장 실행, 사례 개입의 경험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제도 전반의 구조적 흐름과 실천 현장의 쟁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굴·연계 과정에서의 어려움, 제도적 한계, 지역사회 협력 실태와 운영상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청취하였다.

표 VI-2. 현장 전문가 면담 대상자 구성

참가자	소속	기관 유형	주요 역할 및 경험
전문가A	청년미래센터	공공 (광역 단위, 정부지원)	• 가족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운영,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총괄
전문가B	S사회복지재단	공공 (기초지자체 재단)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기획 및 운영
전문가C	K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기반 공공-민간 협력)	• 가족돌봄 청소년 사업 기획 및 현장 운영 총괄, 지역 돌봄 협력망 구축 등
전문가D	W민간기관	민간 (전국단위 NGO)	• 지역 돌봄 협력망 구축, 캠페인형 발굴사업 및 긴급지원 운영 등
전문가E	C민간기관	민간 (아동·청소년 전문 NGO)	• 가족돌봄 아동 맞춤 지원사업 및 장기 사례관리 수행 등

2) 면담조사 내용

면담조사는 설문조사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가족돌봄 경험의 구체적인 맥락과 청소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현장전문가 각각의 현실과 역할에 맞게 구분하여 설계되었으며, 공통적인 주제와 개별적인 영역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에서는 가족돌봄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현재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형태, 돌봄의 구체적인 내용(예: 신체적 간병, 정서적 지원, 행정 처리 등) 등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가족 내 돌봄을 시작한 이후 친구 관계나 학업 또는 진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실제 경험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실제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더해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 청취하고 이들의 미래 전망과 자립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다.

현장전문가 면담에서는 실무 경험을 통해 경험한 가족돌봄 청소년의 현황, 발굴 과정과 현실적 어려움, 발굴 후 연계 시스템, 정책적 제도 적용, 정책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인식을 청취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현장 중심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모델의 필요성 및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면담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현실과 현장 실무자의 정책 경험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으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기초 자료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VI-3. 면담 조사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질문 내용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돌봄 현황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돌보게 된 계기나 이유 • 현재 돌보는 가족 관계 및 상태 • 돌봄 제공의 종류 (예: 식사 준비, 약 챙기기, 감정적 지원 등)
	돌봄이 일상 및 삶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이나 공부에 미치는 영향 • 친구 관계나 여가 시간의 변화 • 미래 및 진로 계획 여부 • 정서 및 심리적 어려움 등
	지원 경험 및 서비스 활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한 기관 또는 대상 •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용한 서비스의 유형 • 도움이 되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
	정책적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 현재 제도나 정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바라는 점
현장 전문가	업무 범위 및 가족돌봄 청소년과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역할과 주요 업무 • 가족돌봄 청소년 정책 및 사업 경험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과 주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또래 청소년과 비교 한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 • 가족돌봄 청소년과 관련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거나 심각하다고 느끼는 부분
	현재의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복지, 교육, 건강 등)의 현장 적용 또는 현황 여부 • 실무자로서 느끼는 제도적/운영상 한계 • 기관 내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체계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청소년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제안 •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발굴과 지원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안

3) 면담조사 절차

면담조사는 2025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진이 직접 실시

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또는 현장전문가 간의 개별 면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해 연구진이 거주지 인근이나 근무지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만, 참여자가 희망한 경우에는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진은 면담 시작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면담 참여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면담 과정의 녹음 여부와 녹음된 자료가 익명 처리되어 연구보고서에 인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구성된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회당 약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녹음 내용을 전사하고, 연구진의 반복 검토와 분석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2.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제 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수행하는 다양한 가족돌봄 형태와 구체적인 내용,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자신을 언제쯤 인식하게 되었는지와 그 배경, △가족돌봄이 학업과 진로 미친 영향,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 외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의 경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1) 가족돌봄의 형태와 내용

가족돌봄 청소년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었다. 이들의 돌봄은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수준을 넘어, 신체 간병(식사·목욕·투약·병원 동행),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사회성 보조), 행정 처리(병원 예약·계좌 관리), 경제적 기여(생활비 보탬·아르바이트 수입 제공) 등으로 확장되었다.

(1) 조부모 돌봄과 내용

조부모를 돌보는 청소년들은 주로 신체 간병과 일상 관리를 담당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목욕 보조, 대소변 처리 등 기본적인 돌봄을 전담했으며, 일부는 경제적 기여까지 하며 가게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할머니요. 할머니랑 살면서 할머니랑 같이. 근데 같이 살면 이제 할머니 병원도 같이. 약도 이제 제가 타고요. 다리 주물러 드리고. 할머니가 저희 가족력이 당뇨 합병증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뭔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맨날 이제 약도 많이 드시고 혈당 때문에 제가 옆에서 뭔가 식단을 조금 챙기고. 이제 뭔가 달달한 거 드시려고 하면 그거 드시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청소년E)

일단은 식사부터. 할머니 이제 ○○센터라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거 있는데, 배웅해 드리고 밥이랑 샤워 같은 거, 할머니는 자발적으로 안 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할머니 이거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밥도 제가 거의 다 챙겨드리고 있어요. 대소변도 도와 드리고. (청소년B)

외할머니예요. 엄마가 잠수를 탔다가 나타났다가 해서 제가 병원 같이 가고, 집안일 같이 도와드리고, 집안 돈 보탬 거 있으면 조금 보태드리고. (청소년)

(2) 부모 돌봄과 내용

가족돌봄 청소년은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는 신체 간병과 정서적 지지, 행정적 역할 등 다양한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위해 청소와 식사 준비, 안전 보조를 담당하였으며, 만성질환 부모의 병원 예약과 투약 관리를 직접 맡아 두고 있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고, 일부 청소년은 가계 지출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짚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집안 일, 밥하고, 아버지가 안 넘어지게 계속 지켜봐야 해요. 병원 동행도 해요. ○○○ 병원이라든 대학병원 저희가 두 개를 다녀요. 아버지가 10살 때 진단받은 근이영양증 약을 처방받으러 가야 해서요. (청소년A)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어요. ...(중략)...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준다든지, 돈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장을 볼 때 엄마 혼자 못 보낸다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 같은 것도 따라가서 같이 보낸다든지, 돈 관리 문제는 제가 도와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청소년G)

그러니까 저 태어났을 때부터 좀 더 심해지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우울증이 있으셨고, 되게 심한 우울증은 10년 넘게.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우울증을 앓고 계셔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알코올 의존증도 심하게 있으셨고. 지금은 좀 많이 호전되셨지만. ...(중략)... 조기 치매도 살짝 오셨어 가지고 ...(중략)... 집안일도 당연히 했고 약 챙겨드리는 것도 했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동생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가 있거나 하면 서류 같은 걸 보내야 되거나, 하는 거를 제가 하고. 어디 관공서 가야 되거나 은행 가는 것도 제가 같이 데리고 다니고 엄마를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청소년D)

제가 식사 준비하고 병원 동행하고 이제 뭐 다른 지원금 같은 거 들어올 때 이번에 민생 지원금처럼 하실 때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서류 같은 거 다 준비해서 그런 거 신청하러 가는 거 하고. 그리고 컴퓨터 이런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버지와 할머니가 일단 인터넷 관련된 건 제가 다 하고요. 뭐 필요하실 때는 그리고 당연히 가사도 제가 거의 한 대부분 한 70% 정도는 제가 하고. 나머지가 할머니 하시고 제가 없을 때. (청소년F)

(3) 형제자매 돌봄과 내용

형제자매를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발달장애,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맡아 돌보고 있었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형제자매의 반복 행동을 제지하고, 식사와 위생 관리를 직접 수행하며, 사회성 보조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형제자매의 또래 활동과 학업을 지원하며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예가 있었다.

언니가 강박장애랑 발달장애가 있어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제가 옆에서 말려야 하고, 밥 챙기고 사회생활도 도와줘야 해요. (청소년H)

동생이 장애라서 씻기고 밥 챙겨주고, 재활 치료하는 거 도와주고 ...(중략)...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도와주셨는데 그 후에는 제가 계속 돌봤죠. (청소년C)

2) 가족돌봄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발견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인식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이를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자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가족을 돌보는 일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아야 하는 가사노동이나 책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자신을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일상적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이 ‘가족돌봄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주로 주변의 안내와 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이었다. 설문 참여 권유나 상담 과정에서의 설명, 청소년 지원기관의 안내를 통해 비로소 해당 개념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할 수 있었다. 일부는 방송 매체나 지역 홍보를 통해 개념을 접하고,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목해야 할 사안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별(청소년이동쉼터) 선생님이 그때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주셔서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내가 그러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었던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E)

네. (가족돌봄 청소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진 않았는데,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할머니를 거의 돌보는 입장이라고 알고 계셔서. (꿈드림센터에서) 니네 이거 먼저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해가지고 설문하게 됐어요. (청소년)

저는 제가 학교를 자퇴하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상품권 준다고 하길래 하는 김에 다 같이 하자 친구들이랑. 그래서 하는데 몇몇 친구들은 하다가 해당이 안 되니까 종료되기도 하고. 저는 뭔가 내가 이게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가족돌봄인지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끝까지 계속 해당이 되고. (청소년G)

TV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 보면은 어린애가 부모님 돌보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개념은 일찍이 있었는데. 가족돌봄 청년을 도와준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듣지 못했거든요. 장애인 부모를 돌보는데 연금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픈 부모를 돌본다고 뭐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거가 정부에 있거나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고.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 어느 날 갔더니 '청년다방'이라고 ○○시에서 따로 하는 가족돌봄 청년 도움 사업이 있더라고요. (청소년F)

이처럼 가족돌봄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과정은 주변 관계자·기관의 안내, 상담 경험, 매체 노출, 제도적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차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돌봄이 학업 및 진로 선택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학업 지속의 어려움과 격차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병원 동행, 가사노동, 돌봄 책임 등으로 인해 결석이 잦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누적된 부담은 성적 하락과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고 1, 4월 쯤(학업을 중단했어요). ...(중략)... 원래 중학교 때도 입학은 안 하고 학업 중단을 하려고 했는데, 중학교는 일단 나오고, 고등학교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연구진 :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혹시 이 학업 중단이 가족돌봄이랑 관련이 있으셨을까요?) 관련이 있었어요. (청소년)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좀 그런 상태여서. 뭔가 어머니도 조금 어차피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니깐 그랬는데. 차라리 니가, 이제 제가 그래도 동생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할머니

를 돌보라는 의미로 할머니 댁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연구진 : 그러면 오시면서 학업을 중단하신 거네요) 네. (청소년E)

지금 2년제를 3년 이상 다니고 있는 이유도 ...(중략)... 아버지 영향이 너무 커서. (청소년A)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사교육이나 유료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지 못한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또래와 비교해 학업 격차를 크게 체감하였다. 자가 학습만으로는 교과 난이도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이는 좌절감과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진 예도 있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EBS가 무료가 있던 한데 사실 EBS만 듣는 고등학교 애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사실 강의 찾아 듣고 좋은 선생님 찾아 듣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그래도 학원까지는 아니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청소년D)

이처럼 가족돌봄은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의 단순한 학습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부담과 경제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의 학업 지속성을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진로 준비와 교육 경로

가족돌봄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준비 과정에도 직접적인 제약을 주었다. 책임감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울 수 없거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피로로 인해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집에 제가 있어야. 언니가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중독이 있어서 집에 제가 없으면 게임만 하거든요. 그걸 두고 나가는 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근데 제가 아무래도 대학도 가야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요.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활동하기가 불안해요. (청소년H)

사실 지금 그걸 잊은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크게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실 제가 지금 미래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신경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아버지에게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A)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일부 청소년은 대안적 경로를 활용해 학업을 이어간 경우도 있었다. 정규 학교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거나,

수능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학 입학 후에도 휴학·복학·학점 조정 등을 통해 학업과 돌봄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검정고시는 합격했어요. ...(중략)... 대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년E)

서울에서 검정고시 시험을 해서 이제 고졸 그건 됐어요. ...(중략)... 제가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고, 올해부터는 휴학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E)

이제 학교는 아버지가 암에 폐암에 걸리시고 지금 휴학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계속 빠져야 돼 가지고. 대학도 지금 휴학 중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평일에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병원 가서야 될 일이 좀 연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평일 알바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주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F)

가족돌봄 청소년의 학업과 진로 문제는 개인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부담과 경제적 제약이 중첩된 구조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학업 중단, 성적 저하, 진로 준비 지연은 모두 돌봄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교육권 보장의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일부 가족돌봄 청소년이 대안적 경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간 사례는 가사 돌봄 지원과 학습 자원 지원 그리고 유연한 교육 제도가 뒷받침될 때 학업 지속성과 진로 선택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미래 전망과 계획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가족을 돌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자립을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세우는 진로 계획은 대부분 가족의 여건을 고려한 제한적인 선택에 머물렀고, 자유롭고 장기적인 진로 탐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이후 군 복무 중 적금 가입이나 자격증 취득, 트럭 구매 등 빠른 시일 내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등록금 부담 때문에 휴학 후 입대를 택하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계획을 세우는 등 경제적 자립과 가족 부양을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인 대응이 두드러졌다.

계획은 이제 일단 알바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좀 적금은 들었거든요. 적금 들어서 모은 돈으로 대학교 갔다가 대학교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 가서 군적금으로 돈 모아서 군대에서 나오면은 이제 화물차 사고 일해야죠. (청소년C)

대학을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학원을 다니거나 막 그럴 정도의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연구진 : 그게 돌봄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언니 방학 기간에는 언니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청소년B)

또한, 일부 청소년은 가족의 기대나 조건에 따라 진로가 설정되기도 했다. 예컨대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부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이어가는 식의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는 예도 있었다.

(연구진 : 혹시 휴학을 하신 사유도 지금 할머니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된 이유인가요?) 그것도 있고, 사실 여기가 할머니 집이거든요. 지금 집. 그래서 할머니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저희 집이 조금 좁기도 하고, 뭔가 제가 나가서 좀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다못해 제 옷을 산다거나 이래도 이제 보관할 데도 없고, 제 옷을 놓을 데도 없고, 장소에 조금 주의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대학생활이라고 해도 그냥 뭔가 빨리 집에 오게 되고, 그건 할머니가 계신 게 아무래도 조금 크지 않나 싶기는 해요. (연구진 : 그런 사유로 일단은 현재는 휴학 중이신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씨가 학업에 전념을 한다든지 다른 직장이 있다든지 하면 할머니의 돌봄은 다른 분이 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얘기해 본 결과로는 일단은 제가 졸업 그때까지 등록금은 어머니 아버지가 내주시는 대신에 저는 할머니를 계속 이제 옆에서 같이 있기로 했거든요. 일단 아직 졸업하려면 한 3년 남았으니까 3년 후에는 아마 삼촌이랑 어머니랑 얘기 중으로는 약간 전문 뭔가 돌봄 그런 데 보내시거나 하는 얘기 중이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워낙 그런 걸 좀 싫어하시가지고, 일단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돌보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청소년E)

이처럼 가족돌봄 청소년이 구상하는 진로는 또래에 비해 자율성이 낮고, 돌봄 책임과 가계 여건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당장의 경제활동 가능성과 가족 지원 여부가 진로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 성장 경로를 설계하거나 진로의 폭을 넓히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돌봄이 초래한 경제적·정서적 부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돌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소진을 함께 겪고 있었다.

생활비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불안감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곤 했다. 일부 청소년은 가족돌봄과 생계의 책임이 겹친 상황에서 장기간 피로와 무력감을 호소했으며, 그 영향은 학업과 진로뿐 아니라 또래 관계와 사회적 연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가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생활비에 보태며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생활비와 의료비는 늘 빠듯했고, 특히 부모의 치료비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가족돌봄 청소년은 근로 장학금으로 식비를 충당하거나 약값을 직접 부담하기도 했는데, 이는 학업과 성장에 쓰여야 할 자원이 돌봄과 생계유지로 전환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가족돌봄 청소년이 가정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떠안는 상황은 단순한 생활 보조를 넘어 가계의 생존을 지탱하는 역할로 확대되며, 돌봄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었다.

생활비. 생활도 힘들고, 알바가 없어요. 저는 사실 요즘 제가 대타 알바를 많이 나가요. (청소년A)

할머니는 수급자셔서, 제가 집안에 10% 정도는 돈을 보태고 있어요. (청소년B)

그러니까 엄마는 아예 그런 일을 하시거나 하실 수는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수급비 받는 거랑 저희는 또 따로 저랑 여동생은 근로 장학생으로 학교에서 근로 장학 해서 그걸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어쨌든 저희가 막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러는 편은 아니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또 따로 여가에 쓰는 돈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식비랑 뭐 이런 거는 그걸로 충당은 하고 있어요. (청소년D)

(2) 정서적·심리적 부담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가족 내 돌봄 책임이 자신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누적되는 피로감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우울감, 불안, 무기력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대인관계와 여가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일부 청소년은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며칠씩 누워 있는 등 극심한 정서적 소진 상태에 이른 경험을 공유하였

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상시적 불안 때문에 외출이나 여가 활동조차 편히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는 돌봄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중략)...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좀 압박감이 심하고 좀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어요. 우울증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도 살짝 있는데.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이랑 어울리질 못했어요. 끝나고 바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했었고. (청소년A)

저는 언니를 돌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단 말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언니가 아예 공감기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상처를 진짜 많이 주는데. (청소년H)

일단 제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는데. 가끔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번아웃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멘탈이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요. (청소년B)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빠지거나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좀 조바심이 나죠. 핸드폰을 꺼야 되잖아요. 만약에 영화를 보다가 아버지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셨는데 제가 영화를 본다고 핸드폰을 꺼놨다가 이게 일이 터지면은 거는 전적으로 제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 탓을 하겠죠. 그래서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집을 나왔을 때 좀 불안하긴 해요. 핸드폰에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할머니랑 아버지한테도. 누가 근데 급박하고 아픈 상황에서 꼭 핸드폰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독사 같은 게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좀 있죠. 밖에 나가거나 할 때. (연구진 : 늘 불안함이 본인의 마음에 있겠어요). 그래서 좀 신경질적으로도 좀 변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좀 애들하고 만날 때도 그거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청소년F)

(3) 친구 관계와 사회적 고립

가족 내 돌봄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또래와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줄어들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집안 사정을 이유로 모임에 오래 머물지 못하거나, 스스로 외부 활동을 제한하면서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가족돌봄 청소년은 자조 모임이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같은 처지의 또래들과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도움을 얻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교는 갈 수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애들이 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못 놀 것 같아 하고 집으로 오죠. ...(중략)... 심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는데 난 왜 못 놀지 하면서. 약간 나 자신한테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구진 : 그전에는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이제 가족돌봄을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줄어든 건가요?) 네, 맞아요. (청소년B)

굉장히 도움이 됐고. 자조 모임도 재미있었고 거기서 또 한 명 아는 친한 형도 만들어 가지고. ...(중략)... 자조 모임이 뭐 한 달에 몇 번 만났는데 뭐 쓸모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누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나갈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게 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계기가 된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F)

홍보는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그 이동침터를 가게 된 게, 좀 제가 좀 유일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잠깐 모든 걸 잊고, 그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즐겁게 얘기도 나누고 하는 건데. 그게 좀 크다 보니까. 저도 좀 자주 가요. 자주 가고. (청소년A)

5) 돌봄 지원 이용 경험과 정책 수요

가족돌봄 청소년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의료, 학업, 진로, 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고,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로도 부족하여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 돌봄 지원 이용 경험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당수는 여전히 공공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부모나 조부모의 간병, 동생 돌봄 등으로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제도가 있더라도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인식하며, 실제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복지 제도 느낌으로는 받은 게 없어요. (청소년B)

차상위 계층이 아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청소년H)

특히 정보 접근의 제약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청소년은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으며, 자신이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직접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주민센터 갔는데 ...(중략)... 물어봤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차가웠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아는 거 없다고 하시고. (청소년I)

가족돌봄 관련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해 준 건 없어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사실 거의 제로인 거죠. (청소년H)

그럼에도 일부 청소년들은 행정복지센터, 지역 복지관, 청소년이동쉼터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긴급생계비, 반찬·도시락 제공, 장보기 지원, 학업 관련 지원 등은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공공 전달체계가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센터에서 알아봐주셔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의외로 꽤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엄마가 요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반찬 보내주시면 밥도 먹기 쉽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 (청소년D)

청소년이동쉼터에서 월 초부터 이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장보기라고 해서 이제 거기 와서 월 7만 원 안 한도 안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마트에서 제가 원하는 식재료를 그냥 담을 수 있고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할머니가 드실 것도 같이 사고. 제가 마음대로 그냥 7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활비를 썼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청소년E)

복지관에서 C재단 연계해 주셔서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어요. (청소년F)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지역과 기관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고 대부분 단발적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장기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한편, 이러한 공적 지원의 한계를 보완한 것은 민간기관과 지역 사회복지관이었다. 일부 청소년은 민간기관, 기업 장학재단, 지자체 연계 단체를 통해 생활비, 생필품, 학업

지원 등을 받았다. 정기 후원금, 장학금, 온라인 강의 수강권 등은 생활 안정과 학업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역시 지역별 격차가 크고 일회성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W재단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도움받았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후원금 받아요. (청소년G)

S기업의 장학재단을 통해 300만원 지원 받았어요. (청소년B)

C재단에서 분기별로 100만 원씩 받아서 쓰고 있고 이제 또 9월달하고 11월달 그쯤에 또 100만 원 들어올 겁니다. (청소년F)

그러나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장벽은 청소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영수증 제출과 같은 사후 확인 절차, 복잡한 신청서 작성, 제한된 신청 기간 등은 돌봄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지원 경험이 있는 청소년조차 장기적·지속적 이용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진 : 영수증 첨부해서...(중략).... 올해 받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 연도가 끝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거 사업하면은 신청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년F)

(2)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

가족돌봄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요구는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였다. 단발적 현금 지원이나 일회성 물품 제공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돌봄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언제 또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토로하며, 생활·학업·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원이 있긴 했는데, 너무 한 번으로 끝나니까...(중략)...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D)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요. 이게 3개월인가 6개월마다 심사를 하더라고요. 단순 연장을 할 건지 물어보고 구청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면. 아마 한 몇 개월 뒤면 이제 또 아마 또 재심사해요. (청소년A)

또한, 정서·심리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 내 돌봄 책임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피로, 무력감, 우울감 등을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 상담, 멘토링, 또래 지지,

자조모임 등 정서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돌봄 경험을 말하고 감정을 표현한 경험은 중요한 회복 계기가 되었다.

저는 좀 심리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상담이나 일단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튼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버텼던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없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되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심리적 이제 상담이든 정신과든 어떤 부분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제 가족이니까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멘탈이 흔들리고 이제 좀 심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많이 힘드니까. 그런 거 이제 심리적 지원을 좀 저는 심리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B)

그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연구진 : 상담 같은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상담 서비스?) 네. 그런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청소년B)

자조 모임도 재미있었고 거기서 또 한 명 아는 친한 형도 만들어 가지고. ...(중략)... 자조 모임이 뭐 한 달에 몇 번 만났는데 뭐 쓸모가 있겠냐는 생각이 누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나갈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게 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계기가 된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F)

아울러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활 환경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기존의 공문이나 안내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SNS 카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 이용시설 프로그램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한 안내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는 청소년이동쉼터에서 알게 됐어요. 거기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서 처음 알았거든요. (청소년A)

인스타 릴스, 스토리 같은 거 넘기다 보면 한 번씩 뜨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걸 자주 보는데. 그 광고에 보여주면. (청소년G)

인스타 같은 거, 저는 X도 많이 보고,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작은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데. (청소년H)

일부 청소년은 행정복지센터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와 지원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단순히 제도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긴급 상황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면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동사무소를 가서 이제 복지팀으로 가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상황을 말하고 이런 지금 당장 급한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게 저는 좀 빨리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일단 심적으로도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이런데 (청소년B)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 경험은 제도의 사각지대, 가족돌봄과 관련한 낮은 인식, 비공식적 경로 중심의 정보 획득, 지역별 편차가 큰 민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실제 지원을 경험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한편, 면담을 통해 드러난 정책적 요구는 명확했다.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정서·심리적 지원의 강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 방식, 그리고 행복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전달체계 구축이 그 핵심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이 단순한 생활비 보조에 머무르지 않고, 학업·진로·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3. 현장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결과

본 연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거나 담당할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연계, 지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 실천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면담 결과는 크게 △발굴의 어려움과 과제, △교육현장의 역할과 한계, △지역사회·공공·민간 협력 경험, △지원사업의 긍정적 성과와 변화, △제도적 한계와 정책 기반 마련의 과제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과 과제

(1) 구조적·제도적 요인에서 오는 발굴의 어려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과제로 지적되었

다. 공공 전달체계는 이미 다양한 취약계층을 담당하느라 과부하 상태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인식 또는 당연시되는 가족돌봄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발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가족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발굴 이후 어떠한 자원이나 서비스로 연계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아울러 현행 발굴 체계가 광역 단위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권 단위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단위 전담 인력 배치나 지역 복지관에 사례 관리 기능을 두는 등 생활권 기반의 발굴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발굴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행정복지센터, 지역 캠페인, 요양기관,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지만, 제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실질적 발굴은 여전히 행정복지센터나 학교와 같은 공식 접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가 가장 중요한 발굴 창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학교 또한 전문 인력 배치 여부와 교사의 개인적 관심에 크게 좌우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일단 거기 접근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오래 일했지만, 현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우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우선 대상이 노인, 장애인이 우선 대상이고. 사례 발굴에서 우선순위로 걸려져서 발굴되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상. 그리고 가족돌봄이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되게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중략)... 제일 많이 발굴 할 수 있는 곳 모아 있는 곳이 이제 학교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제일 키인데. (전문가D)

읍·면·동까지 전담 인력이 생기면 (발굴에)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은 민간 기관들끼리는 서로 어떤 좀 사실 동등한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때문에 ...(중략)... 정부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어떤 지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발굴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한번 좀 고려해 볼 직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전문가E)

발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당근마켓 홍보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홍보들은 용역을

주더라도 이게 조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네이버 웹툰에 팝업 뜨는 그 정도로 홍보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전광판 광고 이런 쪽으로 다 최대한으로 많이 해본 상황인데. 실질적인 발굴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죠. (전문가A)

(2) 개인·가정적 요인에서 오는 발굴의 어려움

발굴의 어려움은 가족돌봄 청소년 개인과 가정 내부의 특수성에서도 비롯된다. 우선 가족돌봄 청소년 스스로 돌봄 상황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 또래 집단의 놀림을 우려하거나, 교사에게 알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차라리 알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자기 노출 기피는 발굴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으로 지적되었다.

학교에서 애들이 잘 말을 안 한대요. 놀릴까 봐. 그리고 담임한테 말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전문가A)

또한 가정 형태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의 부담이 간과되는 경우도 잦다.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서는 지원의 초점이 주로 아픈 부모나 조부모에게 맞춰지고 정작 가족돌봄 청소년이 감당하는 돌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일부 청소년은 자신이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부모가 외부 서비스를 거부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이를 설득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지원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돌봄 청소년은 필요 자원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아울러 일부 청소년은 ‘내가 버텨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강하게 내면화하면서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감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적·가정적 요인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발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복지관에서도 영케어러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직접 의뢰 온 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가요양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할머니와 같이 사는 손주들이 돌봄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가족돌봄 청소년인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중략)... 어머니가 아프셔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쉬고 또 일을 반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의

관심은 아픈 어머니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이 학생이 감당하는 돌봄과 어려움은 주목받지 못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괜찮아야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의 역할이고, 내가 버텨야지. 나는 가족을 지켜야 돼.’ 그래서 저희 상담 선생님을 만나면서도 저희가 어머니도 다 알고 어머니의 성향이나 상황도 다 아는데도 ‘우리 엄마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저랑 상담 선생님이 둘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친구는 지금 혼자 그걸 짊어지고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원하면 우리는 그냥 그걸 지원하자 그런 느낌.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돌봄은 나의 영역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C)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어쨌든 돌봄을 그러니까 주입이잖아요. 그럼 이 돌봄 상황을 해결해 줘야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이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가족돌봄 아이들은 애만 지원해 주면 해결이 안 되고 애가 돌보는 사람을 같이 지원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구조인데, 대부분 그럼 서비스를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일상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일단 어릴수록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못하고 돌봄 대상자가 판단을 하거든요. ...(중략)...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나 돌봄 도우미가 온다면 거의 90% 허락을 안 하세요. 가족 구성원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대상, 이 친구는 절대 그걸 설득을 못해요. 어릴수록 더 그렇고. 자기한테 권한이 없고 청소년들도 자기 부모 설득하는 걸 어려워해서 결국 서비스를 못 받거든요. (전문가D)

2) 교육현장 역할과 지원 한계

교육현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학령기 청소년이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교사와 상담·보건·복지 담당자는 학생의 생활을 관찰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돌봄 징후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파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 태도나 상담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세한 변화가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은 잠재적 역할을 지닌 공간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장전문가들은 학교를 주요 발굴 경로로 지목하였다.

여러 가지 발굴 체계 안에서 2,500여 명의 지원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발굴이 가장 많이 된 루트가 어디냐고 봤을 때, 학교예요. ...(중략)...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판단했던 건 학교에서 발굴이 제일 쉽다는 거예요. (전문가D)

그러나 학교별 여건과 인력 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굴 수준에는 지역·학교 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 인력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발굴과 연계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사의 개인적 관심과 노력으로 발굴로 연계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제도화된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발굴이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에는 학생 간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선생님들이 교육복지사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진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자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청서도 써주시고. 그런 선생님께서, 좀 관심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해 주시는데. 거의 드문 일이긴 하거든요. (전문가D)

학교에도 이제 홍보도 하고 가서 안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을 때 저한테 들어왔던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문가C)

이러한 차이는 학교 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이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 여부가 교사의 자발성에 달린 상황에서는 발굴이 '우연'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발굴 이후 외부 기관과의 연계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학교 내부에서 학생의 돌봄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외부 기관으로의 의뢰 절차나 협력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개입을 주저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발굴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을 복지관으로 의뢰를 할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뭔가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전문가C)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교는 제도적 근거와 지원 체계의 미비로 인해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과 연계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을 겪고 있다. 현장 교사는 제도적 틀 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별적 관심이나 자발적 노력이 체계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복지센터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며 학교와 교육복지사 등이 중심이 되어 발굴과 연계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나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돌봄 영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더 많은 어른 돌봄 영웅들을 연결해 줄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청 통해가지고 학교랑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교육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등해서 조금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기관들한테는 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중략)... (전문가B)

저희가 작년에 재단 여기 본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 ...(중략)... 그때는 그래서 교육복지사들 한 20개교 정도의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발굴도 해주시고, 아동 1대 1로 그 사례 관리해 주시고. (전문가E)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S시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교육청 및 민간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 기반 발굴과 사례관리 연계를 결합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추천을 통해 접수된 학생을 외부 사례관리 기관에 연계하는 구조이며, 기관에는 사례관리비를 지원하여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 내 발굴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 구조를 구축하려는 초기적 시도로 평가된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이게 사실은 저희 재단이 ○○부랑도 계속 논의하면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는 기초 단위에서 발굴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델로 가보려고요. 지금은 광역단위에서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기초구는 발굴하고 사례관리하는 역할로 나누어서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가게랑 저희가 또 MOU를 다음 달이면 맺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발굴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된 친구들을 사례 기관으로 연결을 하면서, 사례 기관에 돈을 드려요. 사례관리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돈을 주고, 그게 친구들한테 활용될 수도 있고 운영비로도 활용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례관리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업을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전문가B)

교육현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교사의 개인적 관심과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 시도된 교육복지센터 중심의 협력이나 시범적 연계 모델은 향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구조를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3) 지역사회와 공공·민간기관의 협력 경험

학교 중심의 발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공공·민간기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협력은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지역 내 가족돌봄 네트워크, 청년미래센터와 같은 공공 전달체계의 활용, 광역 단위 전담 복지기관의 운영, 생활권 단위의 주민참여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1) 민간기관 주도 지역 네트워크

민간기관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다. 복지관과 청소년기관, 마을 활동가 등이 협력하여 발굴된 청소년을 지역 안에서 꾸준히 돌보고, 필요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이어졌다.

저희가 이제 각 사업장에 지역 사회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발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문가들...(중략)... 지역사회 돌봄 협력 체계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지원받고 거기서 관리받아야 그게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중략)... 그 안에서 이제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원을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했었어요. (전문가D)

이러한 방식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대부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 확보와 지속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 공공 전달체계 활용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복지사업을 기반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이 이루어졌다.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방문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돌봄 부담이 있는 가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연계 지원으로 이어갔다. 공공기관과 민간 재단이 협력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여기 밑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예요.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사실 뭐 영계어려를 같이 발굴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전근을 가셨는데 작년까지 계셨던 팀장님이 이쪽에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가정을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여기가 의심된다, 그런 데가 있어서 같이 상담을 나가보자. (전문가C)

재단이랑 정보원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중략)... 대외적으로 정보원은 그 연결 체계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중략)... 학교나 지자체랑 이런 연결들이 다 공공기관으로서 시스템이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문 발송이나 연계가 가능해요. (전문가E)

공공 전달체계를 활용한 발굴은 행정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있었지만, 법정 지원기준에 가족돌봄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 제한적이었다.

(3) 광역 단위 전담기관 운영

광역 단위 복지재단과 정부의 시범사업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청년미래센터는 광역 단위에서 통합 사례관리를 담당하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창구로 기능하였다. 기존 전달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우선순위에 밀려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전담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행복주민센터에 비해 낙인감이 덜하다고 인식되어,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복지지원단, 거기서 후순위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사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못 받으면...(중략)... 이 친구들을 전담하는 곳에 있어야 그래도 갔을 때 좀 웰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중략)... 아이들도 내가 어디 가야 될 때, 주민센터 가면 되게 낙인감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만 청년미래센터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얘기하면 돼’라는 게 있으면 조금 낫거든요. (전문가D)

한편, 광역 단위 복지재단은 실태조사와 정책 기반 마련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개별 사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광역 단위의

행정 범위와 인력구조로는 일대일 밀착 지원이 어려워 발굴과 지원을 생활권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읍면동 단위의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 연계하는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저희는 광역 단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중략)... 이것들을 지역으로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좀 구상을 해야겠다. (전문가A)

광역 단위가 좀 폐지되고, 기초단위로 넘어와서 당사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걸 시·군·구 단위에서 진행해야 효율적인 것 같아요. 꾸준히 만나면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가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전문가C)

이러한 논의는 전담기관 모델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 청년미래센터는 접근성과 심리적 수용성을 높였지만, 광역 단위라는 특성상 지역별 세부 발굴이나 장기적 사례관리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금 모델은 광역에 있는 청년미래센터가 거기에 계신 종사자들이 직접 사례관리를 하시는 모델이잖아요. 발굴도 어렵지만, 청소년이 지원을 받기도 힘들고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중략)...(전문가A)

(4) 생활권 기반 주민참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지역 활동가 등이 비공식적인 지원망을 형성하였다. 주민들은 긴급 상황에서 이동 지원이나 생활 보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지역 차원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부탁을 드리죠. 관심 있는 주민들은 좀 계시니까 ...(중략)...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혼자 이동하기 어렵다 하면 차로 모셔다 드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들을 모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전문가C)

지역사회와 공공 민간기관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을 결합하는 형태, 공공

전달체계를 활용한 행정적 접근, 광역 단위 전담기관을 통한 통합 사례관리, 생활권 단위 주민참여 등은 서로 다른 경로이지만 모두 발굴-연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현장 중심의 시도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시도들은 지역과 기관의 여건에 따라 운영 수준의 편차가 크며, 안정적 재원과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협력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긍정적 성과와 변화

(1) 지역 기반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이후 제공된 다양한 지원은 해당 청소년들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내 자원과 인력을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관리 체계가 청소년의 돌봄 부담 완화와 학업 유지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전담 인력이나 복지관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중심이 되어 가족돌봄 청소년의 사례를 일대일로 관리하며 돌봄 관련 서비스와 현금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자원 연계와 사례관리를 결합한 통합적 지원 체계로 운영되었다. 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협력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이 거주지역 안에서 발굴-지원-관리를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역 기반 협력 체계는 외부 기관 이동이나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도움받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들을 같이 1대1로 관리를 해 주면서 서비스와 현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올하는 좀 더 집중적인 그런 통합 지원으로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중략)... 복지관 사회복지사나 교사 등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그런 기관들을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전문가E)

저희가 이제 각 사업장에 지역 사회,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발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문가들 ...(중략)...지역사회 돌봄 협력 체계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지원받고 거기서 관리받아야 그게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중략)... 그 안에서 이제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했었어요. (전문가D)

(2) 경제적 지원의 통합적 운영과 사례관리 병행

경제적 지원 또한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사용 용도를 함께 점검하고, 사례관리와 병행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여기 포함되는 아이들은 이제 현금성 지원 플러스...(중략)... 거의 현금성 지원인데 현금성도 그냥 저희는 돈을 주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중략)... 그냥 돈만 주고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 3000이다 2000이다 이러면 어떤 분야에 쓸지를 같이 이제 좀 체크하고 신청해서 어떻게 쓰는지 조금 모니터링하고 사례 관리가 그래도 조금 개입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했었어요. (전문가D)

(3) 생활 지원의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생활 지원은 식사 제공, 생활물품, 세탁·청소 서비스, 긴급생계비 등으로 확대되며 가족 돌봄 청소년의 일상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역 상점과 연계해 꾸준한 식사 제공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세탁이나 가사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비대면 세탁·청소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이 돌봄과 가사책임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과 자기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원이 갈 수 있게. 혼자 반찬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가게 지역에 있는 가게들 연결해놔서 가서 가져가고. 저희가 받아서 주면은 그렇죠. 메뉴가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래서 반찬가게 가서 알아서 가져가게. (전문가C)

일단 청소 같은 거나 세탁이나 빨래도 집에 오는 걸 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중략)... 세탁과 청소 서비스 이렇게 2개를 업체를 연결해서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꽤나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어플로 바로바로 들어가서 필요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중략)... 그래서 어플에 예를 들어 50씩 넣어주면, 그걸로 청소나 세탁 같은 거 필요한 걸 쓰는 시스템이에요. 필요할 때 급하게 쓸 수 있고, 업체에 대한 컴플레인 말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요. (전문가D)

(4) 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업 및 진로 지원으로의 확장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제공된 정서적 지원은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학업과 진로 지원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였다. 상담 관계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은 감정과

부담을 표현하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이전에는 드러내지 못했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인식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저희가 어머니의 성향이나 상황도 다 아는데도 우리 엄마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저랑 상담 선생님이 둘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친구는 지금 혼자 그걸 짊어지고 지키고 있는 중이다. ...(중략)...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는 상담 선생님이랑 3년 동안 계속 지금 만나면서, 원래 미술을 되게 좋아하던 친구인데 거기서 힘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중략)... 이제 예술고등학교 진학하고, 지금 부모님도 아이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가족 상담을 하면서 동생도 같이 돌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 꿈을 찾아서 잘 나가고 있어요. ...(중략)... 그렇다고 상담에 매주 이렇게 만나자 해도 못 와요. 자꾸 일이 생겨서 그래도 어쨌든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있다는 거니까. (전문가C)

또 다른 사례에서는 상담 관계를 통해 학업적 욕구가 처음으로 드러나고 구체적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였다.

어머니가 아프시니까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중략)... 내가 뭘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그거를 이제서야 조금씩 좀 꺼내고, 그 친구한테는 학원비 지원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좀 연결하고 있고요. (전문가C)

이처럼 정서적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내면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학업과 진로 지원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과정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5) 자조모임과 사회적 주체로의 성장

자조모임은 가족돌봄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돌봄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였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조모임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청소년과 청년 참여자들은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콘텐츠 제작,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돌봄 경험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 친구는 이제 대학생이고 법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중략)... B시에서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영케어러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자 그런 활동을 했었고, 여기에도 당사자로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전문가C)

웹툰을 같이 만들었어요. ...(중략)... 가족돌봄 청소년이 겪었던 어려움을 시리즈물로 만들고, 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직접 조례 개정과 프로그램 개선 의견을 제안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내가 말하니까 세상이 바뀌는 걸 경험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B)

이러한 자조모임은 단순한 상호 교류를 넘어, 청소년이 사회적 발언권을 획득하고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연령대에서는 여전히 낙인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대면 자조모임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청소년들은 드러내기가 싫고 숨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자조모임 안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청소년들은 낙인의 문제 때문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청소년기에는 보통 이런 자조모임들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E)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비대면 자조모임의 형태 또는 익명 참여형 자조모임 등 새로운 운영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낙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자조모임은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가족돌봄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과 주체성 형성을 촉진하는 실질적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담 조직의 신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개별 기관의 사업 단계를 넘어 제도적 체계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광역 단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년미래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업에서는 돌봄 상황이 지속되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회성 지원보다는 주기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저희가 이제 자기돌봄비가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생애 한 번 지원으로 바뀌어서, 이제 가족돌봄 팀 사업의 주축이 원래 자기돌봄비였는데요. 저희는 그 방향성을 조금 바뀌서, 이분들한테 생애 한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줘 봤자 미래가 크게 바뀌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밀착 사례관리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생애주기별로 보면 내년에 정규사업이 되면 주기별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욕구가 있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봄을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A)

한편,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사례가 있었다. S시 복지재단 내에 전담팀이 설치되어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굴과 자원 연계, 정책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희 이제 S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S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이수가 됐고 22년도에 저희가 S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원스톱 서비스나 정책 정보에 대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S시에서 전담 기구를 하나 설치해야겠다고 판단하셨고, S시 복지재단 안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자 해서 23년도 8월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당시에는 겸임 형태로 운영되다가 24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돌봄 청년지원팀이라는 명칭하에 팀이 조직이 돼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B)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과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공공적 기반을 확장하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기관은 현장에서 자원 연계와 사례 관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은 경제적·정서적 안정, 학업 지속, 사회적 역량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관리와 자원 연계가 주요한 성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일부 지역과 사업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5) 제도적 한계와 향후 정책 과제

(1) 적용 기준의 모호성과 사각지대 축소

가족돌봄 청소년은 법과 제도상 일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 결과 발굴과 지원이 담당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고 지원의 연속성이 끊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불명확성은 지원 기준이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밀리거나 소득 기준이 간병비 등 필수 지출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그 예이다. 또한 외국인 부모를 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국적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제한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가족돌봄 청소년조차 제도의 보호망 밖에 놓이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저희가 민간단체들이랑 진행을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온 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복지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케이스들은 꽤 많아요. ...(중략)... 학교에는 아직 많이 안내는 드렸지만, 학교에서 저희 지원서 신청을 해 주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셔가지고. (전문가B)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일단 접근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 현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우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전혀 우선 대상이 아니에요. 노인이나 장애인에 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사례 발굴에서 우선순위로 걸러지기 어려워요. 시스템상. (전문가D)

가족돌봄을 하는 친구, 생계 책임을 하는 친구는 내가 5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간병비로 300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 중위 소득에서는 높게 잡히지만 실제로 내가 소득은 기준 중에서도 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 (전문가B)

부모님이 모두 외국분이시고요.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국적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까지 있어서. 생활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엄마도 돌봐야 돼요. ...(중략)... 하다못해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니까는. 근데 이제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아이인거고 이 경우에는 진짜 힘들겠다. (전문가C)

이처럼 현행 지원 체계는 법적 요건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인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수한 경제적·가족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전달체계 정비와 협력 기반 강화

현행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지원 창구가 분산되어 있고 지역별 돌봄의 기준이 다르며,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지원 편차가 발생하고 발굴에서 연계까지의 과정이 단절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특히 담당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 사례가 여러 기관을 오가거나 반대로 지원에서 완전히 누락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S시랑 잠깐 얘기하다가 S시가 이제 내년에 자기돌봄비가 별도로 생기려고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기준이 엄청 타이트해지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정부랑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데. 지금 가족돌봄은 어떤 기준치가 없이 일단 '야, 다 뛰어들어' 해가지고 지금 다 같이 막 하는 느낌, 막 영켜가지고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요. (전문가D)

우선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아동·청소년·청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아동의 특성이 있고 청소년의 특성이 있고 ... (중략) ... 그래서 아동·청소년을 묶거나 청년을 묶는 등 구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 (중략) ... 대신 말씀해 주신 정부라든지 자원을 배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어떤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 (중략) ...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명확히 하고 자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B)

이러한 발언들은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와 방법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간 기준과 절차의 차이로 인해 지원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3) 전담 조직의 역할과 접근성 강화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보다 청소년·청년 중심 공간으로 인식되어 낙인감이 덜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후순위로 밀리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중략)... 이 친구들을 전담하는 곳이 있어야 그래도 갔을 때 ‘웰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청년미래센터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전문가D)

이러한 사례는 전담기관이 단순한 행정 창구를 넘어 청소년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지원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전담 조직의 기능이나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일부 가족돌봄 청소년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담이나 비대면 신청 등 익명성이 보장된 접근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지속가능한 재정과 공공-민간 협력 구조 구축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는 단기 사업과 공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지원 체계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민간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예산이나 후원금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지속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계속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정부는 세금을 쓰다 보니까 계속 지금 타이트하게 쓰니까. 대상자 발굴이나 지원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민간은 또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중략)... 지금 가족돌봄은 어떤 기준치가 없어. (전문가D)

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단발성 후원이나 일회성 지원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사례 관리를

유지하거나, 다음 해 예산으로 연속 지원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가족돌봄 아동이 한 번의 지원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서. 그 차년도에도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또 들어오는 아동들 같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략)... 근데 그거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일단 지원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해서 사실 거의 신청했었을 때 대부분은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돌봄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가족돌봄 아동이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라고는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전문가E)

이러한 논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이 단기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안정적인 지원 체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재정 및 운영 구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가족 내 돌봄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명과 관련 정책 및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개별 면담을 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에서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상과 학업의 제약, 진로 변화, 정서적 부담, 제도 인식과 정책적 요구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전문가 면담에서는 발굴과 연계의 어려움, 현행 제도의 한계, 지역사회 협력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기에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체성 인식 부재와 발굴 사각지대의 상호 강화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 결과, 다수가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 책임을 자연스러운 가족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정체성 인식은 현장전문가들이 지적한 ‘발굴의 어려움’과 직접 연결된다. 청소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이를 문제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가정 내부의 특수성, 예컨대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나 가족 상황에 대한 노출 회피 등이 더해지면서 발굴과 정체성 인식 부재가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후 신청 방식이 아닌, 교사나 복지 담당자의 일상적 관찰을 통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시설 등의 채널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광역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생활권 기반의 발굴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2) 청소년기 핵심 발달과업(학업·진로 등) 수행의 제약과 발달권 침해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핵심 발달과업인 학업과 진로 발달에서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 면담에서는 학업 중단, 성적 하락, 진로 탐색 기회 상실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 전망 자체를 제한하는 발달권 침해로 나타났다. 일부는 검정고시, 휴·복학 등 대안 경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갔으나, 이는 개인의 노력에 의존한 예외적 사례였으며 제도적 지원은 거의 부재했다. 현장전문가들은 교육현장이 발굴과 지원의 핵심 창구가 될 수 있으나, 교사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며, 학업과 진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돌봄으로 인한 학업 공백과 진로 준비 지연은 상호 연계되어 청소년의 생애 전반에 걸친 기회 격차로 고착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사나 상담교사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온라인 강의 수강권, 1:1 학습 멘토링, 학습자료 제공 등 실질적 학습 지원을 통해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에서 발굴된 사례가 지역의 사례관리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소진의 중첩, 그러나 영역별로 분절된 지원 제도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에서는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우울·불안·무력감 등 정서적 소진

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망 축소와 고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소득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돌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청소년의 복합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전문가들은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정서 지원을 결합한 통합 지원 모델에서 긍정적 성과를 확인했으나, 이러한 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채 개별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서, 학업, 진로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통합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돌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필요도 평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발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 자조모임, 멘토링 등을 제도화하고, 식사·생필품 제공, 가사 지원(세탁·청소 등), 긴급생계비 등 실질적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4) 민간 주도 지원의 성과와 지속성 한계, 공공 책임의 제도화 필요

현장전문가 면담 결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사례관리, 생활 지원 등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현장 혁신은 그간 주로 민간기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긍정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에서도 실질적 도움을 받은 경로는 민간기관이나 재단인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단기 사업이나 공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정 불안정과 지속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반면 공공 전달체계는 법정 지원 기준의 경직성과 전달체계 분절로 인해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민간의 혁신 모델이 공공 제도로 흡수되거나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인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전국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정책 총괄·자원 배분), 기초지자체(사례관리 운영), 읍·면·동(발굴·1차 연계) 등 전달체계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 절차를 표준화하며,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계획 기반의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의 운영 모델을 공공이 제도화하고, 민간은 전문성과 유연성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면담 결과, 미성년 청소년(9~18세)과 청년(19~24세)은 발달 단계, 돌봄 환경, 지원 욕구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학교생활과의 병행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자조모임의 경우 청년층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었으나, 청소년은 또래 집단 내 노출을 꺼려 대면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 지원 체계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포괄하는 통합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대상은 청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기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연계 지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상담 창구, 또래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상담, 익명 자조모임, 챗봇 기반 정보 제공 등 청소년 친화적 접근 방식을 병행하고, 청소년(학업·진로·또래 관계 중심)과 청년(자립·취업·주거 중심) 등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춘 지원 체계를 차별화하여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표 VI-4. 면담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구분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1]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가족 돌봄에 대한 자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당연한 가족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향 돌봄 정체성 인식은 주변 관계자 기관의 안내, 상담 경험, 매체 노출, 제도적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차 형성됨. 일부는 지원사업 참여 후에야 자신의 상황을 ‘돌봄’으로 재정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시설, 학교 등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함으로써 지원대상으로서의 인지 제고 가족돌봄 청소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발길이 어려운 구조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복지 담당자의 일상적 관찰을 통한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필요.
돌봄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은 단순 가사노동을 넘어 신체적 간병, 정서적 지지, 행정·경제적 역할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역할 수행 병원 동행, 약 챙기기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청소년 일상 전반에 걸쳐 수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의 복합적·중층적 부담을 반영한 지원 체계 필요 직접돌봄 완화를 위한 대체 서비스(재가돌봄·가사지원) 확대 및 휴식권 보장 방안 마련 필요
학업·진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책임으로 인해 결석이 잦고 수업 집중 어려움이 반복되어 성적 하락 및 학업 중단으로 이어짐. 경제적 제약으로 사교육 접근이 어려워 학업 격차 심화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및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

구분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는 검정고시, 휴·복학 등 대안 경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갔으나, 이는 개인 노력에 의존한 예외적 사례였으며 제도적 지원은 거의 부재 돌봄 부담과 심리적 피로로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진로 탐색 기회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대일 학습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등 학습 격차 해소 지원 진로 상담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심리·정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비·의료비 부담과 정서적 피로가 중첩되어 심리적 불안·소신 호소 감정 표현 억제,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경험 상담 관계를 통해 감정 표현과 신뢰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드러내지 못했던 학업·진로 욕구를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하기 시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Wee프로젝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장기 상담 지원 정서적 지원이 학업·진로 지원으로 확장되는 통합적 지원 모델 적용 필요
사회적 관계와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책임으로 인해 친구 관계 단절, 여가 시간 부재 등 사회적 고립 경험 또래 집단 내 노출을 꺼려 자조모임 참여에 대한 심리적 장벽 존재(특히 청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 멘토링, 온라인 기반 자조모임 등 낙인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문화·여가·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휴식과 관계 회복 기회 제공
생활비·의료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생계 및 돌봄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경험 일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강화 가족돌봄 청소년 자기돌봄비 확대 및 활동수당 신설 검토
지원 정보 접근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관련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비공식적 경로(지인, SNS 등)를 통해 단편적으로 정보를 획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방식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병원, 복지관 등 가족돌봄 청소년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접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다각적 홍보 및 안내 제공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별 지원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 도움을 받은 경로는 민간기관이나 재단인 경우가 다수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커 지원 기회의 불평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주도 지원의 긍정적 성과를 공공 제도로 흡수·확산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광역·기초·읍면동 단위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 절차 표준화
제도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청소년은 민간기관을 통해 생활지원, 상담, 학원비 지원 등을 경험하며 긍정적 변화를 보고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 경험은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다 많은 정책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2 현장전문가 대상 면담조사

발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이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과제로 지적됨 - 현재 기준, 공공 전달체계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음 - 청소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문제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데이터 기반 선제적 발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필요 학교를 통한 발굴 활성화 필요 공공 전달체계에서 정책대상으로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	--	---

구분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나 가족 상황 노출 회피 등이 발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교육 현장의 역할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현장(학교)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핵심 창구이지만, 교사 개인의 역량과 관심에 의존 학교 내 체계적 발달·지원 시스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기반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담임교사·보건의교사·상담교사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교-복지·의료 기관 간 연계 체계 강화 교사 대상 가족돌봄 청소년 이해 및 발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달 체계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지원 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지원 창구가 분산되어 있고, 지역별 돌봄 기준이 달라 지역 간 지원 편차 발생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 불명확 담당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동일 사례가 여러 기관을 오가거나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정책 총괄·자원 배분), 기초(사례관리 운영), 읍·면·동(발굴·1차 연계) 등 전달체계별 역할 명확화 및 연계 절차 표준화 기초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배치 방안 검토 필요 청년미래센터는 중증 복합 사례 심층 사례 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민관 협력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사례관리, 생활 지원 등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현장 혁신은 그간 주로 민간기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긍정적 성과를 보임 그러나 단기 사업이나 공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정 불안정과 지속성 부족 문제 공공 전달체계는 법정 지원 기준의 경직성과 전달체계 분절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운영 모델을 공공이 제도화하고, 민간은 전문성과 유연성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하는 공공-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국 확대
지원 사업의 긍정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반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가 돌봄 부담 완화와 학업 유지에 긍정적 역할 자조모임을 통한 또래 지지와 사회적 주체로의 성장 경험(청년층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지원 결합형 사업 모델을 확산·제도화 자조모임 활성화 검토(단, 청소년기 특성 고려하여 온라인·익명 기반 접근 병행)
제도적 공백과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9-18세)과 청년(19-34세)을 통합 지원하는 현행 체계는 실제로는 청년 위주로 운영되어, 청소년기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학교 연계 지원, 보호자 동의 불요 상담 창구, 낙인 부담 감소 방안 등) 제8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구체적 반영

○———— 제7장 정책제언

- 1. 정책제언의 배경
- 2. 정책과제

1. 정책제언의 배경

1) 주요 결과 요약

여기에서는 제2장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검토, 제3장에서 실시한 2차 자료 분석, 제4장에서 실시한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제5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그리고 제6장에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와 그 시사점을 모두 종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영역,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VII-1>에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시사점 등 정책과제 도출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표 VII-1. 정책과제 도출 근거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선행 연구 검토 / 2차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청소년은 복지, 교육, 청소년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교차적으로 존재하나, 그간 명시적 정의가 부재했고 정책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였음. • 국내에서는 주로 '가족돌봄청년(19~34세)' 중심으로 정책이 형성되어 13세 미만 및 전기 청소년(9~18세)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9~24세)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함. • 기존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 등)과의 연계 체계를 정비하여 법률 간 정합성 확보를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분석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월세 거주율이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주거 불안정 등 경제적 취약성이 확인됨.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실제 돌봄 수행자의 스트레스 극복 어려움 비율이 52.0%로 일반 청소년 35~37%보다 높게 나타남. 	

72) 7장은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은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자료 분석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고립감은 일반청소년보다 크게 높으며, 사회적·관계적·정서적 고립이 중첩적으로 작용함. • 은둔 경험률이 돌봄 대상자가 있는 경우 더 높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 전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개입이 필요함. •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접촉점에서 조기 발견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함.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은 18세 미만 대상 법적 정의 완비 및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를 통한 개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휴식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일본은 학교-지역 연계 조기발견 체계, 지자체별 영케어러 코디네이터 배치, 가와구치시는 영케어러 응원금(초·중생 월 5,000엔/고교생 15,000엔) 지급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시행 예정이나, 정의 조항에서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간접적으로만 언급되어 명시성이 부족함. • 지자체 조례 분석 결과,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례는 84.4%로, 나머지 사례는 청소년 연령이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조례별로 연령 기준, 지원 내용, 담당 부서가 상이하여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며, 자원, 인력, 조사제도 항목 포함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적 완결성 보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기반 사례관리 체계 구축과 휴식권 보장 제도화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기발견 및 연계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 • ‘청소년’을 정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위법령 설계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상위 법률 기준을 준수한 표준 조례안을 개발·보급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해야 함. • 필수 포함 사항(정의, 책무,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전담조직 등)을 명확히 하고, 자원 인력 조항을 강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제고해야 함. 	
설문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대상은 형제자매 38.3%, 외할머니 31.5%, 어머니 25.0%, 아버지 19.9% 순이며, 19~24세는 외할머니(38.8%), 어머니/형제·자매(28.1%), 아버지(26.5%)로 조부모·부모 돌봄 비율이 높음 • 주돌봄자는 어머니를 돌본다는 비율이 36.5%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윗세대 돌봄 부담이 커지며 실질적 가장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별로 돌봄 대상과 부담 양상이 다르므로, 돌봄 대상자 특성(형제자매 vs 부모·조부모)을 고려한 지원 필요 • 청년기에 부모·조부모 돌봄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장기요양 연계 및 휴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설문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3.58시간이며, 4시간 이상 돌봄 비율이 35.7%에 달함. 주돌봄자는 8시간 이상 돌봄 비율이 17.8%로 부돌봄자(7.0%)보다 10.8%p 높음. • 주말에는 8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 비율이 20.5%로 평일(10.9%)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주말에 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도 장시간 돌봄자에 대한 집중 지원과 돌봄 청소년의 휴식권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돌봄 시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돌봄자가 된 이유(1+2순위)로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47.6%),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35.6%)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월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58.4%로 불가피한 선택의 성격이 강한 반면, 500만원 이상은 '애정과 책임감'이 41.9%로 상대적으로 자발적 성격을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은 돌봄 지원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돌봄 수행이 많으므로,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와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 • 돌봄 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전략(저소득층: 대체돌봄+경제지원 / 중·고소득층: 상담+휴식지원)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응답자의 30.2%가 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을 경험했으며, 21.5%는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음(19~24세 31.6%) • 학업·직장 중단 희망 이유(1+2순위)로는 '신체적 어려움'(46.8%),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33.9%),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30.6%), '돌봄과 학업/일을 같이 할 시간 부족'(29.0%)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이 청소년의 학업권과 발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 • 출석 인정 방안 검토, 온라인 학습 지원 등을 통해 돌봄과 학업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수준 조사와는 달리, 가족돌봄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 발달이 저해되는 역행 패턴을 나타냄. • 진로 준비 부족 이유(1순위)로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26.8%), '정보를 알지 못해서'(24.8%), '경제적 부담으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없어서'(24.5%), '가족을 돌보느라 여력이 안 되어서'(9.6%)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청소년과 달리 연령 증가에 따라 진로 발달이 역행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맞춤형 진로 상담 및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진로 탐색 기회 제공(직업체험, 멘토링 등)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0점으로 비교집단(6.87점)보다 0.77점 낮고, 우울감은 4.58점으로 비교집단(2.73점)보다 1.85점 높음. • 정신적 건강 긍정 응답률은 66.6%로 비교집단(96.9%)보다 30.3%p 낮아 상당한 격차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웰빙 상태가 비교집단 대비 현저히 취약함이 확인되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이 요구됨. • 장기 상담 프로그램 운영, 휴식 프로그램 제공, 또래 지지 집단 운영 등 예방적 개입을 강화해야 함.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p style="text-align: center;">설문 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 소득 중 평균 33%를 가족돌봄에 사용하며, 50%를 초과 하는 비율도 18.8%를 차지함. 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비율이 26.6%로 가장 높음.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응답자의 62.4%가 생계 지원 부담감을 느끼며, 주돌봄자는 75.6%가 부담을 호소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31.9%이며, 67.8%는 정보 탐색 경험이 없음. 정보 탐색 경험자 중 60.6%는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몰라서'(31.2%),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22.8%)가 주요 장벽임.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가족돌봄 청소년 중 43.2%만이 6개 돌봄서비스 중 최소 1개 이상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56.8%는 어떠한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함. 돌봄에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5.6%이며, 있다고 답한 경우에도 친척(33.8%), 주민센터·복지기관(23.4%), 청소년시설(14.0%), 친구·이웃(12.0%) 순으로 비공식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청년이 자신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을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이 필요함. 자기돌봄비 지원 확대, 돌봄 관련 의료·간병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신설 등 다층적 경제 지원 체계가 필요함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집중적 경제 지원이 요구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히 낮은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전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채널(SNS, 온라인 커뮤니티, 학교 등)을 활용해야 함. 생활밀착형 안내 체계 구축,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안내 시스템이 요구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가 공식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적극적 발굴·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함. 신형주의를 넘어 선제적 발굴(행정데이터 활용, 학교-복지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시도가 필요함. 비공식 지원망(친척, 친구·이웃 등)을 공식 지원체계와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지원 모델 구축이 요구됨. 	
<p style="text-align: center;">면담 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 청소년 면담 결과, 다수가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 책임을 가족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음. 현장전문가들은 발굴을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로 지적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면담에서 학업 중단, 성적 하락, 진로 탐색 기회 상실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래 전망 자체를 제한하는 발달권 침해로 나타남. 일부는 검정고시, 휴·복학 등 대안 경로를 활용했으나 개인 노력에 의존한 예외적 사례이며, 제도적 지원은 거의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정체성 인식과 발굴의 어려움이 상호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함. 교사나 복지 담당자의 일상적 관찰을 통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마련하고, 읍·면·동 단위 생활권 기반의 발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 핵심 발달과업(학업·진로) 수행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교육현장이 발굴과 지원의 핵심 창구임을 인식하고, 교사 역량 강화 및 학교-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함.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청소년(9~18세)과 후기 청소년(19~24세)은 발달 단계와 자원 욕구에서 차이를 보임. 청소년기에는 낙인 두려움이 크고 학교생활 병행이 핵심 과제인 반면, 청년기에는 경제적 자립이 주된 위기로 확인됨. • 청소년은 또래 집단 내 노출을 꺼려 대면 자조모임보다 개별 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면담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제도 기준의 경직성, 전달체계 분절, 비공식적 경로 중심의 정보 획득, 지역별 편차 큰 민간 지원 등으로 실제 지원 경험이 제한적임. • 주요 지원 요구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밀착형 전달체계 구축이 핵심 사항으로 도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청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욕구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개입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청소년층에는 또래관계 회복, 학업 지원, 비대면·개별 상담 강화를, 청년층에는 생활비 지원, 취업·자립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이 단순한 생활비 보조에 머무르지 않고, 학업·진로·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나아가야 함. •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지원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공공·민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함.

2) 주요 문제 진단 및 정책 개선 방향

가족돌봄 청소년은 복지·교육·심리·법제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다. 이들이 처한 현실의 복잡성을 온전히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제6장에 걸쳐 문헌·통계·제도·실태조사·면담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 실증 근거들을 종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단일한 문제가 아닌 다음의 5가지 차원에서 상호 연결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였다.

첫째, 돌봄 책임으로 인해 학업·진로·또래관계·심리정서 등 청소년기 전반의 발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 법령 및 제도가 청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미성년 청소년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조기 개입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셋째, 돌봄·복지·교육 등 관련 제도는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고 그 효과성도 검증되었으나, 서비스 정보 인지 부족 및 기존 전달체계로의 연계 미흡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원 제도도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적시에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발달 과업 및 지원 욕구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는 발달·제도·체계·인식·생애주기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성에 상응하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림 VII-1]과 같이 5가지 구조적 문제 각각에 대응하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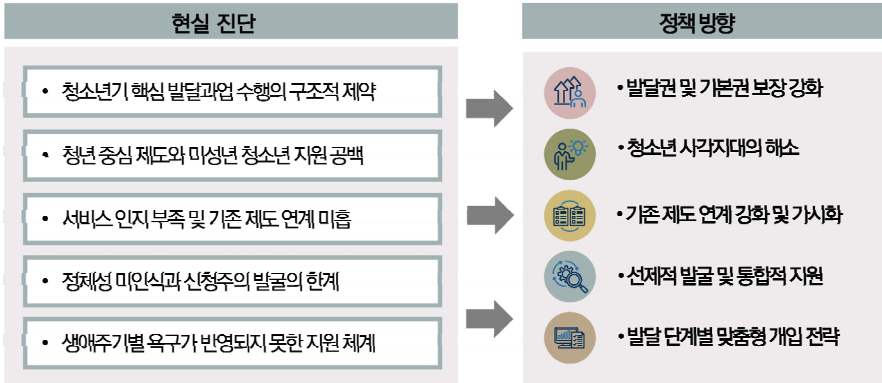


그림 VII-1.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 진단과 정책 개선 방향

(1)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달권 및 기본권 보장 강화

첫째,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달권 및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간 가족돌봄은 ‘효’나 ‘가족애’로 미화되어 청소년·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미담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기는 학습, 진로탐색, 또래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의 발달 경험은 성인기 삶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2%가 돌봄으로 인한 지각·조퇴·결석을 경험했으며,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근로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19~24세 청년의 학업·근로 중단 의향은 31.6%에 달했고,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 수행 청소년의 41.1%가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발달권 침해는 자립 지연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청소년

의 '발달권 보장'이라는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전기 청소년(9~18세)에게는 학습권·진로발달권·사회성 발달 보장을, 후기 청소년(19~24세)에게는 자립권·경제권 보장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2) 청년 중심 논의의 한계 극복 및 청소년 사각지대의 해소

둘째, 기존 가족돌봄 정책이 청년 중심으로 전개되어 미성년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제4장 검토 결과,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10개 법률안 및 지자체 조례에서 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 포괄이 충분치 않았으며, 현재 추진 체계상으로도 소관부서가 중앙부처 내 '청년정책팀' 중심으로 운영되어 미성년 청소년이 주변화 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조례 분석 결과에서는 지원 대상 연령의 하한이 13세, 14세, 심지어 18세, 19세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저연령 청소년이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제5장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을 시작한 시기는 9세 미만 20.1%, 9~12세 27.9%, 13~18세 37.8%로 나타나, 대부분이 학령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돌봄자의 66.5%는 13세 미만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 중심의 정책 틀로는 미성년 청소년의 발달권 보장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청소년 정책 영역 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청년 정책의 하위 범주가 아닌 독립적 주체로 인식하고, 교육·발달 영역과 복지 영역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3) 기존 제도의 연계 강화 및 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시화

셋째,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였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일상돌봄서비스' 인지율은 28.6%에 그쳤고, 설문에서 제시한 6개 유형의 가족돌봄 서비스 및 8개 유형의 생활·복지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도 34.5%를 차지했다. 특히 서비스 미이용 이유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

서’(27.6%),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27.1%)가 1~2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돌봄 관련 서비스를 7개 이상 복합 이용한 경우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응답이 23.9%로 1~3개 이용자(8.5%)의 약 3배에 달해, 기존 서비스의 효과성 자체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술한 일련의 결과는 문제의 본질이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연계 미흡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수영 외(2023)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6장 면담조사에서도 청소년 다수가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 책임을 가족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낮은 인식은 신청주의 기반 복지 시스템과 결합되어 발굴과 연계의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법령·조례·사업 지침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등 기존 복지 전달체계와 교육·의료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 확산의 효율성과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며,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제도 신설에 따른 시행착오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체계 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포섭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4) 선제적 발굴과 통합적 지원

넷째, 가족돌봄 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발견 이후 통합적 지원으로 즉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31.9%에 달했고, 정보 탐색 경험자 중 60.6%는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몰라서’(31.2%),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22.8%)가 주요 장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체계에서 발굴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학교·병원·지역사회 등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다층적 게이트웨이를 통한 조기 발견, 그리고 통합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돌봄 부담이 발달권 침해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5) 발달 단계별 니즈 기반의 맞춤형 개입 전략 추진

다섯째, 청소년과 청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욕구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개입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제5장 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효능감은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오히려 하락하는 역행 패턴을 보였다. 이는 돌봄 부담이 누적되면서 진로 준비와 미래 계획 수립에 구조적 제약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 유형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층은 생활비와 경제적 지원을, 청소년층은 또래관계 회복과 학업 지원을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제6장 면담조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수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청소년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학교생활과의 병행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청년층에서 효과적이었던 대면 자조모임이 청소년에게는 또래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온라인·익명 방식 등 청소년 친화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청소년과 청년이 처한 발달 과업과 생활 맥락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단일한 지원 체계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학업권과 발달권 보장을 중심으로 학교 기반 지원과 또래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청년기에는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중심으로 생활비 지원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애주기별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설계하였다. 이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발달 지연과 빈곤 악순환을 차단하고, 각 생애 단계에서 요구되는 발달 과업을 적절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와 상술한 정책제언의 기본 방향을 반영해, 5개 정책영역에서 23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가 [그림 VIII-2]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	<p>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p> <p>1-1.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1-2. 정책 및 사업명에서 ‘청소년’ 명시 강화 1-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1-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체화 1-5. 지자체 표준 조례안 개발·보급 1-6. 정책 용어의 당사자 친화성 검토</p>
2	<p>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정보접근성 개선</p> <p>2-1.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및 발굴체계 구축 2-2. 학교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발굴·연계 2-3. 지역사회·의료기관 기반 발굴·의뢰 활성화 2-4.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2-5. 지원 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p>
3	<p>돌봄 부담 경감 및 통합 지원</p> <p>3-1. 개인별 욕구 평가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3-2.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 활용 강화 및 행정·법률 지원 3-3. 휴식권 보장 및 특수돌봄 지원 3-4. 경제적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 강화 3-5. 돌봄 역량 강화 교육</p>
4	<p>청소년기 발달권 보장</p> <p>4-1.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 4-2.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연계되는 진로·취업 지원 4-3. 정서적 소진 완화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4-4. 또래 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p>
5	<p>전담체계 및 추진 기반 구축</p> <p>5-1.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체계 정비 5-2. 중장기 법정계획 연계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5-3.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청년 당사자 참여 보장</p>

그림 VII-2.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개요

2. 정책과제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	--------------------------------

1) 제안 배경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5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숨겨진 집단으로 존재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청소년 및 교육복지 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우선,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지원 방식은 스스로를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잠재적 대상자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는 복지·보호·교육이 교차하는 복합 위기 영역이므로 부처 간 협력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신규 법률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기존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및 교육부 전달체계에서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이 누락되고 부처 간 책임 혼선과 서비스 중복·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강화 및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편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돌봄 부담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기에서는 법령 체계 정비, 청소년의 법적·정책적 포섭 강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새로 시행될 법률의 시행령 구체화, 표준 조례안 개발·보급, 정책 용어의 당사자 친화성 검토 등 6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2) 제안 내용

1-1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	--------------------------

가족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 및 교육복지 법령 체계에 이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족돌봄 청소년 정책대상으로 명시

첫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적극 포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법률 개정의 방향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단순히 위기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포괄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제18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특히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제5장의2)으로 편제하여,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841호).

이러한 선례를 준용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의무를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돌봄 청소년 역시 돌봄과 학업·자립을 병행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제5장의3(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신설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을 구체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VII-2>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표 VII-2.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구분	개정안
편제	‘제5장의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별도 장으로 편제
제18조의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2.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가족돌봄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 (가족돌봄 청소년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구분	개정안
대한 복지지원)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8조의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 출처: 본 개정안은 현행 법률 제5장외2를 준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참조 자료로 활용한 현행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9841호, 2023.12.26. 타법개정).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가족돌봄 사유 명시

둘째, 교육부 소관 법률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가족돌봄’을 지원 사유로 명시하여, 학교의 조기 발굴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 상담교사, Wee클래스 등 학교 내 인력과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학교가 가족돌봄 학생을 발견할 경우 단순 의뢰에 그치지 않고, 돌봄 부담, 학업 및 정서 상태에 대한 초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II-3. 가족돌봄 상황을 명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선 지능, 이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2조(정의) ----- 1. ----- -- 이동학대, 가족돌봄 등 ----- ----- 가. <생략> 나. <생략>

* 출처: 현행 규정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5.1.21.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7.30. 인출.

(3)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연계체계 마련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법령 간 정합성 확보와 부처 간 연계체계 마련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는다.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다. 이 법은 가족돌봄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족돌봄 청소년의 욕구는 복지 영역을 넘어 발달권·학습권·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 및 성장 관련 영역까지 포괄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 및 교육부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생활비, 의료비뿐 아니라 학업·취업 지원, 심리상담 등 복지·교육·심리 영역을 망라한 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향후 「청소년복지 지원법」(성평등가족부)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교육부)에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항이 신설될 경우, 「위기아동청년법」(복지부)과 함께 세 개 법률이 동일한 정책대상을 다루게 된다. 각 법률의 취지와 소관 부처가 상이하므로, 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 간 정합성 확보와 연계체계의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및 가족돌봄 청년 당사자 간담회(2025.9.7.)에서도 부처 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행정적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부처 간 협력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동청년법」 시행령 마련 시 타 부처 협력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지원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및 교육부의 정책 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가칭)‘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중앙협의체’를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의 협력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간 협업 체계를 명문화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둘째, 부처별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칭)중앙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 전달체계 간 발굴-의뢰-사례관리-지원 절차의 연계 프로토콜을 마련 하되,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가족단위 복지지원 및 돌봄 대체서비스 제공을,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의 성장·발달 지원 및 심리정서 회복을, 교육부는 학교 기반 조기발견과 학습권 보장을 담당하는 협력형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시행령 또는 중앙협의체 운영규정 등에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무 차원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협약이나 공동책임 규정과 함께, 정기협의체나 실무협의단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가 중앙협의체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되, 정기협의나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제·행정적 협력 방안은 복지부의 총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 정책의 발달적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2	정책 및 사업명에서 ‘청소년’ 명시 강화
-----	-------------------------------

청소년 연령층, 특히 미성년 청소년이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명확히 포함되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은 ‘34세 이하’를 포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명칭이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13세 이하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어, 청소년이 정책 대상으로 인식되는 데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4장에서 분석한 조례의 경우 약 15.6%가 청소년 연령(9~24세)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 상이해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명칭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에서도 ‘청소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시범사업과 각 지자체의 관련 사업에서 연령 하한을 열어둠으로써, 발달 단계상 돌봄 수행이 부적절한 저연령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인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기가동·청년’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하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비롯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령 하한을 폐지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저연령 아동의 포섭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담당인력이 개별 사례의 돌봄 적절성과 지원 필요성을 검증하는 구조를 갖춘다면 실제 운영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연령(9~24세)이 배제되지 않도록 포괄하는 표준 조례안을 개발하고, 기존 조례의 연령 기준을 정비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지역 간 제도 적용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준 조례안 개발에 대해서는 ‘1-5. 표준 조례안 개발·보급’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표 Ⅳ-4. 사업 및 제도 운영의 청소년 포섭 강화 방안(예시)

구분		내용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¹⁾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 (개선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원 연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만 13세 이상~34세 이하 청(소)년 • (개선안) 34세 이하 청소년·청년
서울시 지원사업 ²⁾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 (개선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

* 출처: 1)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www.mohw2030.co.kr/panel.asp> 에서 2025.7.23. 인출.
2)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정책 정보 한곳에’ <https://voracious-pendulum-6fc.notion.site/c99b19eed4e74ee38425d4fc06ab1e85> 에서 2025.10.13. 인출.

1-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다음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로서, 정책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거나 진입을 제한하기보다는 폭넓게 발굴해가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당위성을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청소년기 발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배제되는 집단을 낳거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은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돌봄 대상 가족과의 '동거 여부'를 지원 조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돌봄 대상과 비동거하는 경우가 20.6%로 나타났으며, 특히 19~24세의 경우 30.1%가 비동거 돌봄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전문가 면담조사에서도 청년층에서 비동거 돌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원격으로 돌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실질적인 돌봄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노혜진, 2023).

둘째, 직접 돌봄 외에 경제적 돌봄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직접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병행하는 경우가 35.2%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족의 생계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학업·진로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경제적 기여 형태의 돌봄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의 범위를 「민법」 상 가족에 한정하기보다는 실질적 돌봄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기타 친척을 돌보는 경우가 4.2%로 나타났는데, 민법상 가족에 제한할 경우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돌봄 대상을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친구·지인까지 포함하여, 실질적 돌봄 제공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허민숙, 2022).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아니라 '돌봄 청소년'으로 용어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최영준 외, 2024). 따라서 돌봄 대상의 범위를 실질적 돌봄 관계로 확대하고,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전문가 판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II-5.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운동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현행과 같음>
1. 가족돌봄 아동·청년	1.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가. <현행과 같음>
나.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삭제>
다.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라. <현행과 같음>

* 출처: 현행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용.

1-4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체화

2025년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현재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률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전담조직 운영 방안, 종합판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구체화 수준이 법률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에는 앞서 제시한 돌봄 대상 가족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협력 제도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돌봄 대상 가족의 요건과 관련하여 부모 부재로 인한 형제자매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유형을 포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 부재로 인해 건강한 미성년 형제자

매를 돌보는 경우처럼 고령·장애·질병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도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부처 협력 체계를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전담조직 지정 기준(전문인력 배치, 시설 요건 등), 종합판정 도구 개발, 개인정보 보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핵심 요건은 명확히 하여 지역별 편차를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모든 기준을 경직되게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적 재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시행 전에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현실 적합성을 갖춘 법령 체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1-5	지자체 표준 조례안 개발·보급
-----	-------------------------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조례 간 내용 편차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 대상 연령의 하한이 지자체별로 9세, 13세, 14세, 18세, 19세 등으로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저연령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조례 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들의 포함 여부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조례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곧 시행을 앞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개발·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표준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표준조례안에는 법정 연령 기준을 사각지대 없이 포함하고, 필수 포함 사항(정의, 책무,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전담조직 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준조례안의 개발·보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 간 조례 내용의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가족돌봄 청소년이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제·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과의 충돌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촉진하여,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VII-6>에는 제4장의 조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표준조례안이 제시되어 있다.

표 VII-6.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표준조례안

「○○시(도·군·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군·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참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란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거나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족을 말한다. 1. 장애 2.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3. 고령 4. 약물·알코올 등 의존 문제 5.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한 보호 공백 6. 그 밖에 시장 등이 일상생활 유지 곤란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기본으로 하되, 사실상 부양·돌봄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주소지 일치 또는 동거 여부는 지원 제외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원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③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조기 발굴과 신속 연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등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 등은 5년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방안
 5. 재원확보 방안
 6. 전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방안
 7. 그 밖에 자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또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 등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대상 발굴 및 선정)** ① 시장 등은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조기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 ② 자원대상자 선정은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포괄적·탄력적으로 하되, 동거·주소 일치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 등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1. 심리정서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2. 건강관리(건강검진·정신건강 검사·진료 연계 등)
 3. 교육·학습 지원 및 학습권 보장
 4. 직업훈련 및 자기계발 지원
 5. 취업지원(진로탐색, 일경험, 장학훈련 연계 등)
 6. 주거·생활 지원(공공임대 연계 포함)
 7. 돌봄·가사 지원
 8. 문화·체육활동 지원
 9. 필요물품 지원
 10. 인식개선 및 홍보
 11.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12. 가족 간병·요양·의료 지원
 13.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정보제공·상담 연계)
 14.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예산의 범위에서)
 1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 등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사업을 발굴·추가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시장 등은 자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전담조직의 운영경비 지원, 업무평가, 지정·위탁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및 협약)** ① 시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시장 등은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단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자원위원회)** ① 시장 등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자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에는 복지·보건·교육·청소년·노동 등 관계 부서 및 기관이 참여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재원 및 인력)** ① 시장 등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등은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중복지원의 조정)** 시장 등은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유사 지원과의 중복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도·군·구)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 관련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 주: 본 표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본 구조로 하여, 본 보고서 제4장의 지자체 조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작성함.
 * 출처: 기본 구조로 활용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55000047&histNo=005&menuNm=main 에서 2025.10.17. 인출.

1-6 정책 용어의 당사자 친화성 검토

정책 용어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명칭의 적절성을 주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 및 정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대해, 당사자 조직 및 관련 연구에서는 ‘가족’이라는 표현이 돌봄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게 만들어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영준 외(2024)의 연구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대신 ‘돌봄 청소년’으로 명명하면서, 연구를 통해 돌봄의 대상이 직계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가족’이라는 용어가 돌봄에 대한 의무감을 내포한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Family Young Carer’라는 용어가 아닌 ‘Young Car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 조직에서도 ‘가족돌봄’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감과 의무감을 고려했을 때 ‘돌봄 청소년’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조기현, 2025.2.6.).

이러한 문제 제기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

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용어 자체가 ‘가족 내 역할’을 고착화시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혜진(2023)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를 ‘가족의 당위성’으로 인식하여 돌봄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면서, 이것이 전문적인 지원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2025년에 새롭게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과 조문 전반에 ‘가족돌봄’이라는 용어가 이미 명시되어 있고, 본 연구의 제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조례의 대부분이 ‘가족돌봄’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법률 및 조례 개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정책 효과성 평가 과정에서 정책 용어가 당사자의 정책 접근성, 권리 인식, 심리적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태조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용어 사용에 따른 낙인감, 정책 인지도, 지원 신청 의향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또는 정책 용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법률 및 조례의 용어는 당분간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정책 홍보 과정에서 ‘돌봄 청소년’ 등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병기하거나, 당사자 대상 교육·상담 자료에서는 대체 용어 혹은 중립적 표현을 적극 사용하여 용어가 주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단위 사업명의 경우 법령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서울시 등 선도적 지자체에서 사업명을 ‘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실무적 개선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정보접근성 개선
---	-------------------------------

1) 제안 배경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발굴과 정보접근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일상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도출되었고, 서비스 미이용 이유로 ‘서비스 존재 자체를 몰라서’와 ‘신청방법을 몰라서’가 상위를 차지해 정보 부족이 서비스 연계를 어렵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정보 탐색 경험자 중 다수가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저연령층일수록 정보 접근 장벽이 더 심각했다. 반면 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경우에는 높은 만족도와 문제 해결 효과가 나타나 현재 상황이 제도 부재보다 발굴과 정보 전달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됨을 방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기존의 신청주의 기반 복지 시스템은 ‘숨겨진 존재’인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6장 면담조사에서 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을 가족 의무로 받아들였고, 낙인 우려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하기보다는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학교·의료기관·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한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전달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시설을 통한 정보 습득이 학교보다 높게 나타났고, 면담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 홍보 방식을 넘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채널과 생활 동선 기반의 복합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체계 구축, 학교 기반 발굴체계 강화,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발굴,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2) 제안 내용

2-1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기반 발굴체계 구축
-----	---------------------------------

(1) 실태조사 기반 발굴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정책대상으로서 발굴이 쉽지 않은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모 추정-△실태 파악-△학교 발굴의 3단계로 구성된 조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이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별·연령별·돌봄 유형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돌봄 청소년은 모집단 정보가 부재하여 확률표집을 통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집단이며,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 체계적인 조사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자료 수집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부터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가족돌봄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이 포함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기일보, 2025.7.4.). 그동안 규모 추정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인구총조사」를 통해 지역별·연령별 비율이 파악되면 모집단 추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실태조사의 표본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인구총조사」는 그 특성상 조사 항목이 제한적이므로, 돌봄 강도, 학업·진로에 미친 영향, 심리·정서적 어려움, 구체적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 주기가 5년으로 긴 편이라, 정책대상자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총조사」로 확보된 모집단 정보를 기반으로, 별도의 실태조사와 발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전국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의 구체적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셋째는 청소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공적 지원체계인 ‘학교’를 통해 정책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조사 방법이 필요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체계의 구상과 실행 전략

첫째,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인구총조사」를 활용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인구총조사」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와 분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 배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추후 실태조사 설계 시 모집단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태 파악을 위해 독립 실태조사와 기존 조사 연계를 병행한다. 규모 추정만으로는 정책 설계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독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사는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결과를 모집단 정보로 활용하여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에 내재되었던 비확률표집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한다. 조사 내용은 돌봄 시작 시기, 주당 돌봄 시간, 돌봄 대상, 주돌봄 여부, 학업·진로 준비 어려움, 우울·불안·삶의 만족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미이용 이유, 필요 지원 유형 등 정책 설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독립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국가승인통계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성평등가족부, 3년 주기)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매년)에 가족돌봄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비(非)돌봄 청소년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대적 어려움을 가시화하고,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이는 추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학교 기반 발굴을 위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학교 기반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태 파악뿐 아니라 가족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즉시 지원으로 연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학생 맞춤형지원 실태조사」와의 연계를 타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전국 단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사 내용이 정서·행동 중심이며, 후자는 돌봄·학업·심리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내용 적합성이 높으나 현재 선도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가족돌봄 여부 스크리닝 문항을 추가하여 전국 단위 발굴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검사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조사로 초등학교 1·4학년은 학부모가 응답하고 중·고등학생은 1학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응답한다(교육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024). 가족돌봄은 청소년의 우울·불안·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데, 본 검사의 목적인 정서·행동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필수이며, 가족돌봄 여부는 그러한 배경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질감 없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발굴된 청소년은 학교 상담교사·보건교사·Wee클래스를 통해 즉시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전국 학교로 확대하여 학교 기반 조사의 주된 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6년 3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경제·학업·심리·정서·돌봄·안전·건강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돌봄 지원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2025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홈페이지, 2025.10.17.인출),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는 선도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지만,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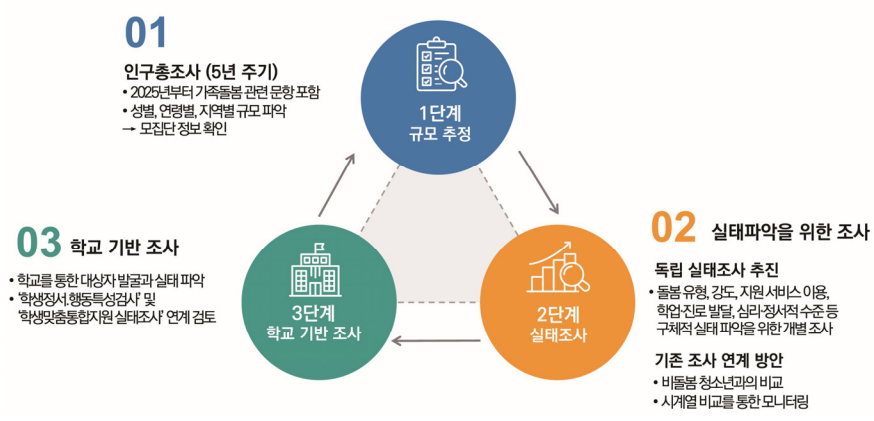


그림 Ⅶ-3.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기반 발굴 체계(안)

2-2 학교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발굴·연계

정책대상자로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위해, 학교 기반 발굴 체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 결과, 설문조사 참여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가족돌봄 청소년임을 인지한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으며, 돌봄 시작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학령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돌봄 부담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누적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학교를 통한 정보 인지 경로는 청소년시설보다 낮았으며, 현장전문가 면담에서도 교사의 개인 관심에 의존한 우연한 발견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 기반 발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동법의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지원' 체계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과 부합하나, 현재 가이드북에는 '가족돌봄'이 선택항목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현장 실행력이 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를 핵심 발굴 게이트웨이로 기능하게 하되, 발견된 청소년은 주민센터·청년미래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도록 하는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의 가족돌봄 청소년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어떠한 제도가 운영되든 구성원의 인식과 감수성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현장전문가 면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는 교사 개인의 열의와 관심에 의존하고 있어 발굴이 우연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연수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와 특성, 발견 시 주요 징후,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과의 연계, 교사의 역할과 한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교육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연수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통한 가족돌봄 청소년 제도적 포섭 강화

다음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북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하고 지원 방안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명확한 근거와 표준 지침이 마련되어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장전문가 면담에서도 명확한 규정이나 안내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가이드북(한국교육개발원, 2025)에는 학생 기본사항의 '가족현황' 항목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선택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 지침이나 사례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이드북에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별도 챕터로 추가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및 특성, 주요 징후 및 체크리스트,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지원 시 고려사항, 교내 지원 방안, 외부 연계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돌봄의 다양한 상황을 사례로 포함하여 교사의 이해를 돕고, 발견 경로부터 지원 계획 수립, 교내·외 지원 연계의 전 과정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신청서(안)(초·중·고교·지역사회 통합지원)			
신청자명	직위	학생과의 관계	
성명 (연상·학명)	학번/사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000-0000-0000 000-0000-0000(주)	주소
학생 기본사항	구분	합격(예정) 시 체제, 중복 체제 가능)	
	기초학습 보장현황	<input type="checkbox"/> 기초학습수업 <input type="checkbox"/> 방학방문료 <input type="checkbox"/> 방학수강료	
	가족현황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한부모(부/모) <input type="checkbox"/> 조부모(부/모)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장	
	학생현황	<input type="checkbox"/> 진학 <input type="checkbox"/> 사정 또는 쉼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유형:장애종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일부유엔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난민신청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생 이해용	구분	합격(예정) 시 체제, 중복 체제 가능)	
	학업	<input type="checkbox"/> 기초학습 조속 <input type="checkbox"/> 교과 조속 <input type="checkbox"/> 학업 중단 전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리·정서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불안 <input type="checkbox"/>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input type="checkbox"/> 부기억 <input type="checkbox"/> 분노/폭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동·안전·건강	<input type="checkbox"/> 학대(말벌) <input type="checkbox"/> 불식 <input type="checkbox"/> 급격스러운 보호자 사망, 이혼, 실직 등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양육 환경(단독양육, 장애 등) <input type="checkbox"/> 이해 및 상담 시도 <input type="checkbox"/> 부모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절벽 <input type="checkbox"/> 미안 <input type="checkbox"/> 기타()	
경제·생활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학생용 이해용 체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신청 사유	-		
지원 요청 사항	-		
위 학생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학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 (서명)			

* 학년도별 지원대상 학생·지역·학년·성별 등 신청서 작성(신청)대상자, 지원대상 학생

학생맞춤통합지원 신청서(안)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계 의뢰서(안)(초·중·고교·지역사회)			
학교명	학교명	교/중/고/특수	신청자명
주요부서명	주요부서명	담당자명	담당자명
신청 (연상·학명)	학번/사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000-0000-0000 000-0000-0000(주)	주소
학생 기본사항	구분	합격(예정) 시 체제, 중복 체제 가능)	
	기초학습 보장현황	<input type="checkbox"/> 기초학습수업 <input type="checkbox"/> 방학방문료 <input type="checkbox"/> 방학수강료	
	가족현황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한부모(부/모) <input type="checkbox"/> 조부모(부/모)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장	
	학생현황	<input type="checkbox"/> 진학 <input type="checkbox"/> 사정 또는 쉼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유형:장애종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일부유엔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난민신청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생 이해용	구분	합격(예정) 시 체제, 중복 체제 가능)	
	학업	<input type="checkbox"/> 기초학습 조속 <input type="checkbox"/> 교과 조속 <input type="checkbox"/> 학업 중단 전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리·정서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불안 <input type="checkbox"/>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input type="checkbox"/> 부기억 <input type="checkbox"/> 분노/폭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동·안전·건강	<input type="checkbox"/> 학대(말벌) <input type="checkbox"/> 불식 <input type="checkbox"/> 급격스러운 보호자 사망, 이혼, 실직 등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양육 환경(단독양육, 장애 등) <input type="checkbox"/> 이해 및 상담 시도 <input type="checkbox"/> 부모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절벽 <input type="checkbox"/> 미안 <input type="checkbox"/> 기타()	
경제·생활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학생용 이해용 체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연계 사유	* 학생용 이해용 체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지원 요청 사항	* 학생용 이해용 체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위 학생을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계 대상 학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 (서명)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계 의뢰서(안)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이드북, 188-189쪽.

그림 Ⅶ-4. 가족돌봄 청소년이 언급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관련 서식

(3) 학교-지역사회 지원 연계망 강화

학교가 발굴한 가족돌봄 청소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기관 간 명확한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복지센터-지자체 복지체계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복지센터가 설립된 지역에서는 교육복지센터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중간 연계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청 산하(또는 위탁) 기관으로 학교와의 연계가 용이하며,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학교로부터 접수된 발굴 정보를 기반으로 초기 상담 및 욕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복지센터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⁷³⁾ 또는 전담 조직이 설립된 지역에서는 전담조직으로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와 교육복지센터에서 1차 발굴을 하고, 지자체 협력망이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으로 후속 지원을 담당하는 유기적인 연계 구조로 볼 수 있다. 현장전문가

73)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지원단 안내 페이지, 2025.10.17. 인출).

면담에서 확인된 S시의 사례처럼,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교사 추천 학생을 외부 사례관리 기관에 연계하고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구조는 실효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로 광주광역시 서구를 참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내일희망프로그램’을 통해 서구에 거주하면서 돌봄대상자(중증질환, 심한 장애 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34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게 돌봄서비스와 자립교육을 비롯하여 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허준기, 김윤영, 박재형, 2024). 이러한 사례를 준용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실무분과를 구성하고, 학교-주민센터-복지기관-청소년기관 간 정기 협의를 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발굴된 가족돌봄 청소년이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1)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돌봄청년 대상 2025년 오잇길 걷기 행사 안내 포스터2)

* 출처: 1) [광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신청 안내. <https://www3.chosun.ac.kr/bbs/chosun/406/248550/artclView.do> 에서 2025.10.17. 인출.
 2) 데일리한국(2025.2.20.). 광주 서구, 제4회 함께 오-잇길 걷기대회' 개최: 22일 광주천 일대서 참가비 전액 가족돌봄청년·자립준비청년에 지원.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009> 에서 2025.10.17. 인출.

그림 VII-5.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가족돌봄 청소년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료기관을 통한 발굴도 함께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학교 기반 발굴체계(2-2과제)는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발굴에는 효과적이지만, 학교와의 접점을 갖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19세 이상)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가족돌봄 관련 지원 서비스 정보를 얻은 경로'를 조사한 결과, '학교'를 통한 정보 습득은 13.2%에 불과한 반면, '청소년시설'을 통한 경로가 21.7%로 나타나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기관을 통한 발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13~18세 연령층의 경우, 청소년시설을 통한 정보 습득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기반 발굴 체계를 보완하면서, 학령기를 벗어난 청년층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의료기관 중심의 발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1) 의료기관을 통한 발굴 시스템 체계화

첫째, 의료기관을 통한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부모, 조부모 등 돌봄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자연스러운 '발견 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보건의료보장법(Health and Medical Care Act)」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정신건강·장애·신체질환·약물중독 환자의 자녀(children as next of kin)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자녀가 돌봄 부담을 가진 집단임을 인식하고 주변 어른들이 먼저 발굴한다는 책임 발굴 원칙에 기반한다(조기현, 2025.2.6.). 우리나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장기 입원 환자나 외래 진료 환자의 가족 구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청년이 주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스크리닝하고, 이들이 주돌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견된 사례는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등 공공 전달체계로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연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통한 발굴 활성화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통한 발굴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에서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한 정보 습득 비율이 21.7%로 학교(1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시설이 중요한 접점임을 시사한다. 실제 청소년 대상 면담에서도 학령기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사실을 학교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청소년시설이 대안적 접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초기 상담 과정에 가족돌봄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이수영 외, 2023), 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연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은 학교에 비해 낙인감이 적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용한 발굴 자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발굴된 사례가 해당 지역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청년미래센터 등 서비스 전달체제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4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다음으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다수는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이를 문제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청주의 기반 복지 시스템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상술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행정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가족센터 등을 통해 정례적으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굴한 바 있다(면담조사, 전문가E). 이러한 사례는 공공 데이터 연계망을 활용해 학교,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적인 발굴망을 가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사례다.

구체적으로, 가족구조, 동거 가족의 장애·질환·수급 상태, 의료비 과다 지출 등 행정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달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실제 가족돌봄 상황을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정 내 주돌봄자가 누구인지, 청소년·청년 가족구성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돌봄 대상자를 통해 돌봄 제공자를 발굴하는 방식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가족돌봄청년 간담회, 2025.8.7.). 다만, 이러한 발굴이 담당 공무원의 선의에 의존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기획 발굴처럼 공무원의 발굴 책무를 명시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한다(면담조사, 전문가E). 이렇게 선별된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전담지원기구로 즉시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공공 전달체계가 먼저 찾아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I-6]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교 기반, 지역사회·의료기관 기반, 행정데이터 기반의 발굴 채널을 통한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 발굴 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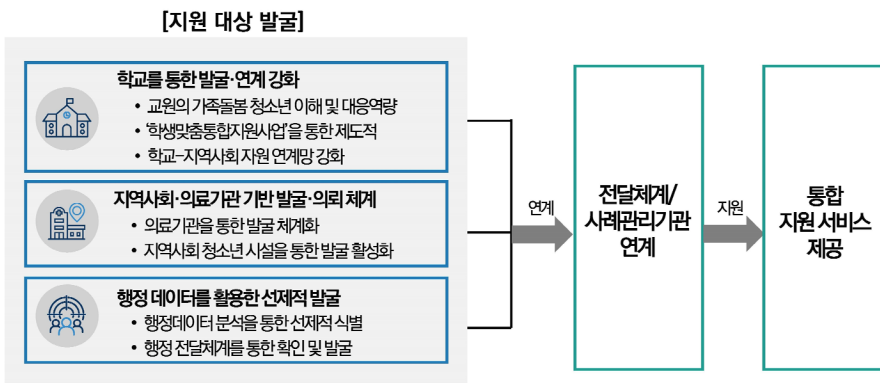


그림 VII-6.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 발굴 체계(안)

2-5	지원 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
------------	------------------------

가족돌봄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이용하도록 하려면 선제적 발굴과 함께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미이용의 주된 이유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와 '신청방법을 몰라서'였으며, 저연령층일수록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반면 서비스 연결 시 문제 해결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현재는 제도 부재보다 정보 연계 미흡이 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통합 정보 플랫폼 제공

첫째,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지만,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와도 관련이 있다. 또 지자체별로도 상이한 조례와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정보 탐색 어려움이 60.6%에 달했다는 점은 중앙-지자체 정책을 통합 안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받으며,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는 흩어진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유관 기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도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자체 단위 플랫폼은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지역 청소년이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용 가능한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국적 인지도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정보 열람과 안내는 가능하나 원스톱 신청 처리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선도적 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정보 제공을 넘어 서비스 신청과 연계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별도 사이트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과 기존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별도 사이트 신규 구축은 가족돌봄 청소년에 특화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엇보다 신규 사이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신규 사이트의 인지도 확보가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기존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청년희망ON'과 '복지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희망ON'은 청년 정책 연계가 용이하나, 청소년(9~18세)이 '청년' 중심 플랫폼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반면 '복지로'는 이미 활성화된 국가 복지 포털로서, 타

복지 정보(생계급여, 의료비, 주거 등)와의 교차 노출 효과가 있고, 전 연령을 포괄하며, 별도 홍보 없이도 복지 수요자의 유입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로’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전용 섹션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로 메인화면에 배너를 신설하고,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정책을 통합 안내하며, 원스톱 신청 처리 시스템과 AI 챗봇 상담 기능(상황별 Q&A, 24시간 자동 응답)을 탑재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I-7.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보 통합 페이지

(2)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익명 상담 활성화

둘째,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과 익명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 및 당사자 간담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낙인 우려가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당사자들은 면담과 간담회에서 오픈채팅방과 같은 익명 기반 온라인 채널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부담 없이 정보를 얻고 또래와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 소구력이 큰 SNS 채널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함께 운영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일상툰, 짧은 영상 등 시각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되, 이미 관련 노하우를 축적한 민관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픈채팅 등 익명 기반 온라인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가족돌봄을 경험한 선배 당사자를 또래 멘토로 참여시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러한 채널에서 익명 상담을 제공하되, 본인이 동의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 상담 등 공적 서비스 지원체계로 연계되도록 운영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3) 청소년의 생활 동선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복합 홍보

셋째, 청소년의 생활 동선을 고려한 오프라인·온라인 복합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령층과 고강도 돌봄자일수록 정보 접근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한 다각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학교, 병원 등에 QR 코드를 배치해 앞서 제안한 통합 플랫폼으로 직접 연결하고, 게임·웹툰 플랫폼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공간 내 광고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편의점 등 청소년 일상 동선 상의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한 홍보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돌봄 부담 경감 및 통합 지원

1) 제언 배경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핵심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지원은 가족돌봄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가족돌봄으로 인해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잘 이루는 것이 이후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돌봄 부담 경감은 청소년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제5장 설문조사에서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때 돌봄 어려움 해결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돌봄·심리·학습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통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개별 청소년과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욕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직접 수행하는 돌봄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공공 복지 서비스에 가족돌봄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돌봄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율과 이용률이 낮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별 욕구 평가에 기반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기존의 돌봄 서비스 활용 강화, 가족돌봄 청소년의 휴식권 보장 및 특수돌봄에 대한 지원, 생계 보장 등의 관점에서 과제를 제안하였다.

2) 제안 내용

3-1	개인별 욕구 평가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종합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상당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에서도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나타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생활·학업·건강·정서 등 다양한 영역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내용에 기반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⁷⁴⁾와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s) Regulations 2015」⁷⁵⁾에 따라, 지방정부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필요를 법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돌봄의 양과 성격, 교육·발달·정서 등에 미치는 영향, 부적절한 돌봄 여부, 필요한 조치와 재평가 일정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른 평가 결과와의 연계나 병합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표

74) UK Legislation.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section/96> 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75) Legislation.gov.uk. *The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s) Regulations 2015, SI 2015/527*. (2015). UK Statutory Instruments.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527/made> 에서 2025년 10월 14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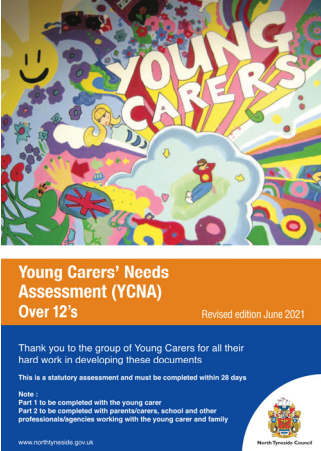
VII-7) 참고). 즉, 해당 제도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상황과 역할, 지원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계획(Action Plan)'을 수립함으로써 돌봄 당사자인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제도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개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조정·관리하도록 한 체계적 모델로 평가된다. 이를 참고하여 평가, 계획, 관리, 연계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합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굴과 관리를 위한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평가는 돌봄 부담, 학업·건강 상태, 생활환경 등 주요 영역을 표준화된 진단 도구로 살피고, 3~6개월마다 재평가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별 필요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는 '개인별 지원계획(Individual Support Plan, ISP)'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에는 학업·진로, 정서·심리, 신체건강, 돌봄 완화 등 지원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담당 기관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평가와 지원계획은 단순한 절차로 끝나지 않고,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복지·의료·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원기관(예: 행정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환경이나 돌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및 지원계획의 결과는 관련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돌봄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돌봄 대상 가족을 공적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돌봄을 받는 가족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면, 이러한 내용은 '개인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은 초기 평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평가-지원-연계의 지원체계가 지원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VII-7. 「The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검사지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 검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평가 도구는 영국 North Tyneside Council에서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의 지원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Over 12's)」임. • 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상황, 지원 요구, 정서적·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활용됨. • 검사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I]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 스스로의 상황과 필요를 직접 기술하는 부분과 [Part II] 가족돌봄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 일하는 부모/돌봄자, 학교, 복지기관, 전문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협력하여 작성하는 부분으로 나뉨 																
<p style="text-align: center;">[Part I 중 일부]</p> <p>MY CARING ROLE (Tell us all the things you do and add any of your own at the bottom)</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Fill in the main tasks below</td> <td style="padding: 5px;">Fill in extra information here. For example how often, who, where, how does this make the young carer feel? Does anyone else in the house share this role?</td> </tr> <tr> <td style="padding: 5px;">Keep someone company</td> <td style="padding: 5px;">e.g. parent</td> </tr> <tr> <td style="padding: 5px;">Take brothers/sisters to school</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Take someone out</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terpret or use sign language</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Food shopping</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Clean the house</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Fill in the main tasks below	Fill in extra information here. For example how often, who, where, how does this make the young carer feel? Does anyone else in the house share this role?	Keep someone company	e.g. parent	Take brothers/sisters to school		Take someone out		Interpret or use sign language		Food shopping		Clean the 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평가 내용(돌봄 청소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기본정보, 신체·정신건강, 학교생활, 관계, 취미·관심사 등 일상 영역 점검 - 돌봄 역할의 구체적 내용(돌봄 시간, 종류, 부담감 등), 현재 받는 지원과 추가로 필요한 지원 요구 • 평가 초점 :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상황, 심리상태, 돌봄 부담 파악 • 활용 목적 : 가족돌봄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를 탐색하고자 함 		
Fill in the main tasks below	Fill in extra information here. For example how often, who, where, how does this make the young carer feel? Does anyone else in the house share this role?																
Keep someone company	e.g. parent																
Take brothers/sisters to school																	
Take someone out																	
Interpret or use sign language																	
Food shopping																	
Clean the house																	
<p style="text-align: center;">[Part II 중 일부]</p> <p>North Tyneside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 Part 2 <small>This is an assessment and should include the views of the young carer and their parents, school and other agencies working with the family.</small></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Family Name</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Family Address</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Telephone No</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Post Code</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p style="margin-top: 10px;">Action Plan and Review for: _____ <small>Remember, the needs to link to the 3 columns. (Include the specific actions required to meet the needs identified in the 3 columns, including details of actions and monitors and who will carry them out)</small></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 padding: 5px;">Why are we doing this?</th> <th style="width: 25%; padding: 5px;">What needs to happen?</th> <th style="width: 25%; padding: 5px;">Who will do this?</th> <th style="width: 25%; padding: 5px;">When</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Next YCNA Review date (6 months): _____</p>	Family Name		Family Address		Telephone No		Post Code		Why are we doing this?	What needs to happen?	Who will do this?	Wh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평가 내용(관련 전문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 및 돌봄 관계망(가족·친구·서비스 참여 현황 등) - 가족 내 질병·장애 정보 및 관리 상황 - 관련 기관(학교, 간호사, 복지사 등) 참여 현황 - '왜, 무엇을, 누가, 언제' 해야 하는 가의 프레임으로 문제·자원·과제 분석 - Action Plan 수립 및 검토(6개월 후 리뷰 포함) • 평가 초점 : 가족돌봄 청소년과 가족 전체의 지원 요구 및 서비스 연계 필요성 평가 • 활용 목적 : 다기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진행 점검
Family Name																	
Family Address																	
Telephone No																	
Post Code																	
Why are we doing this?	What needs to happen?	Who will do this?	When														

* 출처 North Tyneside Council (2021.6).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YCNA) over 12s workbook* [PDF]. Trix CMS. <https://trixcms.trixonline.co.uk/api/assets/northtynesideadults/75988b16-0c9d-4f70-b13a-3f9749ecdbc2/ycna-over-12-s-workbook.pdf> 에서 2025년 10월 14일 인출.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의 실제 이용률은 높지 못했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재가방문·시설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2.2% 였으나 이용자의 88.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이용 가능한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연결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영역에서 살펴본 정보 부족 문제가 크겠으나, 엄격한 소득기준이나 중복이용 제한 등 제도 자체의 구조적 제약도 주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를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 기존 제도의 소득 기준 완화 및 이행기 급여 도입 검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소득 기준이 오히려 청소년의 자립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간병비, 의료비, 교통비 등 돌봄 관련 비용 지출이 높아 중위소득 100~160% 가구도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저소득층과 유사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는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이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비공식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최영준 외, 2024).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도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고용조건을 수용하는 등 공식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감지되었다. 이는 청년기 경력 개발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저해하여 생애 전반의 빈곤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함선유 외, 2022; 최영준 외, 2024).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최영준 외(2024)가 제안한 바와 같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기 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행기 급여’를 도입하여, 자립 노력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돕는 방안이다(최영준 외, 2024). 예컨대 첫 직장을 가졌을 때 2년 동안은 소득 수준이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최영준 외, 2024).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청소년기 자립 기반 마련으로 성인기 장기 복지 의존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 돌봄 서비스 간 중복이용 제한 완화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의 복합적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간 중복이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조사 결과 돌봄 대상 가족의 82.5%가 ADL(기본적 생활능력) 제약이 있고, 정신질환 및 장애(16.5%), 지적 장애(10.1%) 가족돌봄 비율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단일 제도만으로는 돌봄 강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행 제도는 일상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등이 각각 별도 법령과 재원으로 운영되면서 중복이용이 제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5). 특히 재가돌봄가사 등 기본 서비스의 경우 중복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식사지원(88.3%)과 가사지원(87.1%) 서비스는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고 돌봄 어려움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가족돌봄 청소년이 매우 필요로 하는 서비스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유사 서비스 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으나, 단일 제도만으로 복합적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고강도 돌봄 가정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재가돌봄가사 지원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고강도 돌봄 가정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와 여타 공적 지원 서비스 간 중복 이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서비스 시간 상한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뒤 효과성이 입증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 복지·법률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내실화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률 문제로 인해 이중 부담을 겪지 않도록 기존 법률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5장 조사 결과,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는 이용률이 5.9%로 8개 생활복지 서비스 중 가장 낮았으며, 만족도 역시 70.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접근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비동거 돌봄자의 이용률(10.1%)이 동거 돌봄자(4.8%)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성년후견·의료 동의·복지 신청 등 행정·법률 절차의 복잡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성년자 의료 동의, 성년후견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등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주 겪는 행정·법률 절차에 대한 온라인 안내 자료 및 상담 채널을 구축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기존 법률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정보 부족이나 절차 복잡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휴식권 보장 및 특수돌봄 지원
------------	-------------------------

가족돌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 특수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휴식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중독 등 신체질환 이외의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기존의 공적 서비스 활용 강화가 주로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청소년 당사자’가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휴식 지원 제도 도입 검토

첫째,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휴식권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주돌봄자의 52.4%에 달했으며, 개인 시간 활용 희망 조사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25.1%),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24.8%), ‘잠을 충분히 자기’(20.1%)가 상위를 차지했다. 개인 시간 활용 희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13세 미만은 ‘친구들과 함께 놀기’(54.1%)가 가장 높았고, 19~24세는 ‘쉬기’(27.0%)와 ‘잠자기’(25.0%)가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 회복과 사회성 발달이, 청년기에는 신체적 피로 회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9~18세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또래 놀이·문화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특히 13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돌봄 책임에서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집중적 또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19~24세 청년층에게는 주말이나 방학 중 돌봄 대체 인력을 지원해 충분한 쉬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참여할 수 있는 캠프, 문화체험, 또래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시도가 이미 시작되었다. 한화생명과 월드비전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OASIS DAY」(2025.11.8.)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케어러 페스티벌로, 20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체험·영케어러 토크 세션·라운지 체험·플래시몹·음악 공연 등을 제공하여 “돌봄은 창작이다(Care as Creation)”라는 주제로 당사자들의 쉼과 회복을 지원한다(wecare_oasis 인스타그램, 2025.10.20.인출). 이는 돌봄 청소년의 휴식권 보장이 국내에서도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기관의 자기돌봄비 지급 모델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사례처럼, 민간의 현장 전문성을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협력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민간 주도 페스티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후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 정례 행사로 확산하거나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당사자들이 또래 교류와 정서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아시스 데이 안내 게시물



오아시스 데이 프로그램

* 출처: wecare_oasis 인스타그램(2025.10.20. 인출).

그림 Ⅶ-8. 가족돌봄청년 페스티벌 「오아시스 데이」 홍보 게시물

(2) 정신질환·중독 등 특수돌봄 상황에 대한 전문적 지원

다음으로, 정신질환이나 중독 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최영준 외(2024)에 따르면, 돌봄 청소년의 20% 이상이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조현병 등 정신질환 가족을 돌보고 있으나, 이들은 일반적인 신체 돌봄과 다른 예측 불가능성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정신질환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16.5%, 중독 질환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3.5%로 나타났으며, 면담 조사에서도 겨울에 술에 취한 아버지를 찾아 거리를 헤맨 경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나 중독은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장애 등과는 달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발굴이 어렵고,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 가족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청소년 지원 체계와 긴밀히 연계하고, 가족 단위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트라우마 전문 상담을 장기적으로 제공하여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4 경제적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 강화

가족돌봄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돌봄 부담 경감과 함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자기돌봄비 확대, 생계·주거·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체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1) 자기돌봄비 지원 확대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조사 결과 돌봄으로 인한 학업·직장 중단 의향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 21.5%에 달했고, 19~24세 청년층의 생활비 지원 욕구는 87.2%로 나타나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경제적 부담이 청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돌

봄 아동·청년에게 자신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5.1.인출).

현재 자기돌봄비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4개 광역지자체(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한정되어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영준 외(2024)가 제안한 바와 같이 돌봄 강도에 따른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돌봄자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한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업, 자기계발, 진로 준비 등 사용처를 다양화하되, 집행 내역 보고는 간소화하여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생계·주거·의료비 긴급지원 강화

다음으로, 돌봄 대상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생계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 2차 자료 분석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의 월세 거주율은 일반 가구보다 13.8%p 높게 나타났으며, 제5장 조사에서 저소득층(300만원 미만)의 생계 비용 부담 비율은 52.3%에 달했다. 가구 경제를 책임진 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가의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으나, 함선유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률은 15% 미만에 그쳐 상당수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단위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긴급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함선유 외(2022)는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위기 지원금 성격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 여건과 사업 수행 의지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크므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당사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보호자가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식비, 참고서, 주거비, 의료비 등 실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당사자 간담회, 2025.8.10.). 아울러 긴급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을 가족돌봄 청소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불가피하게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돌봄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없다면, '안전하게, 잘 돌볼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접근이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돌봄 활동 내용은 집안일 지원(58.1%), 기본적 일상생활 보조(36.7%), 형제자매 돌보기(34.1%), 아픈 가족 돌보기(29.3%) 등 다양했으나, 대부분 청소년이 체계적 교육 없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면담조사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고,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질병별 특성에 맞는 돌봄 방법, 응급상황 대처법, 올바른 자세와 이동 보조 기술 등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면 돌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청소년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보건소나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연계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 대상 실용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돌봄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돌봄 상황에서 청소년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1) 제안 배경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소년기 핵심 과업인 학습권, 진로 발달, 심리·정서 건강, 여가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지각·조퇴·결석 경험이 빈번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로발달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제약이 확인되었다. 전국 수준 조사에서 청소년은 연령 증가에 따라 진로효능감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오히려 하락하는

역행 패턴을 보여, 돌봄 부담이 누적되면서 진로 준비와 미래 계획 수립에 구조적 제약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하여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리·정서 건강 측면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의 우울감은 전국 수준 평균보다 높고,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 인식률은 크게 낮아 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면담조사 결과, 전기 청소년(9~18세)과 후기 청소년(19~24세)은 발달 단계와 지원 욕구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기에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학교생활 병행이 핵심 과제인 반면, 청년기에는 경제적 자립이 주된 위기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은 또래 집단 내 노출을 꺼려 대면 자조모임보다 개별 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발달과업이 더욱 지체되고,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는다. 따라서 청소년기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업 지속 지원, 진로·취업 연계, 심리 상담 강화, 문화·여가 활동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발달권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제안 내용

4-1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
-----	------------------------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소년기 핵심 과업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 책임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가족돌봄 청소년 포괄 확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섭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기준 중위소득(예: 60%) 이하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학습·문화·체험·심리·정서·복지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대일 학습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등 가족돌봄 청소년의 학습 격차 해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2). 이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 지침 및 운영 매뉴얼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 제도의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형식적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는 조사참여자 중 평균 월소득 300~499만 원 가구가 31.3%, 500만 원 이상이 30.6%로 나타난 바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가 최소 2인 이상이라고 본다면, 2025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393만원, 3인 가구 502만원, 4인 가구 609만원⁷⁶⁾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300만원 이상 가구(61.9%)는 상당수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300~499만원 소득 구간에서 평균 수입의 33.7%를 돌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형식적 소득과 실질적 가처분 소득 간의 괴리가 큼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400만원 가구가 돌봄에 약 33.7%(약 135만원)를 지출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은 약 265만원 수준으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02만원)의 약 5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중간소득층(300~499만원)으로 응답한 가족돌봄 청소년 중에서도 생활·복지 서비스 중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 이용률은 17.9%에 불과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학습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발달권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돌봄 비용으로 인해 실질적 가처분 소득은 상당 부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폭넓게 고려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돌봄 사유에 대한 출석 인정 방안 검토

다음으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과도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방향은 대체돌봄 제공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돌봄 부담 자체를 경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돌봄 등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이 최소한 학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이

76)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1인 가구 239만 2,013원, 2인 가구 393만 2,265원, 3인 가구 502만 5,353원, 4인 가구 609만 7,773원, 5인 가구 710만 8,192원, 6인 가구 806만 4,805원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7.25.).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에 돌봄 부담을 졌던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조기현, 2025.2.6., 당사자 간담회, 2025.9.7.).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학령기 청소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한 결석으로 출결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석 관리는 학업 유지와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진학 시 출결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이며, 취업 시에도 기업이 출결을 성실성의 지표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결 상황이 취업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조기현, 2025.2.6.). 따라서 가족돌봄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이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8]에서는 ‘기타 결석’ 사유 중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가족돌봄으로 인한 결석은 이미 출석 인정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우선, ‘부득이한 개인사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어느 정도의 돌봄 빈도와 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학교장이 인정하는’이라는 재량 조항으로 인해 학교별·교사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간병’의 경우 진단서로 증빙이 가능하나 ‘봉양’이나 ‘가사 조력’은 증빙 방법이 불명확하고, 청소년이 이러한 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가족 상황을 학교에 알리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미 마련된 법적 근거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득이한 개인사정’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판단 부담을 경감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담임교사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등)하고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출석 인정 절차 진행 시 학교가 해당 청소년을 지역 내 대체돌봄 서비스 및 가족돌봄 지원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여, 이 제도가 단순히 결석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온라인 학습 지원 제공

학교가 일차적인 지원 체계로 작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 상 학교를 경유하지 않는 보완적 지원 경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면담조사 과정에서 10대 청소년들은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자신이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학교를 경유하지 않는 온라인 학습 지원이 보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은 주목할 만한 선도 사례이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부터 ‘서울런’ 지원 대상에 가족돌봄 청년(9세 이상~34세 미만 중 만 24세 이하)을 포함하였으며,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반 대상(중위소득 60% 이하)과 달리 중위소득 120%까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서울시 홈페이지, 2024.9.30.).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조례 개정(2024.8.30. 공포)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울시 홈페이지, 2024.9.30.),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교육 지원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런’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교과·어학·자격증), 1:1 대학생 멘토링(주 1회 1시간), AI 학습진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서울정보소통광장, 2024.10.4.).

또한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서울런’을 공동 활용하는 협력 모델도 확산하고 있다. 2024년 12월 충청북도(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청소년 1,200명), 2025년 4월 인천광역시, 7월 강원 태백시, 9월 경북 예천군(중학생 600명) 등 지역 간 협약을 통해 타지역 청소년에게도 서울런 이용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서울정보소통광장, 2024.10.4.). 그러나 이러한 협력 사례는 그 규모가 제한적이고, MOU 체결 지역 역시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서울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런 플랫폼을 전국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되,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역별 대상자 확인 및 관리는 각 지자체별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 시 중앙정부 차원의 독자적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p>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p> <p>1.~7. <생략>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9.~12. <생략></p>	
---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¹⁾

서울런에 대한 타지역의 서비스 접근 경로²⁾

* 출처: 1)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9452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2025.10.17. 인출.
 2) 서울특별시 서울런 홈페이지, <https://slearn.seoul.go.kr/> 에서 2025.10.17. 인출.

그림 VII-9. 서울런 운영 근거 및 접근 경로

다만, 면담조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조차 서울런의 존재를 몰랐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는데, 이는 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앞서 제안한 '2-4.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보접근성 제고' 과제를 통해 청소년 친화적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복지관·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서울런과 같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여 보다 많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2 |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연계되는 진로·취업 지원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기 발달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 진로 준비는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발달과업이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은 진로 탐색에서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진로 목표 및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진로 자신감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면담조사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외부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미래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등 진로 탐색의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박탈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토로하였다.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의 진로 발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진로 탐색부터 청년기 취업 지원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기존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이하 고맞고)’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전국 30여개 대학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0개교에서 운영하며,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진로 탐색 프로그램, AI 모의면접,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웹사이트, 2025.10.21.인출). 이미 진로 및 취업 지원에 노하우가 축적된 대학일자리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맞고’ 사업 매뉴얼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 평가지표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19~24세)의 경우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지역 청년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소속 대학 학생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훈련,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어, 가족돌봄 청년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멘토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해시태그 멘토링 사업’은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 20명을 선발하여 전문가 5명과 4:1 비율로 매칭해 약 5개월 간 총 20회의 멘토링을 제공하며, 멘티는 진로 설정, 학업·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을 포함한 자립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멘토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코칭, 진로 탐색 등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5.5.18.). 이러한 지역 주도형 맞춤형 멘토링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청소년기 진로 탐색에서 청년기 취업 지원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3	정서적 소진 완화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이용자의 상당수가 상담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 내 돌봄 책임이 크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적 부담이 심했고, 상담과 정서 지원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면담조사에서도 여러 참여자들이 돌봄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정서적 소진을 호소하였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에서도 일부 청소년은 '상담자가 가족돌봄이라는 특수한 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으며, 부족한 이해로 인해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상담체계가 가족돌봄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상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체계의 구축과 특화된 상담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필요할 때, 학교를 통한 초기 상담 지원과 지역사회 상담기관을 통한 전문상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이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와 안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한 행정복지센터 등 발굴 기관이 상담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의 공감과 이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돌봄 청소년 상담은 일반적인 정서지원과 달리, 가족 내 관계와 돌봄 책임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심리적 부담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과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 실무 연수를 확대하고, 사례 중심의 슈퍼비전이나 워크숍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가족돌봄 청소년 심리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4	또래 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
-----	------------------------------

본 연구 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은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돌봄 부담으로 인해 또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자조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제한적인 교류를 통해 정서적 위안을 얻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래 관계 증진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또래 간 상호지지를 바탕으로 한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일반 또래와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기 힘든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자조모임은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모임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조모임은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서로의 경험 공유, 정서적 지지와 안정, 관계의 회복 등 다양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운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면 모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에 효과적인 반면, 온라인 모임은 노출이나 낙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 참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 생활 여건, 참여 동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연결망은 또래 관계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담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나 지역 활동가가 비공식적인 지원망을 구성해 돌봄 청소년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거나 일상생활을 돕는 확장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지역 기반의 자발적 협력은 제도적 지원이 닿지 않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학교,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수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력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전달체계 및 추진 기반 구축
----------	------------------------

1) 제안 배경

가족돌봄 청소년은 비교적 최근 들어 정책대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지원 체계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초기 형성기일수록 전달체계 설정이 중요한데, 초기에 마련된 체계는 향후 정책 확산의 경로를 결정하며 한번 고착화되면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전달체계 모델을 검토하고 운영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장기 정책계획을 기존 법정계획 체계 내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청년 당사자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제안 내용

5-1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체계 정비
------------	--------------------------------------

(1) 가족돌봄 청소년 전달체계의 쟁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위기아동청년법」에 근거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시범사업이 4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의 전담조직으로 광역지자체에 ‘청년미래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제4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은둔·고립청년 지원과 함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과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다.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은 복지·교육·청소년 등 어느 정책영역에서도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전달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되고 있다. 제6장 면담조사 결과, 현장 전문가들은 광역 단위 운영에 따르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역 단위에서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꾸준히 만나면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가야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복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되었다. 또한 별도로 설립된 전담조직의 경우 사회복지 행정정보망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건강보험, 장애등록, 수급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초지자체가 보유한 가족 단위 통합 정보에도 접근이 제한된다는 구조적 한계도 제시되었다. 최영준 외(2024)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로 인해 일상적 발굴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청년미래센터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담조직이 본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미래센터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 설계가 요구된다.

(2) 효과적 전달체계를 위한 핵심 요건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성격에서 도출된다.

첫째, 선제적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족돌봄 청소년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려고 하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공공 체계에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장애등록, 수급 정보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 발굴 체계가 필수적이다.

둘째, 생활밀착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

적이고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 면담조사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광역 단위에서는 개별 청소년과 꾸준히 만나면서 신뢰를 쌓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 가능한 지원이 중요하며, 학교나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복지·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통합적 지원이다. 제4장 국내 정책 분석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이미 기존 복지·교육·청소년 정책에 상당 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영 외(2023)의 연구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들의 돌봄대상가족은 처한 상황에 따른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들의 돌봄대상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돌봄 대상 가족 전체에 대한 복합적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가족 전체의 복지 이용 내역을 파악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통합적 사례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돌봄 대상 가족과 돌봄제공자 청소년을 분리된 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족 단위 통합 지원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립된 복지 전달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과 예산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단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심리상담, 진로탐색, 사례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상의 요건들을 종합하면, 청년미래센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단독 운영보다는 기초자치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의 통합돌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도 기초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방향과 정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협력체계 구축 방안

앞서 검토한 핵심 요건들을 토대로, 청년미래센터와 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센터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조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체계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① 청년미래센터의 역할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광역 거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기초지자체에서 발굴·의뢰한 중증·복합 사례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례는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장기간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고난이도 사례는 광역 센터로 의뢰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청년미래센터에 복합·중증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심리상담이나 진로탐색 및 자립 준비, 자조모임 운영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초지자체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초 단위 사례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사례 컨설팅, 직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사례관리 역량을 지원한다. 민간기관 협력 체계 구축과 후원·자원봉사 발굴, 우수사례 확산 등 지역 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허브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광역 센터가 전문성과 광역 차원의 조정 기능을 발휘하면서, 기초지자체의 현장 실행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역할 분담 구조로 볼 수 있다. 단, 청년미래센터가 상술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인력 확보와 단계적인 역량 강화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기초지자체의 역할

기초지자체는 생활밀착형 지원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등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갖춘 조직을 통해 가족돌

봄 청소년 지원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전문 조직으로, 행정데이터 접근, 민관협력 기반 서비스 연계 역량, 시군구 단위 배치를 통한 일상적 발굴·관리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발굴 단계에서는 주민센터, 학교, 청소년시설, 병원 등 유관기관을 통한 다층적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과 함께, 학교나 병원 등 일상 접촉 기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기초지자체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초기 사례관리, 복지·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 연계, 정기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일상적으로 청소년과 접촉하면서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시 광역 청년미래센터에 전문 서비스를 의뢰한다.

다만 면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장전문가는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우선순위에 밀려 적극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희망복지지원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매뉴얼이나 지원대상에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안내하여 주요 지원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청년미래센터와 기초지자체 간 효과적 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첫째, 정보 연계 체계이다. 청년미래센터가 선제적 발굴에 필요한 행정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단위 통합 지원을 위해 센터가 대상자 동의하에 가족 전체의 복지서비스 이용 내역을 조회하여 중복·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뢰·환류 체계이다. 기초지자체에서 발굴한 사례 중 심층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청년미래센터로 의뢰하고, 센터의 심층 개입 이후 다시 기초지자체로 환류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뢰 기준, 절차, 사례회의 운영 방식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기적인 협력 체계이다. 청년미래센터와 기초지자체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례 공유, 프로그램 협력, 지역 자원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침으로 학교와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기초지자체 또는 청년미래센터로 통보하도록 하는 발굴 협력체계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이미 적용 중인 모델로 볼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에 각각 센터를 두고, 광역 센터는 전문상담, 위기개입, 프로그램 개발, 기초 센터 지원 등을 담당하고, 기초 센터는 지역 밀착형 상담과 사례관리를 담당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참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도 이와 유사하게 광역 청년미래센터는 전문적·광역적 기능을, 기초지자체는 일상적·밀착형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달리 가족돌봄 청소년은 가족 단위 복지서비스 연계가 핵심이므로, 기초 단계에서는 별도 전담 조직보다는 희망복지지원단 등 기존 통합사례관리 체계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청년미래센터는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운영 체계를 정립해나가는 단계이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의 인력의 전문성 기준 마련, 전문가 채용 및 체계적 교육·훈련, 기존 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와 기초지자체 간 향후 모색 가능한 협력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VII-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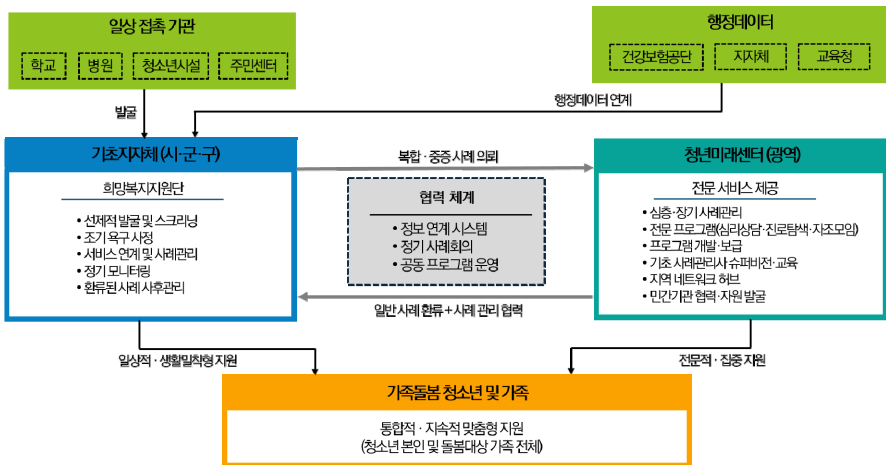


그림 VII-10.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의 장기적 협력 방안(예시)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정책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유효한 방법 중 하나는 관련 내용을 중장기 법정 정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청년 대상 정책기본계획에 반영

먼저, 청소년 및 청년 분야의 주요 법정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028년부터 시행될 「제8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독립된 정책과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신 소외 청소년'으로 처음 정책대상에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추진체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그림 VII-11 참조).

이에 제8차 기본계획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세부과제를 신설하고, 발굴 체계, 학업·심리 지원, 돌봄 부담 경감, 사례관리 등을 포함한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를 함께 제시하여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9~18세) 가족돌봄 청소년의 발달권 보장과 학업 지원이 핵심 과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26년부터 적용될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족돌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만 19세가 되어 청년기로 접어들 때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가족돌봄 청년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두 계획 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환기 청년이 학업·취업·자립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2-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 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지원 강화
- ② 지역 중심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 ③ 정보시스템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운영

2-2.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②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 ③ 후기 청소년(19~24세) 안정적 삶 지원

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①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② 청소년(한)부모 생활·양육 지원
- ③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④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② 청소년(한)부모 생활·양육 지원

-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및 학업 지원(여가부, 교육부)
 -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가족 통합사례관리(학술·생리, 생활, 지역사회 지원 연계 등)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 * 시립수원기리(가정복지): (21년) 68개소 → (22년) 93개소 → (23년) 98개소
 - 학생 미혼모가 임신·출산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취약교육기관 연계 운영을 통한 학습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중단 이후에 다시 학업서비스(강정교시 지원 등)를 원하는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학업 지원
-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여가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기간 확대
 - *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대상으로 자녀 1명당 200만원 지원
 - ** (22년) 4개월 → (23년) 12개월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추진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③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가족돌봄청(소)년 실태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복지부)
 -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 실태파악 위해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설문조사용 실시하고,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정보일제이력 연계 조사 분야
 - * 학내(대입상담원)의 교육원 교육복지팀(소)년 등 유망한 통계 정보 연계 활용
 - 실태조사 결과 등 토대로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지원체계 마련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그림 VII-1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내용

(2) 「위기아동청년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체계 내실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 시, 청소년 및 청년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과 청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부처별 이행 과제와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며, 지자체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여, 현장 욕구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 전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 간담회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단위 실행계획과의 연계 강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

지역 단위 법정계획 및 추진체계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전달체계 활용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내용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지역 단위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기획·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아동·청소년 분과 등)의 활동 계획에도 반영하여 지역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4장 조례 분석 결과, 104개 조례 중 16개 지역이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이 실행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와의 연계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청소년 발달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240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 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반영하고, 찾아가는 상담(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복지 중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청소년의 복지·발달·심리·학업 영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청년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가족돌봄 청년 지원 내용을 지역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시작된 지원이 청년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층적 연계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역 현장에서 복지·청소년·청년 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5-3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청년 당사자 참여 보장
-----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3항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는 당사자 의견을 통해 지원 연령을 14~34세에서 9~39세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둔 바 있어, 당사자 참여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중앙 및 지역 단위 당사자 의견 수렴 제도화

먼저, 정책 수립-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청년 당사자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되, 이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관련 위원회나 정책 협의체에 당사자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기 아동청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또는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의 과정에 청소년(9~18세)과 청년(19세 이상)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특성상 정기적인 회의 참여에 물리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참여 방식을 허용하고, 참여에 따른 교통비 및 참여 수당을 지원하며, 필요시 돌봄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참여를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기 회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연 1~2회 당사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 단위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당사자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확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사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네트워크는 개별 당사자가 고립되지 않고 또래와 교류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자, 정책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운영하는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는 효과적인 모델 사례로 볼 수 있다. ‘영케미’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활동하는 조직으로, 지원 연령 확대(14~34세→9~39세)를 직접 제안하여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서울시 보도자료, 2024.5.19.). 이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효한 참여 통로임을 입증한 사례이다.

이러한 당사자 네트워크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우선 광역 단위 당사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점차 기초지자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모임이 어려운 지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당사자 간 교류와 경험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정책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가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당사자 모임 및 행사 개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오아시스 데이’와 같은 당사자 중심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스스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I-8〉에는 여기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들의 제안 유형(기존 제도 보완/신규 제도 도입)과 추진기간(단기/중장기), 관련부처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VII-8.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총괄표

정책제언 내용	제안 유형		추진기간		추진주체
	기존 제도 보완	신규 제도 도입	단기	중 장기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1-1.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		●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1-2. 법률명 및 사업명에서 ‘청소년’ 명시 강화	●		●		복지부, 지자체
1-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		●		복지부
1-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체화		●	●		복지부
1-5. 지자체 표준 조례안 개발·보급		●	●		복지부
1-6. 정책 용어의 당사자 친화성 검토		●		●	복지부/범부처
2.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정보접근성 개선					
2-1.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기반 발굴체계 구축		●		●	복지부, 교육부
2-2. 학교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발굴·연계	●		●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2-3. 지역사회·의료기관 기반 발굴·의뢰	●		●		복지부, 성평등부, 지자체
2-4.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		●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2-5. 지원 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	●		●		복지부
3. 돌봄 부담 경감 및 통합 지원					
3-1. 개인별 욕구 평가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	복지부, 지자체
3-2.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 활용 강화 및 행정·법률 지원	●		●		복지부
3-3. 휴식권 보장 및 특수돌봄 지원		●	●		복지부, 지자체
3-4. 경제적 지원 및 생계 안정	●			●	복지부
3-5. 돌봄 역량 강화 교육		●		●	복지부
4. 청소년기 발달권 보장					
4-1.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	●		●		교육부, 지자체
4-2.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연계되는 진로·취업 지원	●		●		교육부, 고용부, 지자체
4-3. 정서적 소진 완화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지자체
4-4. 또래 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	●		●		복지부, 지자체

정책제언 내용	제언 유형		추진기간		추진주체
	기존 제도 보완	신규 제도 도입	단기	중 장기	
5. 전달체계 및 추진 기반 구축					
5-1.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체계 정비	●			●	복지부, 지자체
5-2. 중장기 법정계획 연계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	복지부, 성평등부, 국조실, 지자체
5-3.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청년 당사자 참여 보장		●		●	복지부, 지자체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시은, 최은희, 김가현 (2024). **청주시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북: 청주 복지재단.
- 관계부처 합동 (2022.2.14.).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 관계부처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 권일남, 전명순 (2021). **청소년 문제와 보호**. 서울: 창지사.
- 김정현, 박선영 (2023). “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40(1), 251-280.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선, 이우식, 주영선, 안선경 (2023).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기초 연구**. 서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김희경, 김성훈. (2018).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KYCI] 청소년상담연구**, 26(1), 1-21.
- 노혜진 (2023).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현황 분석.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0(3), 75-105.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대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배다영, 박은빈 (2022). 1인가구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 및 우울감의 변화궤적과 삶의 만족도. **가정과삶의질연구**, 40(1), 11-25.
- 변수정, 오신휘, 조성호, 김은정, 이혜정 (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27.).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2024.2). 2024 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 선정계획(안).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가족돌봄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 서보람 (2025).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충남: 충남사회서비스원.
- 선미정, 장정은, 김진영 (2022).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서울: 서울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3). 2023-2027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 유정원, 강보민 (2022.11.).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은 누구인가?. 복지이슈 FOCUS 제28호. 수원: 경기복지재단.
- 유정원, 박예은, 김도현, 박지환 (2024).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 유진이 (2013).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경기: 양서원.
- 이미리, 김춘경, 여종일 (2019).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서울: 학지사.
- 이수영, 민소영, 장연진, 양효안 (2023).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이신숙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정현, 김정현, 우아영, 윤연숙 (2022).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장휘숙 (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 전라남도교육청 (2025).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안전망 운영 계획.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정소연, 서홍란, 김아래비, 전지승, 류나니, 김승환 (2024).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 서울: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 조기현 (2025.2.6). “돌봄청소년과 돌봄사회”.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자료집. 53-56쪽.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조기현 (2025.2.6.).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토론 내용. 국회의원 김미애·국회의원 김남희·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월드비전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좌현숙, 권지성, 최서경 (2023).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최명애, 이슬기 (2023).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전남: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최영준, 김보영, 김윤영, 임소현, 오서은 (2022). 영케어러(Young Carer)의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혼합방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자료집**, 1119-1197.

최영준, 김지현, 주원희, 임소현, 윤행중, 오서은 (2024).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사단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교육개발원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이드북**.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함선유 (2022). 우리나라 가족돌봄청년 규모와 특성, 복지욕구. **2022 한국사회복지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함선유 (2023).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05호**. 34-45.

함선유, 하은솔, 김문길, 안수란, 김성아, 신유미, 구민지 (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민숙 (2022.02.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4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허준기, 김윤영, 박재형 (2024).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과 지원 경험 연구**. 광주: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2024).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국내 온라인 자료

202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https://www.census.go.kr/main/ehpp/aa/ehppaa100m01> 에서 2025.9.17. 인출.

- 2025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s://sts.hrc.kr/Home/intro> 에서 2025.10.17. 인출.
- 2025년 월드비전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Fill Care」. <https://www.jejubokji.net/communicate/content-board/field-news/73062/35505> 에서 2025.8.14. 인출.
-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신청 웹페이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https://capi.kmaresearch.co.kr/survey/20240265/index_1.asp에서 2025.7.23. 인출.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2025.5). **2025년 교육복지안전망 운영을 위한 월드비전 연계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추진 계획**. <https://yihongcheon-h.goeyi.kr/yihongcheon-h/na/ntt/selectNttInfo.do?mi=16116&nttSn=1441246&bbsId=9282> 에서 2025.8.14. 인출.
- 경기일보 (2025.7.4.). **“통계조차 없던 ‘가족돌봄 청소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담긴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3580261> 에서 2025.10.17. 인출.
-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웹사이트.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안내**. <https://certi.keis.or.kr/uei/ueiHissFxyEmsc.do> 에서 2025.10.21. 인출.
- 관계기관 합동 (2024.12).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216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에서 2025.7.13. 인출.
- 광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신청 안내**. <https://www3.chosun.ac.kr/bbs/chosun/406/248550/artclView.do> 에서 2025.10.17. 인출.
-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3.9.21.). **“광주시,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시작”**.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16300&movePage=1&recordCnt=15&searchTy=TM&searchQuery=%EA%B0%80%EC%A1%B1%EB%8F%8C%EB%B4%84#에서 2025.8.14. 인출.
-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5.5.18.). **“광주시, 자립기반 취약청년 사회진입 돕는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19885&movePage=1&recordCnt=15&searchTy=TM&searchQuery=%EA%B0%80%EC%A1%B1%EB%8F%8C%EB%B4%84 에서 2025.8.14. 인출.

교육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024). **202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교 업무담당자 운영 매뉴얼(요약본)**. https://home.pen.go.kr/upload/happylogin/na/bbs_3158/ntt_826038/doc_6b39v7fae-4cv14-44vef-88v3d-51b9v9cdava8dd_v7526.pdf 에서 2025.10.17. 인출.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https://mdis.kostat.go.k> 에서 2025.07.20. 인출.

국가통계포털.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조사결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3_24BB001201&conn_path=I2 에서 2025.9.1. 인출.

국가통계포털.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64&conn_path=I2에서 2025.9.1. 인출.

국가통계포털.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68&conn_path=I2 에서 2025.9.1. 인출.

금천구청 유엔아동권리협약 안내 페이지,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742> 에서 2025.4.1.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9.19). “**내년부터 가족돌봄 고립은든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503> 에서 2025.7.23. 인출.

데일리한국 (2025.2.20). **광주 서구, ‘제4회 함께 오~잇길 걷기대회’ 개최: 22일 광주천 일대서 참가비 전액 가족돌봄청년·자립준비청년에 지원**.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009> 에서 2025.10.17. 인출.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신청 웹페이지. https://capi.kmarsearch.co.kr/survey/20240265/index_1.asp에서 2025.7.23. 인출.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www.mohw2030.co.kr/panel.asp> 에서 2025.7.23.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21.).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 고립은든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338&act=view 에서 2025.7.23.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7.25).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430&act=view 에서 2025.10.21.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13.).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747&act=view에서 2025.7.23.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8.30.). **“제1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대상자 선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2962 에서 2025.7.23.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소개.**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900>에서 2025.9.12. 인출.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 **2022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https://home.pen.go.kr/upload/haeundae/na/bbs_3564/ntt_671480/doc_48cav752b-37v96-42v0b-95v90-58cev6e1bv32ae_v7309.pdf 에서 2025.10.21. 인출.

서울복지재단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체크리스트. <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342/view.do?nttId=6390666&menuNo=201655> 에서 2025.7.28. 인출.

서울시 보도자료 (2023.7.31.).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만든다…8월부터 운영.** <https://opengov.seoul.go.kr/press/28970388> 에서 2025.7.23. 인출.

서울시 보도자료 (2024.5.19.).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39세로 확대…맞춤형 지원 추진.**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4504> 에서 2025.7.23. 인출.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WAY.** <https://youth.seoul.go.kr/infoData/plcyInfo/view.do?plcyBizId=R2024051022683&key=2309150002> 에서 2025.7.28. 인출.

서울시 홈페이지 교육소식 (2024.9.30.). **“가족돌봄 건강문제로 학업 집중 어려운 청소년도 서울런 지원한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5425> 에서 2025.10.16. 인출.

서울시교육청 인스타그램. **꽃밭무지개교실 홍보 게시물.** https://www.instagram.com/p/DB7zYFPKJr8/?utm_source=ig_web_copy_link 에서 2025.10.21. 인출.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정책 정보 한곳에’ >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https://voracious-pendulum-6fc.notion.site/efeeb7da65d7401e817dffce19dba704?v=383afc26afed4b64b7a1c55893f07472> 에서 2025.10.17. 인출.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정책 정보 한곳에’ <https://voracious-pendulum-6fc.notion.site/c99b19eed4e74ee38425d4fc06ab1e85> 에서 2025.10.13. 인출.

서울정보소통광장 (2024.10.4). “든든하네! 서울런 대상 확대...교육사각지대 청소년 1천여 명 지원.”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31902908> 에서 2025.10.16. 인출.

서울정책아카이브 (2024.5.30).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적극적 발굴·체계적 지원... 전국 최초 자가진단표 개발·배포.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10029> 에서 2025.8.14. 인출.

서울특별시 서울런 홈페이지. <https://slearn.seoul.go.kr/> 에서 2025.10.17. 인출.

월드비전 카드뉴스. 2025년 월드비전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Fill Care」. <https://www.jejubokji.net/communicate/content-board/field-news/73062/35505> 에서 2025.8.14. 인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多품: 다함께 품다’ 사업 안내문.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799> 에서 2025.8.14. 인출.

자립정보온 홈페이지. <https://jaripon.ncrc.or.kr/home/kor/support/projectMng/edit.do?menuPos=1&idx=704> 에서 2025.8.14.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 (2021.12.24.).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주택 특성 항목 보도자료.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20200&bid=203&act=view&list_no=415955 에서 2025.9.17. 인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kostat.go.kr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504호). <https://share.google/rkyjjEgbyRU9ab5Da> 에서 2025.10.21. 인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지원단 안내 페이지. https://www.ssis.or.kr/lay1/bbs/S1T70C586/H/63/view.do?mode=view&article_seq=76421&cpage=2&rows=9&condition 에서 2025.10.17.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9.22. 인출.

■ 국외문헌

- Aldridge, J. (2018). Where are we now? Twenty-five years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on young carers. *Critical Social Policy, 38*(1), 155-165. DOI: 10.1177/0261018317724525.
- Aldridge, J., & Becker, S. (1993). Punishing children for caring: the hidden cost of young carers. *Children & Society, 7*(4), 376-387.
- Becker S., Dearden C., & Aldridge J. (2000). Young carers in the UK: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Research Policy and Planning, 18*(2), 13-22.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Elder, G. (1995). *The Life Course Paradigm: Social Change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 Moen, G.E. and Luscher, K., Eds., *Examining Lives in Perspective*, Washington DC.
- Goode, W. (1960). Theory of Role Stra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483-496.
- Hamilton, M., & Redmond, G. (2020). Are Young Carers Less Engaged in School than Non-Carers? Evidence from a Representative Australian Study. *Child Ind Res 13*, 33-49 (2020). <https://doi.org/10.1007/s12187-019-09647-1>
- Katz, S. (1963). The index of ADL: a standardized measure of biological and psychosocial fun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5*(12), 914-919.
- Lawton, M. P., & Brody, E. M. (1969). Assessment of older people: Self-maintain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Gerontologist, 9*(3), 179-186.
- Leu, A., & Becker, S. (2017). A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1-13.

- Leu, A., Berger, F. M. P., Heino, M., Nap, H. H., Untas, A., Boccaletti, L., ... Becker, S. (2022).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6(5), 619-636.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
- Sieber, S. D. (1974).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567-578.
- The Children's Society (2016). *Supporting Young Carers and Their Families: An Introductory guide for professionals*, p.9.

■ 국외 온라인 자료

- ABC Australia. <https://www.abc.net.au/heywire/>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Action for Children 홈페이지. *Young carers: who are they and why do they need support?* <https://www.actionforchildren.org.uk/blog/young-carers-who-are-they-and-how-are-they-impacted/>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8).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 <https://www.abs.g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2018>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a).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 <https://www.abs.g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latest-release>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b). *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2022 - Table 32: All persons, living in households, carer status, by age and sex at birth*. <https://www.abs.g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

- 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latest-release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4). *Financial support for young carers*. <https://www.dss.gov.au/supporting-carers/financial-support-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5). *Impact Evaluation of the Young Carer Bursary Program and Young Carer Network: Final Report*. <https://www.dss.gov.au/system/files/documents/2025-03/impact-evaluation-young-carer-bursary-program-and-young-carer-network-final-report.pdf>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Balloon Society 홈페이지 (2025). <https://ycballoon.org/en/activities/index.html>. 2025년 7월 24일 인출.
- BBC News. (2021, November 16). *Young carers: 'Thousands not getting the help they need'*. <https://www.bbc.com/news/uk-59222288>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 Carer Gateway 홈페이지. <https://www.carergateway.gov.au/>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Carer Gateway 홈페이지. *Support for young carers*. <https://www.carergateway.gov.au/your-life-carer/your-life-around-caring/experiences-backgrounds/support-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Carers ACT 홈페이지. *Young carers*. <https://www.carersact.org.au/for-carers/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 Carers Australia (2024). *Young Carers Roundtable: Record of Meeting*. <https://www.carersaustralia.com.au/wp-content/uploads/2024/09/Young-Carers-Roundtable-Report.pdf>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Carers NSW Australia (2024). *Young carer hub*. <https://www.carersnsw.org.au/services-and-support/information-hubs/young-carer-hub>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Carers Trust 홈페이지. *About Young Carers*. <https://carers.org/about-caring/about-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Carers Trust 홈페이지. *Getting a break: Respite for carers*. <https://carers.org/getting-a-break/getting-a-break-respite-for-carers>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Carers Trust 홈페이지. *Getting support if you are a young carer or young adult carer*. <https://carers.org/getting-support-if-you-are-a-young-carer-or-young-adult-carer/getting-support-if-you-are-a-young-carer-or-young-adult-carer>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Carers Trust 홈페이지. *Young Carers Action Day*. <https://carers.org/young-carers-action-day/young-carers-action-day>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Carers Trust 홈페이지. *Young Carers Alliance*. <https://carers.org/young-carers-alliance/young-carers-alliance>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Carers UK. *Facts about carers*. <https://www.carersuk.org/media/ocxheq2c/facts-about-carers-dec-2024-final.pdf>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Carers VIC Australia (2025). *Young Carer Scholarship Program Guidelines 2025*. <https://www.carersvictoria.org.au/media/6888/young-carers-scholarship-guidelines-2025.pdf>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e-gov 법령검색.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1AC0000000071>, 2025년 7월 10일 인출

Gloucestershire Country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gloucestershire.gov.uk/media/b43hr2pa/young-carer-24.pdf>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GOV.UK. (2025a). *Carer's Allowance: How it works*. <https://www.gov.uk/carers-allowance>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GOV.UK. (2025b). *Carer's Allowance: Eligibility*. <https://www.gov.uk/carers-allowance/eligibility>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Little Dreamers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littledreamers.org.au/programs/>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National Carers Week. <https://carersweek.com.au/about/>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NHS England 홈페이지. *Carers' breaks and respite care*. <https://www.nhs.uk/social-care-and-support/support-and-benefits-for-carers/carers-breaks-and-respite-care/?utm>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NHS England 홈페이지. *Commissioning for carers: Principles and resources to support effective commissioning for adult and young carers*.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comm-carers/>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NHS. *Being a young carer: your rights*. <https://www.nhs.uk/conditions/social-care-and-supportguide/support-and-benefits-for-carers/being-a-young-carer-your-rights/> 에서 2022년 2월 8일 인출.

Nippon Foundation 홈페이지 (2025). <https://www.nippon-foundation.or.jp/what/projects/youngcarer>. 2025년 7월 15일 인출.

North Tyneside Council (2021.6).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YCNA) over 12s workbook* [PDF]. Trix CMS. <https://trixcms.trixonline.co.uk/api/assets/northtynesideadults/75988b16-0c9d-4f70-b13a-3f9749ecdbc2/ycna-over-12-s-workbook.pdf> 에서 2025년 10월 14일 인출.

NSW Legislation. *Carers (Recognition) Act 2010*. <https://legislation.nsw.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2010-020>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Census 2021: Unpaid care by age and sex, England and Wale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socialcare/datasets/unpaidcarebyageandsexenglandandwales> 에서 2025년 5월 9일 인출.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ensus 2021: Unpaid care by age, sex and deprivation, England and Wale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socialcare/datasets/unpaidcarebyageandsexenglandandwales>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ensus-based statistics UK: 202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datasets/censusbasedstatisticsuk2021>. 2025년 5월 9일 인출.

Social Security Scotland (2023). *Young Carer Grant: high level statistics to 31 January 2023*. <https://www.socialsecurity.gov.scot/asset-storage/production/downloads/Young-Carer-Grant-Publication-March-2023.pdf>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South Australian legislation. *Carers Recognition Act 2005*. https://www.legislation.sa.gov.au/_legislation/lz/c/a/carers%20recognition%20act%202005/current/2005.55.auth.pdf?utm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Spurgeons 홈페이지. *Young carers*. <https://spurgeons.org/how-we-help/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The Children's Society 홈페이지. Empowering professionals.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information/professionals/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The Children's Society 홈페이지. Young carers festival.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information/young-people/young-carers/festival>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UK Legislation. *Care Act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23/contents/enacted>.

UK Legislation. *Carer Recognition Act 2010*. <https://www.legislation.gov.au/C2010A00123/latest/text>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UK Legislation. *Children Act 198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section/17ZA> 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UK Legislation.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section/96/enacted>. 에서 2022년 2월 8일 인출.

UK Legislation. *Section 1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section/17> 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UK Legislation. *The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s) Regulations 2015, SI 2015/527. (2015)*. UK Statutory Instruments.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527/made> 에서 2025년 10월 14일 인출.

United Nations (1989).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rights-child> 에서 2025년 4월 10일 인출.

Wayman, Sheila, The vital role young carers play on the 'forgotten front line', *The Irish Times*(2021.11.30.),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

- health-family/parenting/the-vital-role-young-carers-play-on-the-forgotten-front-line-1.4735381.
- wecare_oasis(가족돌봄청년돌봄캠페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https://www.instagram.com/p/DP5ln10k8As/?img_index=9&igsh=MzV5ZXV6aDRud2wy 에서 2025.10.20. 인출.
- Young Carers in Schools 홈페이지. <https://www.youngcarersinschools.com/> 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 Young Carers Network (2024, October). *Young Carer Bursary Program – Information Pack For those who support young carers*. <https://youngcarersnetwork.com.au/wp-content/uploads/2024/10/Young-Carer-Bursary-2025-Information-Pack-for-Supporters.pdf>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 Young Carers Network. <https://youngcarersnetwork.com.au/> 에서 2025년 5월 19일 인출
- Young Carers Network. *Who are young carers?* <https://youngcarersnetwork.com.au/young-carers-info/young-carers/> 에서 2025년 5월 15일 인출.
- 가와구치시 홈페이지 (2025). <https://www.city.kawaguchi.lg.jp/soshiki/01080/030/youngcarers/42099.html>. 2025년 7월 24일 인출.
- 다카사키시 홈페이지 (2025). <https://www.city.takasaki.gunma.jp/site/notice/1945.html>. 2025년 7월 24일 인출.
-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2022).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복지·돌봄·의료·교육 연계프로젝트 팀 보고 (ヤングケアラーの支援に向けた福祉・介護・医療・教育の連携プロジェクトチーム報告)**. https://www.mext.go.jp/content/20210521-mxt_jidou02-000015177_b.pdf. 2025년 7월 24일 인출.
-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2021). **중고생 영케어러 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murc.jp/wp-content/uploads/2021/04/koukai_210412_7.pdf. 2025년 7월 15일 인출.
- 아동가정청 (2025). **영케어러 정보(ヤングケアラーについて)**. <https://www.cfa.go.jp/policies/young-carer>, 2025년 7월 10일 인출
- 일본종합연구소 (2022). **영케어러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日本総合研究所(2022)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column/opinion/detail/2021_13332.pdf. 2025년 7월 15일 인출.

효고현 홈페이지 (2025). <https://web.pref.hyogo.lg.jp/kf03/documents/04amagasaki.pdf>. 2025년 7월 24일 인출.

후생노동성 (2022). **영케어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767891.pdf>. 2025년 7월 15일 인출.

후생노동성 (2024). **영케어러 지원 강화에 관한 법 개정의 경위 및 시행에 대하여(ヤングケアラー支援の強化に係る法改正の経緯・施行について)**.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0eb9d18-d7da-43cc-a4e3-51d34ec335c1/628c375f/20240612_policies_young-carer_11.pdf. 2025년 7월 24일 인출.

후생노동성 (2025). **영케어러 지원 현황**. <https://www.mhlw.go.jp/content/10601000/001510066.pdf>. 2025년 7월 15일 인출.

■ 법령·법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5.1.). “가족돌봄” 키워드 조례 검색 결과 (103개 지자체, 104개 조례). www.law.go.kr(자치법규 > 조례 > 키워드 “가족돌봄”) 에서 2025.5.1. 검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846,20250325\)](https://www.law.go.kr/법령/가족돌봄_등_위기아동_청년_지원에_관한_법률/(20846,20250325))에서 2025.5.1. 인출.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9448호, 2023. 6. 1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 에서 2025.4.30. 인출.

「노인복지법」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에서 2025.4.30. 인출.

「민법」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에서 2025.4.30. 인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0호, 2024.

12. 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2935,20141230\)](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2935,20141230)) 에서 2025.10.21. 인출.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55000047&histNo=005&menuNm=main 에서 2025.10.17. 인출.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9452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126000805&histNo=004&menuNm=main 에서 2025.10.17. 인출.
- 「아동복지법」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5.4.30. 인출.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에서 2025.4.30. 인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447&efYd=20260327#0000> 에서 2025.7.30. 인출.
- 「장애인 복지법」 [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 에서 2025.4.30. 인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5.4.30. 인출.
-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에서 2025.4.30. 인출.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25.10.21. 인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17호, 2024. 4. 1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에서 2025.4.30. 인출.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841호, 2023.12.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5.4.30. 인출.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학생맞춤통합지원법/\(20671,20250121\)](https://www.law.go.kr/법령/학생맞춤통합지원법/(20671,20250121)) 에서 2025.7.30. 인출.

■ 법률 발의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2025.4.5. 인출.

-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086, 2024.12.30.).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36, 2024.7.31.).
-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442, 2024.11.11.).
-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640, 2025.1.20.).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591, 2024.11.14.).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618, 2024.10.8.).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064, 2024.8.22.).
-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08, 2025.1.7.).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452, 2024.11.11.).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944, 2024.8.19.).

○ — 부 록

부록

웹(web) 설문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평균적으로 약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나, 응답자의 개인적인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응답자는 설문 진행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참여 이후에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고,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타인이 알 수 없고,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본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시면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답례로 제공해 드립니다. (8월 중 제공 예정)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황여정 선임연구위원 044-415-2108
정은주 선임연구위원 044-415-2138

수행기관



한국여론리서치

※ 담당자: 박종경 선임
※ 문의전화: 02-3014-0146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188

//상기 내용 설문에 모두 제시 필요//

AQ1.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 선정 탈락

[로직: 동의하지 않음 시, 확인창 노출

동의하지 않음 시, 조사 참여가 불가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으신가요?

[선정 탈락 멘트 : "귀하께서는 아쉽게도 이번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다시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며, 더 좋은 설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정 탈락은 상기 멘트로 모두 통일]

[로직: AQ1=1 응답자]

AQ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별, 생년/월, 가족구성, 나와 부모의 국적 및 핸드폰 번호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 선정 탈락

[로직: 동의하지 않음 시, 확인창 노출

동의하지 않음 시, 조사 참여가 불가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으신가요?

//카테고리 단독//

※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초반에 탈락 할 수 있어요!

조사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몇 가지 선정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응답 내용에 따라 조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정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 설문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잘 보이려고 하거나 친구들과 상의해서 쓰지 말고, 여러분의 진짜 의견을 적어 주세요.

3. 대충 하지 말아 주세요!

빠르게 끝내려고 아무렇게나 고르거나, 아무 숫자나 적지 말아 주세요.
응답을 성실하게 해야 소중한 사례(모바일상품권 1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4.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돼요!

설문 응답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응답한 개인정보는 답례를 제공할 때만 사용돼요.

//SQ// //사전 질문//

SQ1. 여러분이 태어난 해는 몇 년 몇 월인가요?

1. ()년 [로직: 1995 to 2020]
2. ()월 [로직: 1 to 12]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하되, 연도는 내림차순으로 구성]

[로직: 년과 월을 가로 한 줄에 나란히 배치]

[로직: 2000.1. ~ 2016.12. 이 외는 선정 탈락]

SQ2.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SQ3.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4. 가족(따로 사는 가족 포함) 중에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하나라도 혼자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응답 가이드>

- ※ 가족의 범위는 부모님,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을 포함합니다.
- ※ 가족이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공공기관 방문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분이 대신 도와드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 단, 가족에서 본인과 본인의 자녀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활동 예시>

- 옷 갈아입기 또는 식사하기
- 집 안에서 이동하기(누워있다 일어나기 등)
- 화장실 이용하기(세수, 양치, 샤워, 목욕, 대소변)
- 서류 읽기나 의사소통하기(병원 은행 학교 관공서 등)

1. 네, 하나라도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2. 아니오, 하나라도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로직: SQ4=2 응답자]

SQ4-1.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활동 말고, 아래와 같은 **좀 더 복잡한 활동을 하나라도 혼자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활동 예시>

- 몸 단장하기(예: 씻기, 머리 감기)
- 약 챙겨먹기
- 식사 준비하기
- 전화 걸고 받기
- 청소, 빨래, 정리정돈 및 설거지
- 돈 관리(예: 물건 사기, 거스름돈 계산하기)
- 가까운 외출(걸어서), 먼 거리 외출(버스, 전철, 택시, 기차 등)
- 병원 은행 학교 관공서에서 일 처리하기
- 서류나 문자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

1. 네, 하나라도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2. 아니오, 하나라도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 **선정 탈락**

[로직: SQ4=1 or SQ4-1=1 응답자]

SQ5. 이처럼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돌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족**을 돌보고 있나요?

※ 가족돌봄이란?

- 예를 들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목욕이나 식사 돕기, 병원 모시고 가기,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보기, 말동무하기 등이 모두 돌봄에 해당합니다.
- 병원비, 식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생활비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 지원도 돌봄에 해당합니다.
- 가족이 글을 읽기 어렵거나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함께 가서 통역하거나 서류를 대신 읽어주는 일도 돌봄에 해당합니다.
- 또한 혼자 돌보는 것, 다른 가족과 함께 돌보는 것 모두 돌봄에 해당합니다.

1. 제가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2. 저와 다른 가족이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3. 저는 전혀 돌보지 않고, 다른 가족이 돌보고 있습니다.

[로직: SQ4=1 or SQ4-1=1 응답자]

SQ6. 여러분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부담, 도움 등)하고 있나요?

※ 생계 지원이란?

예를 들면, 가족의 병원비, 식비, 주거비, 생활비 등 생계의 일부나 전부를 여러분이 부담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1. 저는 가족의 생계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저는 가족의 생계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저는 가족의 생계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직: SQ5=1 or 2 본설문 진입]

[로직: SQ6=1 or 2 본설문 진입]

[로직: SQ5=3 & SQ6=3 선정 탈락]

//A// //돌봄 경험//

[카테고리(A1):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가족과 돌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1. 현재 가족들 중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가족 구성원별로 응답해주세요.

- ※ 직장 및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은 '함께 살고 있음'으로 응답해주세요.
- ※ 단,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따로 살고 있음'으로 응답해 주세요.
- ※ 형제자매, 기타 친척은 해당되는 사람 중 한 분이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함께 살고 있음'으로 응답해주세요.
- ※ 반려동물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문항 내용	함께 살고 있음	따로 살고 있음	안 계심
	1	2	3
1. 아버지			
2. 어머니			
3. 친할아버지			
4. 친할머니			
5. 외할아버지			
6. 외할머니			
7. 형제자매(형, 오빠, 누나, 언니, 남동생, 여동생)			
8. 기타 친척(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1~8의 모든 응답에 대하여 "3. 안계심"을 응답시 경고창 제시]

[경고창 :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안 계심"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로직: A1의 7번 항목=1 응답자]

A1-1.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형, 오빠, 누나, 언니, 남동생, 여동생)**는 총 몇 명인가요?

1. ()명 [로직: 1 to 10]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

[로직: A1의 8번 항목=1 응답자]

A1-2. 함께 살고 있는 **기타 친척(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은 총 몇 명인가요?

1. ()명 [로직: 1 to 10]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

[로직: A1 항목 중 하나라도 1 or 2 응답자]

[로직: A1 항목 중 단 1개 항목만 1 or 2 응답자는 자동 코딩 및 문항 스킵]

A2. 가족 중에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1. 아버지
2. 어머니
3. 친할아버지
4. 친할머니
5. 외할아버지
6. 외할머니
7. 형제자매(형, 오빠, 누나, 언니, 남동생, 여동생)
8. 기타 친척(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로직: A1 항목 중 1 or 2 응답이 있는 보기만 노출]

A3.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은 **어떠한 이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신체적 장애
2. 지적 장애
3. 정신질환 및 장애
4. 중독 관련 질환(술, 마약, 도박 등)
5. 만성질환(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건강상태. 예: 고혈압, 당뇨병, 암 등)
6. 언어·문화적인 어려움(통역, 서류 읽기 등)
7. 기타 ()

A4. 여러분은 몇 살부터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나요? 여러 명을 돌보고 있다면, **가장 오래 돌본 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가족을 돌보는 것은 식사 돕기, 약 챙기기, 집안일 하기와 생활비, 병원비 지원 등 신체적·경제적 돌봄, 그리고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까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1. ()살부터 [로직: 5 to 현재나이 (2025 - SQ1 1번의 응답값)]

A5. 여러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주돌봄자'**인가요?

※ '주돌봄자'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1. 예
2. 아니오

[로직: A5=1 응답자]

A5-1. 여러분이 '주돌봄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복수][maxrank:2]

1.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내가 돌봐주길 원해서
3. 내가 돌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4.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5.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에
6. 주변에 돌봐줄 기관이나 제도가 없어서
7. 기타()

[로직: A5=2 응답자]

[로직: A1 항목 중 단 1개 항목만 1 or 2 응답자는 자동 코딩 및 문항 스킵]

A5-2. 여러분이 주돌봄자가 아니라면, 가족 중에서 **누가 주돌봄자인가요?**

1. 아버지
2. 어머니
3. 친할아버지
4. 친할머니
5. 외할아버지
6. 외할머니
7. 형제자매(형, 오빠, 누나, 언니, 남동생, 여동생)
8. 기타 친척(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로직: A1 항목 중 1 or 2 응답이 있는 보기만 노출]

A6. 여러분이 **평일(월~금)**에 가족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 ※ 돌보는 시간이 없다면 '0시간'으로 응답해주세요.
- ※ 분 단위 시간은 반올림하여 응답해 주세요. (예: 1시간 30분 -> 2시간으로 응답)

1. 평일(월~금)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약 ()시간 **[로직: 0 to 20]**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

A6-1. 여러분이 **주말(토~일)**에 가족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 ※ 돌보는 시간이 없다면 '0시간'으로 응답해주세요.
- ※ 분 단위 시간은 반올림하여 응답해 주세요. (예: 1시간 30분 -> 2시간으로 응답)

1. 주말(토~일)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약 ()시간 **[로직: 0 to 20]**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

A7.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아픈 가족 돌보기(병간호, 간병)
2. 경제적 지원(생활비, 치료비, 요양병원비 등)
3. 집안일 지원(요리, 청소, 세탁 등)
4.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옷 갈아입기, 식사, 씻기 등)
5. 병원 통원 또는 입원 시 돌보기
6. 다른 가족 돌보기(형제·자매 돌보기 등)
7. 행정업무 지원(관광사은행 업무, 서류 작성 등)
8. 기타()

A8. 다음은 가족을 돌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가족을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내 생활이 이루어진다				
2.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3. 내가 원해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				
4. 가족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				
5. 가족을 돌본 이후로 나는 항상 피곤하다				
6. 나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 화난다				

[로직: 3개씩 끊어서 제시]

A9. 여러분은 가족을 돌보면서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나요? [척도][stepbystep]

문항 내용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1	2	3	4
경제적 측면	1. 의료비, 간병비 등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			
	2. 가족 전체 생활비(식비, 주거비 등) 마련의 어려움			
돌봄 측면	3. 돌봄 방법을 잘 몰라 생기는 어려움			
	4. 돌봄 대상자 외부활동 지원에 따른 어려움(외출, 병원 동행 등)			
	5. 돌봄 대상자와의 거리감이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			
	6. 가족 간 돌봄 역할 분담이나 의견 충돌로 인한 어려움			
삶의질 측면	7. 돌봄으로 인해 나의 학교나 직장(아르바이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8. 돌봄으로 인해 나의 진로/취업을 준비하기가 어려움			
	9. 돌봄으로 인해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려움			
	10. 돌봄으로 인해 나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11. 돌봄으로 인해 나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우울, 분노 등)			
	12. 돌봄으로 인해 나의 문화·여가 활동이 어려움			
	13. 돌봄으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단체 활동(수학여행, 동아리 등) 하기가 어려움			
	14. 나를 돌봐줄 어른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			

[로직: 대분류별로 페이지 나누어서 제시, '삶의질 측면'은 4개씩 끊어서 제시]

[카테고리(A10):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학업과 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10. 다음 중 **여러분의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1. 학교만 다니고 있다
2. 일만 다니고 있다(직장, 아르바이트 등)
3. 학교도 다니고 있고, 직장(아르바이트 포함)도 다니고 있다
4. 학교도 다니지 않고(휴학 포함) 직장(아르바이트 포함)도 다니고 있지 않다

[로직: A10=1 or 3 응답자]

A10-1.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급**은 어디인가요?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대학원 포함)

[로직: A10=2 or 3 응답자]

A10-2. 일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나요?

1. 시간제(아르바이트)
2. 전일제(하루종일 근무)
3. 시간제와 전일제 둘 다 하고 있음(투잡, N잡 등)
4. 기타()

[로직: A10-2 응답자]

A10-3. 여러분이 버는 돈 중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란?

※ 의료비,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교통비, 돌봄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 비용 등 돌봄 대상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1. 내가 버는 돈의 ()% [0/10/20/30/.../100]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

[로직: A10=4 응답자]

A10-4.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없어서
2.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서
3. 진학 및 취업, 자격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4. 나 자신의 건강문제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없어서
5. 휴식이나 여행 또는 취미활동을 위해서
6.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어서
7. 기타()

A11.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학교나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 **지각이나 조퇴, 결석**한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로직: A11=1 응답자]

A11-1.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했나요?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1회 정도
3. 한달에 1회 정도
4. 일년에 1~3회 정도

A12.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로직: A12=1 응답자]

A12-1.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복수][maxrank:2]**

1. 가족돌봄으로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져서
2. 돌봐야 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3. 가족돌봄과 학업 또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4. 가족돌봄과 학업 또는 일을 같이 할 시간이 부족해서
5. 가족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
6. 경제적인 문제로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7. 기타()

[로직: SQ6=1 or 2 or A7=2 응답자]

A13. 가족의 생계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나요?

1. 전혀 부담되지 않음
2. 별로 부담되지 않음
3. 약간 부담됨
4. 매우 부담됨

[카테고리(B1):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필요성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1.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1. 내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온라인 포털, 커뮤니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서
2. 지인(친척, 친구, 이웃 등)이 알려줘서
3. 학교에서 알려줘서
4. 주민센터나 복지기관(가족센터, 복지관, 고용센터 등)에서 알려줘서
5.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알려줘서
6.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에서 알려줘서
7.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에서 알려줘서
8. 인쇄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또는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 습득해서
9. 기타()
10. 전혀 들어본 적 없다 [중복 선택 불가]

B2.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로직: B2=1 응답자]

B2-1.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얼마나** 쉽다고 느꼈나요?

1. 매우 어려웠다
2. 어려운 편이었다
3. 쉬운 편이었다
4. 매우 쉬웠다

[로직: B2=2 응답자]

B2-2.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거나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 찾아볼 시간이 부족해서
3.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몰라서
4.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5.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6. 정보를 찾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7.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8. 기타()

B3. 여러분은 정부(보건복지부, 주민센터 등)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일상돌봄 서비스'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에게 상담, 학업·진로 지원, 휴식활동, 자기돌봄비(용돈처럼 쓸 수 있는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들어본 적 있다
2. 들어본 적 없다

B4.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또는 기관)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도움을 주는 어떠한 사람(또는 기관)도 없음
2. 친척
3. 친구, 동료 또는 이웃
4. 학교 선생님
5. 주민센터나 복지기관(가족센터, 복지관, 고용센터 등)
6.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7.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8.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
9. 기타()

B5. 가족돌봄을 하면서 정부 또는 민간기관(복지관, 종교기관 등)이 운영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stepbystep]

※ 친구나 친척, 이웃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문항 내용	이용 여부		
	있다	없다	모른다
	1	2	3
1. 돌봄 서비스(재가방문, 시설 이용)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집이나 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			
2. 이동지원 서비스(병원 이동, 외출 동행 등)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병원에 가거나 외출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서비스			
3. 식사지원 서비스(도시락 배달, 식사 준비 등) - 밀반찬, 도시락을 주거나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서비스			
4. 가사지원 서비스 -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			
5.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 가족돌봄휴가 및 기타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휴식, 교육, 심리상담 등 서비스			
6.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응급안전알림 장비, 시 스피커 등 용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직: 3개씩 끊어서 제시]

[로직: B5의 세로 항목 1~6에 모두 2 or 3 선택한 경우, B6으로 이동]

[로직: B5의 세로 항목 1-6 중 "1. 있다"를 선택한 세로 항목만 제시]

B5-1. 해당 서비스는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척도][stepbystep]

문항 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2	3	4
1. 돌봄 서비스(재가방문, 시설 이용)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집이나 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				
2. 이동지원 서비스(병원 이동, 외출 동행 등)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병원에 가거나 외출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서비스				
3. 식사지원 서비스(도시락 배달, 식사 준비 등) - 밑반찬, 도시락을 주거나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서비스				
4. 가사지원 서비스 -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				
5.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 가족돌봄휴가 및 기타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휴식, 교육, 심리상담 등 서비스				
6. 돌봄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응급안전알림장비, AI 스피커 등 용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직: B5의 세로 항목 1-6 중 하나라도 "1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B5-2. 위와 같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나요?

1. 전부 부담하고 있다
2.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
3. 부담하지 않는다(무료제공 또는 무료지원)

B6. 정부 또는 민간기관(복지관,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stepbystep]

※ 친구나 친척, 이웃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문항내용	있다	없다	모른다
	1	2	3
1) 생활비 지원(식비, 주거비 등)			
2) 의료비 지원(진료비, 약값 등)			
3) 주거비 지원(전월세, 전기·수도 등 관리비)			
4)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장학금, 학원비, 진로 탐색, 직업훈련 등)			
5) 문화·체육 활동 지원(문화활동비, 스포츠 바우처 등)			
6)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상담치료, 정서 지원 등)			
7)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식이·운동 상담 등)			
8) 법률상담 지원(후견인 지원, 법률문서 작성 등)			

[로직: 4개씩 끊어서 제시]

[로직: B6의 세로 항목 1-8에 모두 "2 없다" or "3 모른다"를 선택한 경우 B6-3으로 이동]

[로직: B6의 세로 항목 1-8 중 "1 있다"를 선택한 세로 항목만 제시]

B6-1. 해당 지원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척도][stepbystep]

문항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2	3	4
1) 생활비 지원(식비, 주거비 등)				
2) 의료비 지원(진료비, 약값 등)				
3) 주거비 지원(전월세, 전기·수도 등 관리비)				
4)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장학금, 학원비, 진로 탐색, 직업훈련 등)				
5) 문화·체육 활동 지원(문화활동비, 스포츠 바우처 등)				
6)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상담치료, 정서 지원 등)				
7)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식이·운동 상담 등)				
8) 법률상담 지원(후견인 지원, 법률문서 작성 등)				

[로직: B5의 세로 항목 1-6 및 B6의 세로 항목 1-8 중 하나라도 "1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B6-2. 지원 또는 서비스로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해결 되었나요?

1.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2.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3. 약간 해결되었다
4. 대부분 해결되었다

[로직: B5의 세로 항목 1-6 및 B6의 세로 항목 1-8 모두 "2 없다" or "3 모른다"를 선택한 응답자]

B6-3. 해당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못했거나 안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 신청할 시간이 부족해서
3.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4.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5.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6.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7. 기타()

B7. **가족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자원을 받을 생각**이 있나요?

1. 지원을 받고 싶다
2.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

[로직: B7=2 응답자]

B7-1.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비용이 부담되어서
2.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3. 서비스에 믿음이 안 가서
4. 신청 및 이용 절차가 어려워서
5.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6. 나의 상황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B8.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다음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문항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돌봄 지원	1) 돌봄 지원(간병, 보호자 지원 등)			
	2) 이동 지원(병원 이동, 외출 동행 등)			
	3) 식사 지원(도시락 배달, 식사 준비 등)			
	4) 집안일 지원(청소, 빨래, 설거지 등)			
	5) 돌봄 보조기기 지원(휠체어, 전동 침대 등)			
복지 지원	6) 생활비 지원(식비, 주거비 등)			
	7) 의료비 지원(병원비, 약값 등)			
	8) 주거비 지원(전월세, 전기·수도 등 관리비)			
	9) 심리상담 지원(정서 지원, 정신건강 상담 등)			
	10) 법률상담 지원(후견인, 법률문서 작성 등)			
진료 및 자기 개발 지원	11) 진료·진학 및 취업 지원(장학금, 진료상담, 직업훈련 등)			
	12)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문화스포츠 배우처 등)			
	13)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식습관운동 상담 등)			
	14) 휴식 지원(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공 등)			

[로직: 대분류별로 페이지 나누어서 제시]

B8-1. 그 밖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오픈]

1. () [로직: 최소 3줄 이상 제시]

B9. 평소 본인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본인을 위한 시간이란, 나만 위할 수 있는 시간,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 등을 말합니다.

1. 충분하다
2. 충분하지 않다

B9-1. 만약 본인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루 중 얼마나 필요할까요?

1. 1시간 이내
2. 2~4시간
3. 5~8시간
4. 8시간 이상

B9-2. 본인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1.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
2. 잠을 충분히 자기
3. 학교 공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습하기
4. 돈을 벌 수 있도록 취업하여 일하기
5. 친구들과 함께 놀기
6. 돌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담, 심리성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하기
7. 기타()

//C// //심리·정서적 특성 및 미래 설계//

C1.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나요?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다	←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C2. 요즘 어느 정도 우울하였나요? **[단일척도]**

전혀 우울하지 않다	←									→	매우 우울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C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2.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C4.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주세요. **[척도][stepbystep]**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3.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로직: 3개씩 끊어서 제시]

C5.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2.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내 미래가 안정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C6. 여러분은 **향후 진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1.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2.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3. 약간 준비되어 있다
4. 매우 준비되어 있다

[로직: C6=1 or 2 응답자]

C6-1. 여러분이 **진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복수][maxrank:2]

1. 가족을 돌보느라 진로 준비를 할 여력이 안 되어서
2. 경제적 부담으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없어서
3.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4.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5. 신체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6.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7. 기타()

//P// //일반적 특성//

P1. 여러분 가정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1. 100만원 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만원
7. 600~699만원
8. 700~799만원
9. 800만원 이상
10. 잘 모르겠음

P2. 다음 중 **여러분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모두** 응답해주세요. **[복수]**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
4. 잘 모르겠음

P3. 부모님 중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나라 국적이시거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분이 계신가요?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1. 있다
2. 없다

[로직: 맨 앞자리만 010, 011 등 드롭다운 목록으로, 나머지는 오픈]

동의1. 모바일상품권(1만원권)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상품권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음) → 설문 완료

[로직: 동의1=1 응답자]

동의2. 모바일상품권을 수령하실 분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는 상품권을 수령하실 번호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1. 이름 ()
2. 휴대전화번호 ()-()-() [로직: 맨 앞자리만 010, 011 등 드롭다운 목록으로, 나머지는 오픈]

[로직: 확인창을 띄워서 응답 내용을 확인하도록]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국의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가족돌봄 청소년 9명과 현장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청소년안전망 등 기존 제도가 가족돌봄 청소년을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나, 가족돌봄이 명시적 지원 사유로 구체화되지 않아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학교 기반 발굴 체계, 휴식 지원, 또래 네트워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평균 돌봄 시작 연령은 13세이고, 13세 미만의 나이에 돌봄을 시작한 비율이 48%를 차지해 어린 나이에 돌봄 부담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하였고,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다수가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해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서비

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서비스 접근성은 제한적이나 실제 이용 시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등이 주요하게 나타나 정보 부족이 핵심 장벽임을 확인했다. 지원 필요도 조사에서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지원 필요도를 보였다.

셋째, 면담조사 결과 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 책임을 자연스러운 가족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어, 낮은 정체성 인식이 발달의 어려움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돌봄 책임으로 인해 성적 하락, 학업 중단, 진로 탐색 기회 상실 등 청소년기 핵심 발달과업 수행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 전망 자체를 제한하는 발달권 침해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가족돌봄 청소년 발달 및 정보접근성 개선, ③돌봄 부담 경감 및 통합 지원, ④청소년기 발달권 보장, ⑤전달체계 및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elucidate the circumstances of youth who undertake familial care responsibilit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derive specific, practical policy measures to resolve the complex difficulties young carers face and guarantee their right to development.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compiled the implications of previous research on young carer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dentifie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rough 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Additio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reality of young carers by conducting a nationwide status survey of 577 appropriate respondents aged 9–24 years. To supplement the survey results, nine young carers and five relevant experts were interview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policy measures that will support young care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revealed that existing systems such as the integrated student support project and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and youth safety nets attempt to accommodate young carers by viewing them as individuals who face complex difficulties. However, these measures have limitations regarding identifying and supporting young carers because family care is not explicitly specified as grounds for receiving support.

Analysis of overseas cases revealed tha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Japan legally define young carers and implement and develop policies including school-based identification systems, respite support, and peer networks. These findings are a source of valuable insights for the formulation of domestic policy.

Second,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age at which young carers began caregiving was 13 years, with 48% of respondents starting caregiving at a younger age, suggesting early exposure to care burdens. Furthermore, a substantial proportion of respondents were unaware of any family care-related services. The majority reported experiencing difficulty in obtaining relevant information, despite having actively searched for it. These outcomes underscore the need for improved information accessibility. Although few respondents had previously used support services, those who had expressed high satisfaction with most servic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service accessibility remains limited: however, they also suggest that effectiveness of available services is considerable when utilized. The main reasons for non-use of services include lack of awareness of their existence and of how to apply for them, which confirms a lack of information as a core barrier. Moreover, the survey on support needs revealed high demand for support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medical and living expenses, housing costs, health management, education and career development, and employment.

Third, the interview content indicated that numerous youth had not self-identified as young carers; instead, they view and accept their caregiving responsibilities as a natural family duty. This study confirms that low identity recognition leads to structural blind spot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carers. Furthermore, the caregiving responsibilities of youth contribute to

their experience of constraints on fulfilling the core developmental tasks of adolescence, which can manifest as academic performance decline, school dropout, and the loss of career exploration opportunities. These are not a temporary difficulties; such obstacles limit the prospects of youth and violate their right to development.

The following policy improvements are proposed: establish and develop laws and systems that support young carers; improve identity recognition among young carers and enhance their access to information; reduce caregiving burdens on youth and provide integrated support; guarantee the right of adolescents to development; and create delivery systems and implementation foundations.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연경·정송
-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I /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혁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희정·김희정
-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 크 쉘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로 키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타 자료 집 >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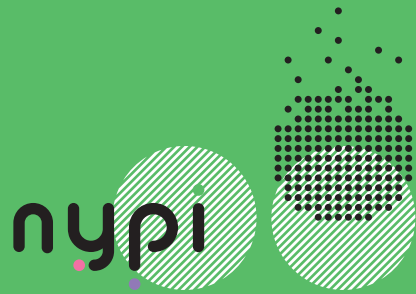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50-0 93330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50-0